

Public Space →

A

B

Public Facilities ←

Public Visual Media →

C

D

Public Design Project ←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SEOUL PUBLIC DESIGN CHECKLIST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SEOUL PUBLIC DESIGN CHECKLIST

		Contents	→
Part A	→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6p
Part B	→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32p
Part C	→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122p
Part D	→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	204p

Part A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A1	도로	01 보행자 전용도로	A1-1 보행 가로 ①	08
			A1-1 보행 가로 ②	10
		02 자전거 전용도로	A1-2 자전거도로	12
		03 자동차도로	A1-3 자동차도로	14
		04 지하보도	A1-4 지하보도	16
		05 고가도로 하부	A1-5 고가도로 하부	18
A2	광장	01 광장	A2 광장 심의대상	20
A3	친수공간	01 친수공간	A3 친수공간	22
A4	소공원	01 소공원	A4 소공원	24
A5	공공건축물	01 실내공간	A5-1 공공건축물 실내공간	26
		02 실외공간	A5-2 공공건축물 실외공간	28
			A5-3 옥외주차장	30

Part B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B1	도로시설	01 도로(부속) 시설물	B1-1 교량(철교 포함) 심의대상	34
			B1-2 고가차도(철도위 포함) 심의대상	36
			B1-3 입체교차 심의대상	38
			B1-4 도로변 석축 및 옹벽 심의대상	40
			B1-5 방음벽 심의대상	42
			B1-6 방호울타리 심의대상	44
			B1-7 중앙분리대 심의대상	46
			B1-8 낙석방지망 심의대상	48
			B1-9 육교 심의대상	50
			B1-10 가로등 심의대상	52
			B1-11 맨홀 심의대상	54
			B1-12 트랜치 심의대상	56
			B1-13 제설시설 심의대상	58
B2	도로시설	02 교통관련 시설물	B2-1 대중교통 승차대 심의대상	60
			B2-2 자전거 보관대 심의대상	62
			B2-3 횡단보도 헬터 심의대상	64
			B2-4 신호등(주) 심의대상	66
B3	도로시설	03 보행안전 시설물	B3-1 보도블록 심의대상	68
			B3-2 점자블록 심의대상	70
			B3-3 볼라드 심의대상	72
			B3-4 보호펜스 심의대상	74
B4	도로시설	04 관리 시설물	B4-1 지상변압기	76
			B4-2 교통신호제어기	78
			B4-3 전기차 충전소	80
B5	도로시설	05 도시철도 시설물	B5-1 지하철출입구, 캐노피 심의대상	82
			B5-2 지하철 환기구 심의대상	84
			B5-3 지상노출엘리베이터 심의대상	86
B6	하천시설	06 하천 시설물	B6-1 육감문 심의대상	88
			B6-2 하천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심의대상	90
B7	지원시설	01 이동형 버스	B7-1 관광안내소(부스형) 심의대상	92
B7-2 공중전화부스 심의대상			94	
B7-3 가로판매대 심의대상			96	
B8		02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B8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심의대상	98
03 휴게 시설물			B9-1 벤치 심의대상	100
		B9-2 그늘막(파고라)	102	
B10		04 조명·보안 시설물	B10-1 보안등	104
			B10-2 공원등	106
			B10-3 CCTV(CCTV지주) 심의대상	108
B11		05 위생 시설물	B11-1 휴지통 심의대상	110
	B11-2 공중화장실 심의대상		112	
	B11-3 음수대		114	
B12	녹지·수경시설	01 녹지 시설물	B12-1 가로수 화분대 심의대상	116
B12-2 가로수 보호덮개 심의대상			118	
B13	02 수경 시설물	B13-1 분수대, 벽천 심의대상	120	

Part C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C1		01 교통관련 안내표지	C1-1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124
			C1-2 노면 표지	126
			C1-3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128
			C1-4 공공기관, 시설안내표지 심의대상	130
			C1-5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 심의대상	132
			C1-6 주차안내 : 주차장안내, 표지 등 심의대상	134
			C1-7 부설 주차장 진출입 표지 심의대상	136
			C1-8 신호기 : 차량용, 보행 신호등	138
			C1-9 버스정류장 표지, 안내도	140
			C1-10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심의대상	142
			C1-11 장애인 ·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심의대상	144
			C1-12 지하철 안내표지 심의대상	146
			C1-13 지하철노선, 역사 안내도 심의대상	148
			C1-14 택시 외관 심의대상	150
			C1-15 택시 정류장 표지 심의대상	152
			C1-16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심의대상	154
C2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02 보행관련 시각매체	C2-1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156
			C2-2 무단횡단 금지표지	158
			C2-3 도로명판	160
			C2-4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162
			C2-5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164
			C2-6 문화재설명표지판, 기념표석 심의대상	166
			C2-7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심의대상	168
			C2-8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심의대상	170
			C2-9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노면표지	172
			C2-10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174
C3		03 안전관련 시각매체	C3-1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 안내표지	176
			C3-2 하천 안전안내표지 심의대상	178
			C3-3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180
			C3-4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182
			C3-5 공사장 안내표지	184
			C3-6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186
C4		04 영상관련 시각매체	C4-1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심의대상	188
			C4-2 교통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190
			C4-3 버스정보 전광판	192
			C4-4 디지털 영상매체	194
			C4-5 옥외전광판	196
C5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05 실내사인	C5 실내사인 ①	198
C6			C5 실내사인 ②	200
		06 실외사인	C6 실외사인	202

Part D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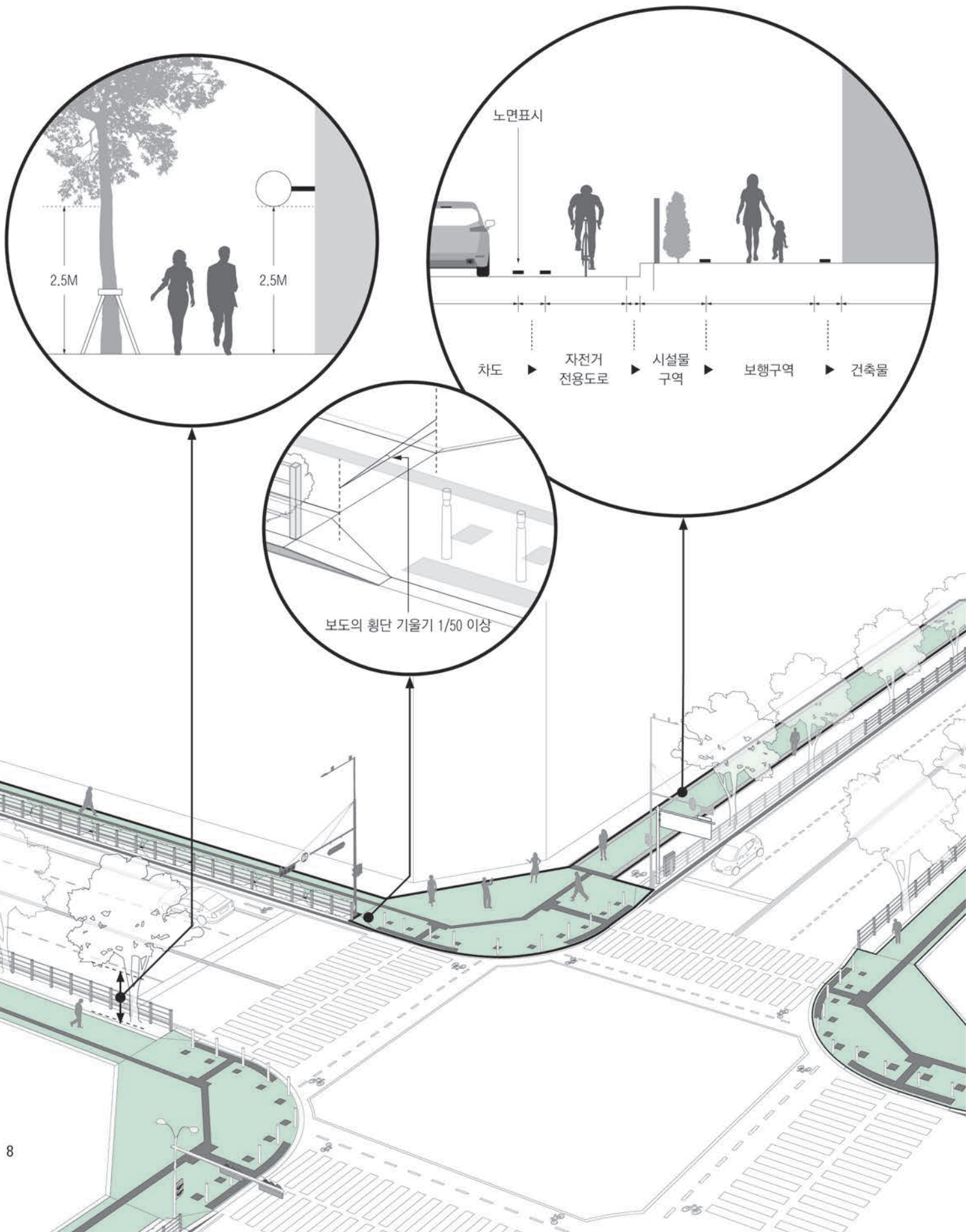
D1	공공디자인사업	0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D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심의자용	206
			D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자용	207
D2		0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D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자용	210
			D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자용	211
D3		03 유니버설디자인	D3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용	214
			D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자용	215

Part A

Public Space Checklist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A1-1 보행 가로 ①



기본방향

유효보호폭을 반드시 확보하고,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형성한다.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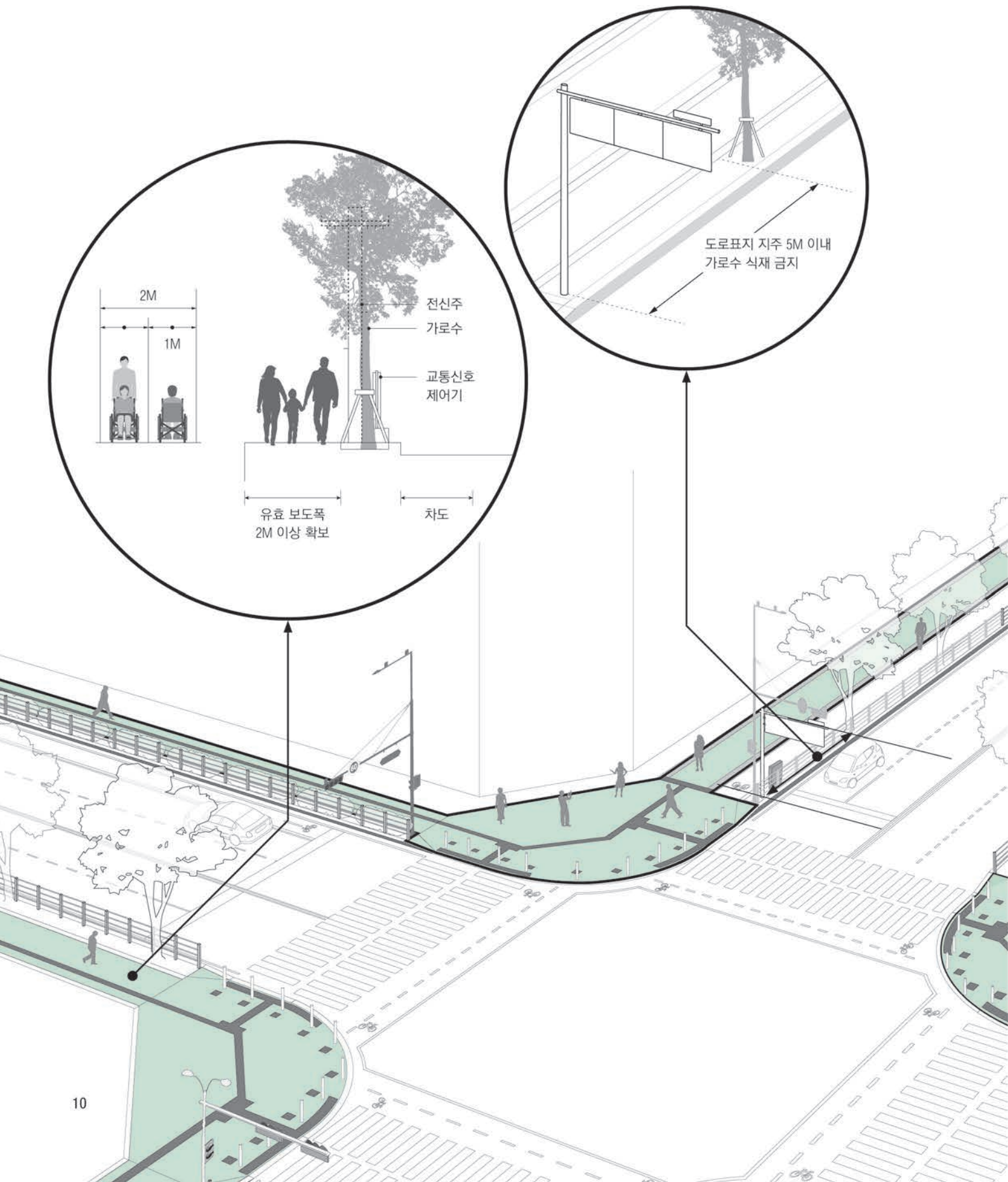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1, 국토교통부)
- 〈보행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 (2016, 국토교통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 (2020,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2021, 국토교통부)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횡단보도구간은 전체 턱 낮춤으로 설치한다.			
2. 횡단보도 턱 낮춤 기울기는 1/18이하, 측면경사 1/12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을 제외한 대기공간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4. 보도의 횡단 기울기는 1/50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보도의 종단 기울기(진행방향 기울기)는 1/180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보도블록은 틈새 5mm 이내로 시공한다. (투수블록 포함)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도 > (자전거전용도로) > 시설물 구역 > 보행 구역 > 건축물의 순서로 배치한다.			
2. 보도는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다.			
3. 유효 보도폭 3M 이상 보도에는 300mm 보행 기준선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가로판매대, 관광안내소는 보도 폭 4M 이상 확보된 곳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5. 보행 구역은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 내에 안내 사인, 가로수 등 장애물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블라드 배치 시 1.5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7. 점형블록 설치 시 경계석 및 블라드 전면 300mm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블록형 포장재는 300x300mm 이상의 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포장재의 맞물림은 시공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그리드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3. 투수성이 좋은 포장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보도 위 맨홀 덮개의 표면 재료는 보도 포장 재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A1-1 보행 가로 ②



기본방향

유효 보도폭을 반드시 확보하고,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형성한다.

참 조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1, 국토교통부)
- 〈보행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매뉴얼〉 (2016, 국토교통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 (2020,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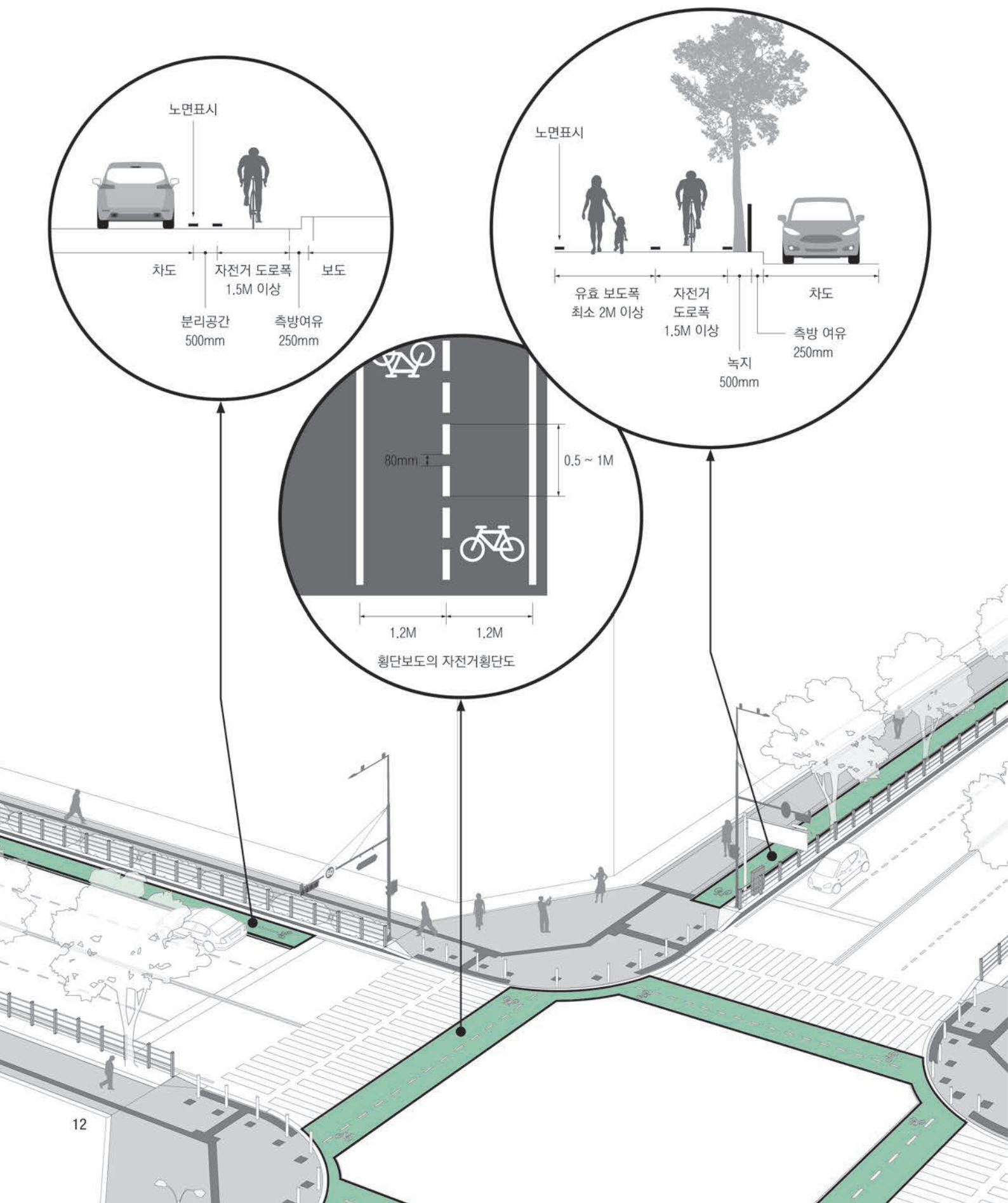
색채/패턴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포장재의 색채는 무채색 및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한다.			
2. 포장재의 주조 색채가 눈부심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패턴 강조 색채는 주조 색채와 명도 차가 심하지 않도록 배색한다.			
4. 보행 진행 방향으로의 패턴은 지양하고 직각 방향 패턴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유효 보도폭 2M 이하 보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다.			
2. 도로표지 지주 5M 이내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다.			

A1-2 자전거도로



기본방향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20,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전거도로의 시·종점부와 횡단도 접속 보도는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한다.			
2.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보행가로에 준하는 평탄도를 유지한다.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유효 보도폭 최소 2M를 확보한 후, 자전거도로폭 1.5M 이상을 확보한다.			
2. 보행자 횡단보도의 측면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표식하여 연결한다.			
3. 자전거도로 위에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의 설치 배제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와 다른 재질을 쓸 경우 단차 제거 및 경계에 틈이 없도록 처리한다.			
2. 보도와 동일 재질을 쓸 경우 경계선 또는 혼용 인지가 정확히 되도록 한다.			
3. 차도와 교차하는 공간에서는 자전거도로 재료의 연속성이 먼저 인식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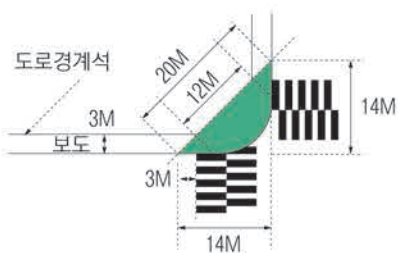
색채/패턴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전거도로 포장 색채는 포장재료 고유색상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자전거와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간 상충구간의 횡단시설 이전 20M 구간에 암적색으로 포장색채를 구분한다.			
3. 자전거도로 노면표지는 탑승 주행자 기준으로 인식되도록 노면표지 방향을 설정한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로수는 지하고 2.3M 이상을 확보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도 사이에는 500m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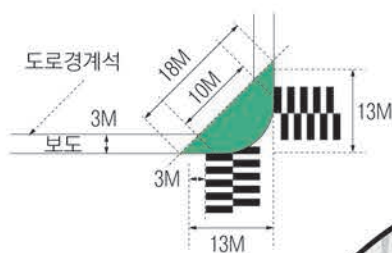
A1-3 자동차도로

[교차로 내 시거확보를 위한 교차로 시설물 설치 금지거리 적용 예시(보도폭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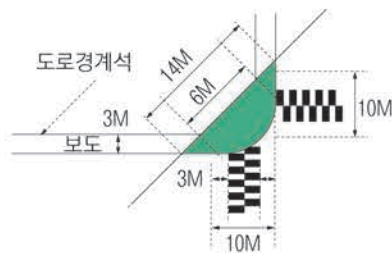
왕복 12차로(편도 6차로)



왕복 8차로(편도 4차로)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차도의 주재료와
구분되는 재료의 사용

기본방향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돕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9, 국토교통부)
〈서울시 가로설계 매뉴얼〉 (2017, 서울특별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 (2016, 도로교통공단)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동차의 주행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평탄한 노면을 조성한다.			
2. 편도 2차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 일방통행 도로 및 상업 밀집 가로는 속도저감을 위한 시케인 처리를 권장한다.			
4. 교통섬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교통표지판 지주 전후 5M 이내에 표지판을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교차로 가각부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3.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승하차 및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견고한 재료 사용과 요철 포장시 규정 높이를 준수한다.			
2.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건물 차량 진입부, 횡단구역 등은 차도 주재료와 구분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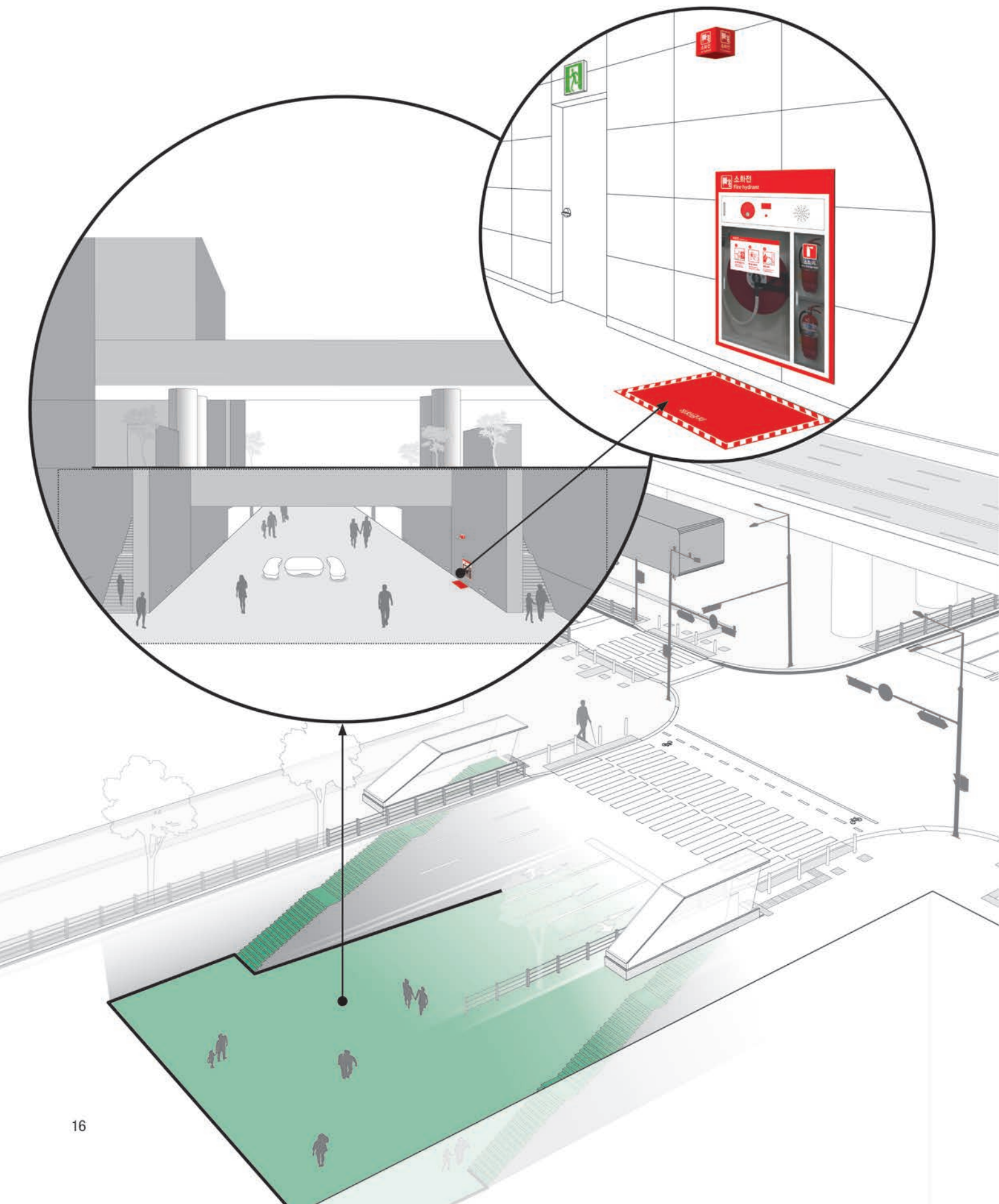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차 혼용 도로의 경우 포장패턴의 차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 요철 포장, 감속 유도를 위한 패턴을 권장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로에 붉은색 등 채도가 높은 포장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도변과 중앙분리대의 식재를 통하여 녹지율을 높인다.			
2. 운전자 시야 확보 및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A1-4 지하보도



기본방향

모두의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대기 및 휴게공간, 편리한 길찾기를 지원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2020,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규정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보도의 폭은 최소 6M로 한다.			
2. 채광, 환기, 비상시 연기 배출을 위해 지하도상가 면적의 2/100이상 천창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 지하도 출입시설의 출입구 너비는 최소 2M이상을 확보한다.			
4. 지하도상가 출입구가 보도에 설치될 때에는 보도폭 3M이상을 권장하고, 최소 보도폭 2M를 확보한다.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간구획 및 휴게공간, 통로 등의 계획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지하보도의 통로부에는 보행 손잡이 등 보조 시설을 설치한다.			
3. 휴게실, 수유실, 유아차 대여소 등 편의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4. 공공안내사인은 결절부를 중심으로, 광장의 경우는 기둥을 중심으로 방향을 명확히 유도하도록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안내사인이 상업시설의 입면, 사인보다 우선하여 인지되도록 계획한다.			
2. 명확한 방향표시가 우선 읽힐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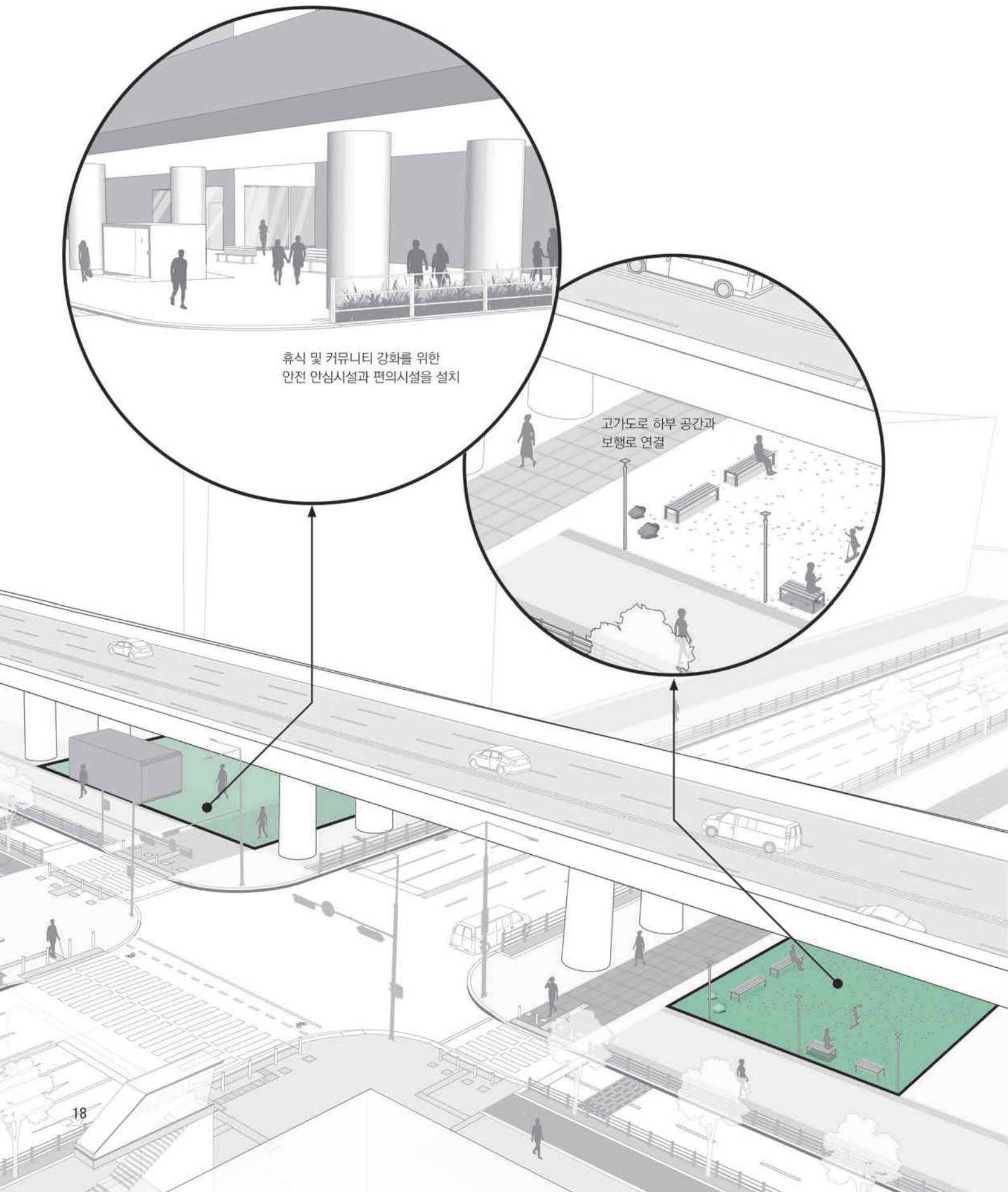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보도 입구 및 개별 상점과 시설의 출입문은 유리 등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전하고 차분한 환경조성을 위해 조명의 색온도는 4,500kelvin이하로 한다.			
2. 지하보도의 출입구, 소화설비, 비상벨 위치는 명확하게 색채가 구분되도록 한다.			
3. 천장이 낮은 경우 천장색을 어둡게 처리하여 깊이감을 준다.			

A1-5 고가도로 하부



휴식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안전 안심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

고가도로 하부 공간과
보행로 연결

기본방향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안전하고 편의성을 갖춘 공간이 되도록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고가도로 하부와 주변과의 연계를 위해 별도의 보행통로 등을 설치하여 연결성을 높인다. | | | |
|--|--|--|--|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고가도로 하부 공간과 보행로 연결을 권장한다. | | | |
| 2. 가급적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배치한다. | | | |
| 3. 휴식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안전 안심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 | |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고가도로 하부의 기둥과 벽면을 적극 활용한 기능공간의 조성을 권장한다. | | | |
| 2. 고가도로 하부에 2개층의 시설 구축시 하부층은 개방성을 강조한다. | | | |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경량철골조 및 가구식 구조 등의 건식구조와 재료를 권장한다. | | | |
| 2. 소음 대응시설이 필요한 경우 흡음패널, 차음벽 등을 설치한다. | | | |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대형 구조물이 경관적으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채도를 낮춘 색채를 사용한다. | | | |
| 2. 고가 하부공간이 안전 안심공간이 되도록 밝은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한다. | | | |
| 3. 커뮤니티 활용이 높은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진입부에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조색을 권장한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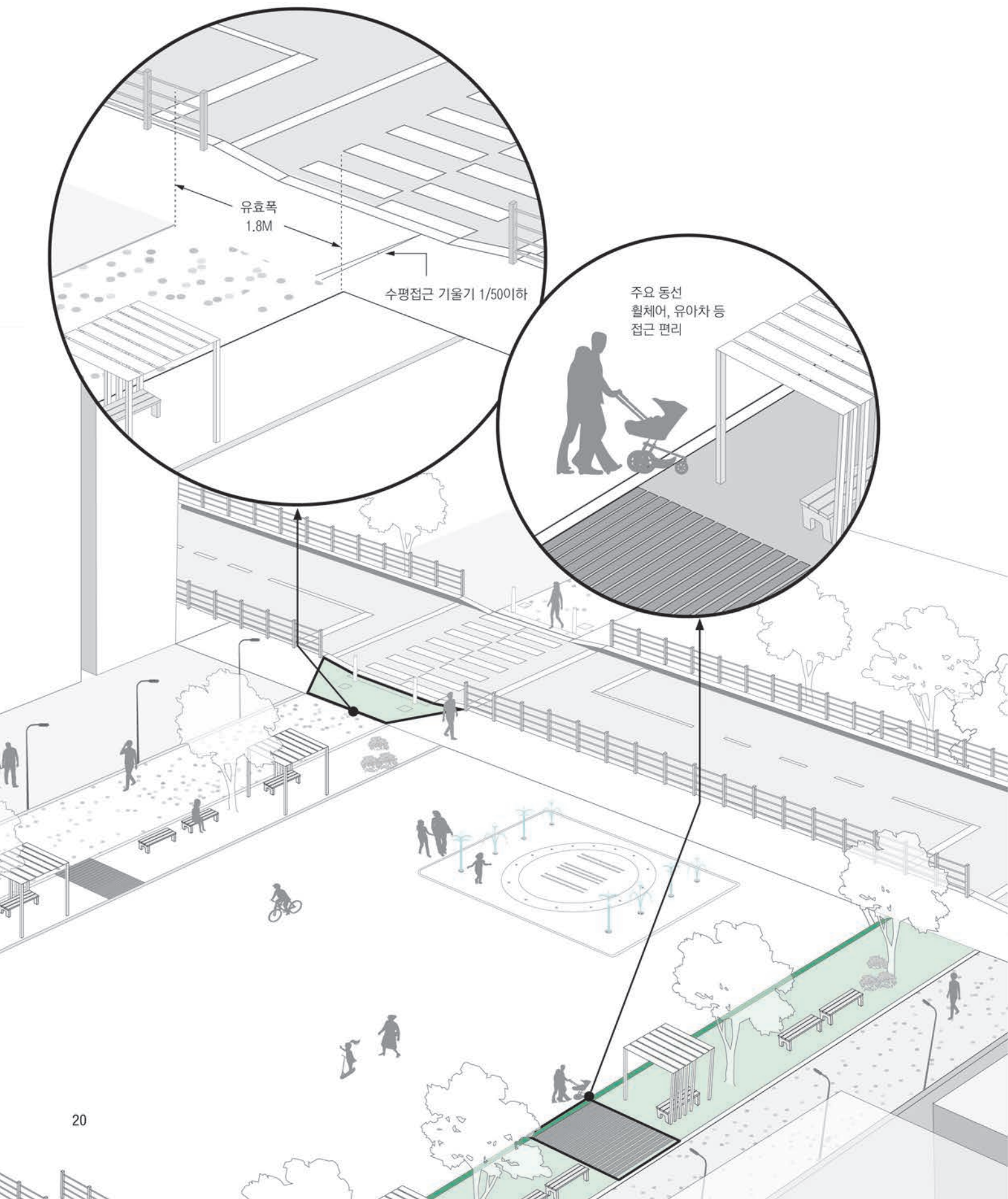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시각적 완화를 위해 입체적인 식재경관을 연출하되, 음지의 특성을 반영한다. | | | |
|--|--|--|--|

A2 광장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가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머무르기 편한 공간을 조성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 내 공중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역광장 설계〉 (2015, 한국철도시설공단)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개방성을 확보하고 보행가로 및 건축물 지층과 연계성을 높인다.			
2. 광장 주출입구는 수평접근 기울기 1/50이하, 유효폭 1.8M 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3. 선근, 야외무대를 포함하는 광장은 지형의 변화를 반영한 입체적 공간 형성을 권장한다.			
4. 주요 동선은 휠체어, 유아차 접근이 편리하여야 한다.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광장은 상징적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개방성을 지향하도록 시설물을 경계부쪽으로 배치한다.			
2. 편의시설물은 주요 동선에 인접한 배치 및 자연감시가 가능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3. 광장 내 공중화장실은 야간에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 통제시설(볼라드, 안내문 등)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5. 안내 및 표지판은 인지성이 높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광장 내 설치가 불가피한 돌출 시설물은 디자인을 통해 경관요소로 활용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인접되는 건축물 경관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해 통합적 경관을 조성한다.			

패턴 및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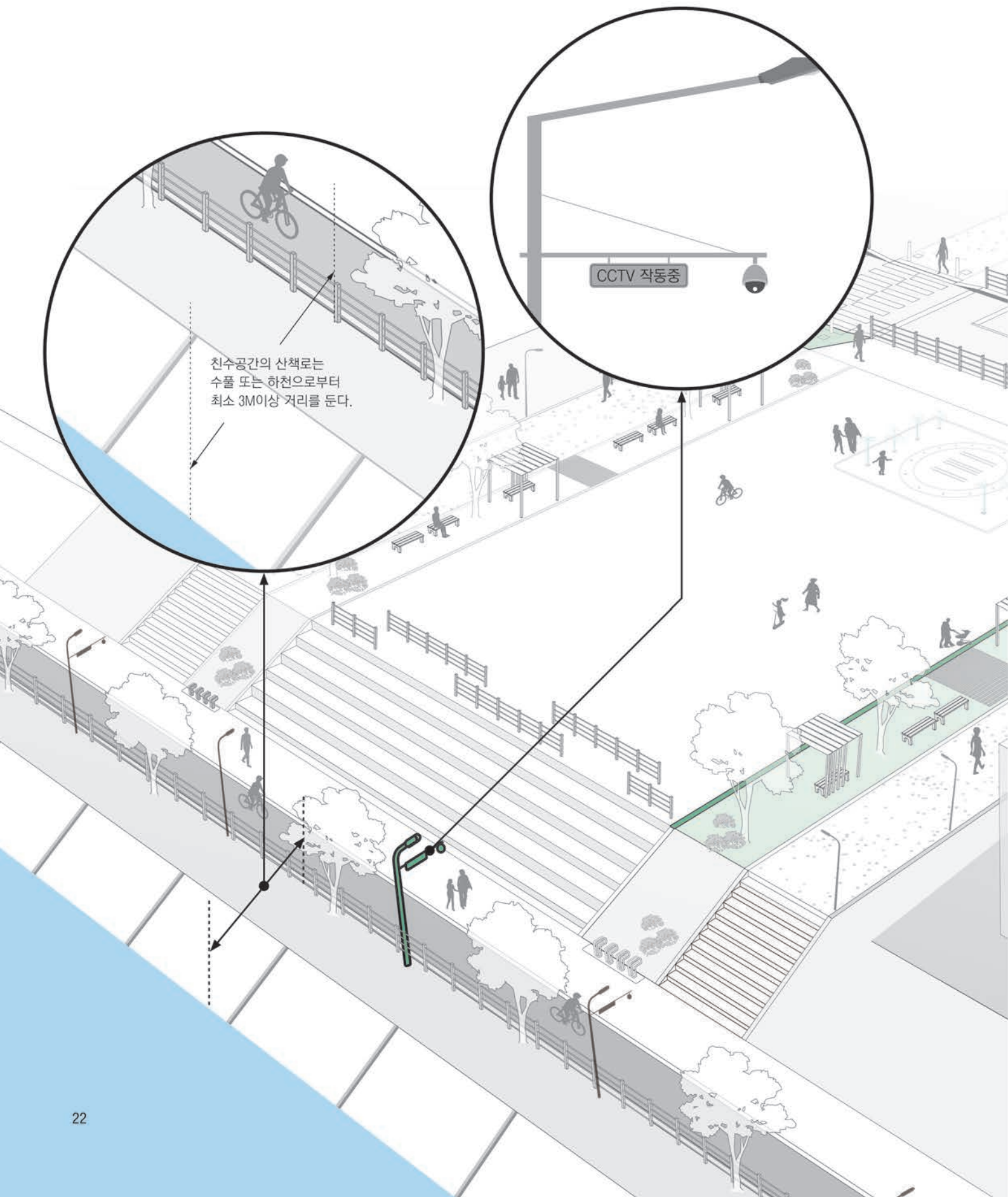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과장된 패턴과 자극적인 원색의 색채 사용은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가로 인접부 또는 광장 외곽에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 제공 및 위요감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2. 식재가 없는 경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계획한다.			

A3 친수공간

심의대상



기본방향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통해 주변공간과 조화롭게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하천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2011, 국토해양부)

〈서울시 수공간 디자인개발 및 활성화 방안〉 (2009, 서울특별시)

〈한국형 저영향개발 수변·친수 도시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8, 국토교통부)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존구역과 이용구역을 나누어 서식처 환경보존과 동시에 친수성을 높이도록 권장한다.			
2. 인공적인 옹벽, 난간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3. 지형의 단차 발생시 산책로는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되, 시각 장애인이 장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단을 병행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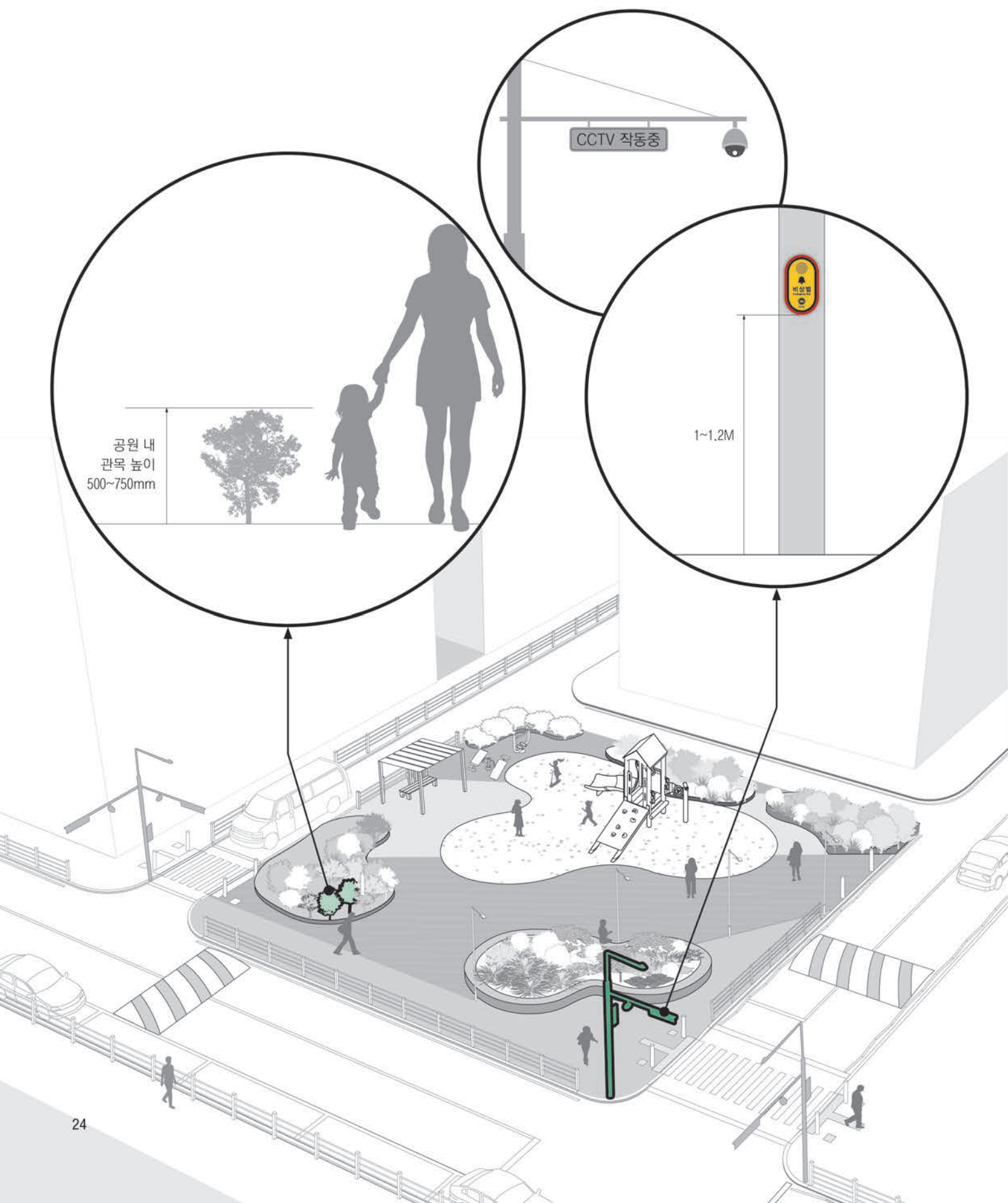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친수공간의 산책로는 수풀 또는 하천으로부터 최소 3M이상 거리를 둔다.			
2. 침수되는 구역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홍수를 대비해 이동식을 설치한다.			
3. 수변공간 산책로에는 보행등을 설치하고 CCTV 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4. 수변공간 산책로는 위치확인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침수가 일어나는 저수호안에는 유실 피해에 잘 견디며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2. 하천과 조화되는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3. 바닥분수 등 미끄럼이 발생되는 주변은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친수공간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색채는 저채도 및 주변과 명도차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친수공간 시설물은 재료 고유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3. 패턴의 사용을 지양한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유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교목 식재를 통한 그늘 형성은 권장한다.			
2.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의 식재를 권장한다.			

A4 소공원



기본방향

지역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개방적인 공원을 만든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2014, 환경부)

〈서울시 공원 내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2009, 서울특별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서울특별시)

〈서울시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계획〉 (20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 가이드라인〉 (2019, 서울특별시)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원 내 통행동선은 계단과 급경사가 없도록 평탄하게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원의 입구는 개방감 확대를 위해 광장의 형태로 조성하고, 단차 없는 수평접근이 되도록 한다.			
3. 공원 내 보행로와 식재구간에는 가능한 경계석을 없앤다.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원 내 시설물은 통합 디자인 측면에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형태, 색채, 재료의 통합)			
2.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다.			
3. 벤치는 그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파고라는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방위 및 위치에 유의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목재, 자연 석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2. 공원 내 시설물의 철재 사용시, 광택있는 스테인리스 소재 사용을 금지한다.			
3. 투수기능이 있는 친환경적 바닥재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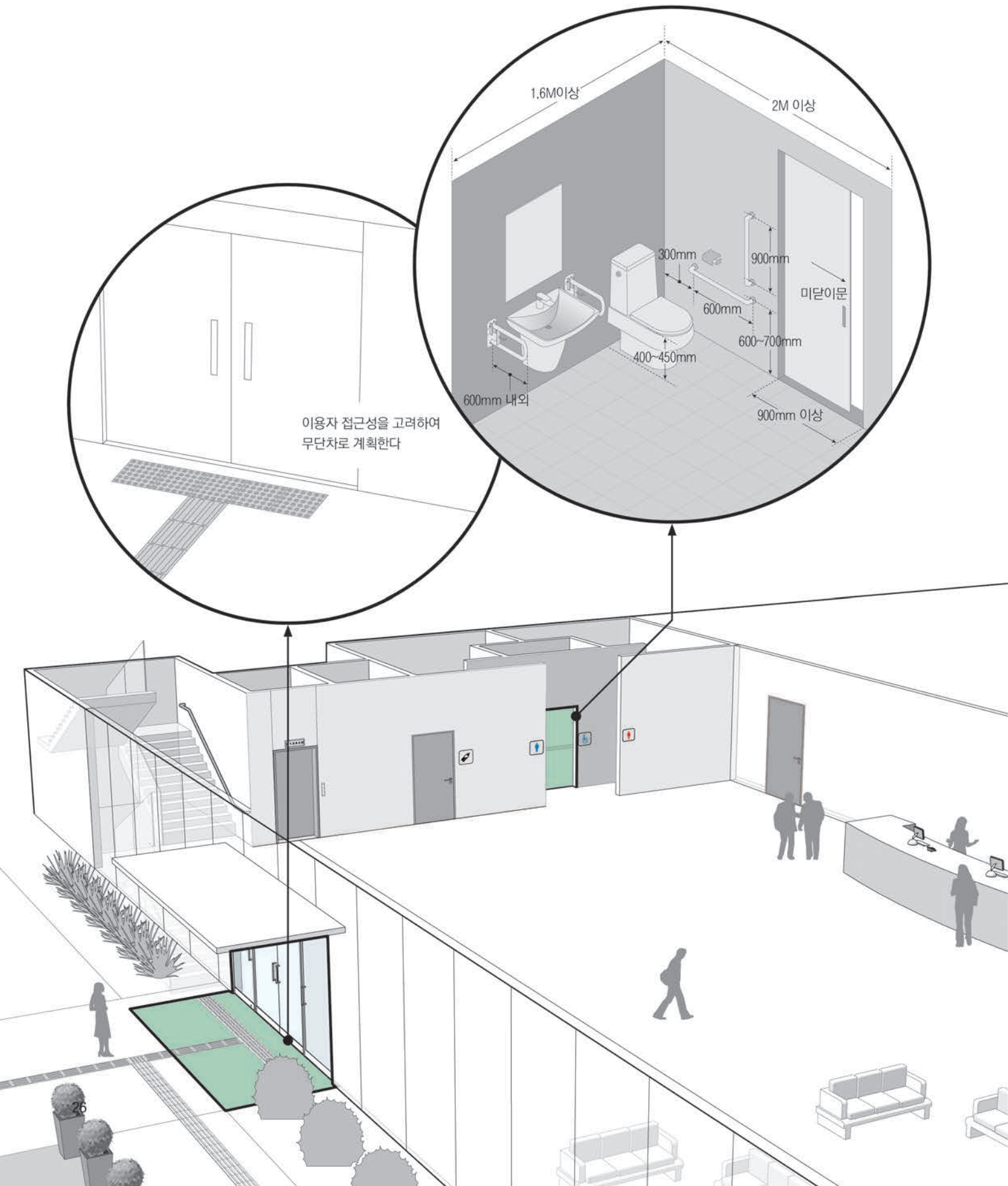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시설물의 색채는 서울기와진화색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상징성 부각을 목적으로 한 복잡한 패턴, 패턴의 과다, 강렬한 색채대비는 금지한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식재는 공원 내 시점부터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하여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원 내 관목의 높이는 500~750mm를 권장한다.			

A5-1 공공건축물 실내공간



기본방향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벽면, 바닥, 시설물을 통합적 이미지로 접근한다.

참 조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 책자〉 (2018, 행정안전부)
- 〈동주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 〈학교환경개선 컬러 컨설팅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계기준〉 (2019, 서울특별시)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무단차로 계획한다.			
2. 주출입구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3. 안내사인은 진로결정 지점에 설치하고, 다국적 정보표기 및 픽토그램 적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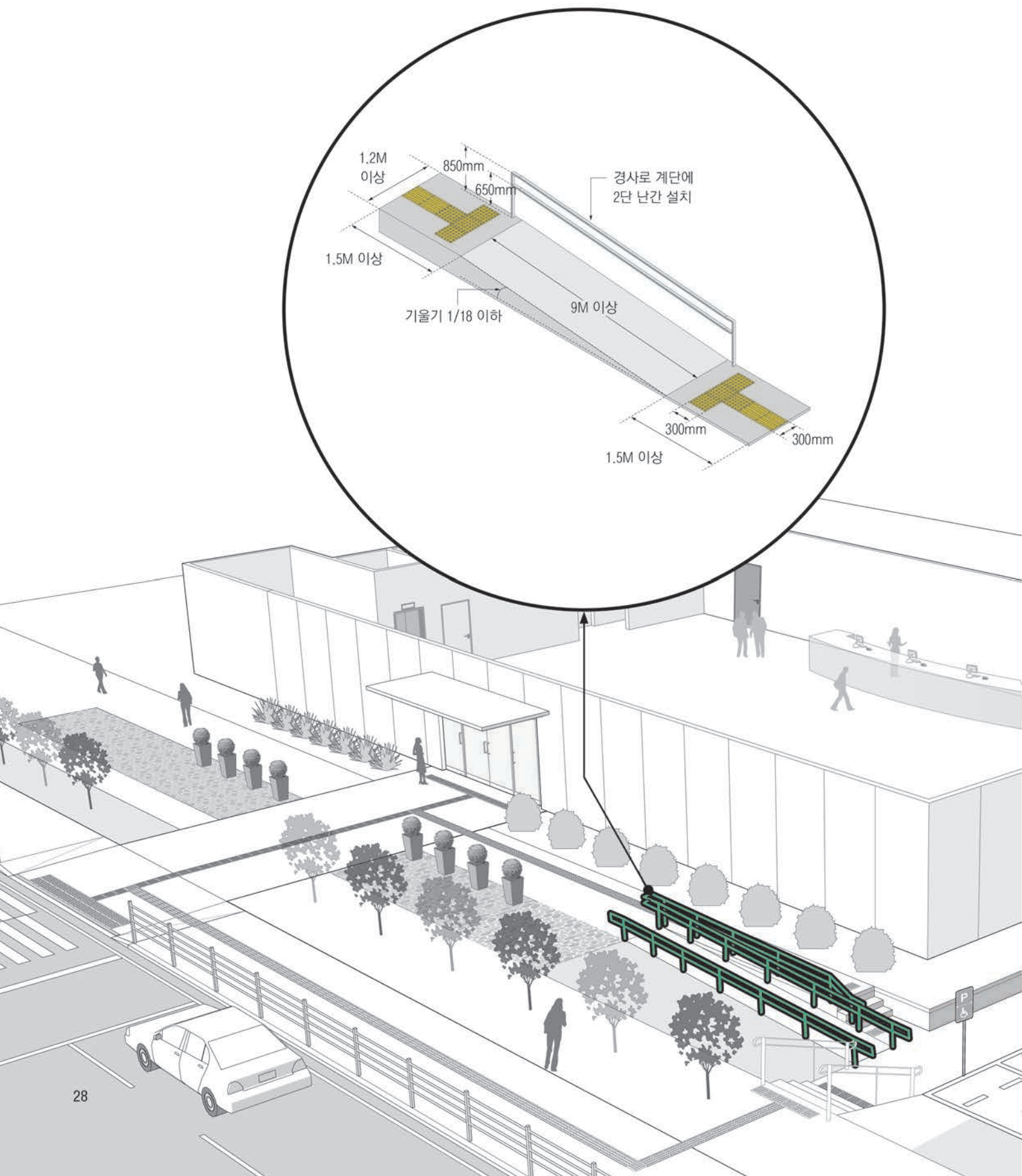
형태 및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시설물 설치 시 다양한 연령대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형태와 재료를 적용한다.			
2. 내구성 있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3. 바닥마감재는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층별 또는 영역별 재질과 색상 차이를 활용하여 공간인지성을 향상시킨다.			
2. 동선안내 정보체계 및 색채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3. 바닥재의 패턴을 단차로 오인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A5-2 공공건축물 실외공간



기본방향

개방적 공간을 지향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사회의 이용을 고려한다.

참 조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 책자〉 (2018, 행정안전부)
 〈동주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학교환경개선 컬러 컨설팅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계기준〉 (2019, 서울특별시)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 가로 안내표지 설치 및 방향과 거리를 표시한다.			
2. 공공건축물의 측면이나 후면, 주차장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보도와 공공건축물 대지 경계부분은 무단차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4.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한다.			
5. 공공건축물 전면부에 대형 주차공간을 배치하지 않는다.			
6. 보안등,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안심 공간으로 계획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공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및 안전상 이유로 담장 또는 펜스 설치시 형태와 크기는 위압적이지 않도록 한다.			
2. 펜스는 투시가 가능한 형태 및 세로살 형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건축물 대지 내 외부공간 시설물은 내구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2. 출입문에는 후방 확인이 가능한 미러시트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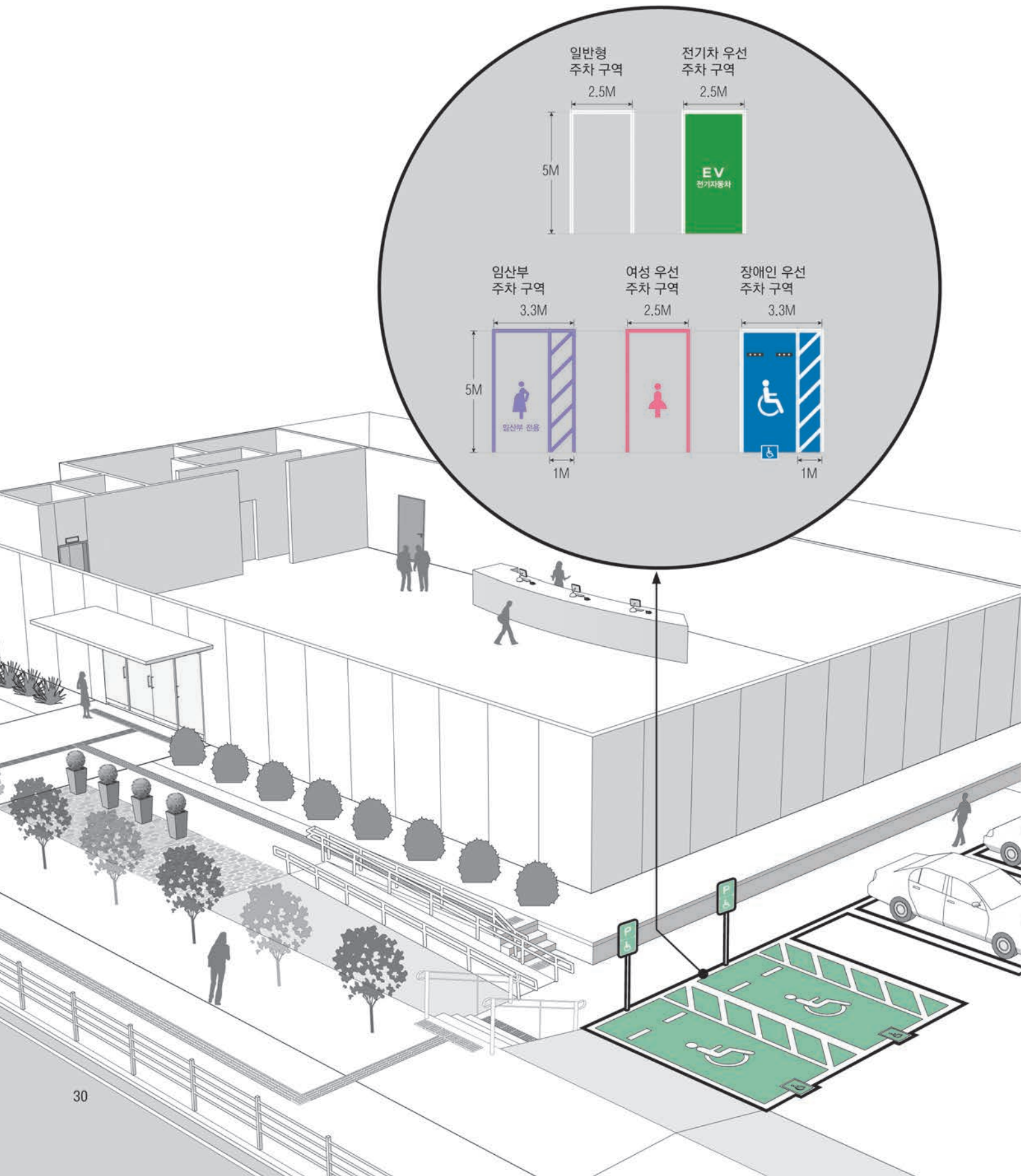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건축물은 입면, 바닥면 등의 패턴 및 색채 선정시 주변 건축물 및 인접 보행가로의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건축물과 식재간 간격은 1.5M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2. 계절감을 주는 식재계획을 권장한다.			

A5-3 옥외주차장



기본방향

안전한 주차환경 및 이동약자를 배려하고 생태 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 책자〉 (2018, 행정안전부)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계기준〉 (2019, 서울특별시)

지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급적 주차공간과 보행로의 높이 차이를 두도록 한다.			
2. 주변 건물과 보행로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배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차면 배치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보행통로를 명확히 확보하고 그늘 식재와 조명, CCTV를 설치한다.			
3. 주차장 요금정산 시설, 안내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배치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로의 재료 차별을 통한 영역 구분을 권장한다.			
2. 복사열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적 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패턴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차장이 큰 경우, 주차위치 확인을 위한 색채 및 패턴 등의 차별을 둔다.			
2. 장애인 주차, 노유자 우선주차, 여성 우선주차, 임산부 우선주차 등은 노면표지 및 색채 적용에 있어 관련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장애인 주차 : CMYK : 100/50/0/0, PANTONE : 300C, HV/C : 3.5PB 5.1/9.9 여성 우선주차 : CMYK : 0/69/16/0, PANTONE : 190C 임산부 우선주차 : CMYK : 0/45/52/0, PANTONE : 96-12U			

식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그늘이 충분한 수종을 이용해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2. 주차공간 주변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목을 지양하고 지하고 2.3M 이상의 교목을 식재한다.			

Part B

Public Facilities Check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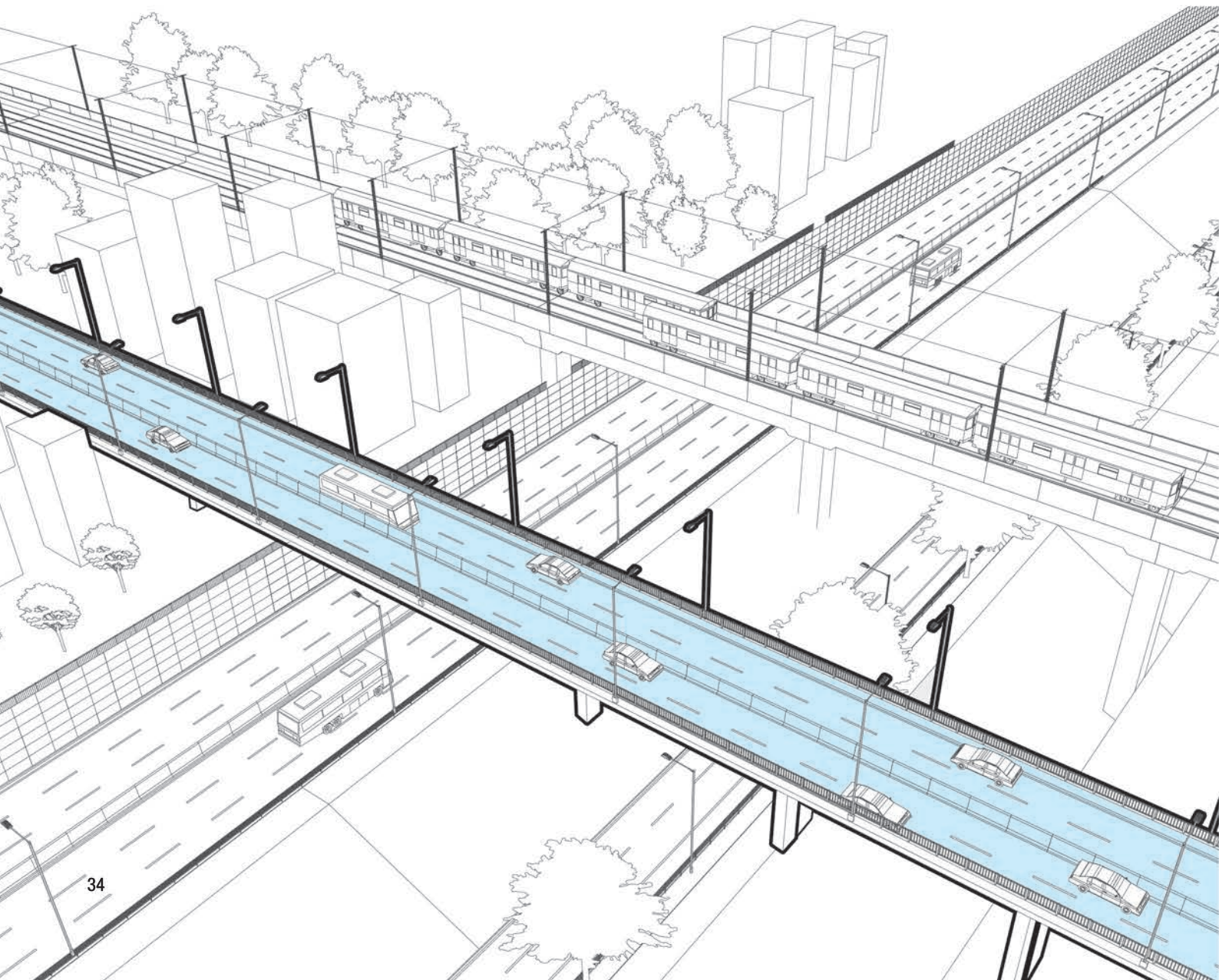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Part B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B1	도로시설	01 도로(부속) 시설물	B1-1 교량(철교 포함) 심의대상	34
			B1-2 고가차도(철도위 포함) 심의대상	36
			B1-3 입체교차 심의대상	38
			B1-4 도로변 석축 및 옹벽 심의대상	40
			B1-5 방음벽 심의대상	42
			B1-6 방호울타리 심의대상	44
			B1-7 중앙분리대 심의대상	46
			B1-8 낙석방지망 심의대상	48
			B1-9 육교 심의대상	50
			B1-10 가로등 심의대상	52
			B1-11 맨홀 심의대상	54
			B1-12 트렌치 심의대상	56
			B1-13 제설시설 심의대상	58
B2	도로시설	02 교통관련 시설물	B2-1 대중교통 승차대 심의대상	60
			B2-2 자전거 보관대 심의대상	62
			B2-3 횡단보도 헬터 심의대상	64
			B2-4 신호등(주) 심의대상	66
B3	도로시설	03 보행안전 시설물	B3-1 보도블록 심의대상	68
			B3-2 점자블록 심의대상	70
			B3-3 볼라드 심의대상	72
			B3-4 보호펜스 심의대상	74
B4	도로시설	04 관리 시설물	B4-1 지상변압기	76
			B4-2 교통신호제어기	78
			B4-3 전기차 충전소	80
B5	도로시설	05 도시철도 시설물	B5-1 지하철출입구, 캐노피 심의대상	82
			B5-2 지하철 환기구 심의대상	84
			B5-3 지상노출엘리베이터 심의대상	86
B6	하천시설	06 하천 시설물	B6-1 육갑문 심의대상	88
			B6-2 하천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심의대상	90
B7	지원시설	01 이동형 부스	B7-1 관광안내소(부스형) 심의대상	92
			B7-2 공중전화부스 심의대상	94
			B7-3 가로판매대 심의대상	96
B8		02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B8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심의대상	98
03 휴게 시설물			B9-1 벤치 심의대상	100
		B9-2 그늘막(파고라)	102	
B10		04 조명 · 보안 시설물	B10-1 보안등	104
			B10-2 공원등	106
			B10-3 CCTV(CCTV지주) 심의대상	108
B11		05 위생 시설물	B11-1 휴지통 심의대상	110
			B11-2 공중화장실 심의대상	112
			B11-3 음수대	114
B12	녹지·수경시설	01 녹지 시설물	B12-1 가로수 화분대 심의대상	116
			B12-2 가로수 보호덮개 심의대상	118
B13		02 수경 시설물	B13-1 분수대, 벽천 심의대상	120

B1-1 교량(철교 포함)

심의대상



기본방향

연결되는 가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며 기능적인 구조미와 부드러운 환경색채를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경관설계안내서〉 (2012, 국토해양부)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교량 부속시설물의 설치 시 접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하여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경관과 조화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2.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교량들의 이미지는 상호 연속성을 고려한다.

3. 교량 및 교량 부속시설물의 상징성 연출 요소 외 장식 설치를 지양한다.

4. 교량 교명주는 미설치 또는 최소 형태 및 크기로 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2. 교량 연결접속부 축대 등에는 측면 문양거무집 사용을 금지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교량의 부속시설물은 반사도를 낮추고 후퇴색을 사용한다.

2. 교량 대형구조에 주목도가 높은 고채도 녹색, 청색사용을 지양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수목적 이외 도색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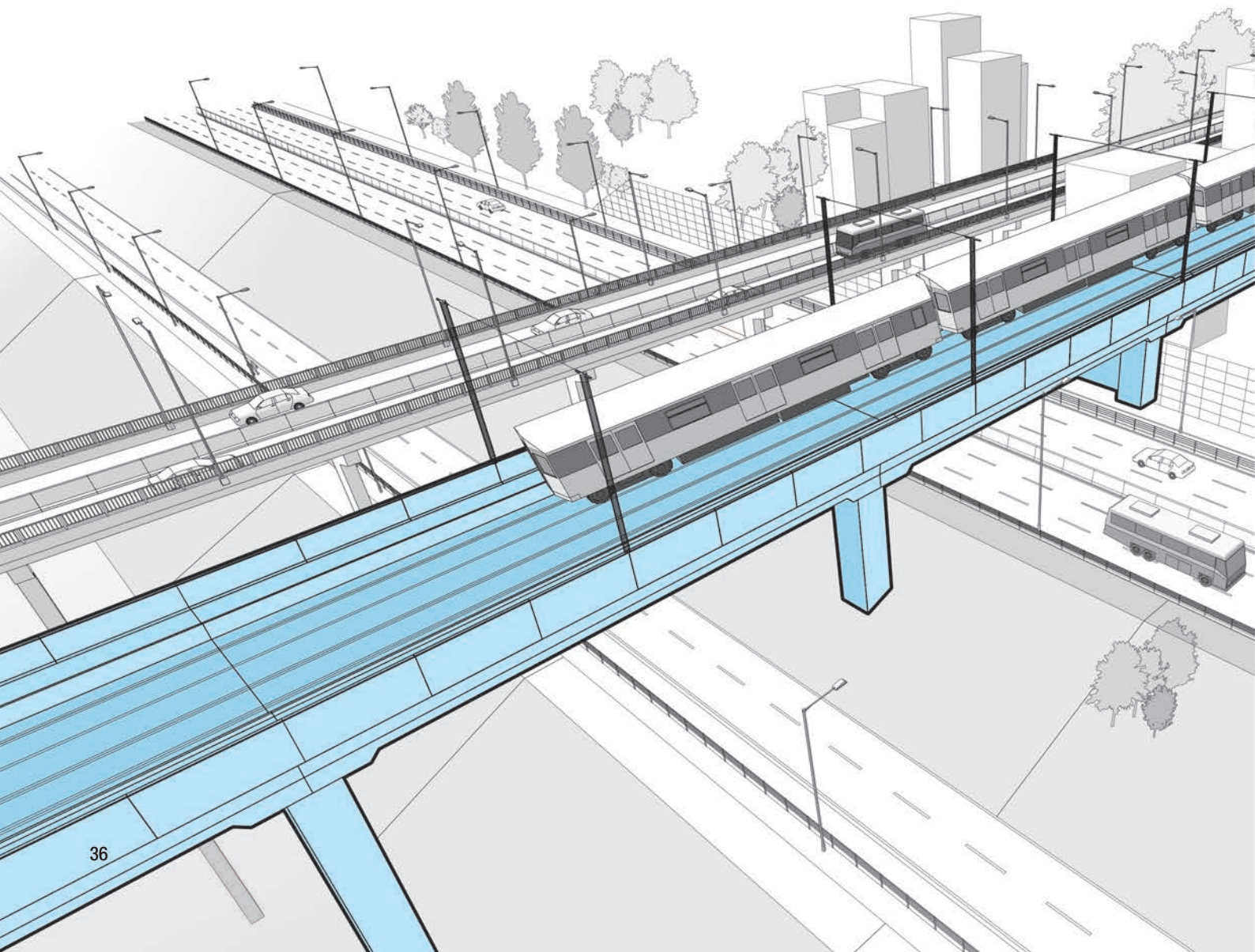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 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과 형태, 색채, 재료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B1-2 고가차도(철도위 포함)

심의대상



기본방향

연결되는 가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며 기능적인 구조미를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가차도 부속시설물의 설치 시 접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하여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도로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고가차도의 이미지는 연속성을 고려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향하고, 주변 환경색채와 조화롭게 한다.

그래픽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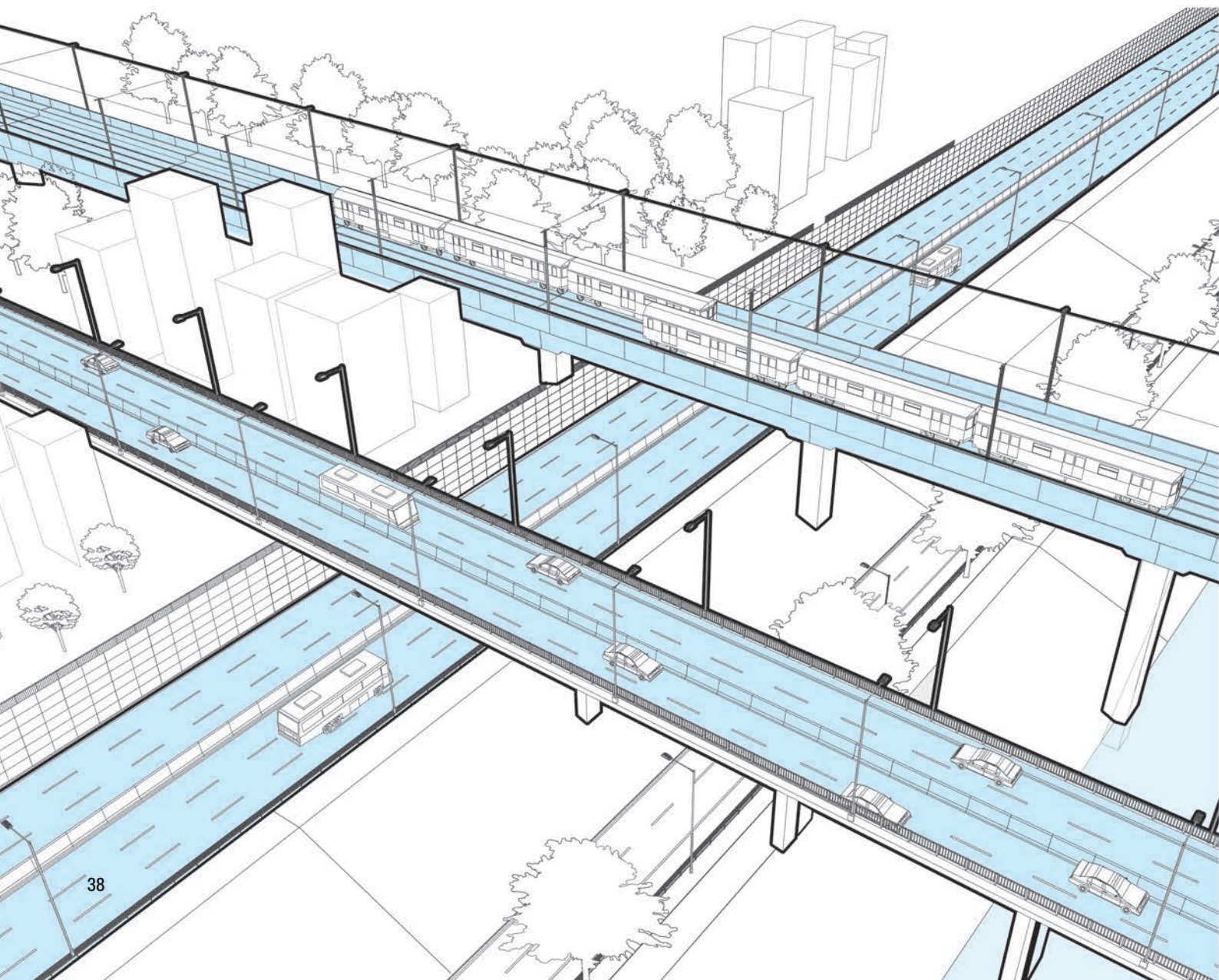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상업광고 부착은 금지한다.

2. 슈퍼그래픽의 사용을 지양한다.

B1-3 입체교차

심의대상



기본방향

연결되는 가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며 기능적인 구조미를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15, 국토교통부)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입체교차로의 시설물은 연속되는 가로시설물과 연속되는 형태로 한다.			
2. 입체교차로는 장식적 형태보다는 기능에 충실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부속시설물의 재료는 광택을 금지하고, 무광택 또는 반광택 재료로 한다.			
2. 입체교차로 부속시설물의 색채는 접속되는 도로의 시설물들과 색채가 연결되도록 한다.			
3. 입체교차로 및 입체교차로 부속시설물은 원색,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그래픽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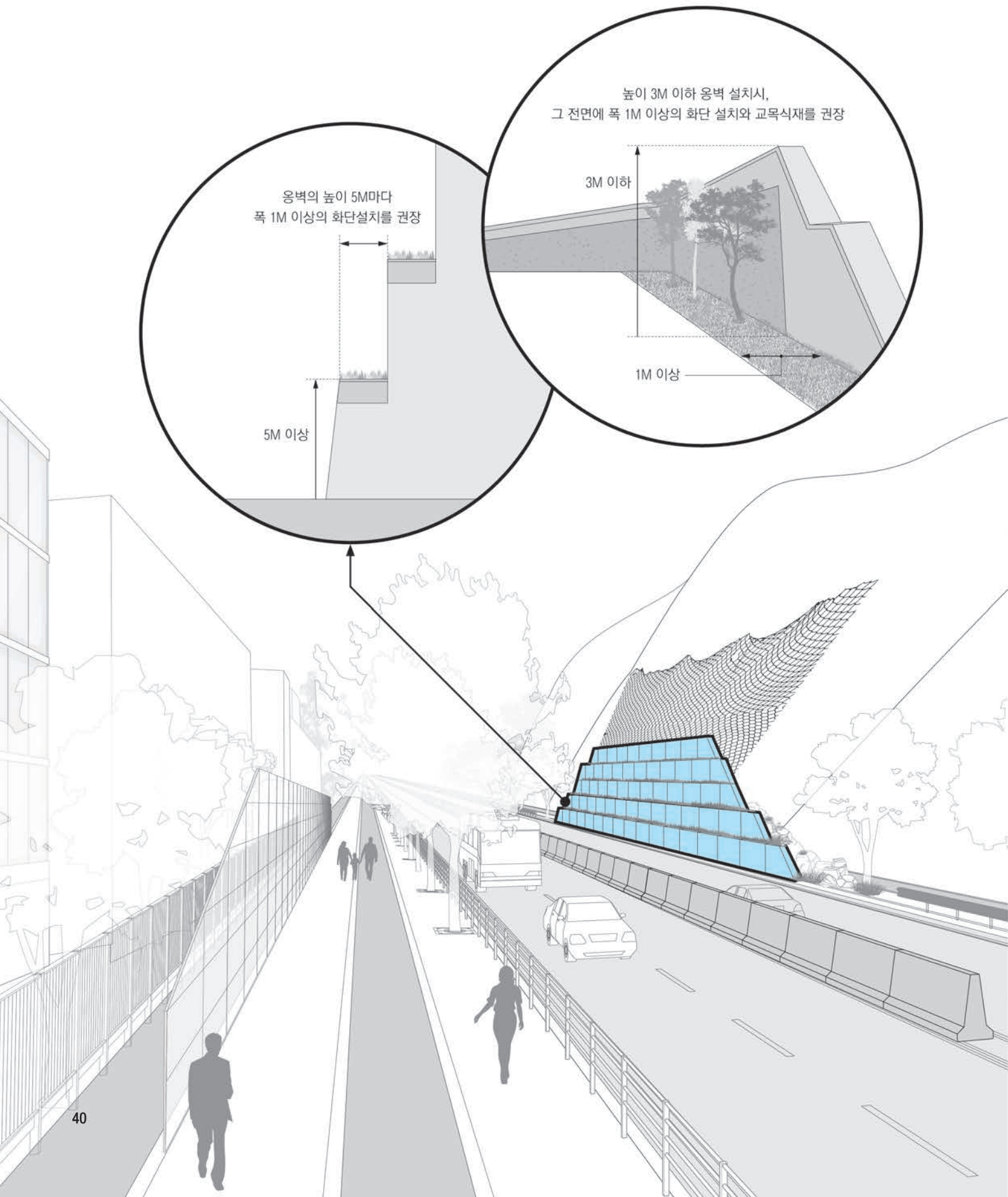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입체교차로의 교각, 거더에 슈퍼그래픽, 장식용 조형을 지양한다.			
2.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자 시야에 동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지양한다.			
3. 광고물의 부착은 금지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입체교차로 주변공간은 생태적 공간계획을 권장한다.			

B1-4 도로변 석축 및 옹벽

심의대상



기본방향

인공성을 감소하고 경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옹벽의 높이는 사면의 안전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			
2. 옹벽의 높이 5M마다 폭 1M이상의 화단설치를 권장한다.			
3. 높이 3M 이하 옹벽 설치시, 그 전면에 폭 1M 이상의 화단 설치와 교목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옹벽의 설치물 또는 구조가 반복적 패턴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처리를 권장한다.			
2. 옹벽 시점부부터 종점부까지 재료의 연속성이 있도록 디자인한다.			

그래픽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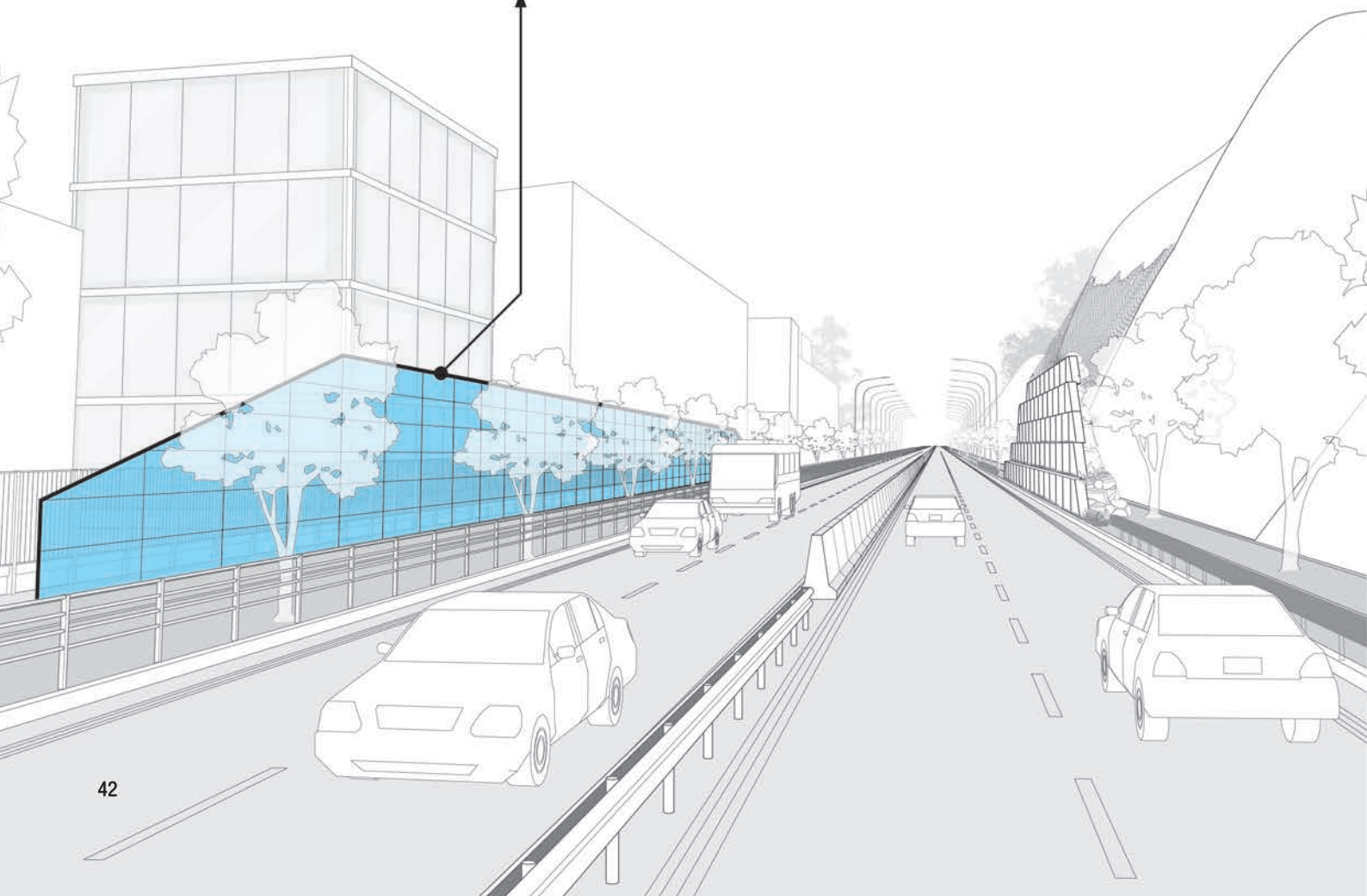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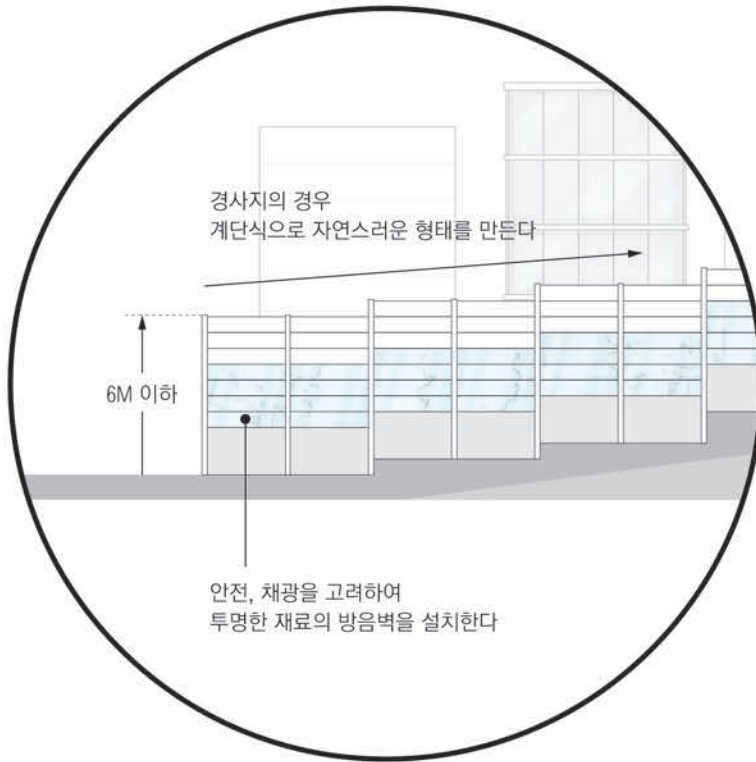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벽화 및 슈퍼그래픽은 지양한다.			
2. 상업용 광고물의 설치 또는 부착은 금지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특수한 옹벽 활용은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한다.			

B1-5 방음벽

심의대상



기본방향

최대 6M높이 이하로 개방감 있는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옹벽 및 방음벽 Reference Book〉 (2008,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는 지양한다.			
2. 가로에 면한 학교, 공동주택은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최대한 이격하고 방음림을 함께 식재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방음벽의 높이는 바닥기단 500mm를 포함, 반드시 6M 이하로 한다.			
2. 수직벽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 방음통 등을 상부에 설치하지 않는다.			
3. 경사지의 경우 계단식으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든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전, 채광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의 방음벽을 설치한다.			
2. 투명 방음판은 폴리카보네이트를 금지하고 반드시 강화유리로 설치한다.			

그래픽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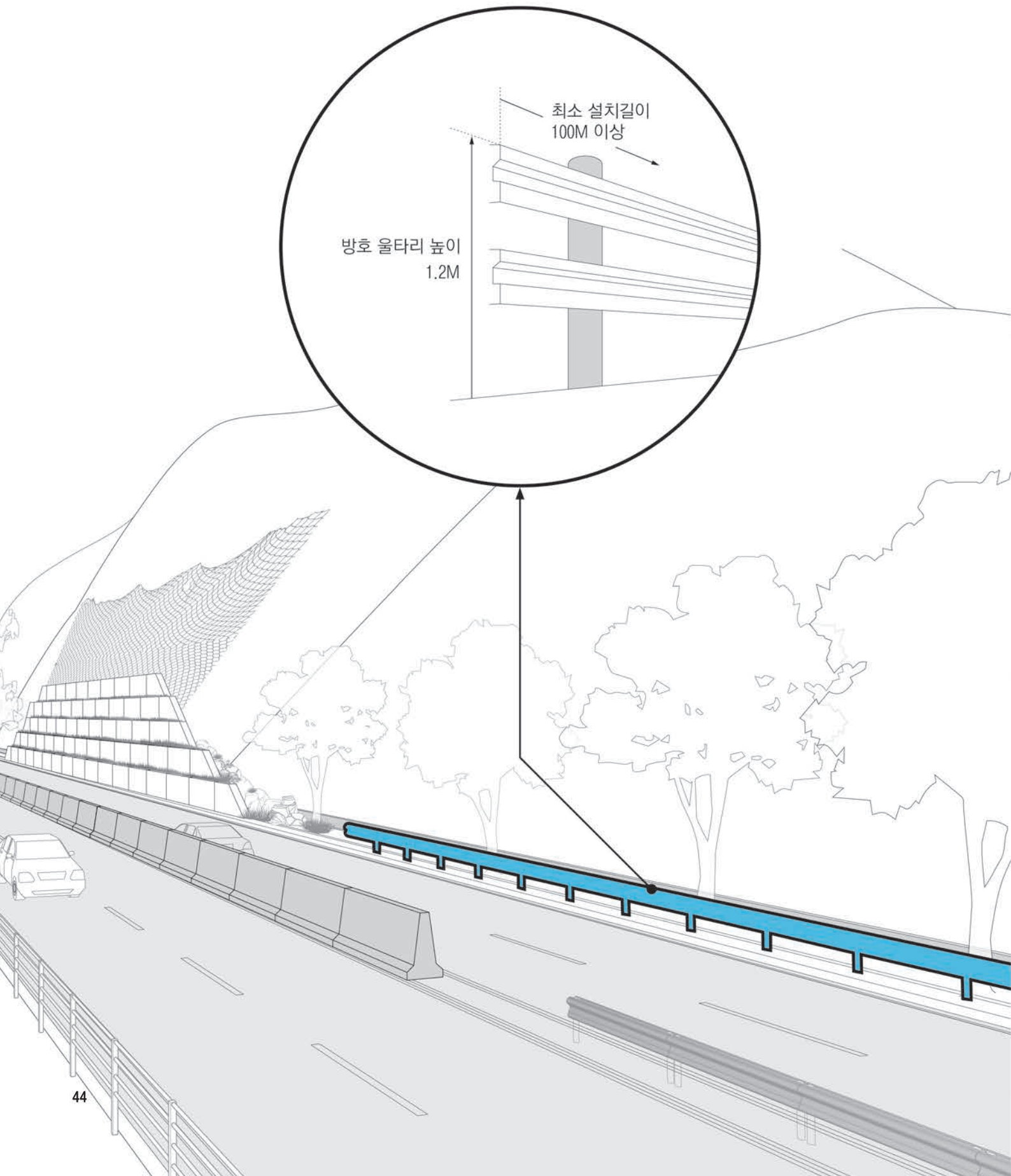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장식과 패턴은 지양한다.			
2. 포인트 색채 적용시 수직, 수평 중 한 방향으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3. 조류 충돌방지 그래픽은 단색 또는 단색에 투명도를 주어 적용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방음벽과 가로등, 비상 안내표지판을 결합한 통합 시설물 계획을 권장한다.			

B1-6 방호울타리

심의대상



기본방향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기능을 우선하되, 세부 체결마감이 보이지 않는 구조미를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21, 국토교통부)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중앙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연속하여 설치한다.			
2. 최소 설치길이는 원칙적으로 100M로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방호 울타리의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2. 동일한 단위구간 내에서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형태를 설치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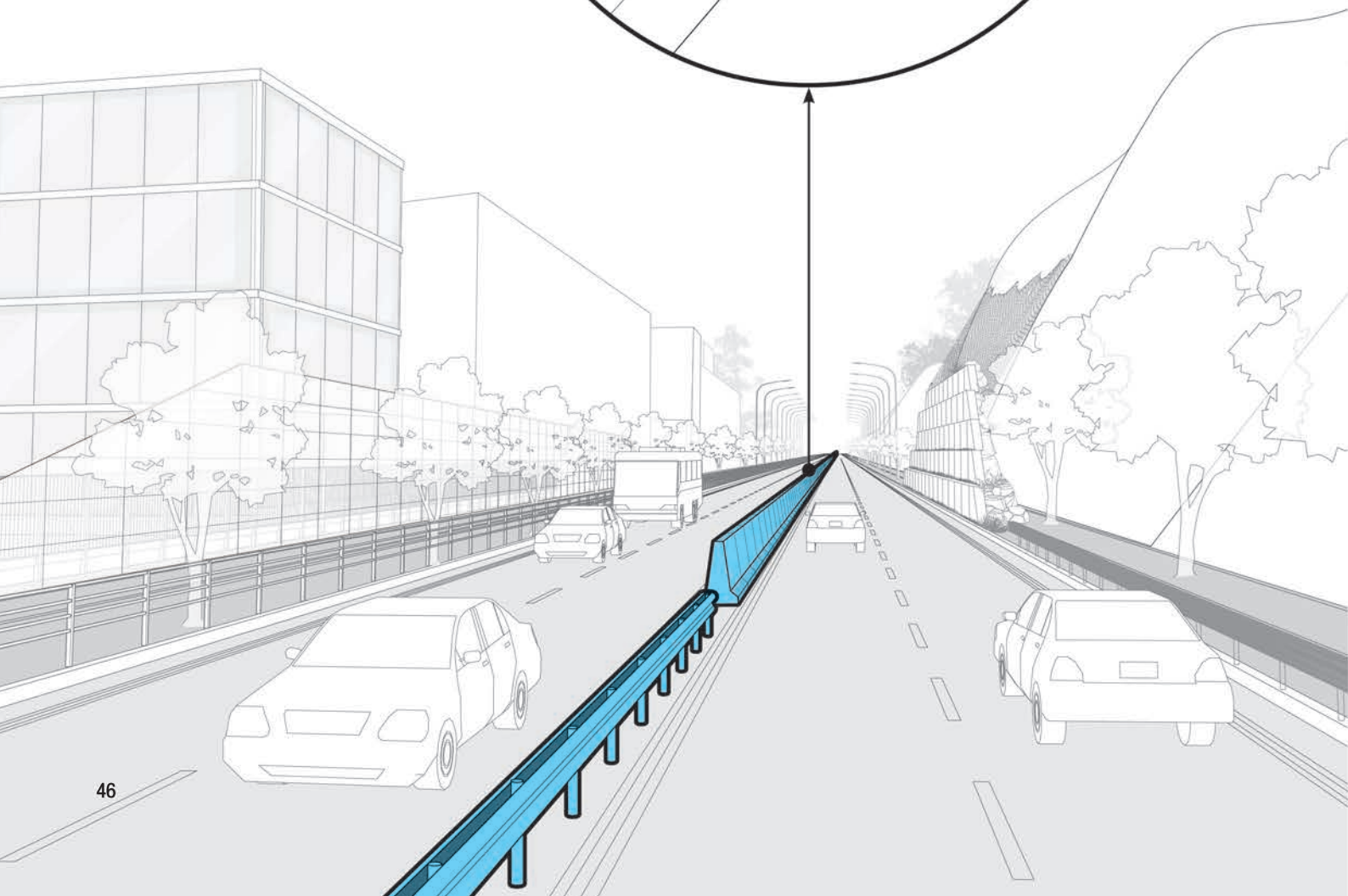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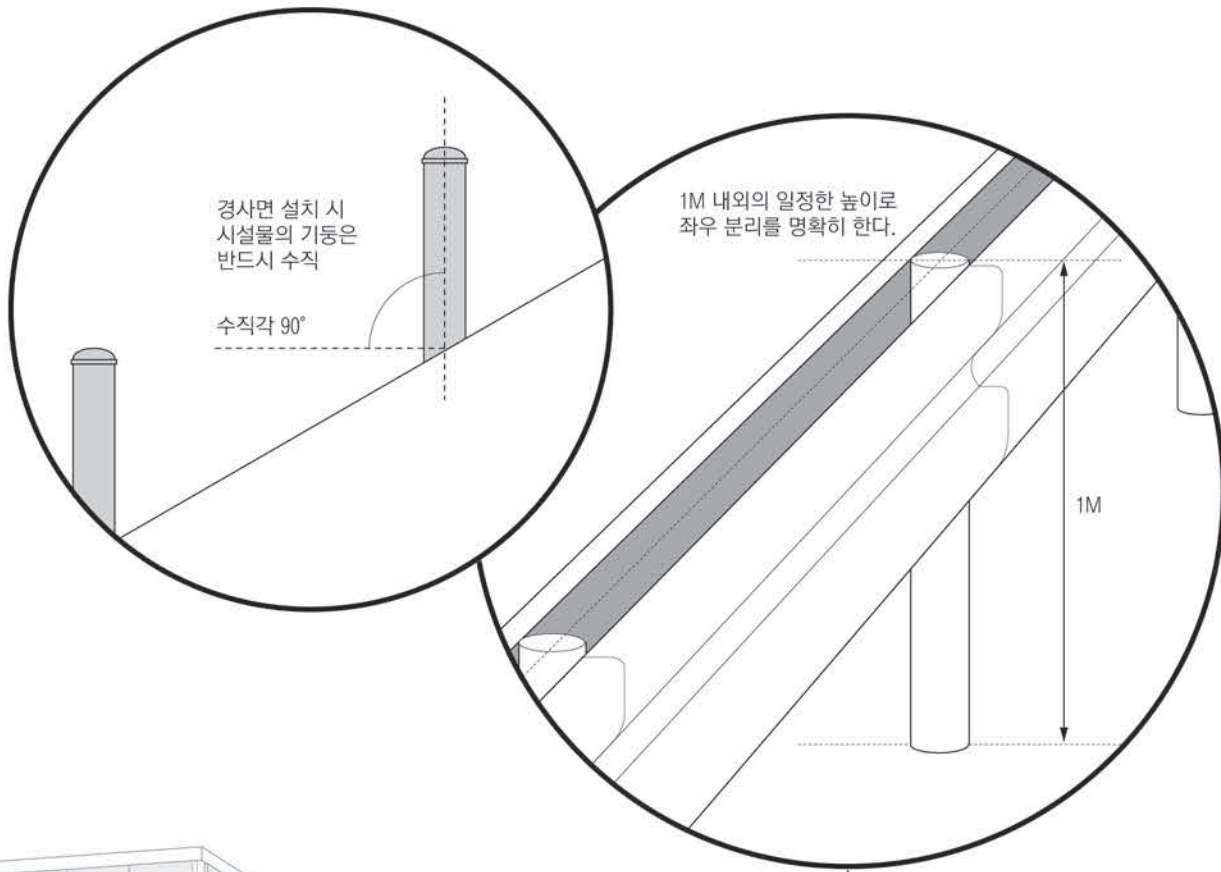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방호 울타리의 색채는 주행 중 주목되지 않도록 무채색을 권장한다.			
2. 기능적으로 안전유도를 위한 목적 이외 원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방호울타리 주변 녹지확보를 통해 자연적 경관을 형성한다.			

B1-7 중앙분리대

심의대상



기본방향

차도분리의 기능수행을 우선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21, 국토교통부)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왕복 6차선 이내의 구간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한다.			
2. 경사면 설치 시 시설물의 기둥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1M 내외의 일정한 높이로 좌우 분리를 명확히 한다.			
2.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높이를 확보한다.			
3.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로 막대의 처짐이 없는 재료로 내부 단면구조를 디자인한다.			
2.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3. 도로 사용여건을 고려해 내부식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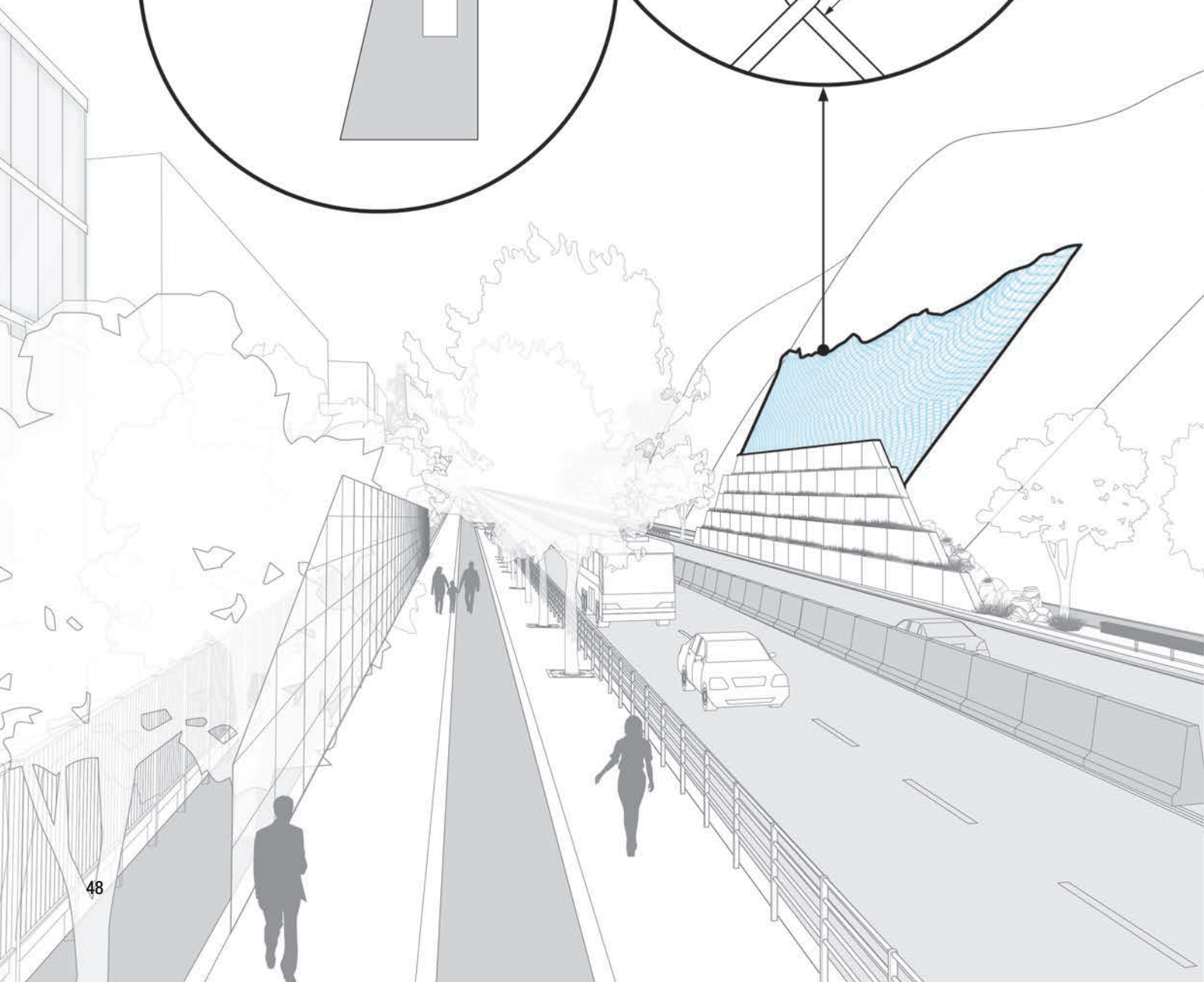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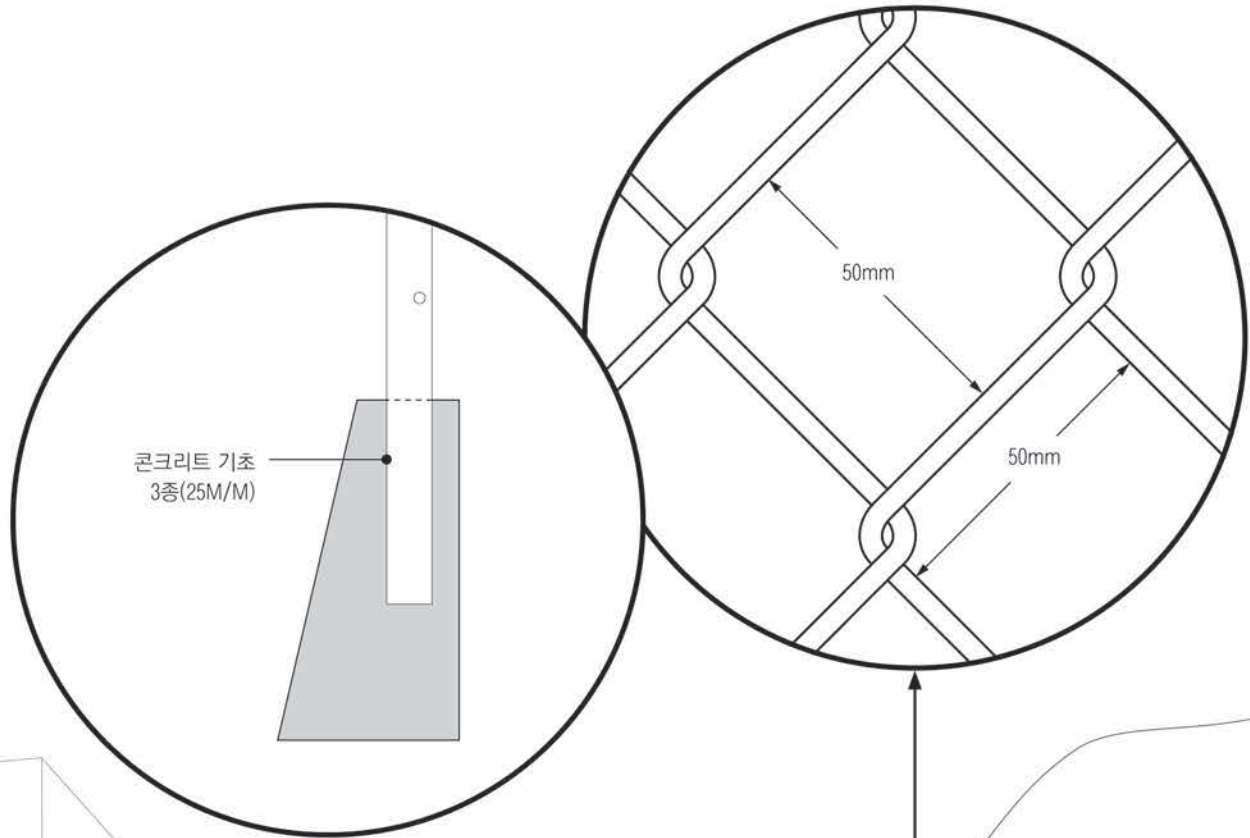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운전자에게 혼란과 복잡성을 인지시키는 원색, 다색사용을 금지한다.			
2. 반사시트는 차량속도를 고려하여 간격을 10M이상으로 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시 또는 구의 상징요소(시목, 시화, 시조) 및 캐릭터 등을 형상화하거나 실사 이미지, 부가 장식물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2. 반사시트는 차량속도를 고려하여 간격을 10M이상으로 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는 중앙녹지대 등의 적극적 구분 방법을 적용한다.			

B1-8 낙석방지망

심의대상



기본방향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질감이 적은 디자인을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낙석방지시설편〉 (2008,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낙석방지망 구간은 최소화한다.			
2. 낙석방지망 내부에 배수시설을 도입해 부식을 예방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낙석방지망의 망은 50x50mm이상의 마름모꼴 형태를 사용한다.			
2. 낙석방지망 하부 지지용 기초에 문양거푸집은 사용하지 않는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낙석방지망의 하부를 지지하기 위한 기초는 콘크리트 옹벽을 혼용할 수 있다.			
2. 낙석방지망은 낙석 평균 충격에너지 90kj를 견딜 수 있는 재료로 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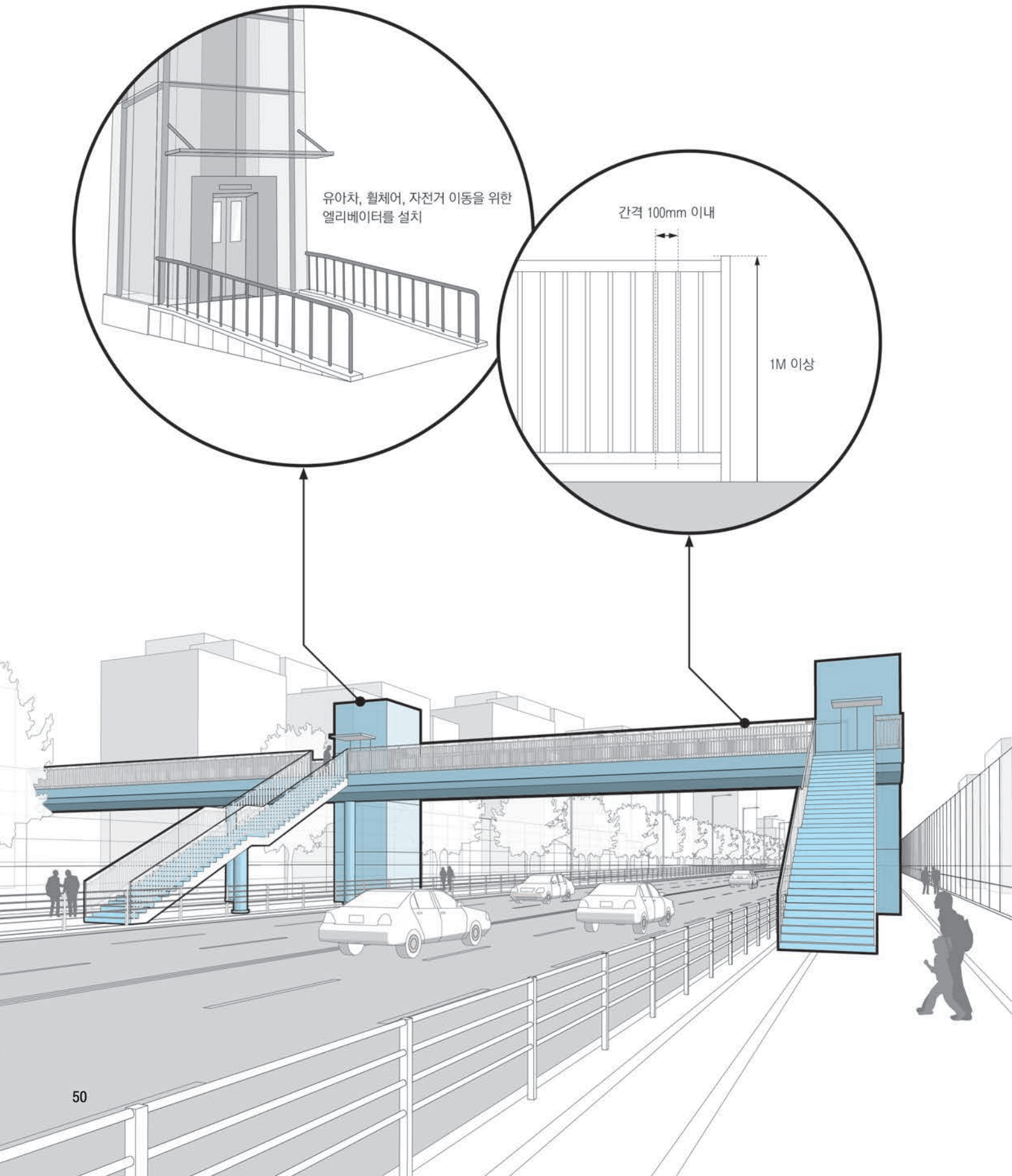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낙석방지망의 색채는 눈에 띄지 않도록 후퇴색을 적용한다.			
2. 자연색채를 위해 녹색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어두운 저채도로 처리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낙석방지시설과 함께 법면 녹화 등 자연성 증진을 권장한다.			

B1-9 육교

심의대상



기본방향

안전성 및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을 고려하고 장식요소는 최소화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15, 국토교통부)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유아차, 휠체어, 자전거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2. 육교 하단부 및 구조물에 보행자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에 별도의 긴 경사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간결한 구조와 가벼운 형태미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한다.			
2. 육교위 차양막 설치 또는 터널형 구조물 설치 금지한다.			
3. 육교 지지기둥 및 거더부는 접합부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4. 배수홈통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5. 난간의 높이는 1M이상으로 하고 간격 100mm 이내 세로살로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광택 재료는 금지하고 금속 재질 노출시 반드시 헤어라인 처리한다.			
2. 계단과 상판 보행부는 미끄럼 방지 마감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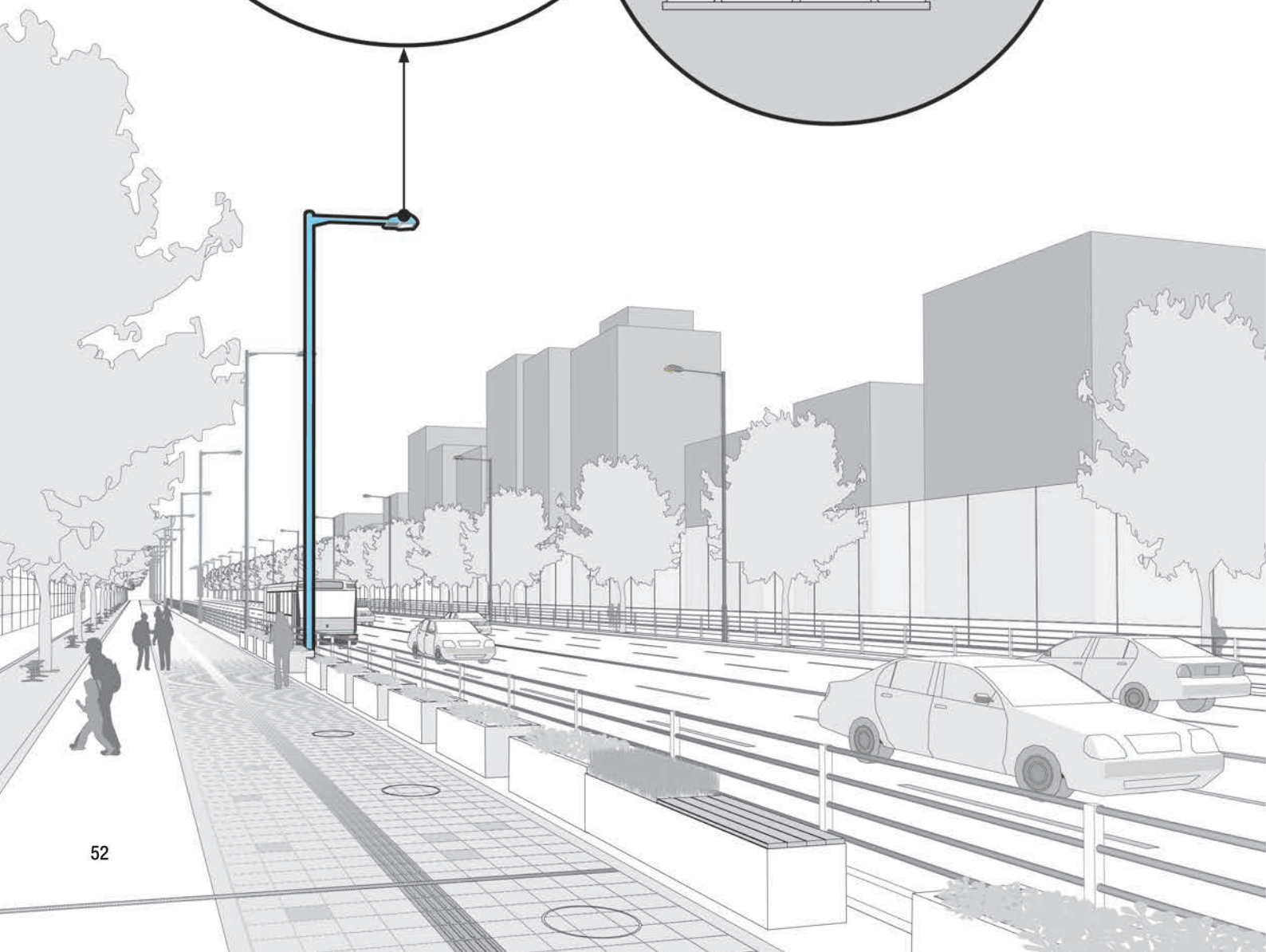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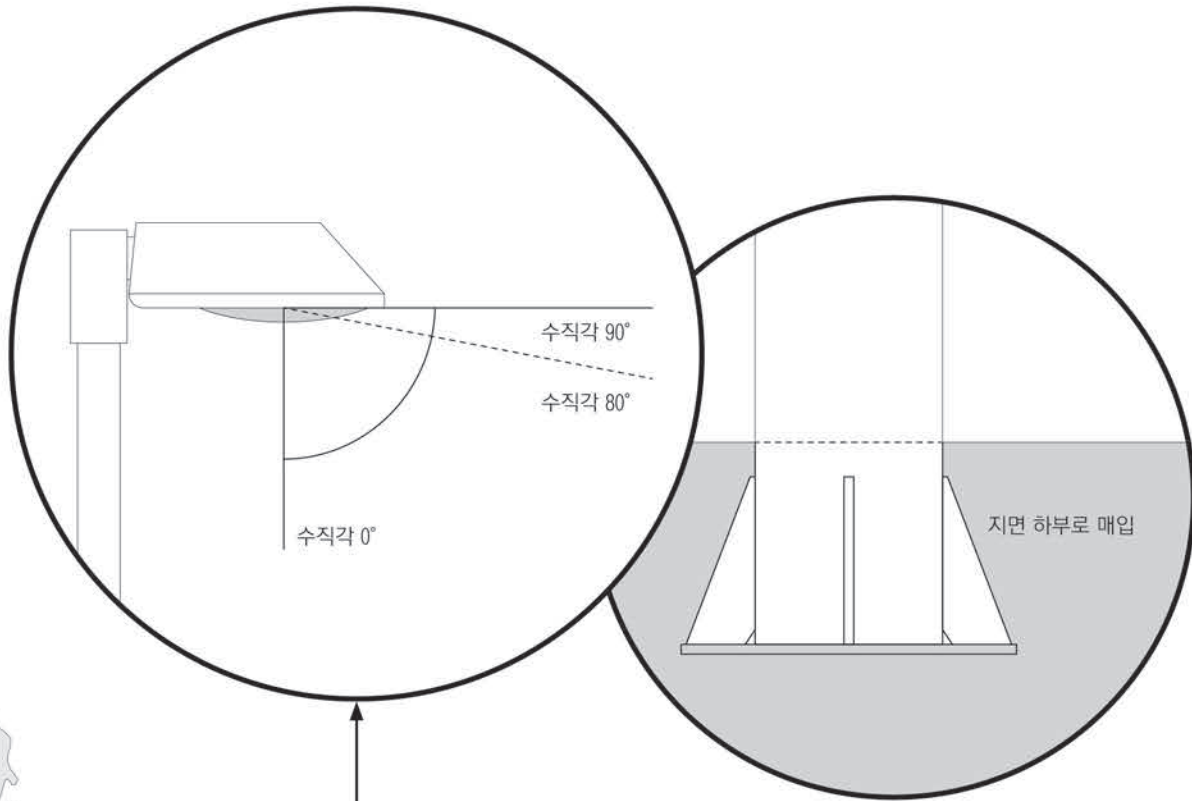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도시경관에서 배경이 되도록 저채도 색채를 적용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패턴 또는 특정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은 금지한다.			
2. 장식적 요소는 금지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조명시설은 바닥형이나 펜스일체형 조명을 권장한다.			

B1-10 가로등

심의대상



기본방향

기능중심의 간결한 형태와 연속적 설치를 고려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제2편 조명시설편〉 (2021, 국토교통부)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가로등〉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기초 결합부는 반드시 지면 하부로 매입하여야 한다.			
2. 가로등 기둥에 부착하는 안내표지는 2개 이내로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로등 지주는 2단, 3단 구조를 지양하고, 상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원기둥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2. 가로등 조명기구 케이스와 암대, 지주는 통합 디자인한다.			
3. 국기꽃이는 지주에 매립형으로 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강변도로 등 하늘이 주배경이 되는 곳, 내부식이 중요한 곳에서는 도색없이 아연도강판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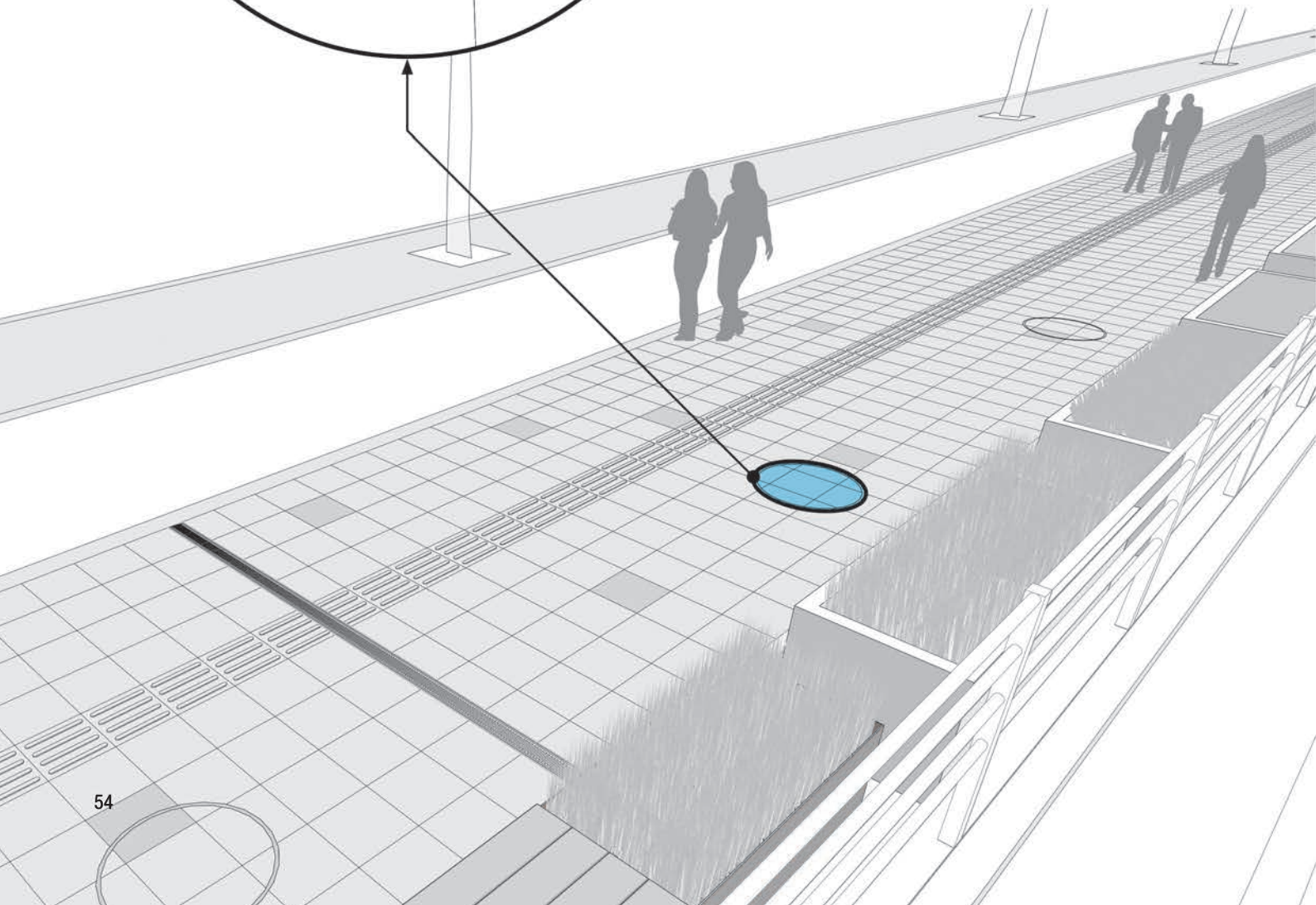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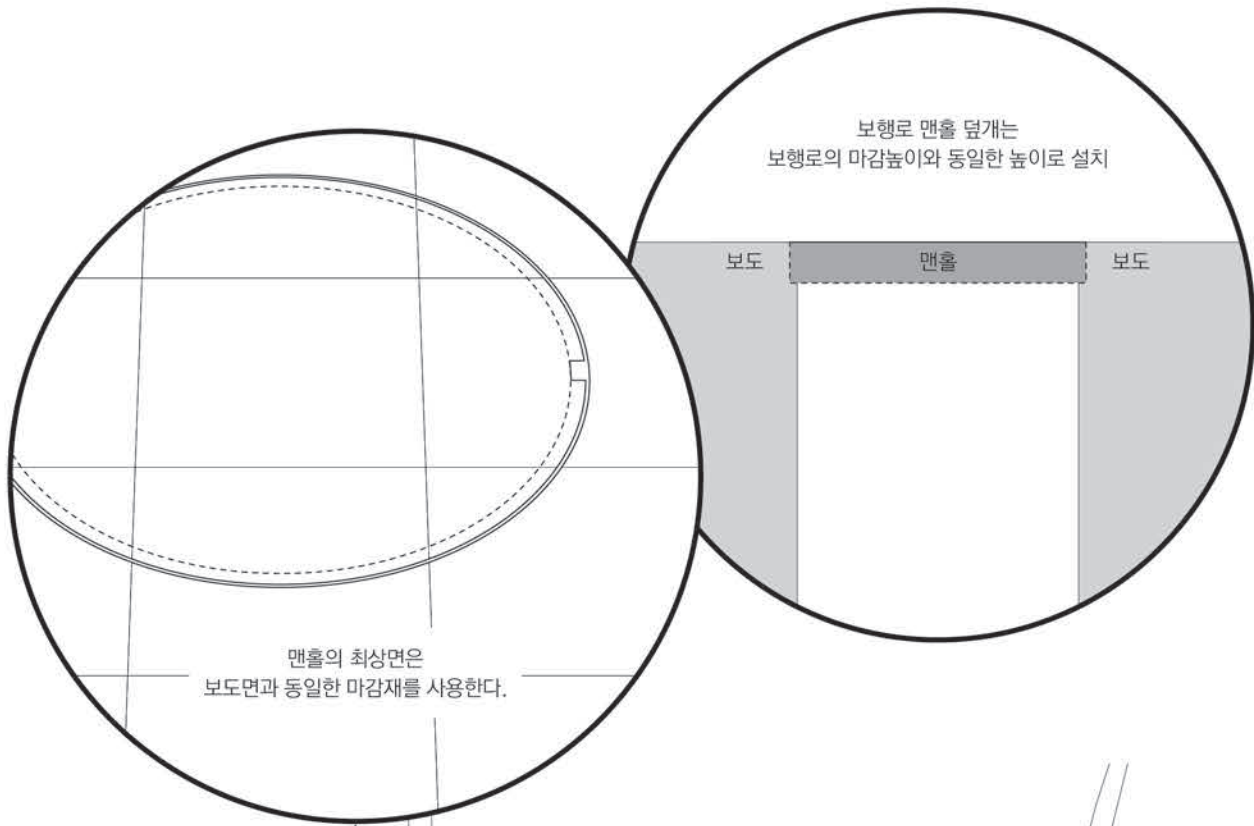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도시의 배경이 되도록 저채도 저명도 색채를 원칙으로 한다.			
2. 강변도로 등 하늘이 주배경이 되는 곳에서는 아연도강판 재료색을 노출할 수 있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장식, 시 또는 구의 지자체 로고, 관리번호 등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다.			
2.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보호대보다는 부착방지 특수도로 도포를 권장한다.			
3. 가로등 등기구는 반드시 컷오프 기능을 포함한다.			

B1-11 맨홀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공간에서 맨홀의 상부면이 보도포장과 일체화되도록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1.0〉 (2013, 서울특별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맨홀〉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로 맨홀 덮개는 보행로의 마감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2. 차도용 맨홀 덮개는 도로와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한다.			
3. 맨홀 영역의 파손 보수 시 맨홀의 1.5배 면적 기준 정사각 형태로 콘크리트로 채움 마감하여 평탄하게 처리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맨홀의 최상면은 보도면과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2. 덮개의 개폐 손잡이는 간결한 형태 및 보행면과 동일한 높이로 디자인한다.			
3. 맨홀 프레임은 최대한 얇게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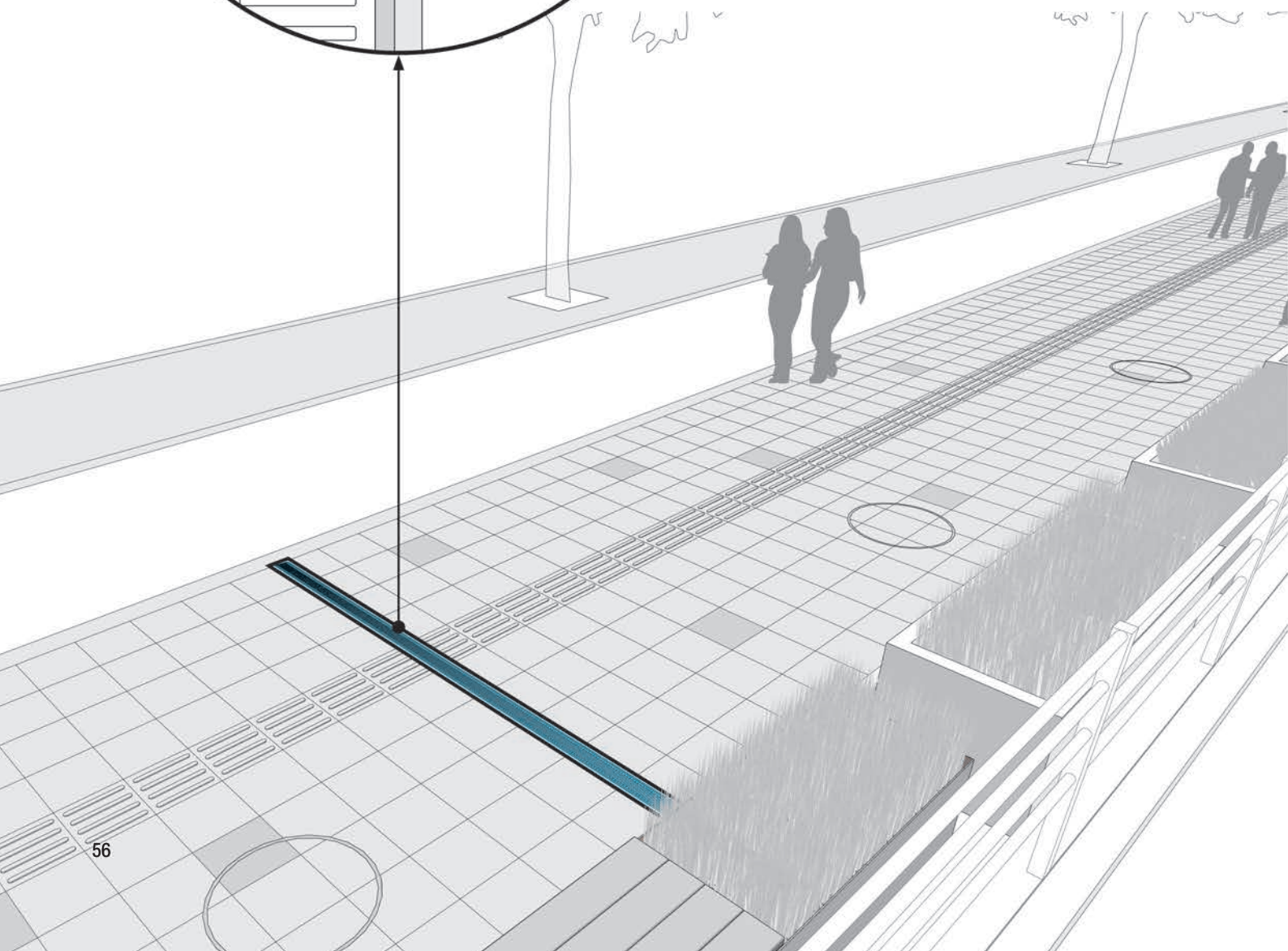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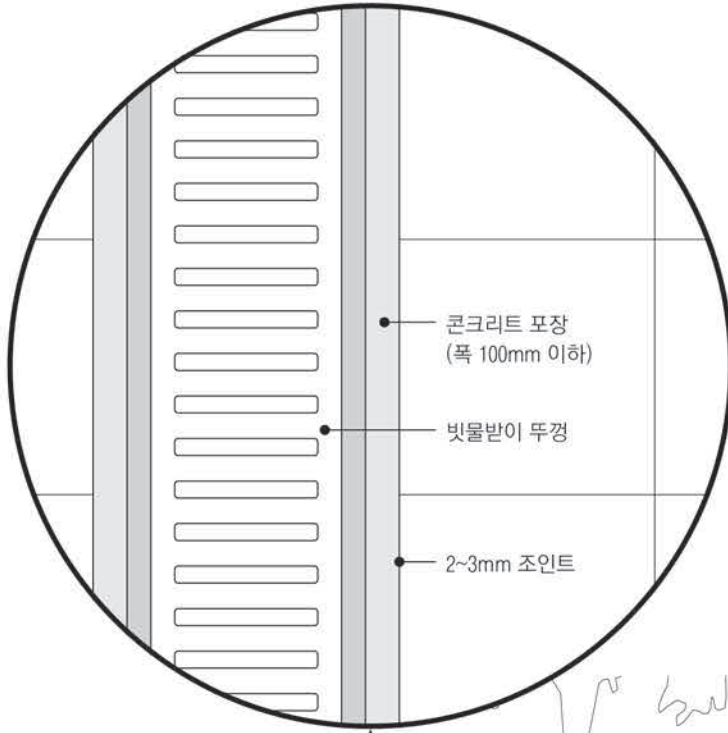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도용 맨홀은 내구성이 강한 주철을 사용한다.			
2. 보도용 맨홀은 구조체는 주철을 사용하고 덮개상부는 보도와 동일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우수, 오수, 전기 등 설치 목적 표기 이외 문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 표기한다.			
2. 캐릭터, 장식 그래픽 등은 금지한다.			

B1-12 트렌치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자와 유아차, 휠체어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촘촘한 간격을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2013,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자 신발굽 및 유아차, 휠체어 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2. 트렌치의 설치 위치는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 경계에 설치한다.			
3. 트렌치의 설치 위치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각형의 격자형 구조보다는 촘촘한 트러스 형태를 권장한다.			
2. 장식적 문양이나 패턴의 사용은 금지한다.			
3. 배수로, 가로등 지주, 보행자용 펜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트렌치 블록 형태의 통합디자인을 권장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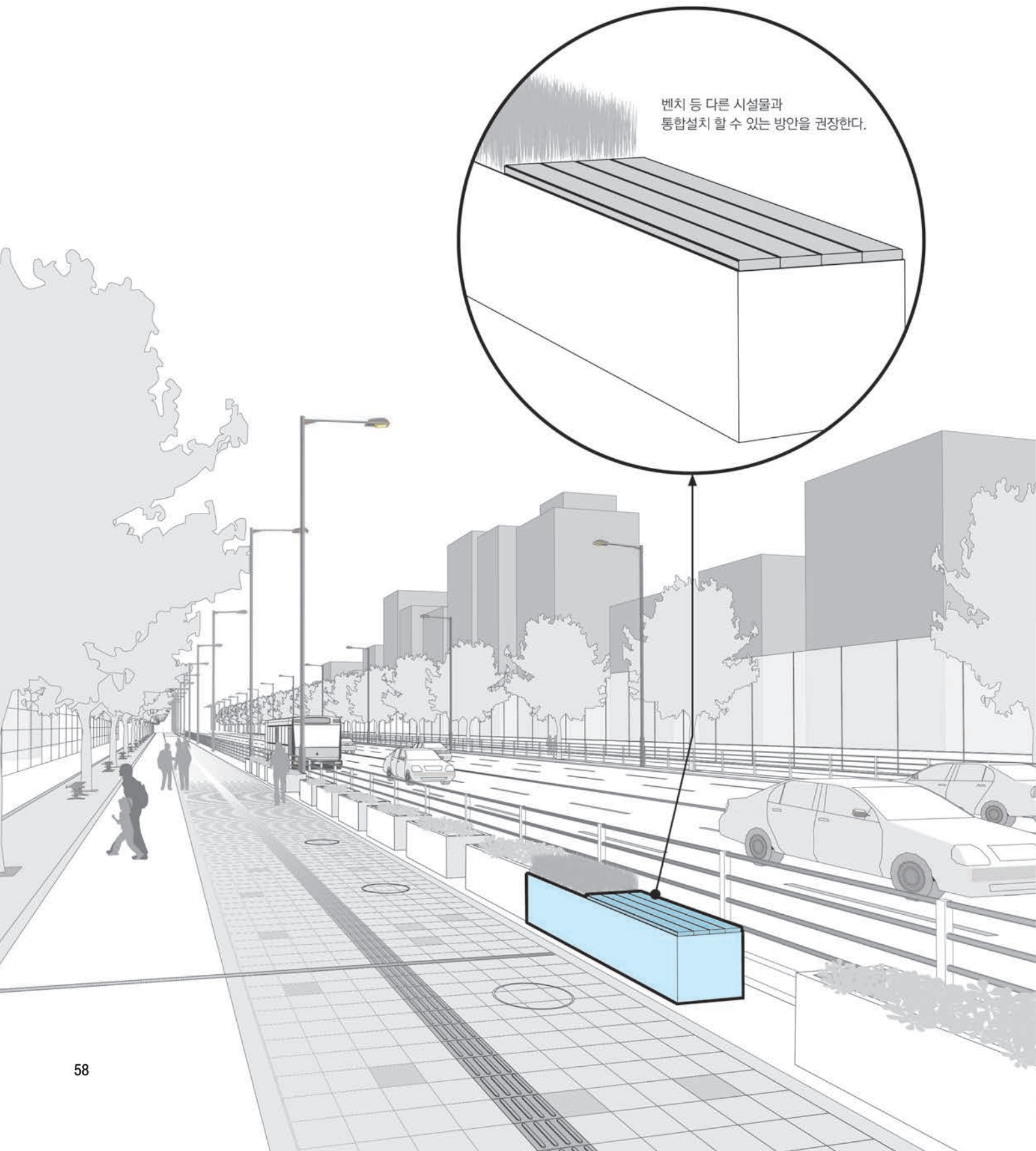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강철, 주철, 철근콘크리트 등 내구성 및 내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2.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재료 자체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2. 표면의 색채 분체도장 처리는 지양한다.			

B1-13 제설시설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관시설로 부각되지 않는 형태로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교통량 집중구역, 경사지로 겨울철 제설시 사고 잦은 곳 등에 설치한다.			
2.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한 칸 등에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2. 가급적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3. 상부에 쓰레기 적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덮개 디자인 형태를 고려한다.			
4. 벤치 등 다른 시설물과 통합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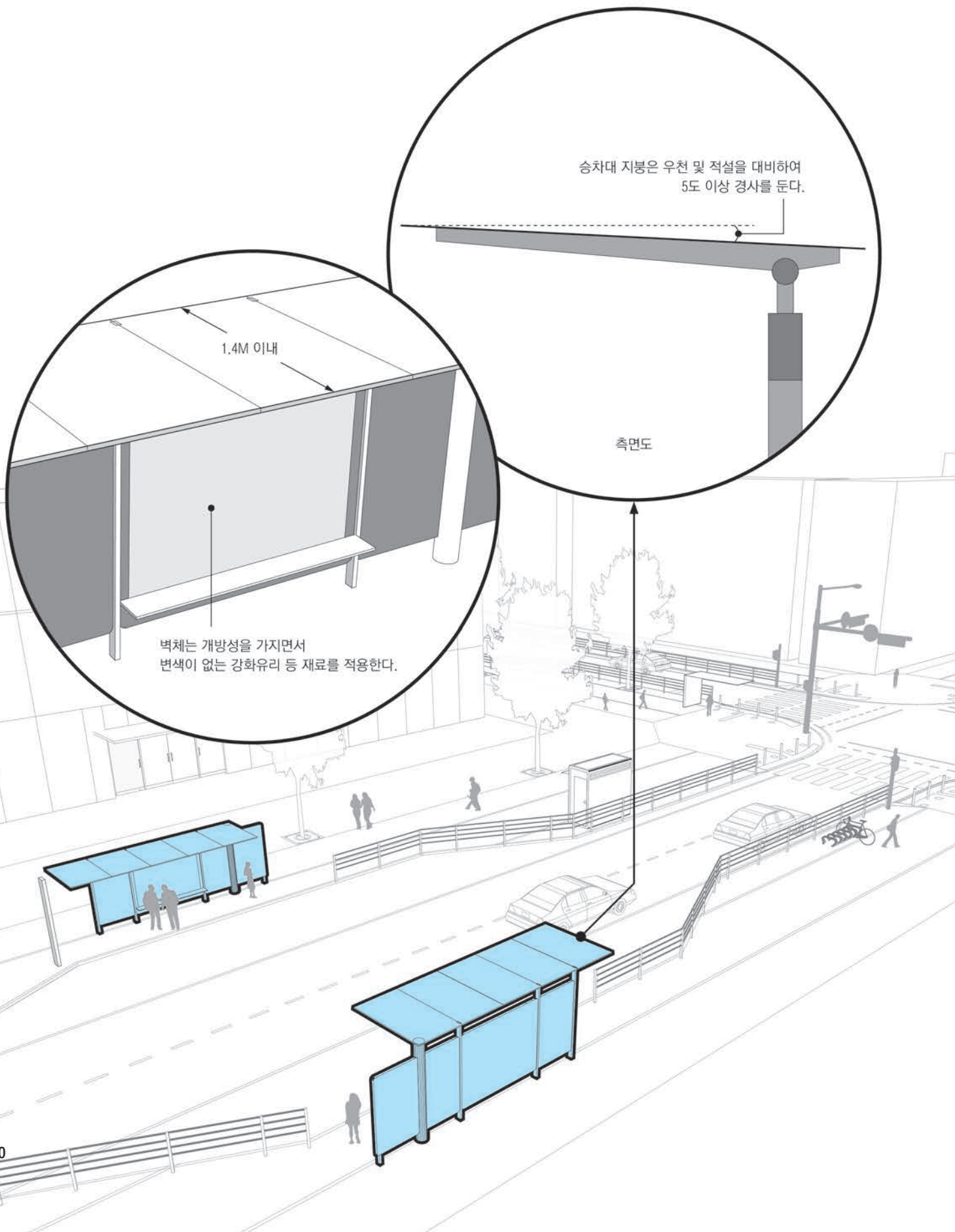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모래, 염화칼슘 등 적재 내용물에 따른 손상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2.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은 금지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반사띠 등은 필요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하여 사용한다.			
2. 캐릭터, 지자체 슬로건 등 장식은 금지한다.			

B2-1 대중교통 승차대

심의대상



기본방향

승차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 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버스, 승차대 주변의 시각적 장애를 주는 시설물 설치의 지양한다.			
2. 상업중심가로 등 보행자가 많고 보도폭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버스승차대의 벽부를 도로방향으로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승차대 지붕은 우천 및 적설을 대비하여 5도 이상 경사를 둔다.			
2. 승차대 천장면의 폭은 1.4M 이내로 한다.			
3. 상징물이나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시키지 않는다.			
4. 조명 및 정보매체 등은 통합디자인을 적용해 일체감을 가지도록 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를 선택하고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는 개방성을 가지면서 변색이 없는 강화유리 등 재료를 적용한다.			
3. 지붕은 햇빛 차단과 내오염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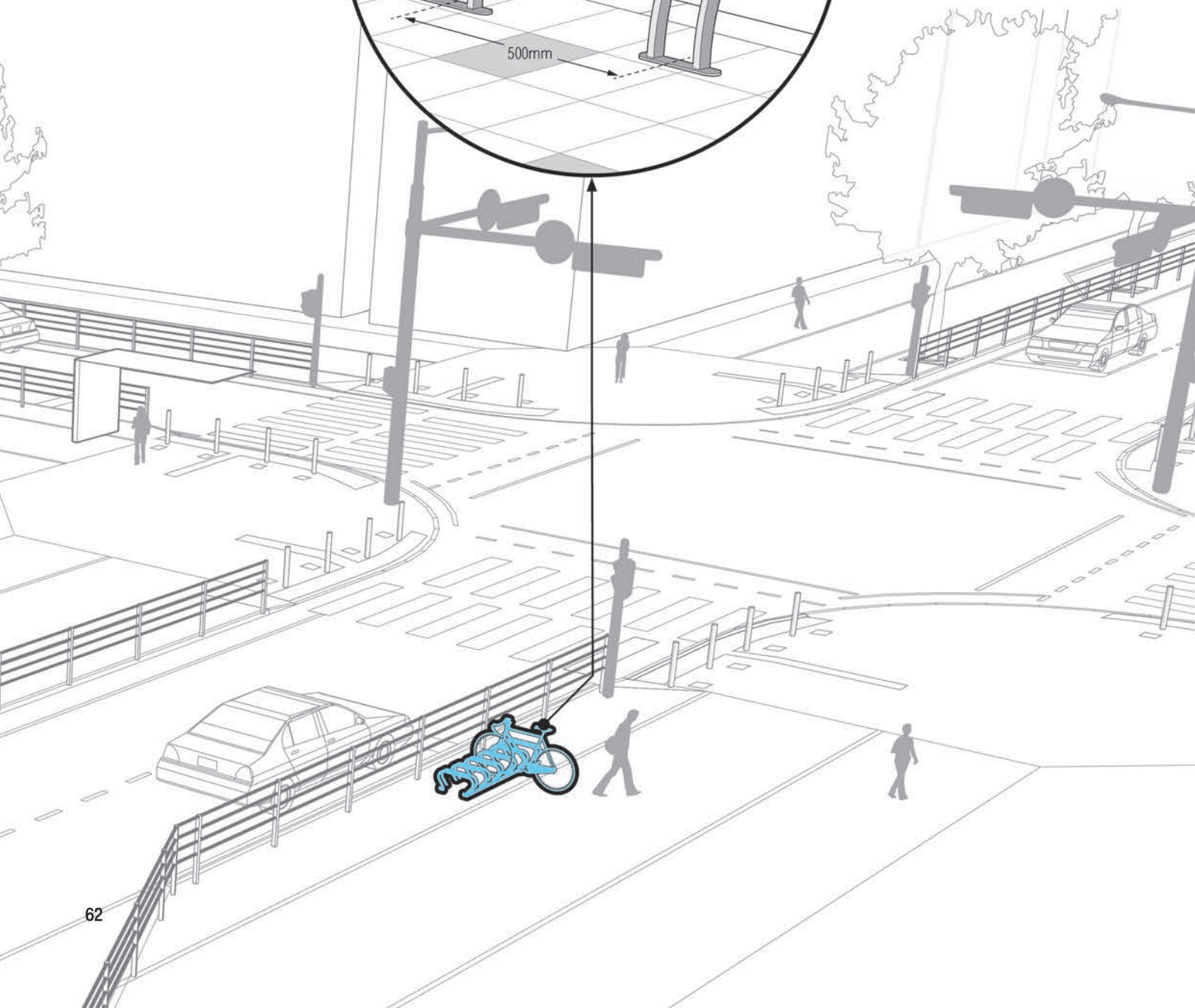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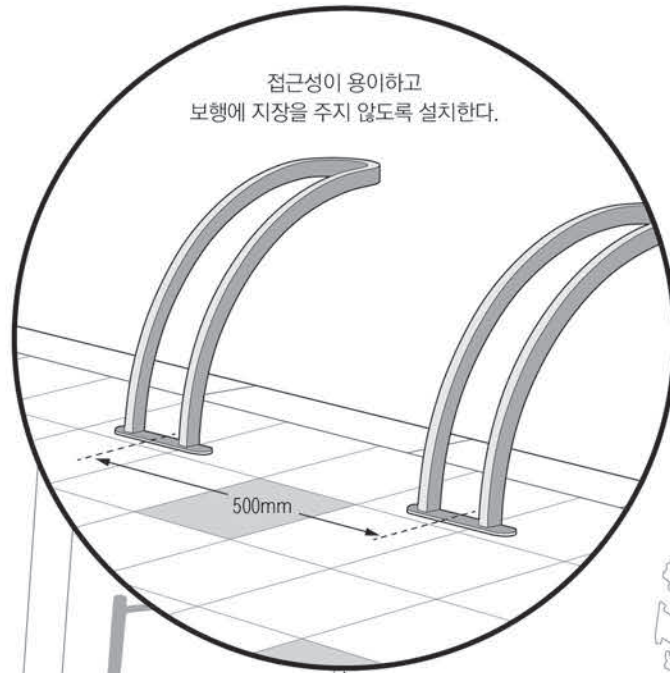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CCTV설치를 권장한다.			

B2-2 자전거 보관대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자전거 보관대〉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자전거도로 인접부, 공개공지, 교량의 하부공간 등에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최적화된 기능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2. 이용량에 따른 연속적 설치를 고려한 모듈개념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3. 자전거보관대 캐노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4.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2M이상으로 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전거 거치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광택 소재를 금지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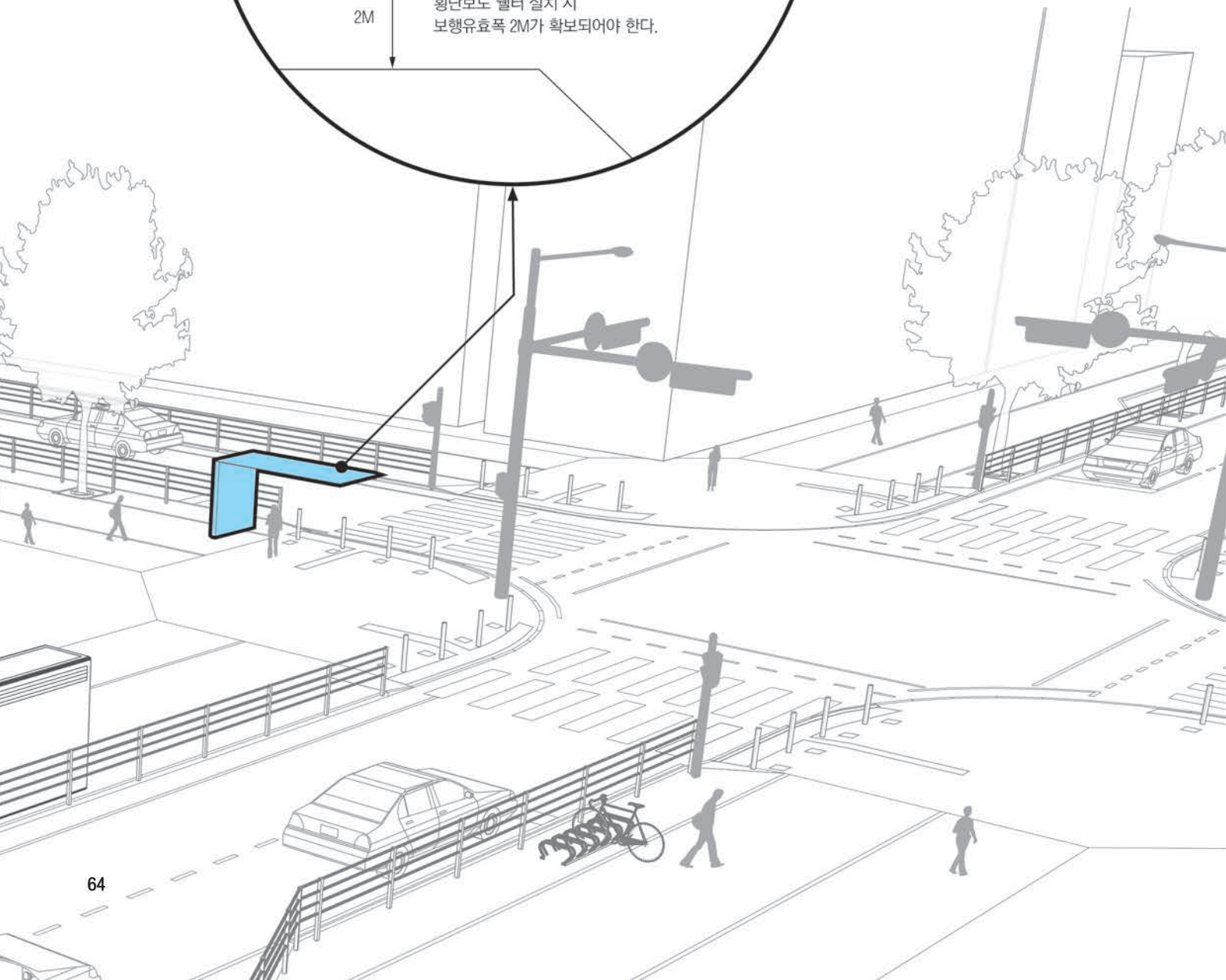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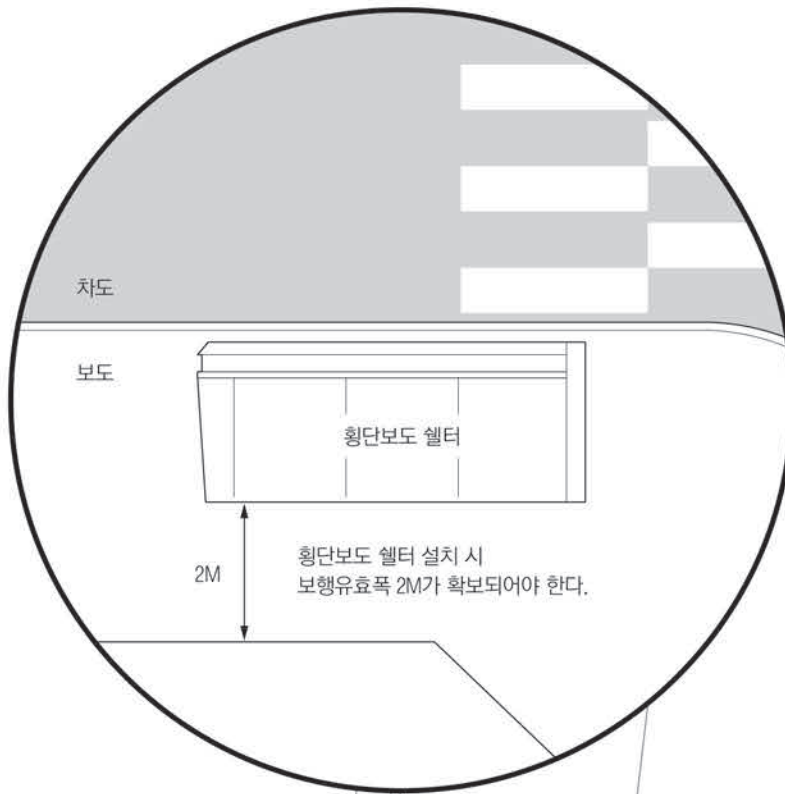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과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전거 보관대를 표식하는 문구 또는 픽토그램만 표시한다.			
2. 지자체 로고, 슬로건 표시를 금지한다.			

B2-3 횡단보도 쉼터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늘을 만드는 최적위치에 설치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운영〉 (20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그늘막 가이드라인〉 (2018,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로수, 건물에 의해 그늘 형성이 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2. 교차로 회전부는 운전자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 쉼터 설치 시 보행유효폭 2M가 확보되어야 한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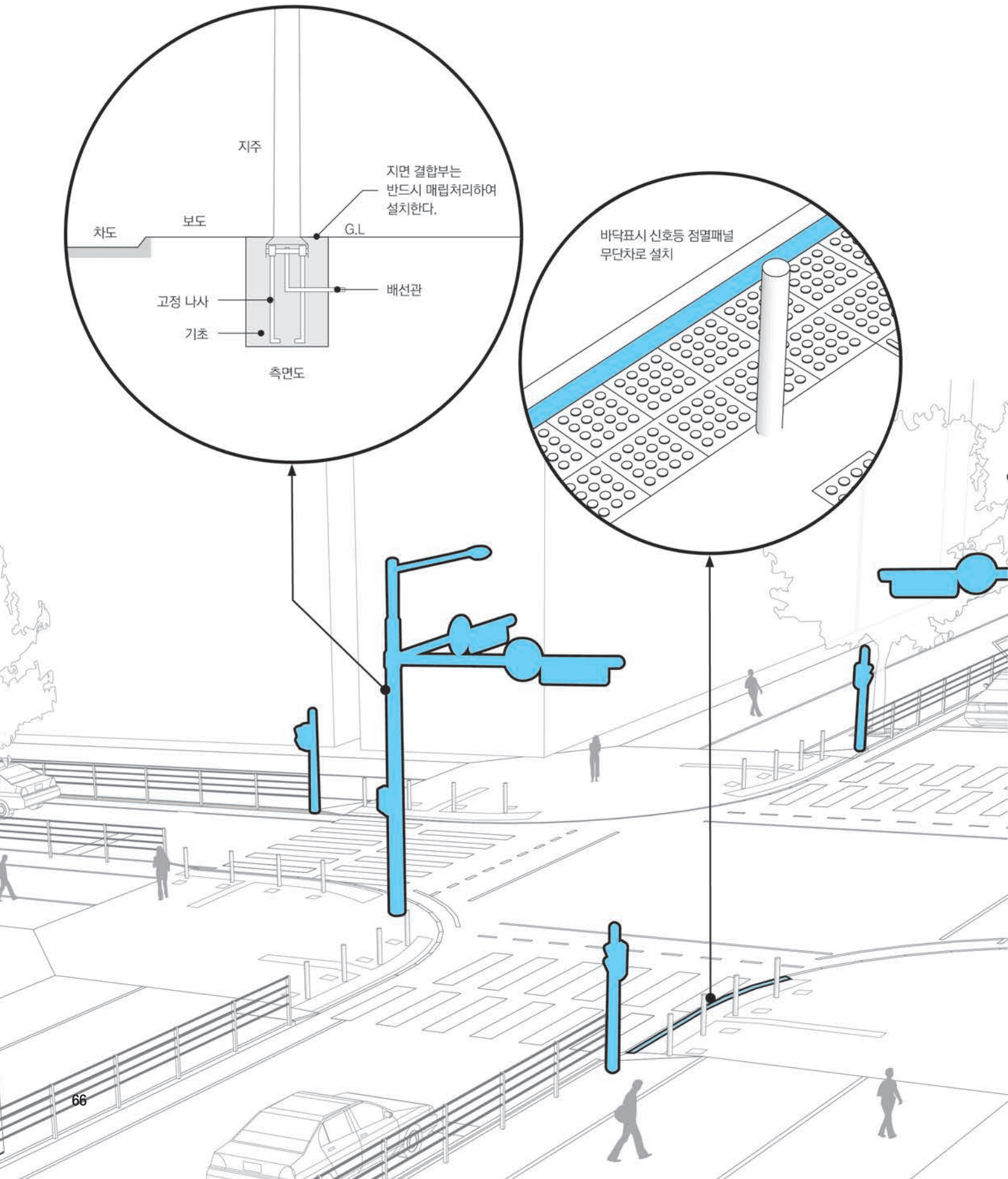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쉼터 천장면 최저높이는 2.2M이상을 확보한다.			
2. 혹서기 이외 기간의 보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3.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가설형 구조보다 매립형 구조를 권장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B2-4 신호등(주)

심의대상



기본방향

통합디자인을 지향하고 체결부위를 미려하게 처리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시 스마트폴 구축운영 지침 Ver1.0〉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지면 결합부는 반드시 매립처리하여 설치한다. | | | |
|-----------------------------|--|--|--|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부착시설물(보행자작동신호기, 안내표지, 휴지통 등)은 등주와 일체감을 주도록 디자인한다. | | | |
| 2. 다단형 디자인을 금지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 |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 | | |
|--------------------------|--|--|--|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지자체 로고, 슬로건 표시, 장식문양, 상징물 표시를 금지한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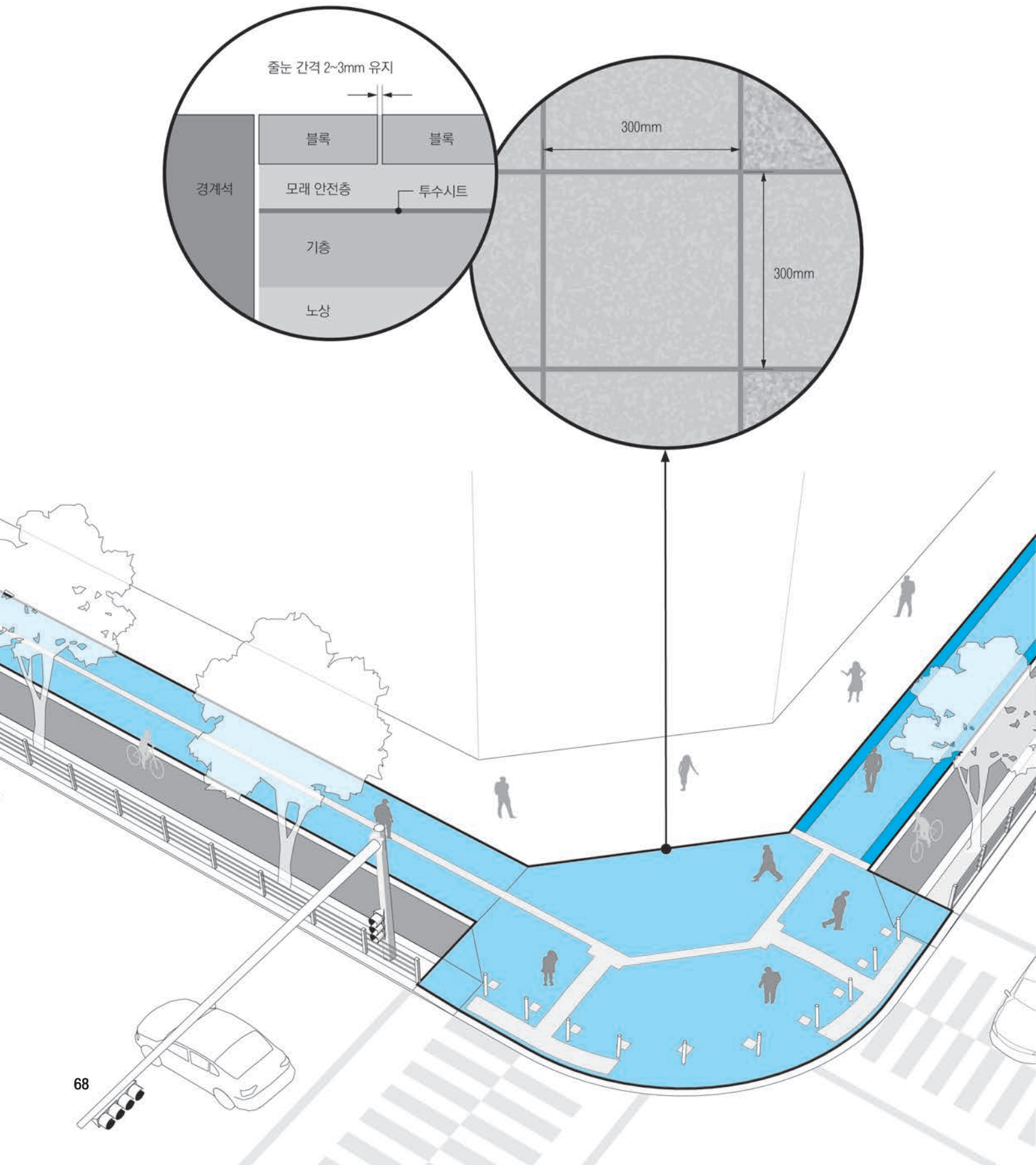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 | | | | |
|--|--|--|--|
| 1.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 사용보다는 부착물 방지 특수도로 도색을 권장한다. | | | |
| 2. 신호등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 과속을 경고하는 스마트 신호기 등의 설치 시 신호등주의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 | | |
| 3. 바닥표시 신호등 점멸패널 설치 시무단차로 설치한다. | | | |

B3-1 보도블록

심의대상



기본방향

평탄도를 확보하고 색채 자극이 적으며 단위크기가 큰 보도블록을 사용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21, 국토교통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평탄도를 확보한다.			
2. 보도블록간 틈새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3.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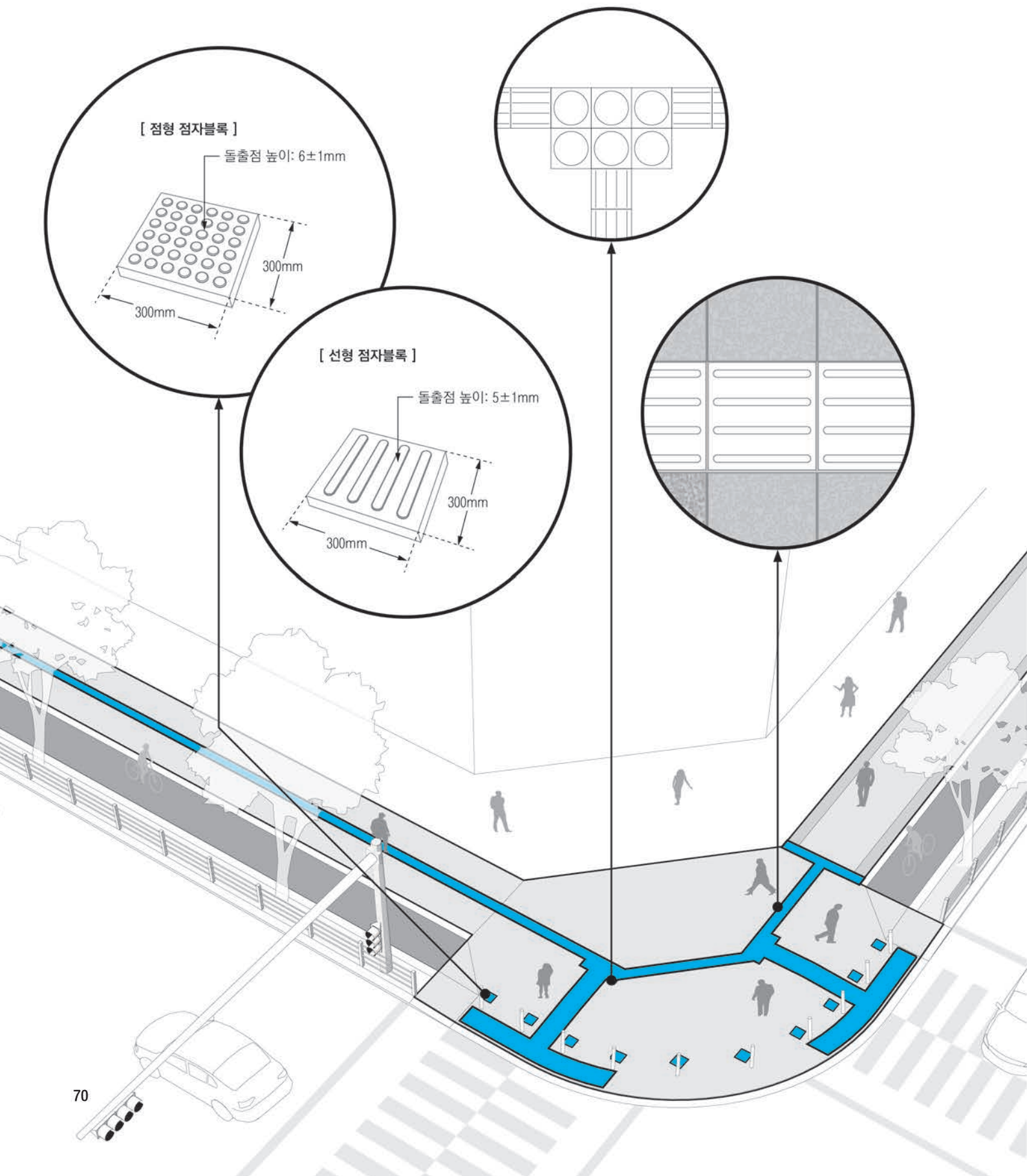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블록이 단위크기는 300x300mm를 원칙으로 한다.(점자블록 연계성 중시)			
2. 보도블록은 사각형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 단위크기가 큰 보도블록을 권장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황도블록은 재료특성상 맞부딪침에 의한 모서리 깨짐 방지를 위해, 틈새이격 돌기를 갖추어야 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블록에 고채도 색 사용은 금지한다.			
2. 보도블록은 동일구간 내 동일 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블록 흠뿌리기 강조색은 2가지색 이내로만 하고, 전체의 10% 이내로 한다.			
4. 보도블록 흠뿌리기 강조색은 강한 명도대비를 갖지 않도록 한다.			

B3-2 점자블록

심의대상



기본방향

점자블록의 정밀한 마감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한다.

참 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0,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별표 2〉 (2021, 국토교통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Ver 2.0〉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 (2015, 서울특별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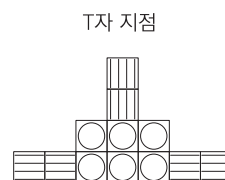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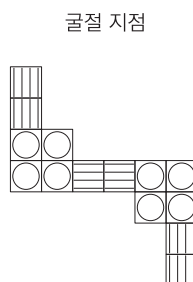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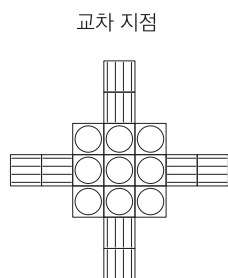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블록과의 결합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횡단보도 설치 시, 연석에 밀착하여 설치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 40bpm을 준수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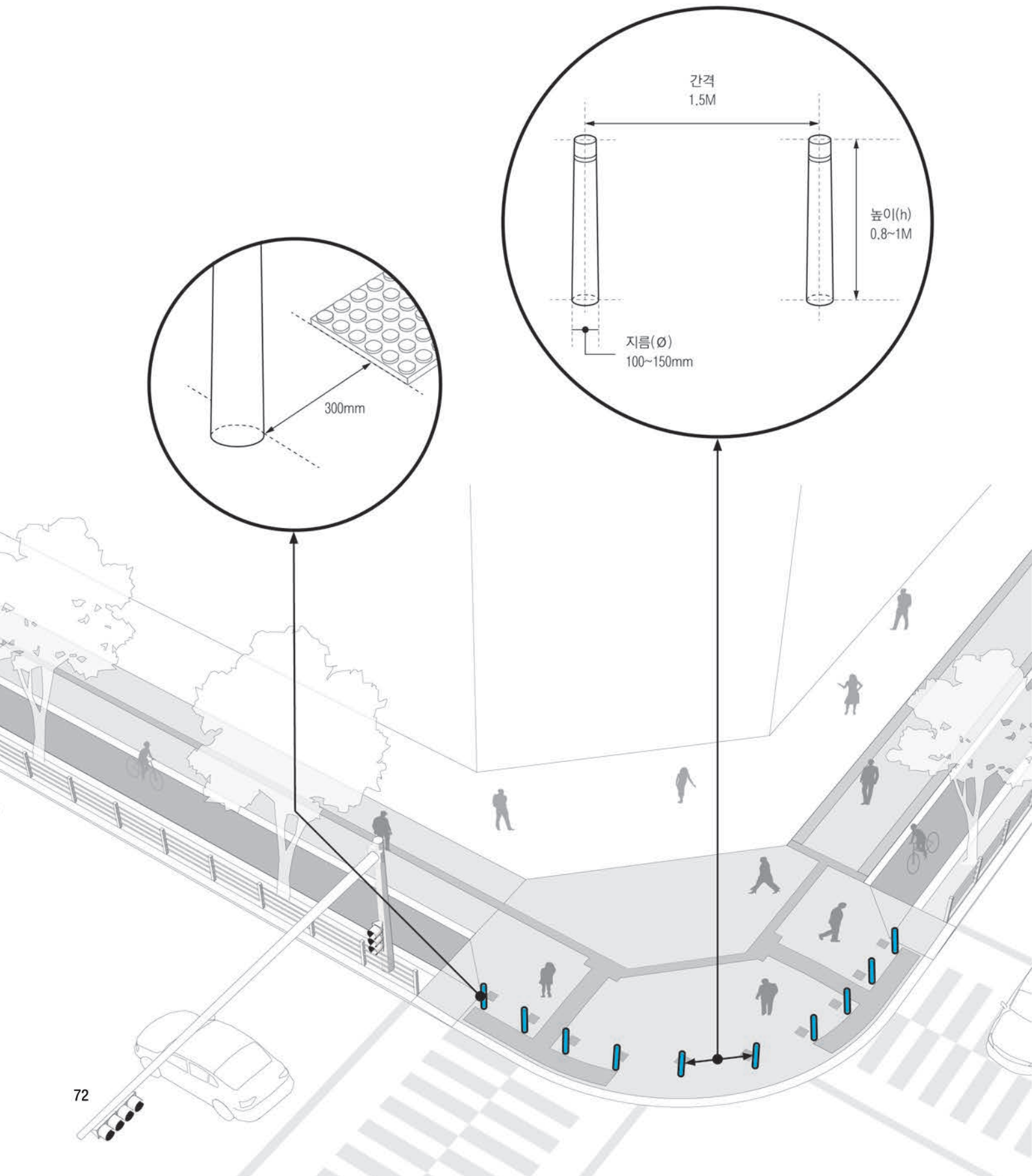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점자블록 위에 별도의 색채를 도색하지 않는다.			



[점자블록 표준형 설치방법]

B3-3 볼라드

심의대상



기본방향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공간조건 내에서 최소 수량을 설치한다.

참 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별표 2〉 (2021, 국토교통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볼라드〉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볼라드 설치 간격은 1.5M를 원칙으로 한다.			
2. 보도가 경사면인 경우에도 볼라드는 수직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볼라드의 규격은 높이 0.8~1M, 지름은 100~150mm로 한다.			
2. 볼라드의 형태는 원통형 기본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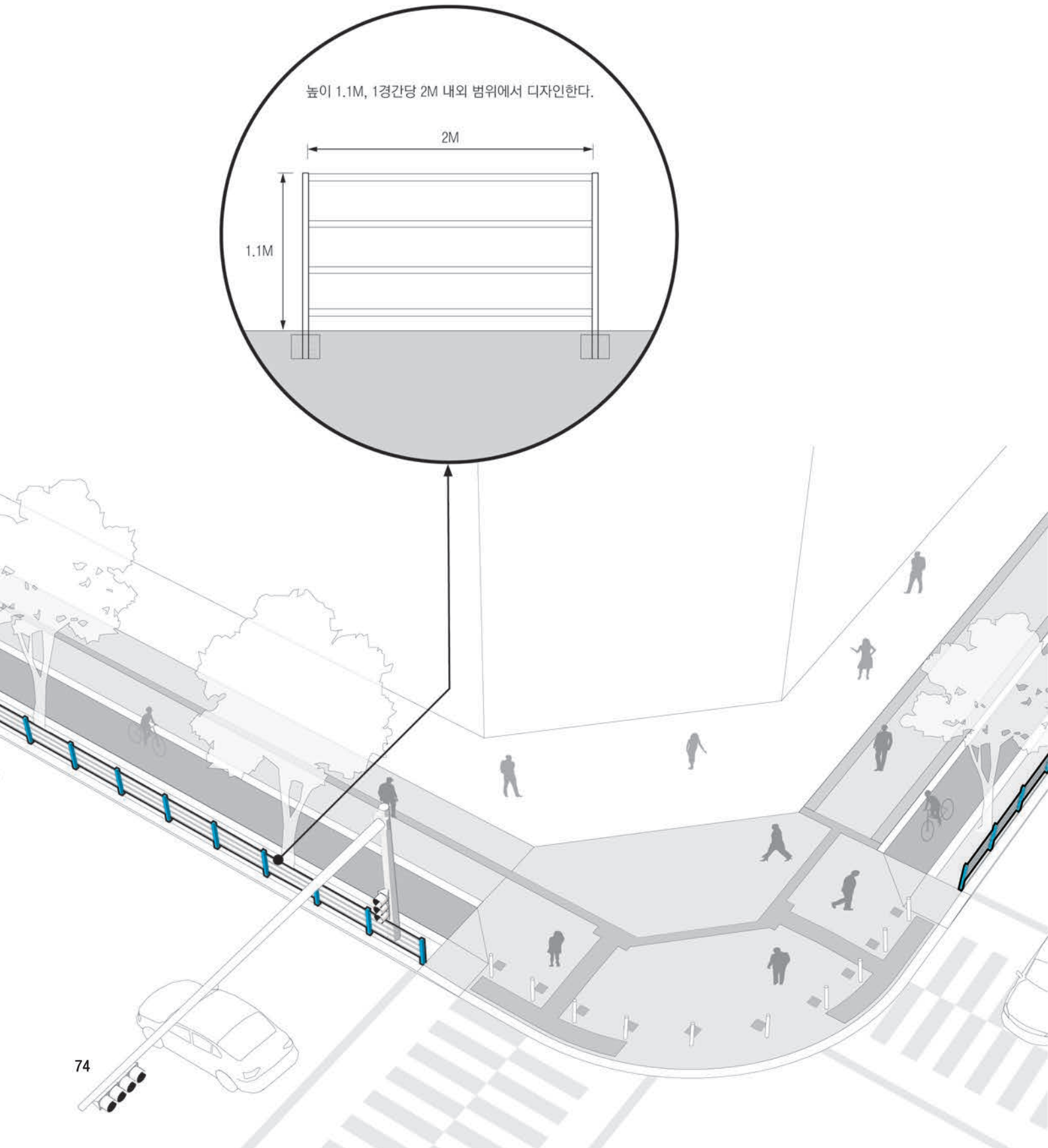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외피는 탄성 재료로 마감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2. 반사시트, 반사체 등 적용시 20~30mm 폭으로 1~2줄, 흰색으로 표시한다.			

B3-4 보호펜스

심의대상



기본방향

최소 설치를 원칙으로 보행자 안전중심의 기능적 구조를 지향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21, 국토교통부)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보호펜스〉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왕복 4차로 이내 도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는 경우 생울타리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높이 1.1M, 1경간당 2M 내외 범위에서 디자인한다.			
2. 개방감 있는 선적 형태로 한다.			
3. 횡단금지나 출입금지 목적은 세로살로 디자인한다.			
4. 다양한 길이로 연장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형태를 모듈화한다.			
5. 체결부위 볼트 등은 눈에 띄지 않게 디자인하거나 미려하게 마감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호펜스의 가로살이 처지지 않도록 강성을 고려한 재료 및 구조를 사용한다.			
2. 보도와 녹지를 구분하는 경계 목적에는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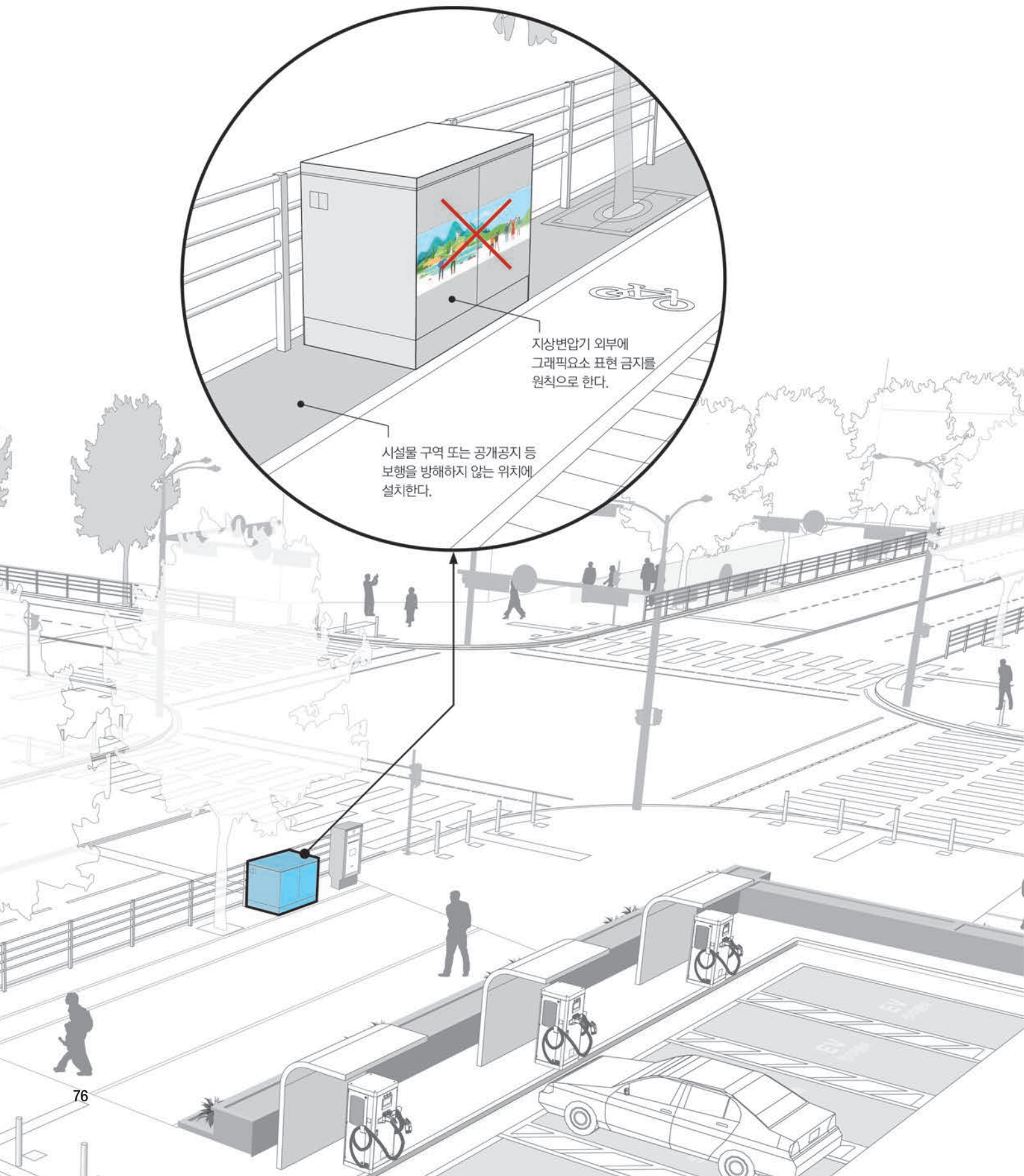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2. 고광택 금속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용 시 헤어라인 처리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로고, 슬로건 표시, 장식문양, 상징물 표시를 금지한다.			

B4-1 지상변압기



기본방향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정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지상변압기〉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시설물 구역 또는 공개공지 등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2. 하단부 기초 콘크리트는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크기를 최소화한다.			
2. 간결한 형태로 하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처리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특수도로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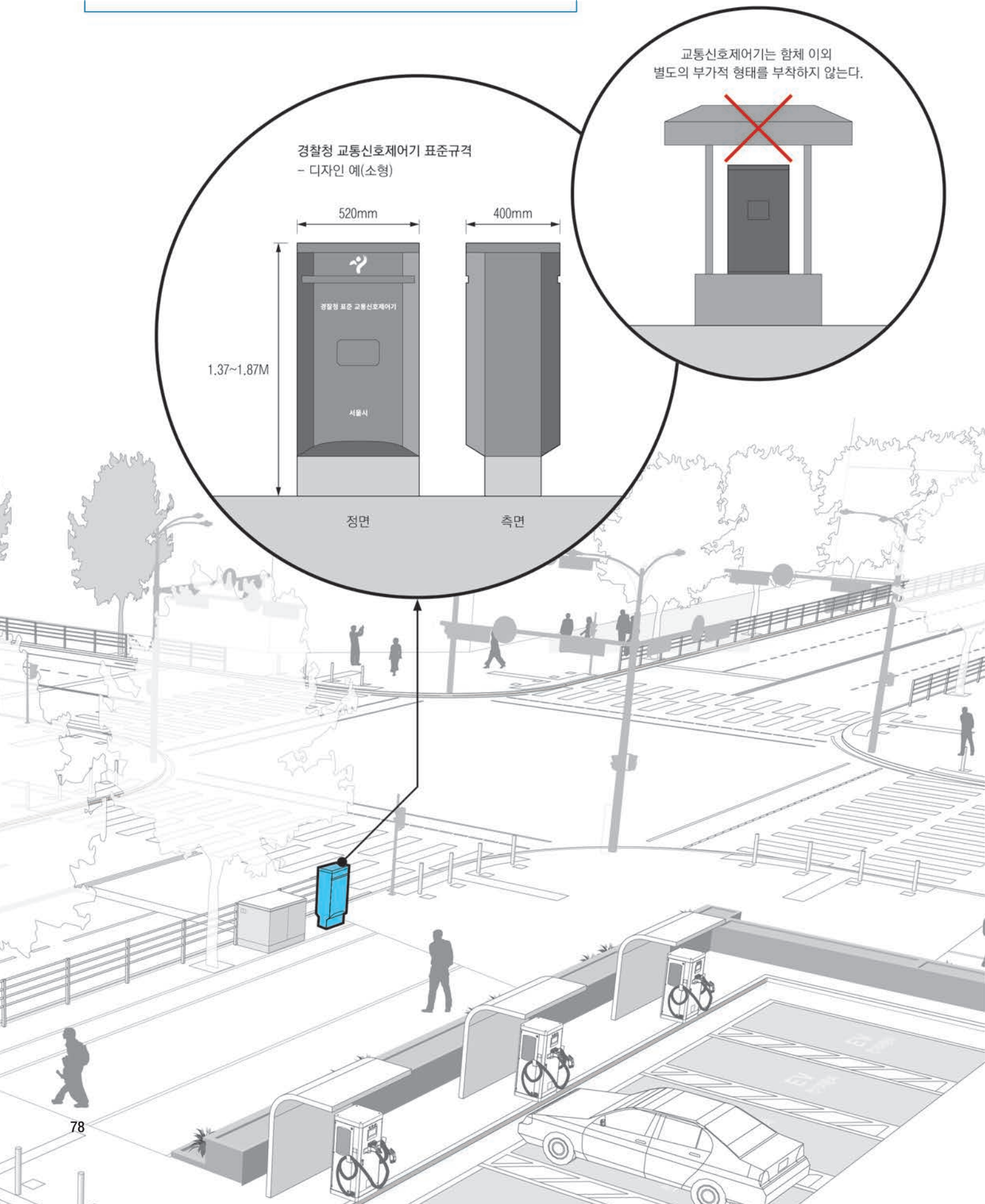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심볼, 문구 포함)			
2. 색채는 단색으로 하고 후퇴색을 사용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상변압기 외부에 그래픽요소 표현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2. 광고게시 겸용 지상변압기의 경우, 외부면 광고 정보에 원색 및 고채도 그래픽 사용을 금지한다.			

B4-2 교통신호제어기



기본방향

간결한 디자인으로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교통신호제어기〉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시설물구역 또는 공개공지의 녹지 등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교통신호제어기는 함체 이외 별도의 부가적 형태를 부착하지 않는다.

2. 보도 설치 시 지면과 닿은 면적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3. 간결한 형태로 하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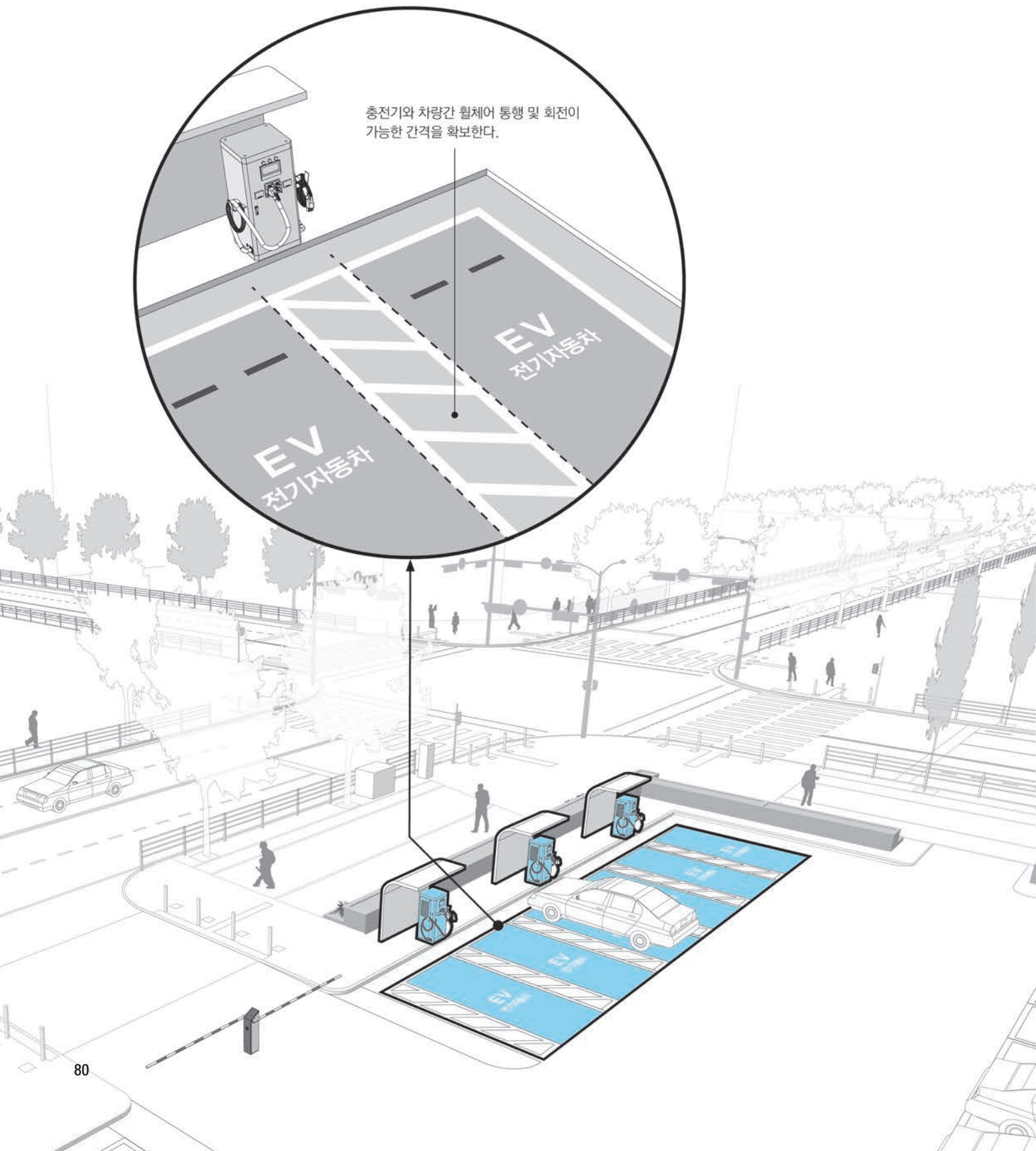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심볼, 문구 포함)

2. 색채는 단색으로 하고 후퇴색을 사용한다.

B4-3 전기차 충전소



기본방향

신체적 약자의 이용을 고려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2020, 환경부)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충전기와 차량간 휠체어 통행 및 회전이 가능한 간격을 확보한다.			
2. 충전기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차량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블라드 및 스톱퍼 등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 벽면, 기둥, 식재 등으로 충전기가 가려지지 않는 개방적 공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설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2. 원색 및 고채도 색채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픽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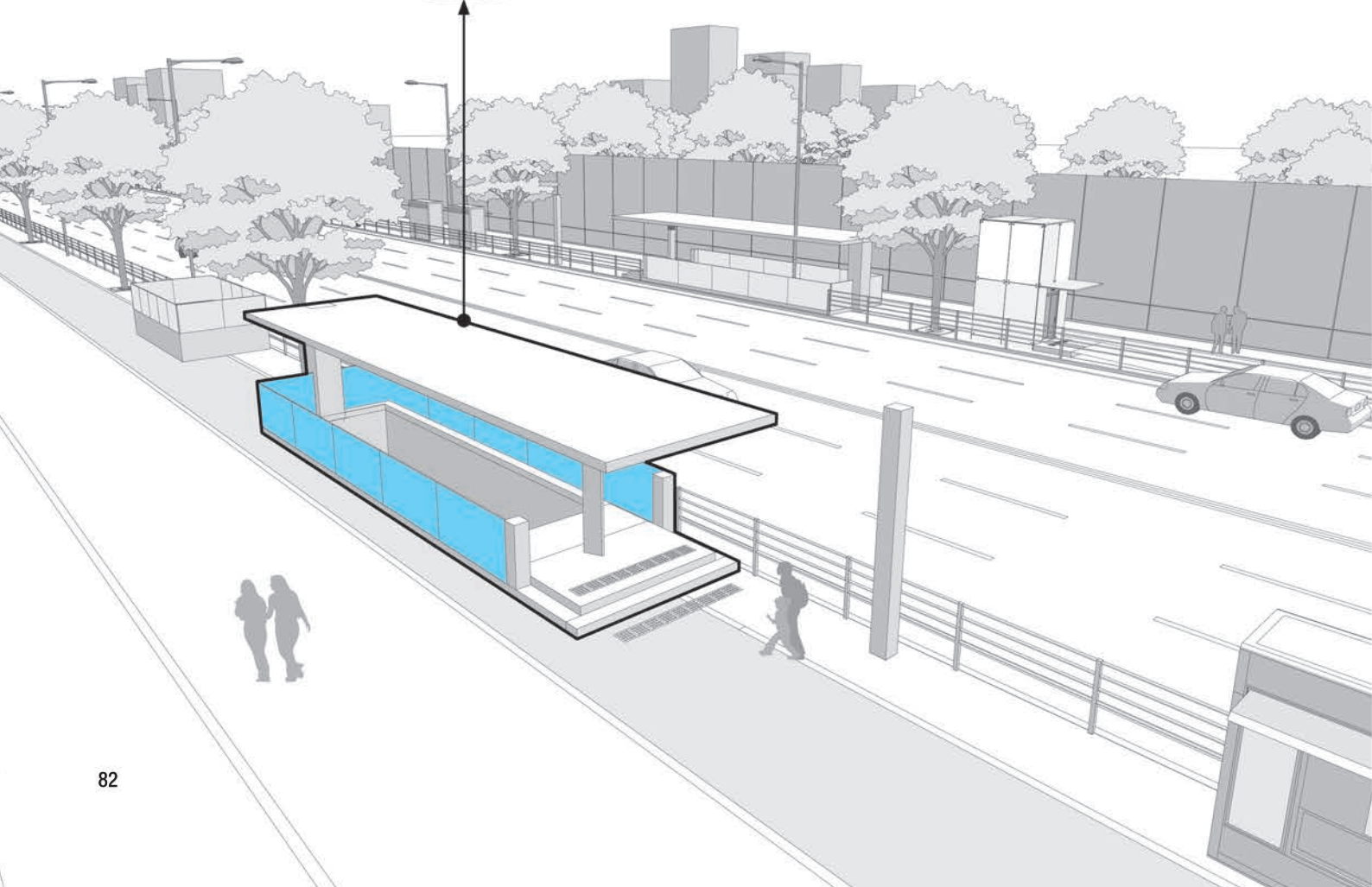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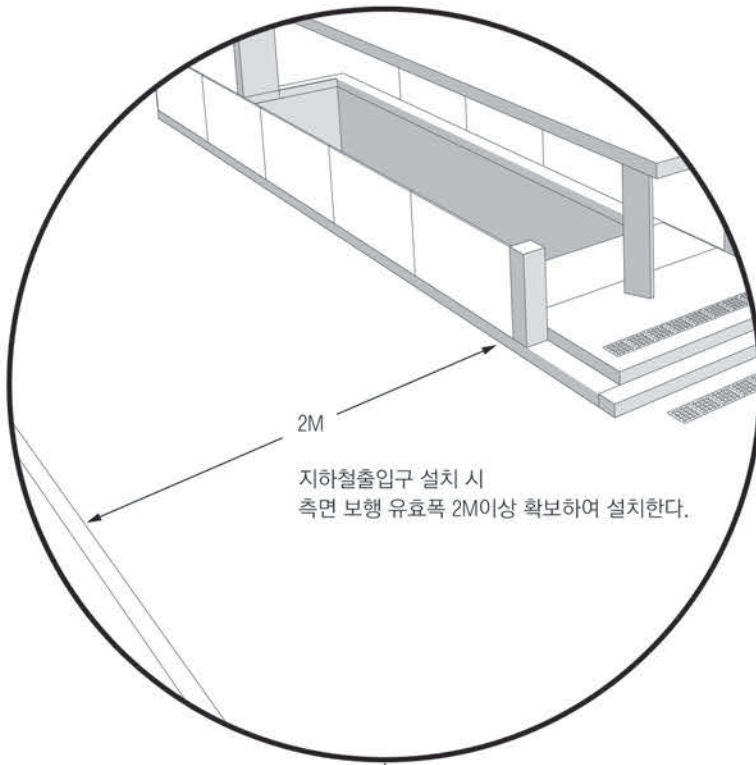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바닥 주차면 표시로 인지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안내표지를 디자인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충전기 조작부는 사용자 중심 메뉴 및 선택 구조로 디자인한다.			

B5-1 지하철출입구, 캐노피

심의대상



기본방향

개방감있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Ⅳ :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201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철출입구 설치 시 측면 보행 유효폭 2M이상 확보하여 설치한다.			
2. 지하철 캐노피 천장에 쉽게 오를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배수홈통은 눈에 띄지 않도록 구조기둥부 내부로 계획한다.			
3. 우천 및 적설을 대비한 배수를 고려하여 천장면에 슬로프를 형성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개방감 확보를 위해 벽면은 투명도가 높고 변색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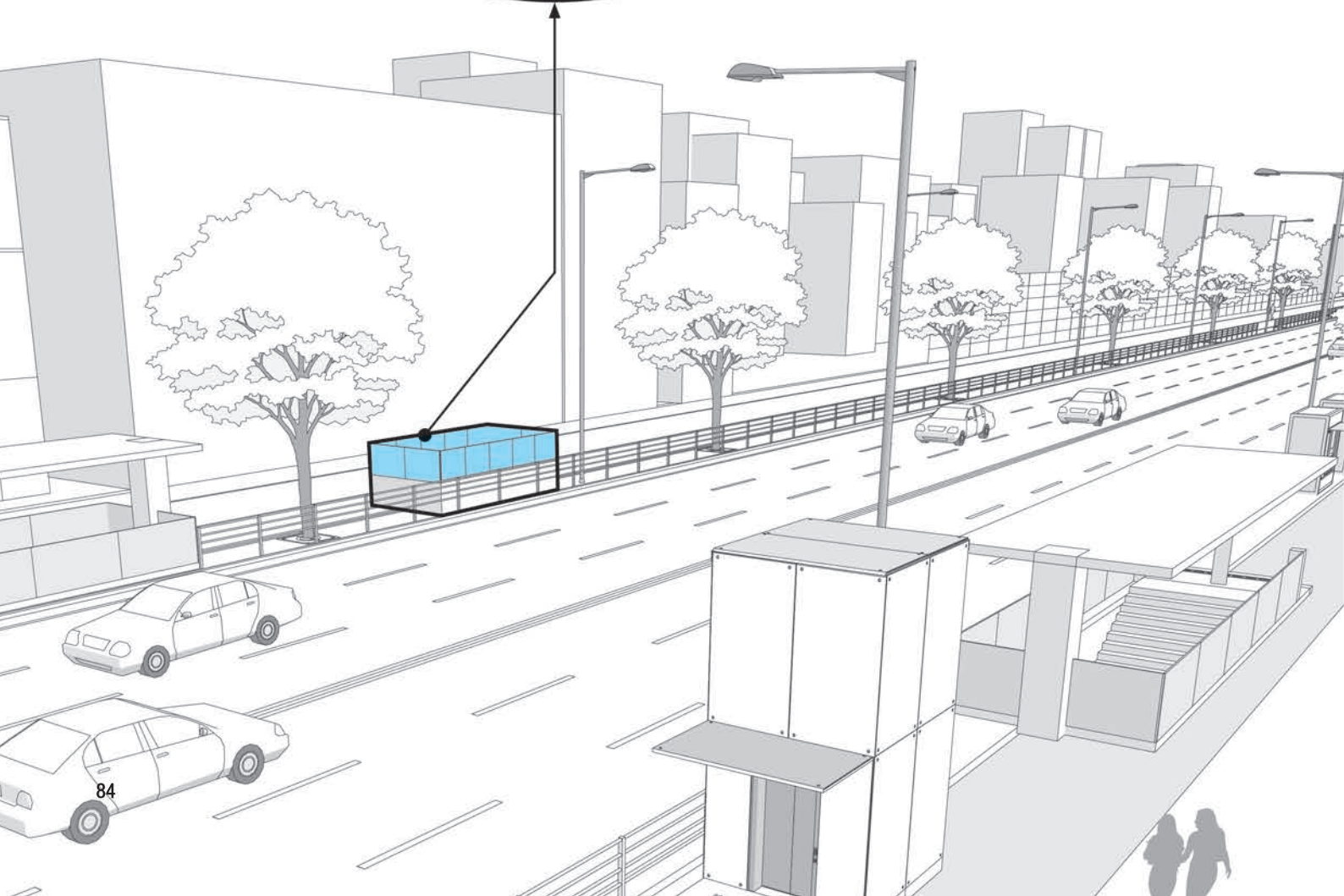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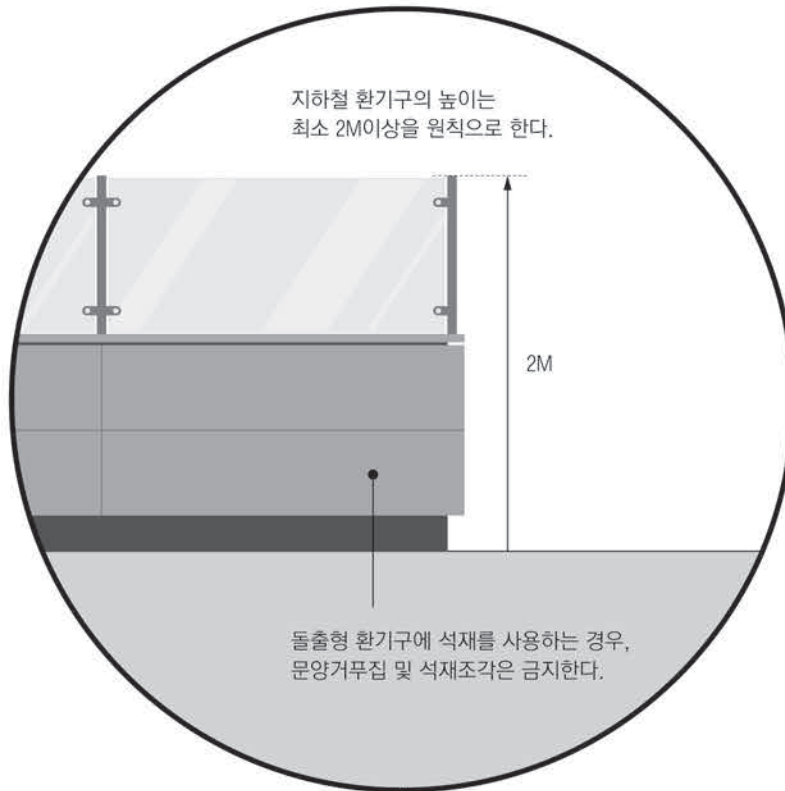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내사인 설치 시 캐노피 사용색채와 동일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벽면 소재의 색채는 투명으로 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캐노피 벽면에 광고면 조성 및 그래픽요소 부착은 금지한다.			

B5-2 지하철 환기구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9, 국토교통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VI : 냉각탑 및 환기구 가림벽〉 (2012,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철 환기구는 보행로 설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공지의 녹지, 공원녹지, 공공용지 등에 설치)			
2. 지상으로 노출되는 돌출형 환기구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철 환기구의 높이는 최소 2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접근 차단 시설물을 갖춘 경우 2M이하로 할 수 있다.			
2. 지하철 환기구는 환기량을 수용하는 최소 크기로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3.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의 이질감을 강조하지 않고 일체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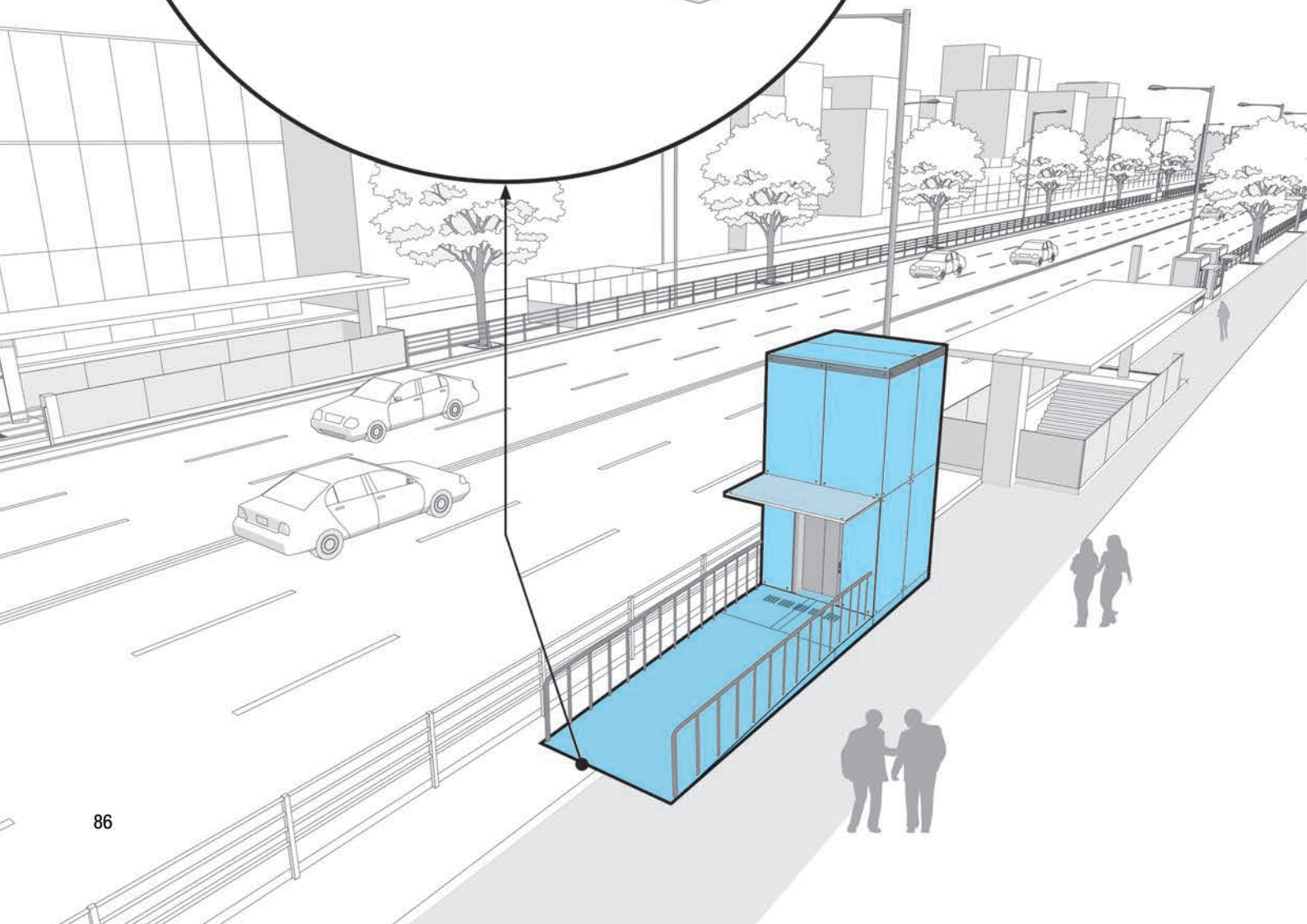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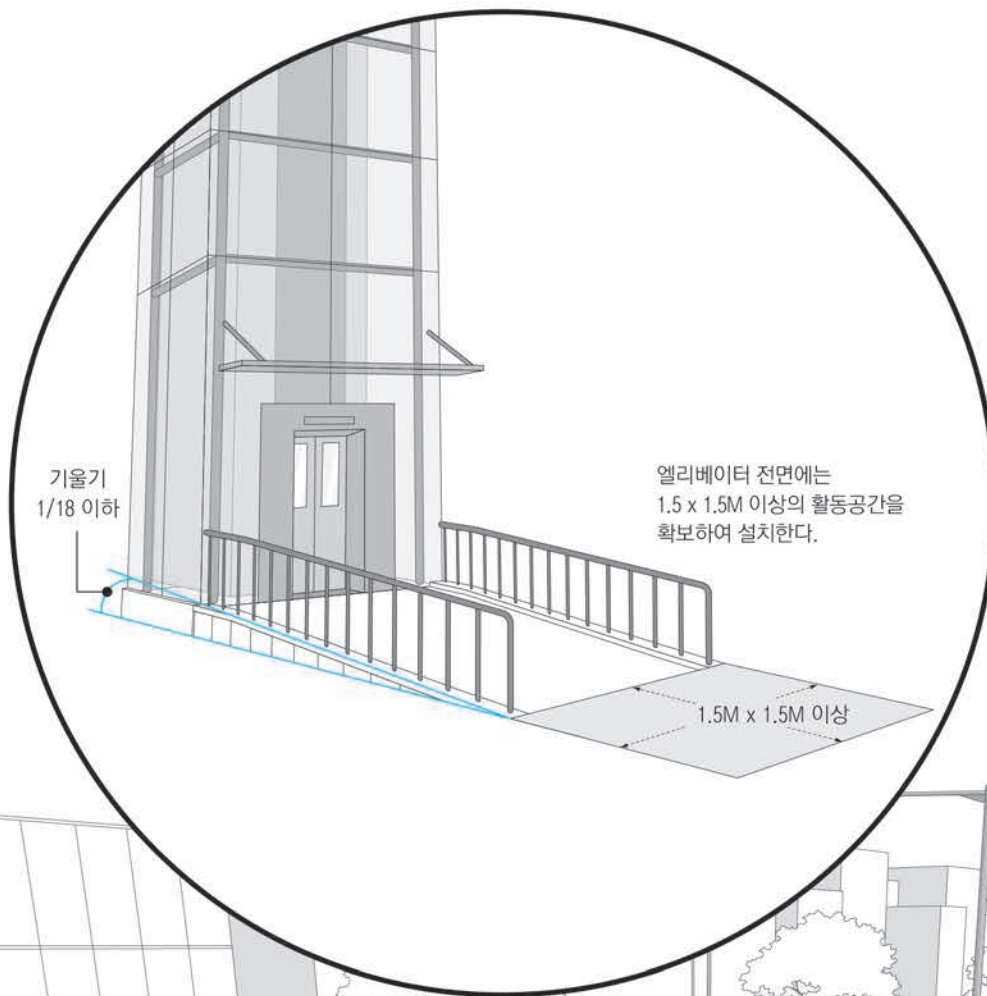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돌출형 환기구의 투시형 안전가림막 및 안전난간은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2. 돌출형 환기구에 석재를 사용하는 경우, 문양거꾸집 및 석재조각은 금지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로고, 슬로건 표시, 장식문양, 상징물 표시를 금지한다.			

B5-3 지상노출엘리베이터

심의대상



기본방향

개방감있는 구조 및 형태로 안전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0, 보건복지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별표1〉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설치 후 보행 유효폭 2M이상을 반드시 확보한다.			
2.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1.5x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3. 진입 경사로의 폭은 1.5M이상, 기울기는 1/18이하로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순하고 내부의 활동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2. 통풍이 원활한 구조를 계획하고 통풍구를 전체 형태와 일체감 있도록 디자인한다.			
3. 하부기초가 눈에 띄지 않도록 높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4.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캐노피와 형태적 일체감이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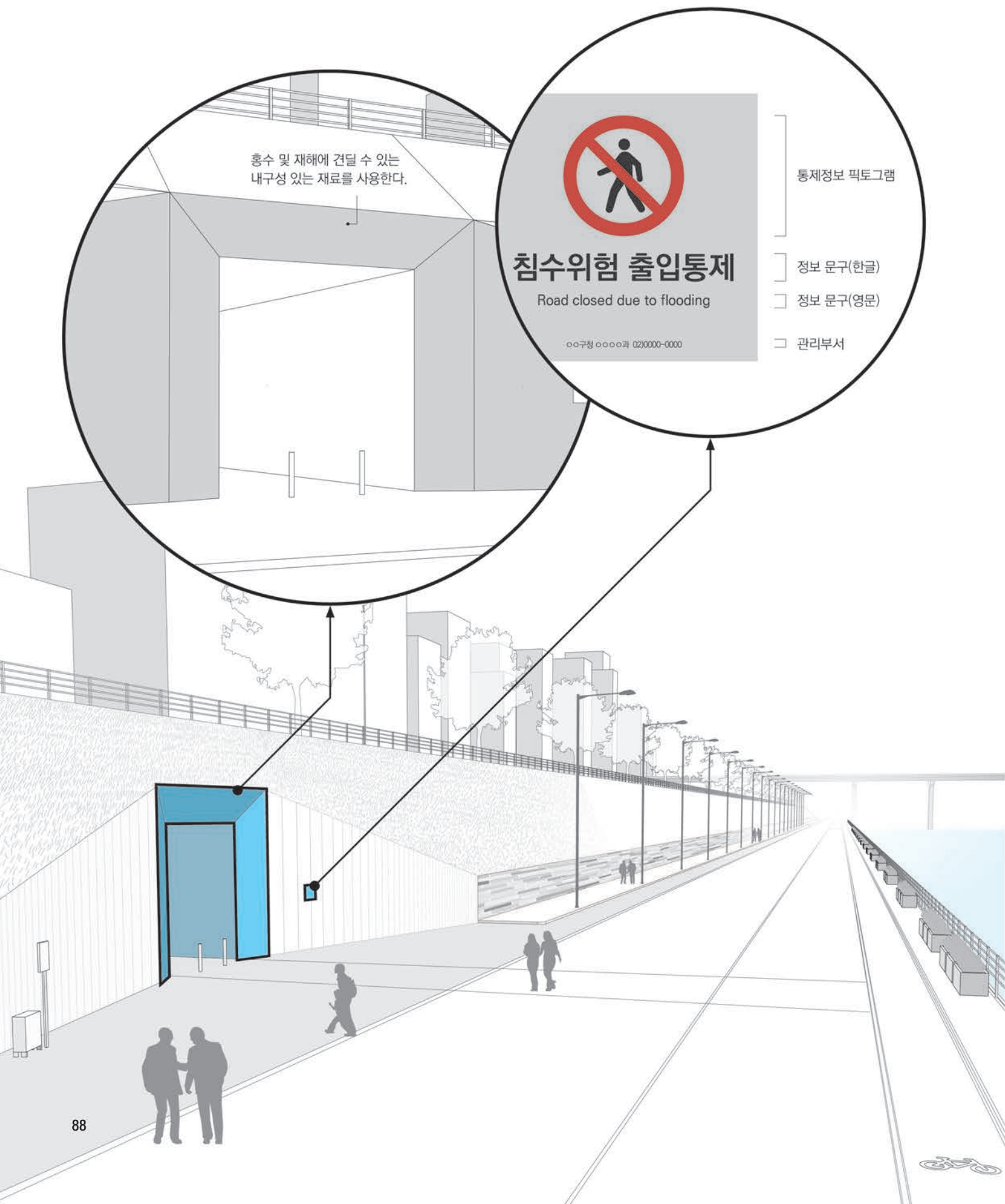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벽면은 투명도가 높은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색채는 투명으로 한다.			
2. 진입슬로프 난간 등 금속재료의 부속시설물은 고광택 사용을 금지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로고, 슬로건 표시, 장식문양, 상징물 표시를 금지한다.			

B6-1 육갑문

심의대상



기본방향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밝고 안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하천설계기준〉 (2020, 국토교통부)

〈하천경관디자인매뉴얼〉 (2016, 한국수자원공사)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육감문의 주변구조물은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2. 홍수 및 범람 등의 경고 표시를 위한 픽토그램 등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육감문은 수직적 형태를 강조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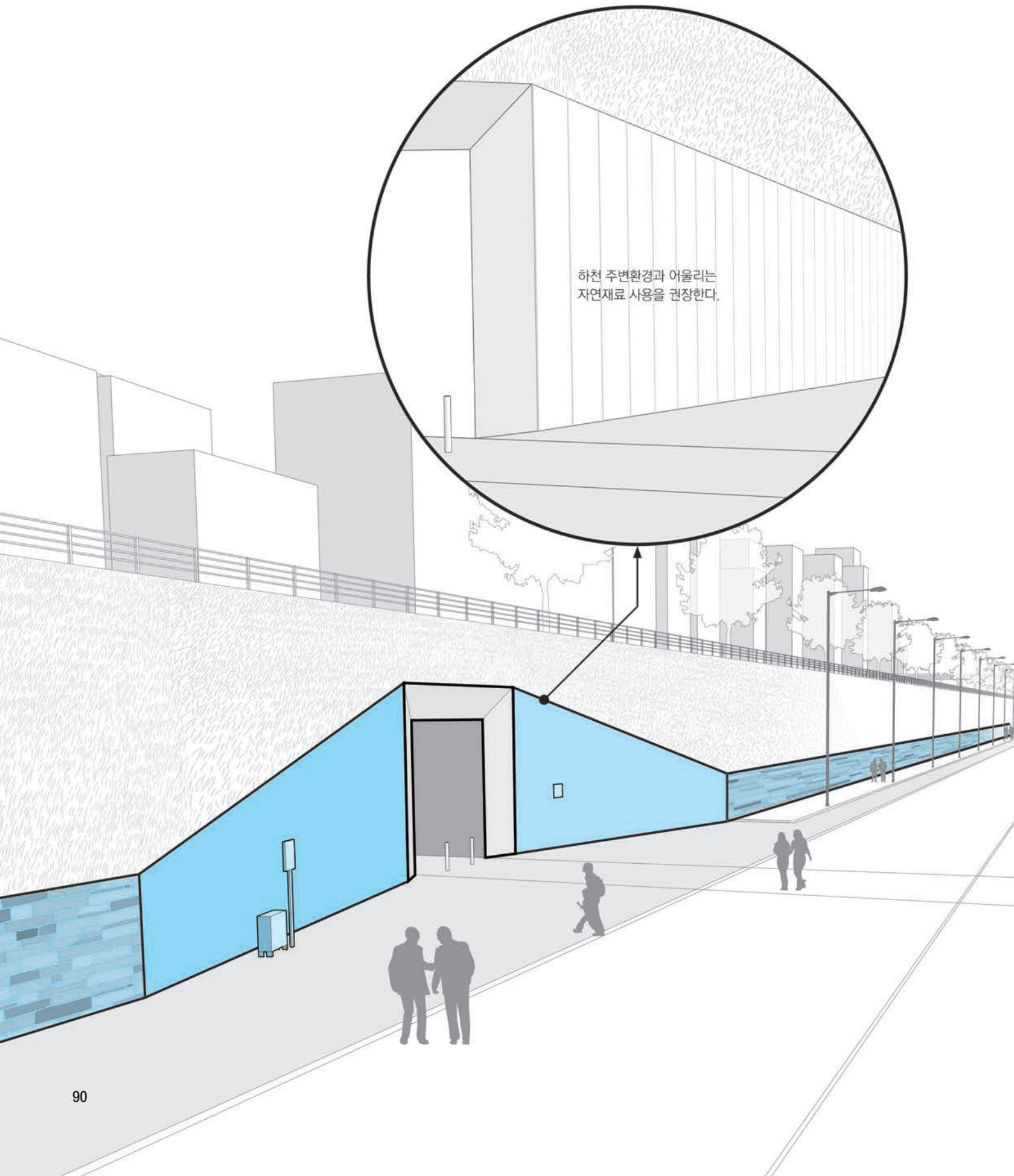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홍수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육감문 외부의 마감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일체감을 고려한 재료를 선택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밝은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B6-2 하천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심의대상



기본방향

친환경적이며 인공적 이미지를 완화하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하천설계기준〉 (2020, 국토교통부)

〈하천경관디자인 매뉴얼〉 (2016, 한국수자원공사)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하천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활동성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2. 하천 제외지 상하부에 식재를 통해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하도록 설치한다.			
3. 인공구조물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식생공법으로 구조면을 녹화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옹벽은 사선처리하여 주변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되도록 디자인한다.			
2. 석축은 둔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완만한 기울기를 조절한다.			
3. 입면의 분절을 통해 위압감을 완화한다.			
4. 거푸집 활용시 문양거푸집은 수직선형 반복, 목재패널 연출 등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홍수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하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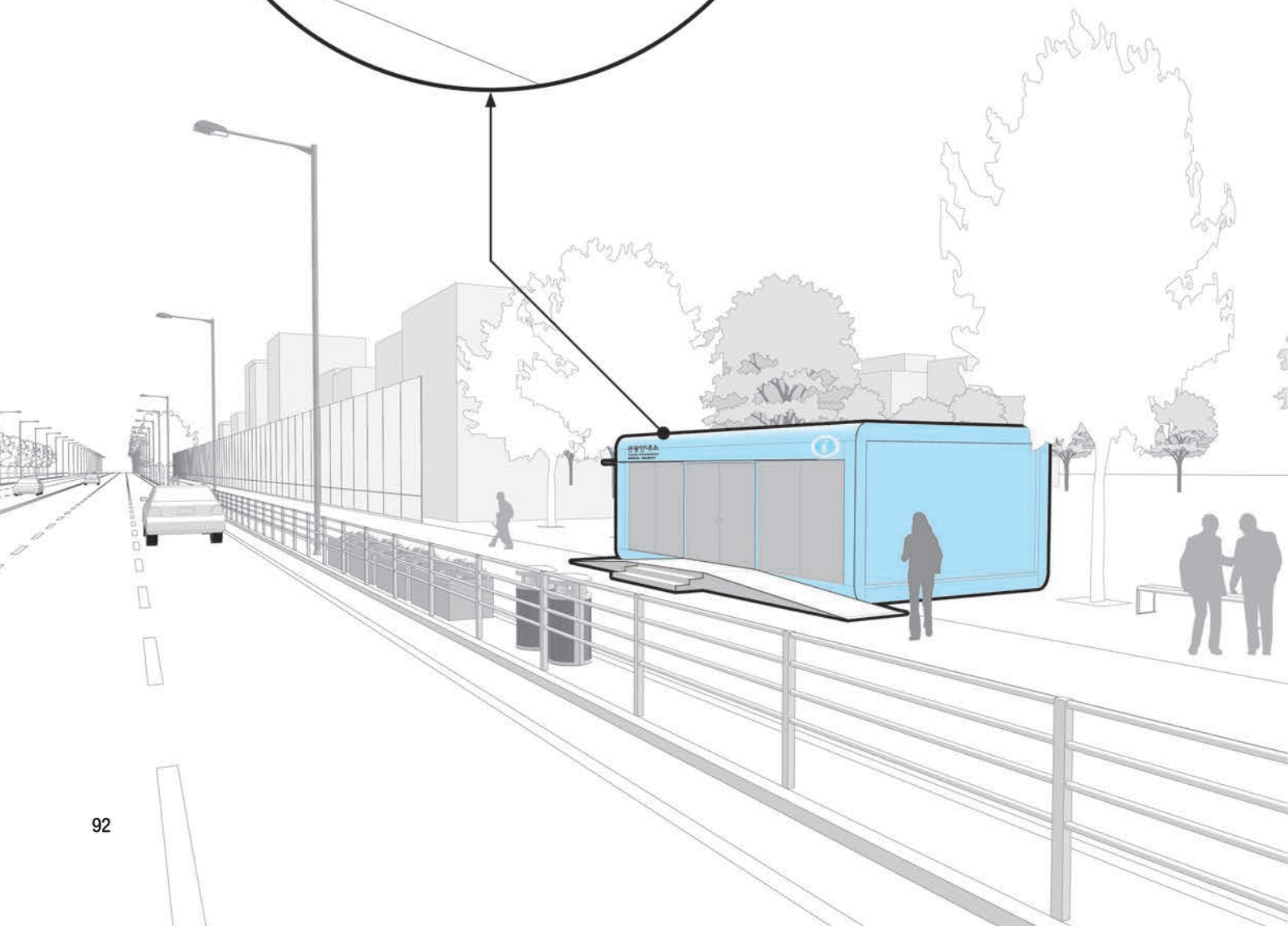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옹벽에 원색 및 고채도색 사용을 금지한다.			

B7-1 관광안내소(부스형)

심의대상



유효 보도폭 4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방향

접근성이 쉽고 정보를 얻기 쉽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매뉴얼〉 (2015, 문화체육관광부)

〈사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Ver3.0〉 (20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투어버스 승차대 특화디자인〉 (201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유효 보도폭 4M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단차를 최소화하고 진입 경사각은 1/180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3.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는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개방감을 위한 투명재질은 유지관리를 위해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구성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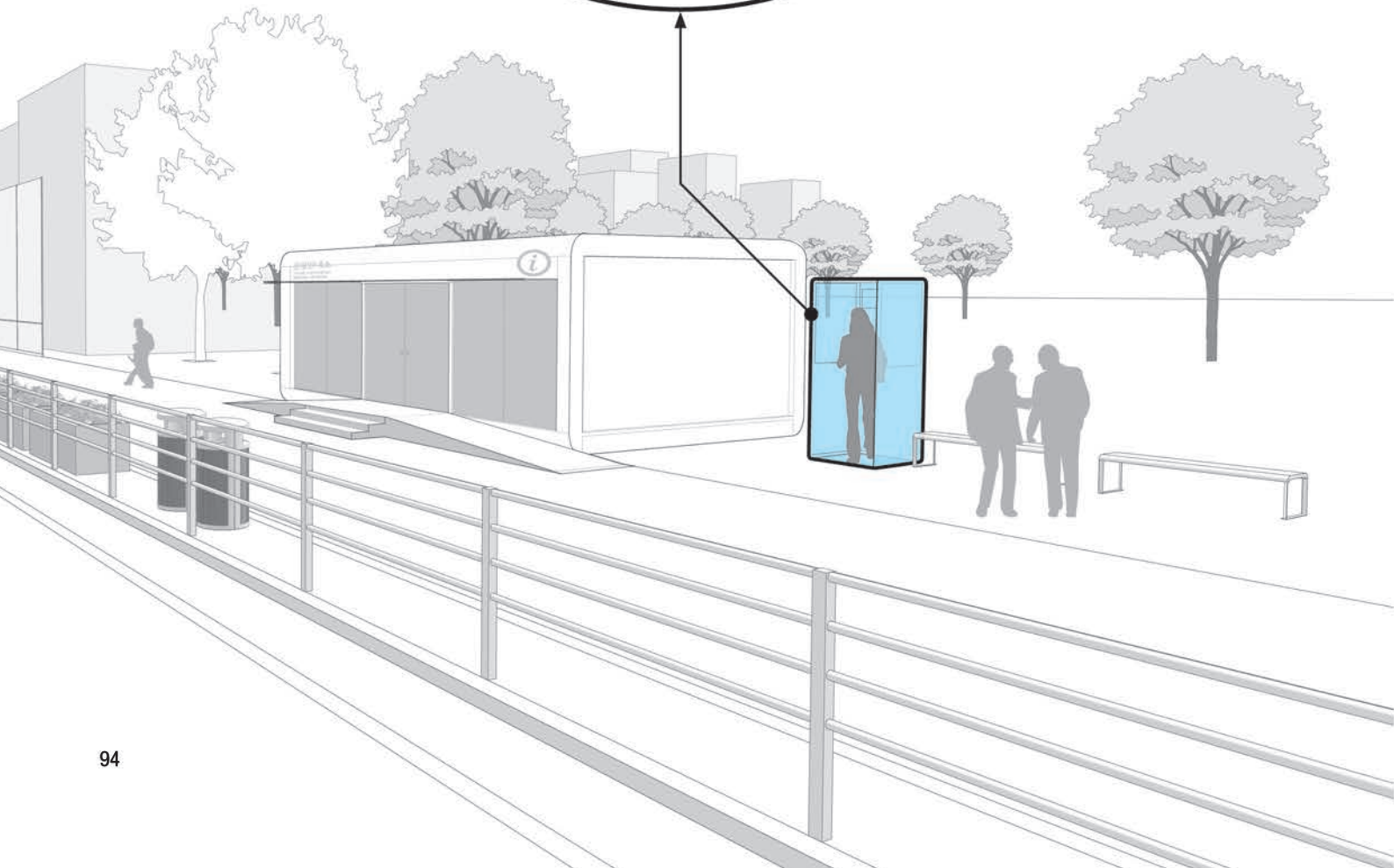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광안내소(부스형)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2.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특징을 살리도록 계획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광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 정보 이외의 정보표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B7-2 공중전화부스

심의대상



기본방향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디자인을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KT 표준형 공중전화부스〉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중전화부스의 바닥면은 보도와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장비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 공간에 설치한다.			
3. 모두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선반은 높낮이가 다른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2. 문이 닫히는 구조는 반드시 내부가 보이도록 디자인한다.			
3. 개별 구획공간은 넓이 900mm, 깊이 1.4M이상을 확보한다.			
4.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부가하지 않는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스테인리스 재료는 반드시 헤어라인 처리하여 광택을 최소화한다.			
2. 문이 닫히는 구조(방음형)는 내부가 보이는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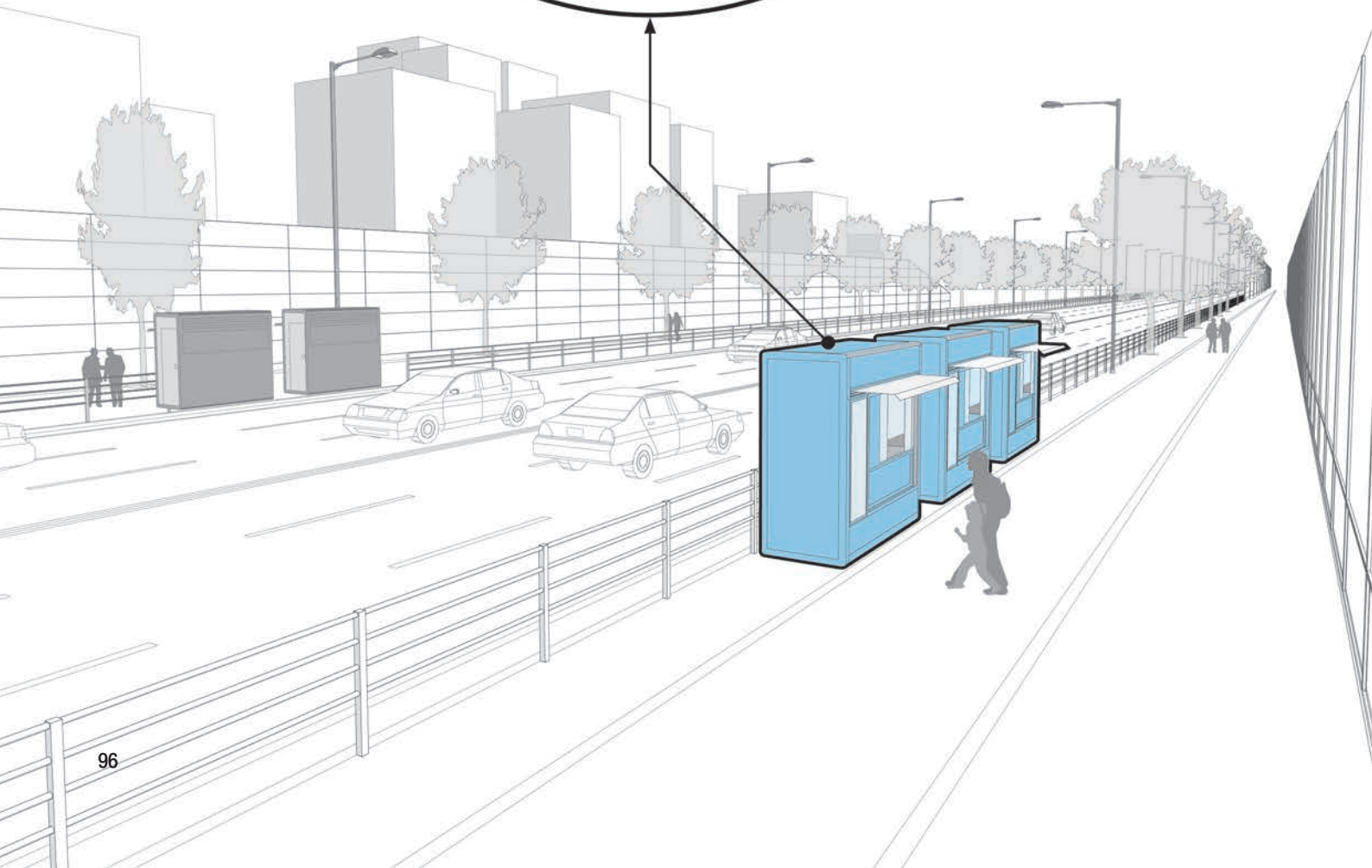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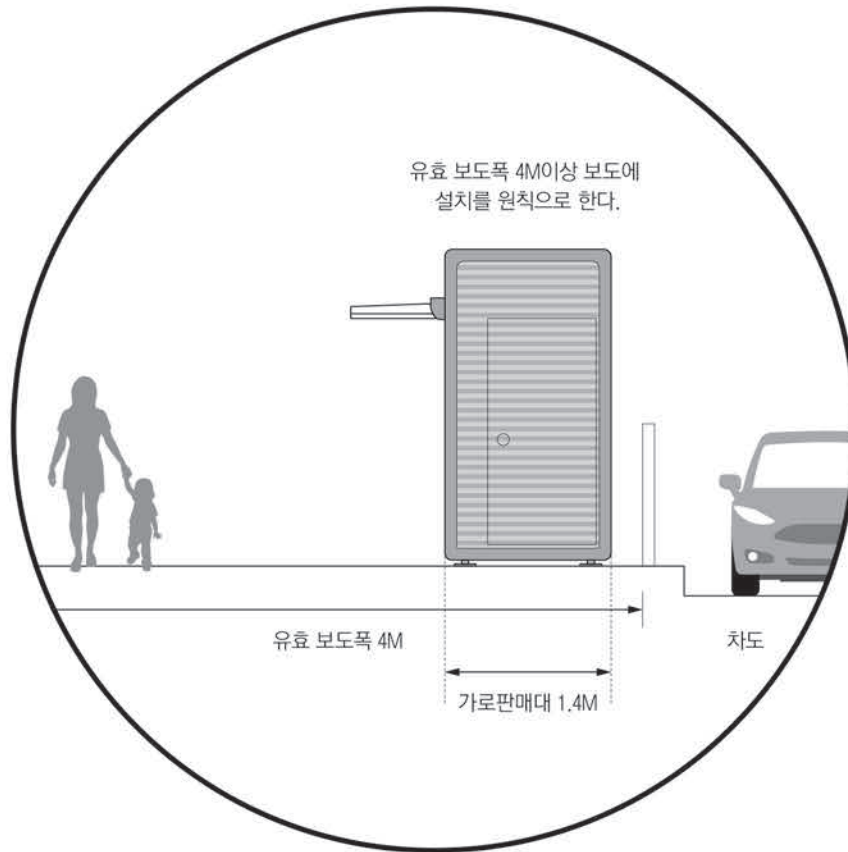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 색채의 사용을 금지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심부스, ATM 등 편의시설과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B7-3 가로판매대

심의대상



기본방향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판매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 가로판매대〉 (2007,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전기 가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방적 공간에 설치한다.			
2. 유효 보도폭 4M이상 보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동이 가능한 독립형 부스형태로 디자인한다.			
2. 판매물품들이 보행로 위에 적치되지 않는 형태를 구현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내구성과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셔터에는 본체와 동일색채로 마감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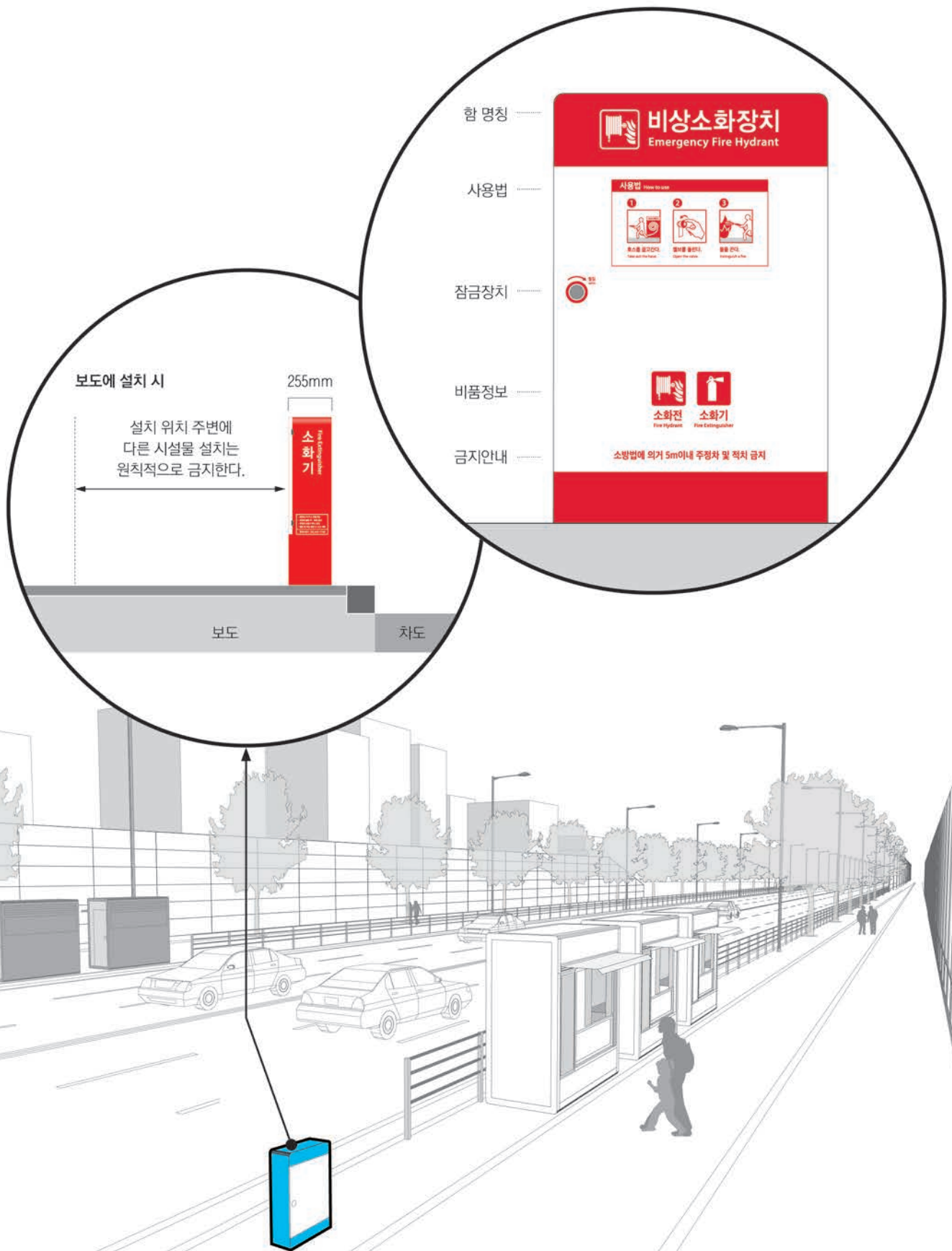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2. 셔터, 환풍기, 계량기, 냉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색채도 본체와 동일한 색채로 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허용된 광고물 또는 홍보물 이외의 부착을 금지한다.			

B8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심의대상



기본방향

시인성이 높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 소방안전시설물 및 소방안전정보 디자인〉 (2018,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설치한다.			
2. 침수 및 적설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설치 위치 주변에 다른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위급 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간결하고 기능적으로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외부 충격 및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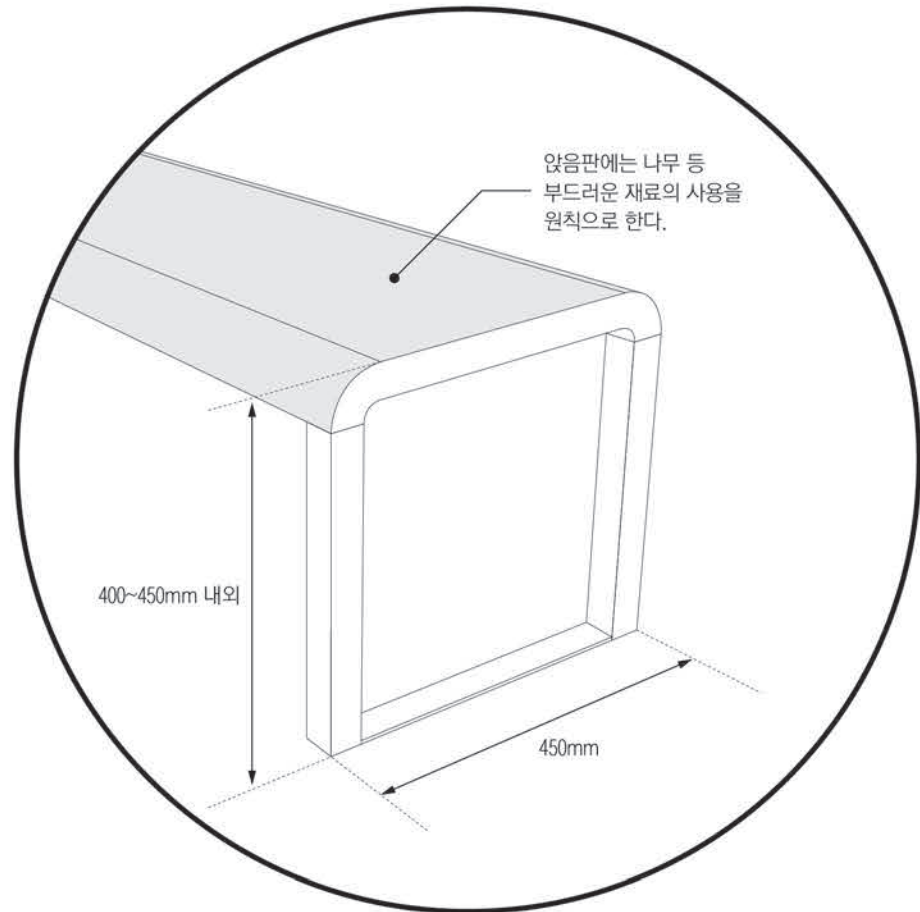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소화 시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붉은 색채를 주요색이 되도록 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필요시 소화시설을 가로막는 주정차 금지 내용을 표시한다.			

B9-1 벤치

심의대상



기본방향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적이며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벤치〉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벤치의 보도 설치 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벤치는 가로등, 보행등 등 조명과 인접하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 벤치 결합부의 볼트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벤치의 좌판 높이는 400~450mm내외로 한다. (한국인 신체표준치수 규격)			
2. 신체와 접촉하는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3. 좌판은 우천시 배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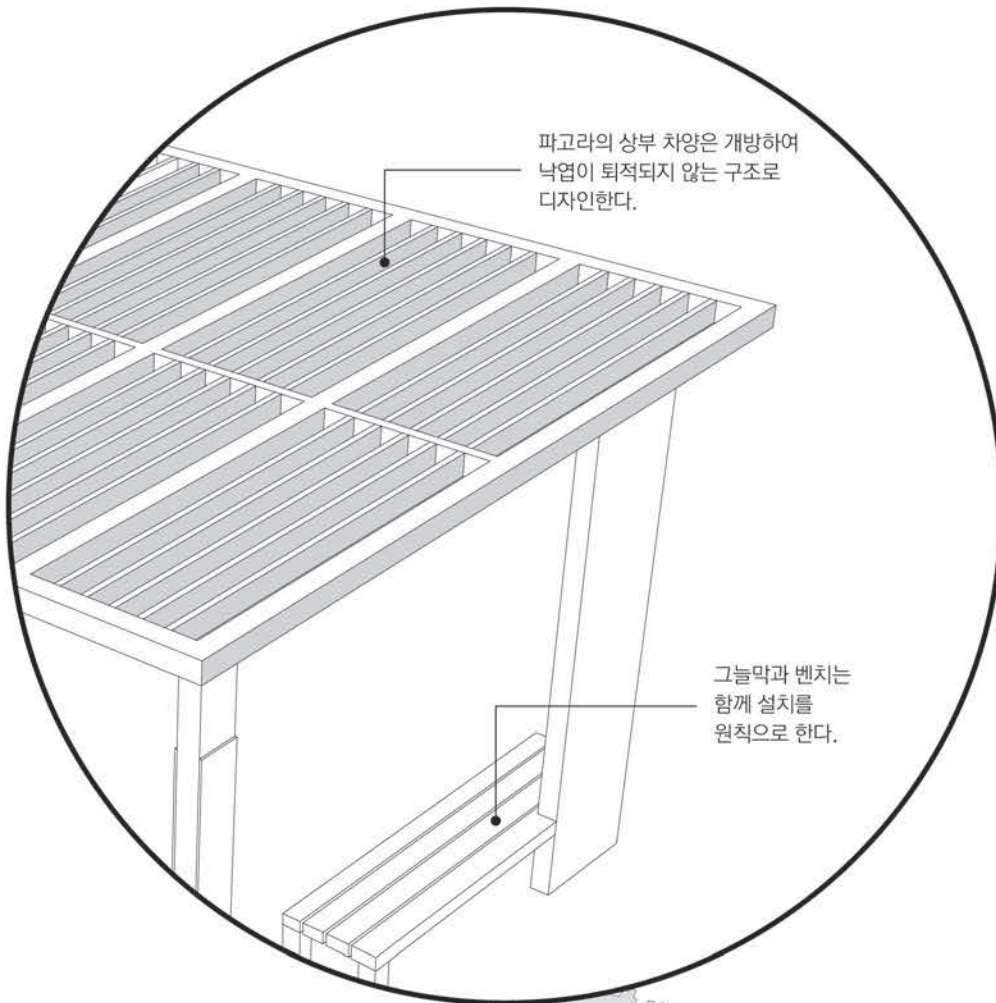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신체와 직접 접촉되는 부위에 금속재료 사용은 금지한다.			
2. 앉음판에는 나무 등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재료 자체색이 표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붉은 오일스테인 마감 등 고채도 색은 지양한다.			
3. 금속 구조부의 색채는 저채도 색을 사용한다.			

B9-2 그늘막(파고라)



기본방향

개방적이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그늘막〉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그늘막은 기둥 기초 및 체결부를 반드시 지면 아래로 매립한다.			
2. 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 그늘막은 가로등, 보행등 등 조명과 인접하여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그늘막은 기능적 형태로,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한다.			
2. 기둥은 최대한 가늘고 개방감이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3. 파고라의 상부 차양은 개방하여 낙엽이 퇴적되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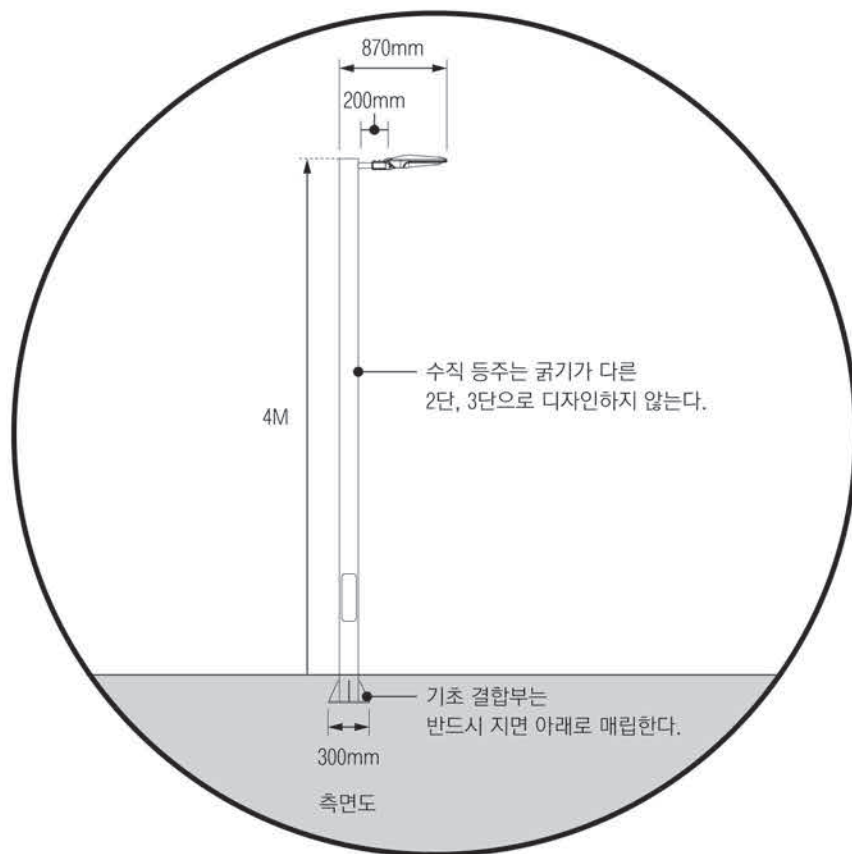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목재 사용 시 재료 자체색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최소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B10-1 보안등



기본방향

장식이나 상징물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 조명시설편〉 (2021, 국토교통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보안등〉 (20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기초 결합부는 반드시 지면 아래로 매립한다.			
2. 보안등은 동일한 디자인의 연속적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3. 비상벨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장식이나 상징물은 배제하고 기능적으로 디자인한다.			
2. 수직 등주는 굵기가 다른 2단, 3단으로 디자인하지 않는다.			
3. 보안등의 암대는 등주와 가까운 형태의 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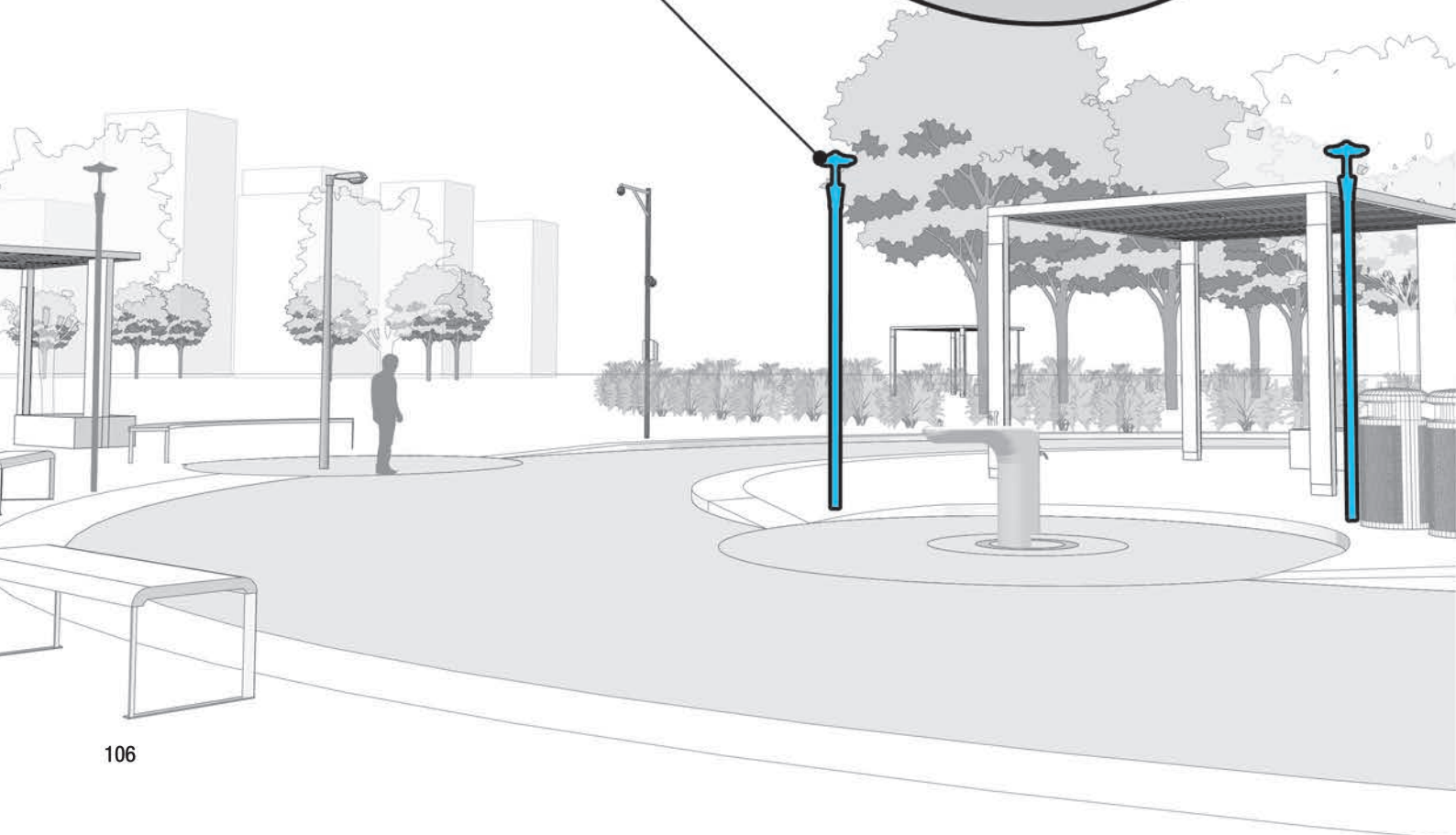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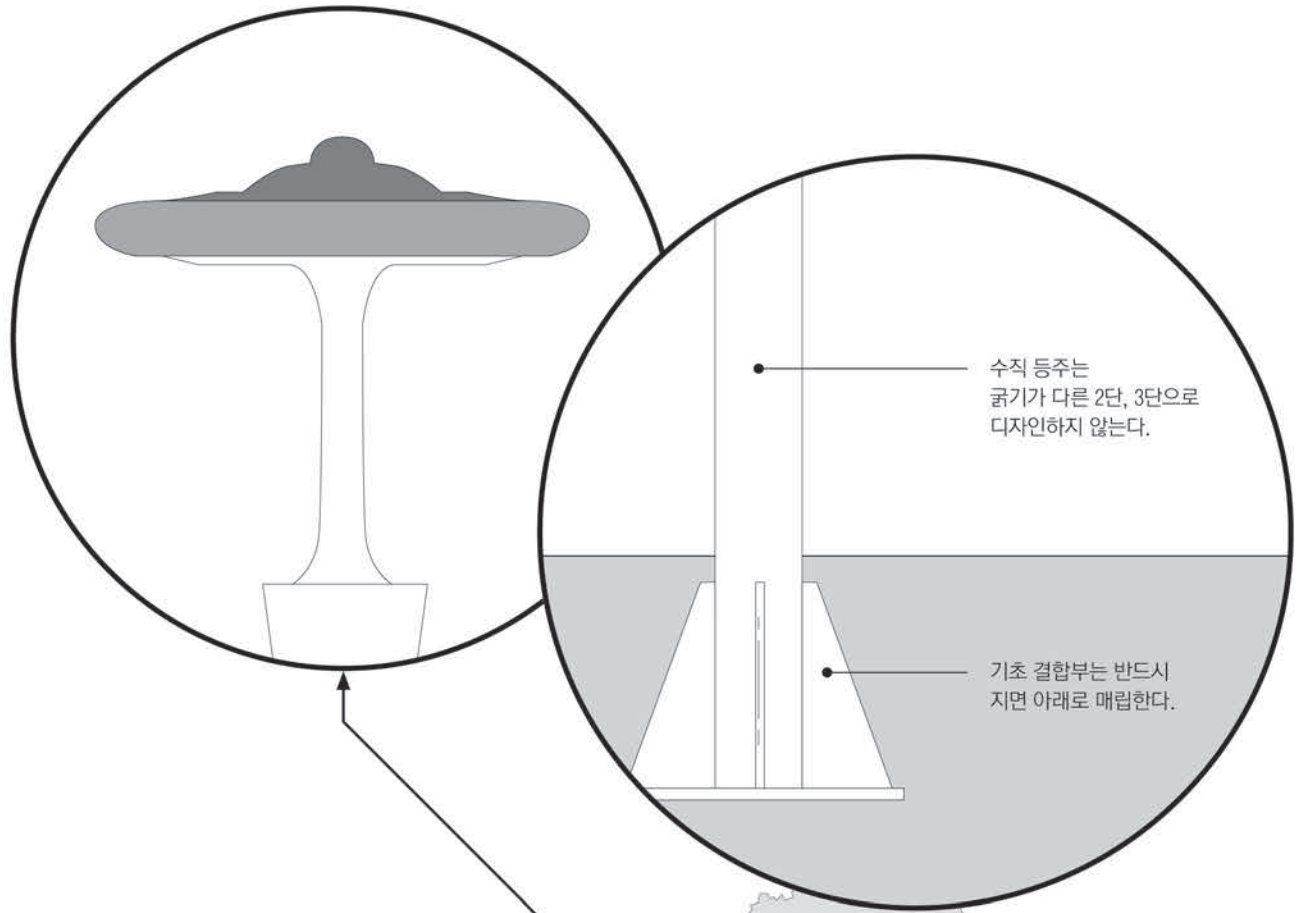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2. 불법 부착물 부착 방지 도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B10-2 공원등



기본방향

기능적이고 간결하며 공원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제2편 조명시설편〉 (2021, 국토교통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공원등〉 (20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LED조명 주요부품 표준화 지침〉 (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기초 결합부는 반드시 지면 아래로 매립한다.			
2. 공원등은 공원 내 디자인의 일관성을 갖도록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원등은 장식이나 상징물은 배제하고 기능적으로 디자인한다.			
2. 공원등의 수직 등주는 굽기가 다른 2단, 3단으로 디자인하지 않는다.			
3. 공원등은 돌출 암대를 가지지 않는 형태의 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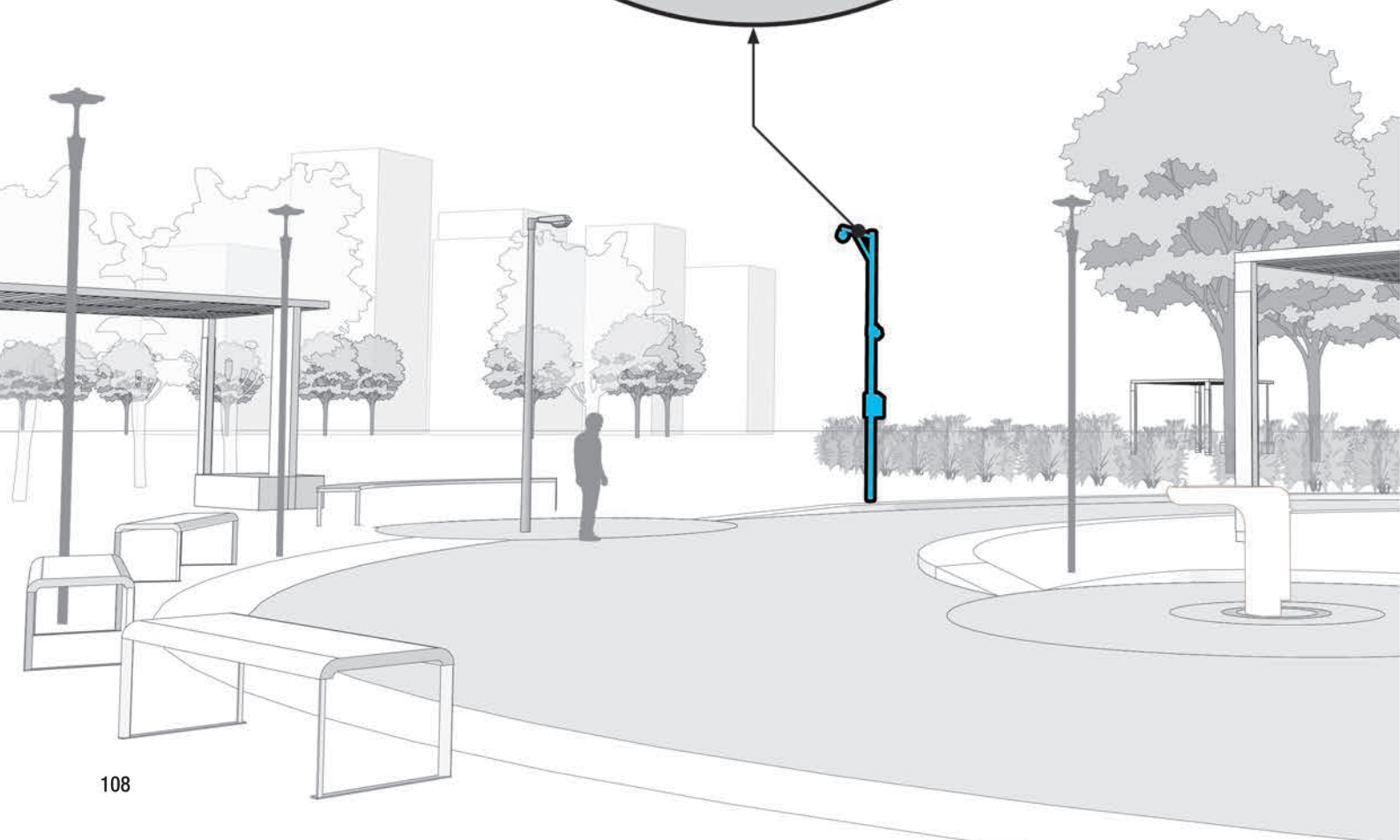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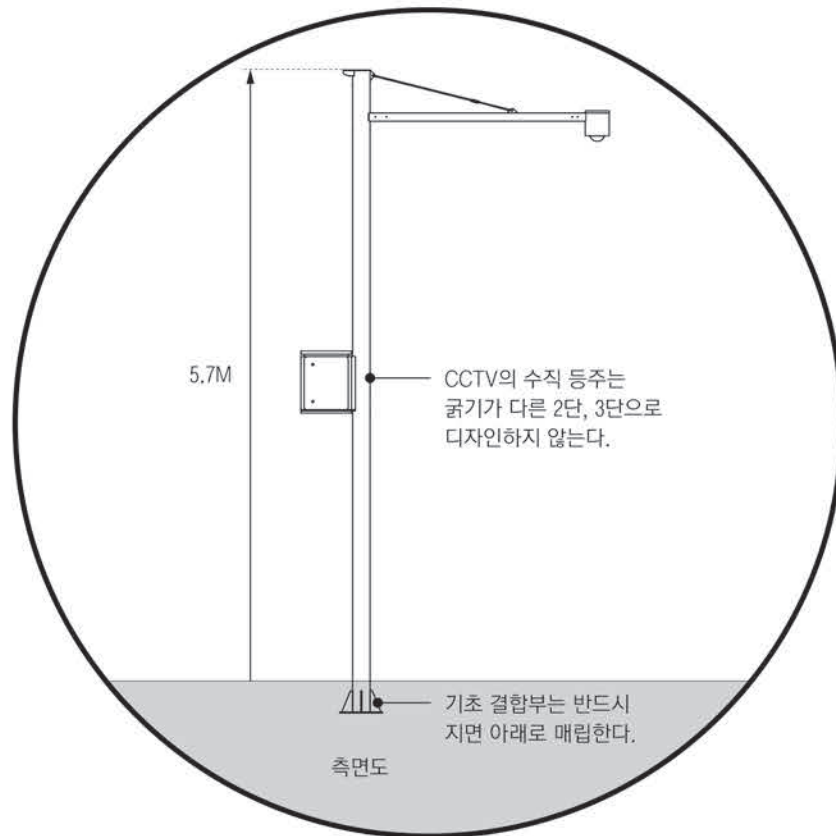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2. 목재 등 친환경재료의 복합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저채도, 저명도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B10-3 CCTV(CCTV지주)

심의대상



기본방향

통합디자인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형 CCTV 디자인 지침〉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CCTV(지주)〉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독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다른 시설물과 통합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초 결합부는 반드시 지면 아래로 매립한다.			
3. 야간감시를 위한 조명시설과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2. 비상벨, 보안등과 통합디자인을 적용한다.			
3. CCTV의 수직 등주는 굵기가 다른 2단, 3단으로 디자인하지 않는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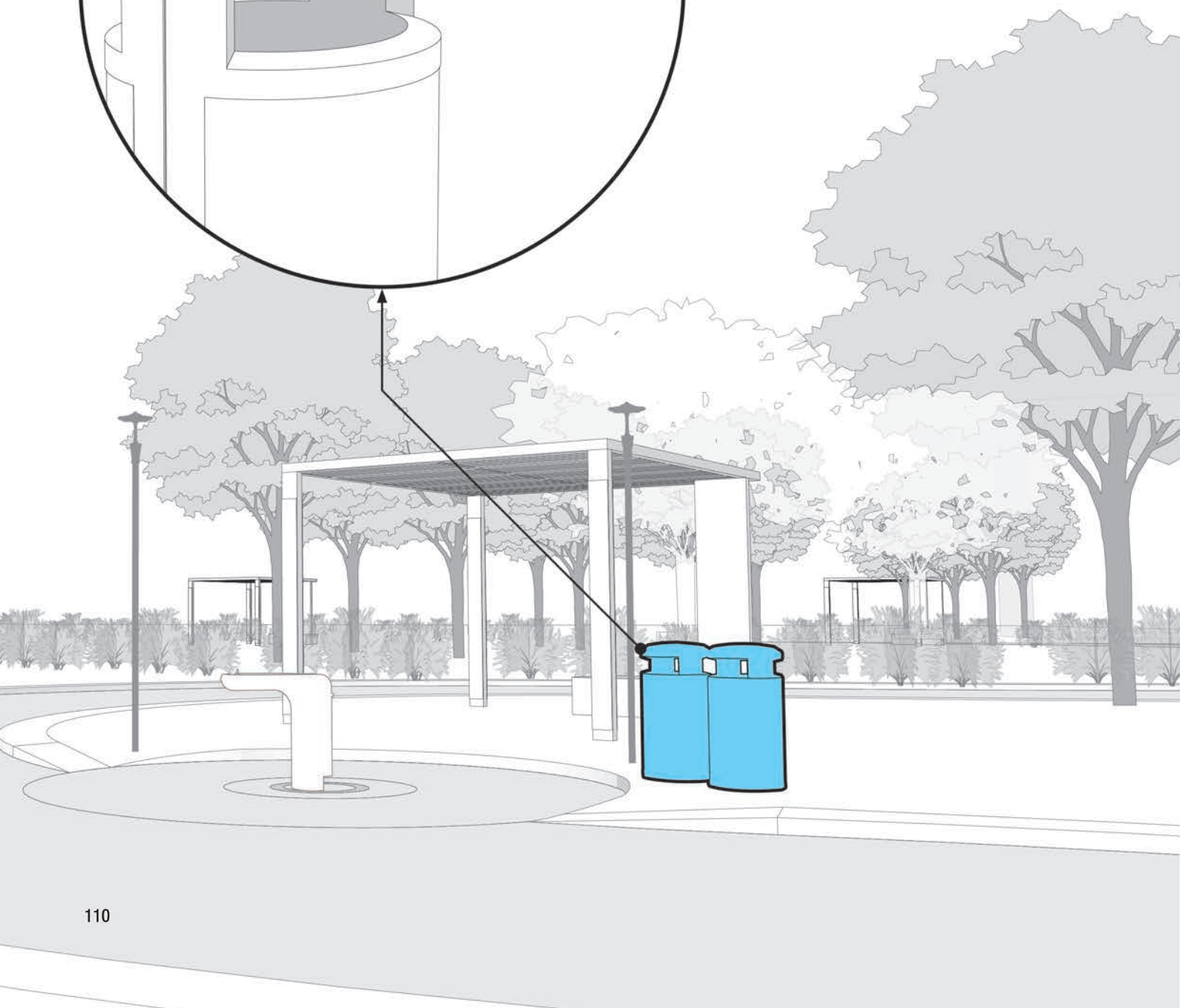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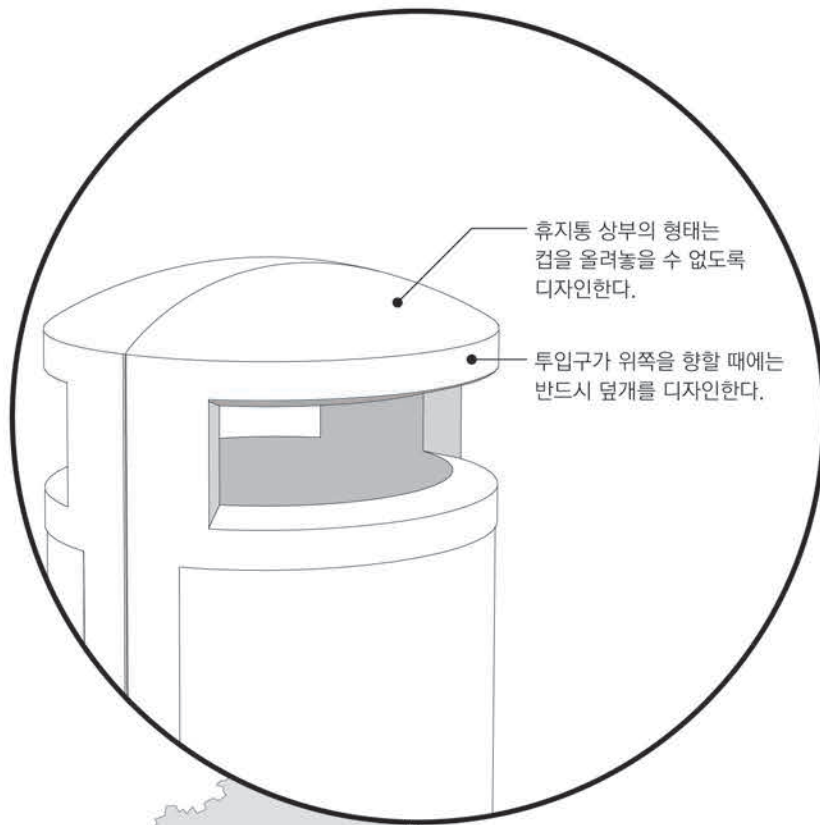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저채도, 저명도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심볼 및 로고, 캐릭터 등의 그래픽을 부가하지 않는다.			

B11-1 휴지통

심의대상



기본방향

쓰레기 적치 행위를 방지하고 위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휴지통〉 (202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휴게시설물 인접설치 시 900m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			
2. 금연구역에는 재떨이 기능을 배제하여 설치한다.			
3. 바닥 마감처리부는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휴지통 상부의 형태는 컵을 올려놓을 수 없도록 디자인한다.			
2. 투입구가 위쪽을 향할 때에는 반드시 덮개를 디자인한다.			
3.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고광택 재료의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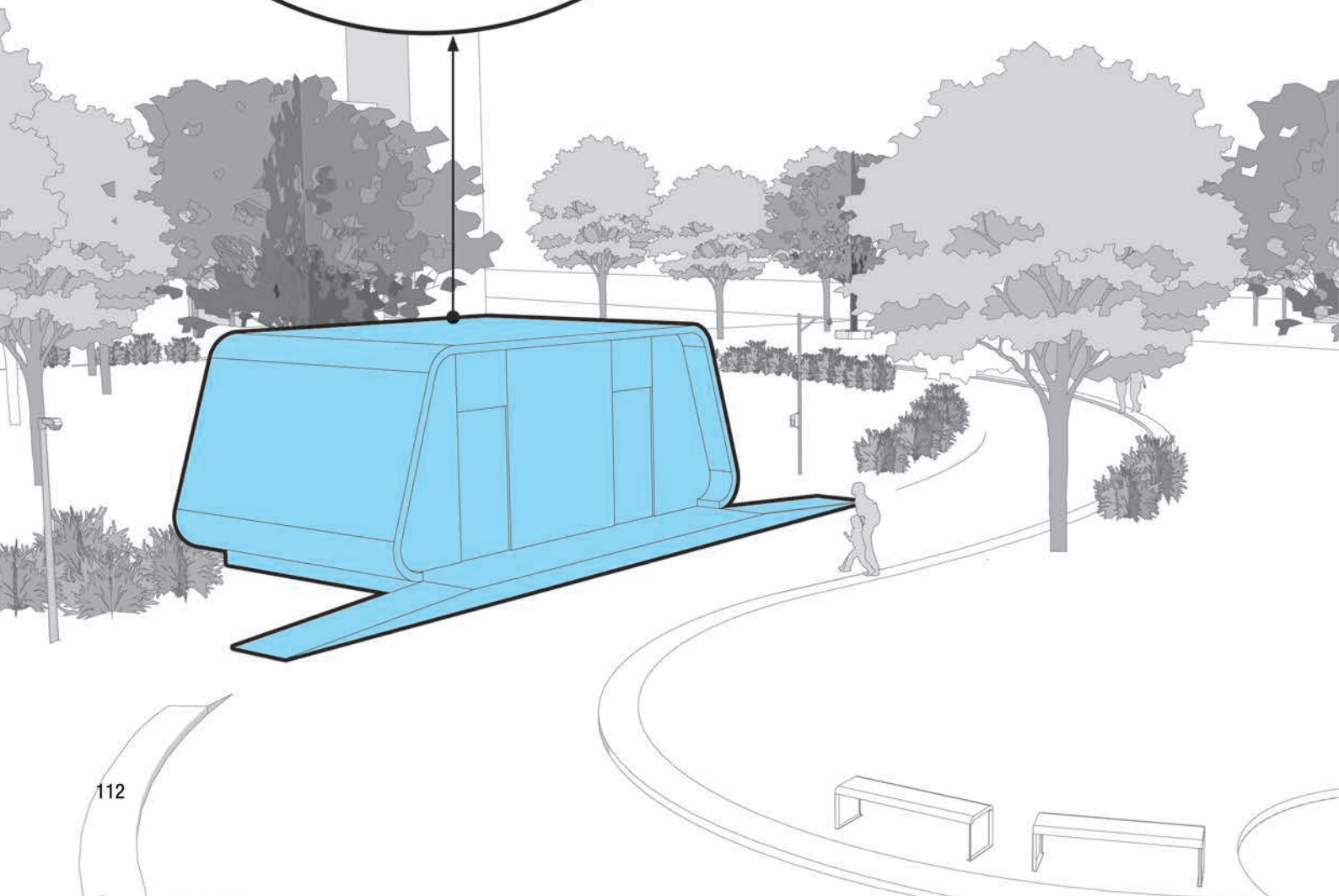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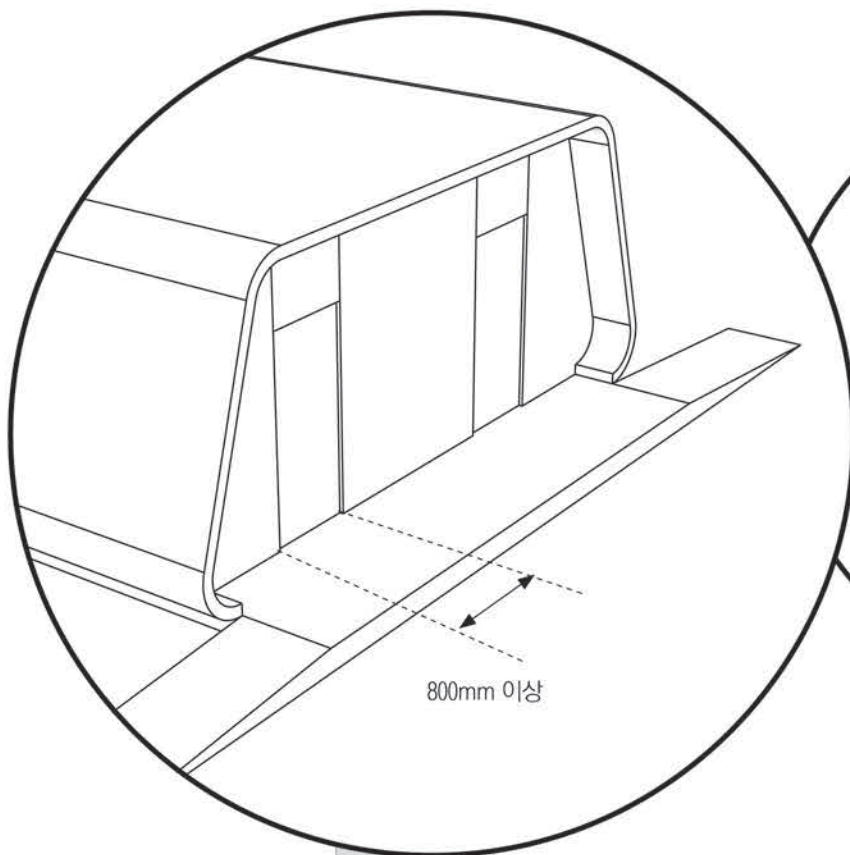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외부 몸체와 뚜껑부는 동일 색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분리수거 표기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B11-2 공중화장실

심의대상



기본방향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보건복지부)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유효 보도폭 4M이상 보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진입부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3. CCTV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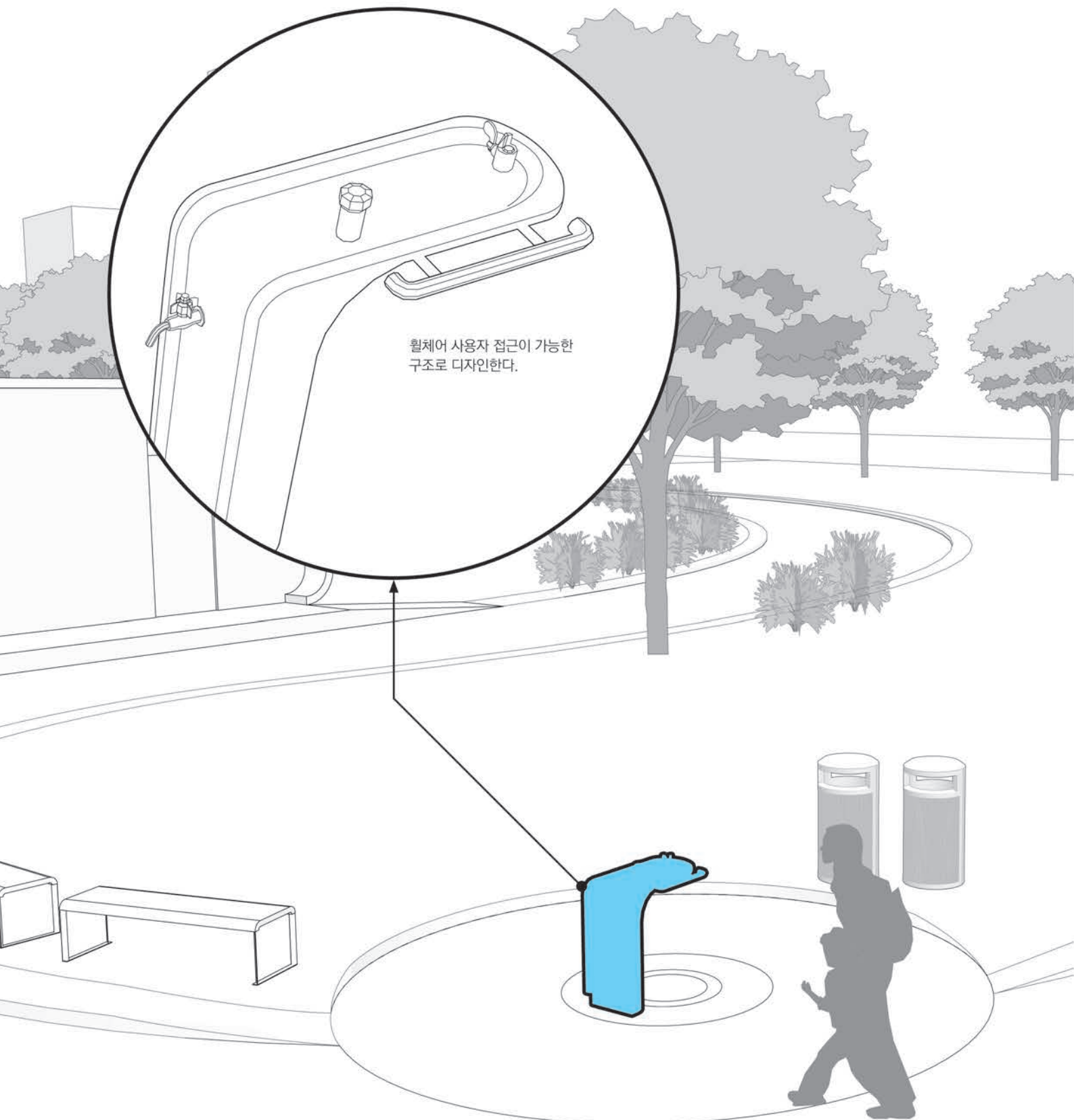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출입구 폭은 최소 800mm로 하고, 1M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2. 출입구에 턱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3.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실내재료는 내습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2.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금지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화장실 픽토그램은 서울시 표준형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B11-3 음수대



기본방향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음수대〉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과 구분되는 음수대 배수면을 설정하여 설치한다.			
2. 주변 보도와 음수대 배수면은 무단차로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간결하고 기능적 형태로 디자인한다.			
2.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3.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는 둥근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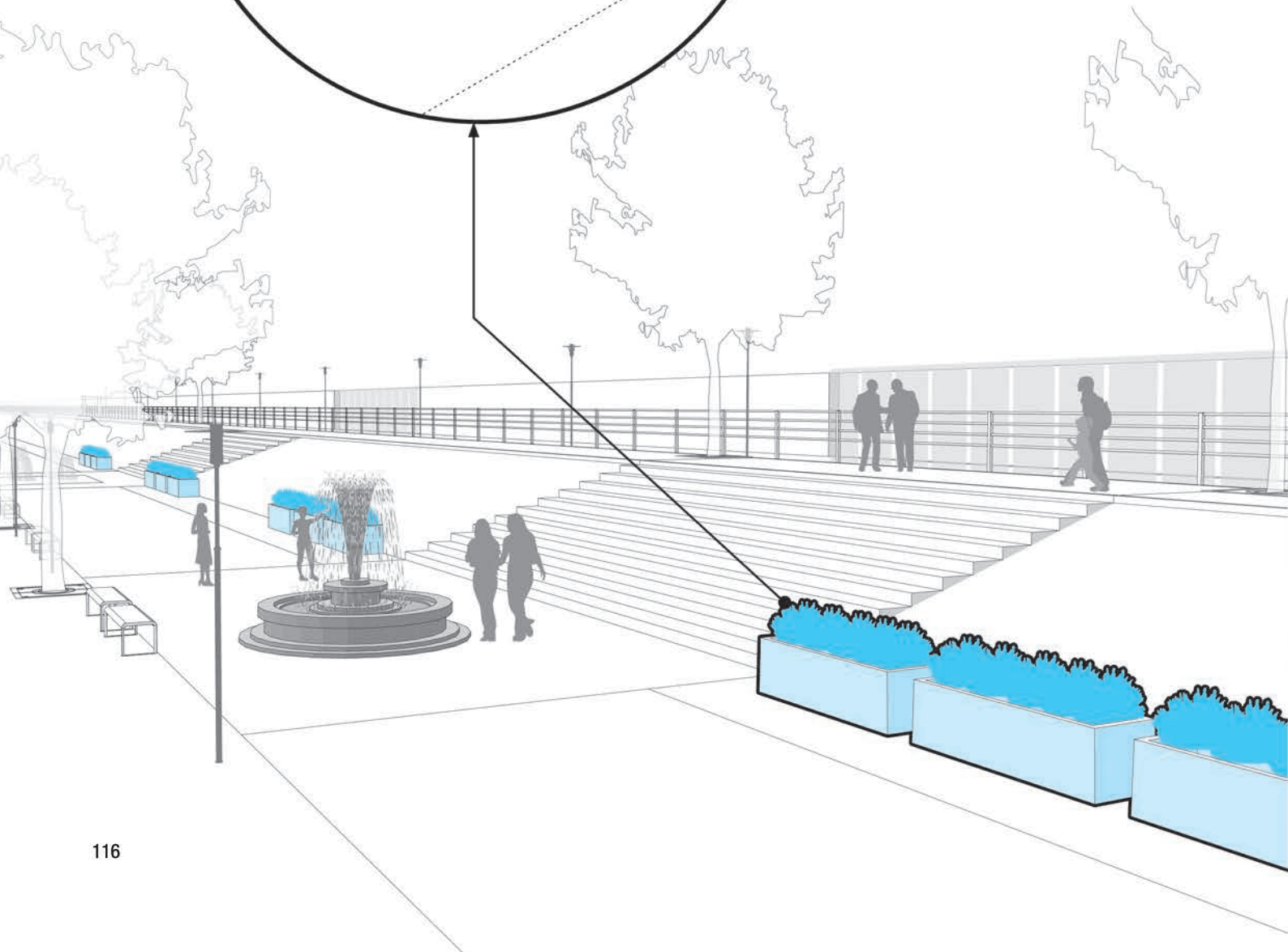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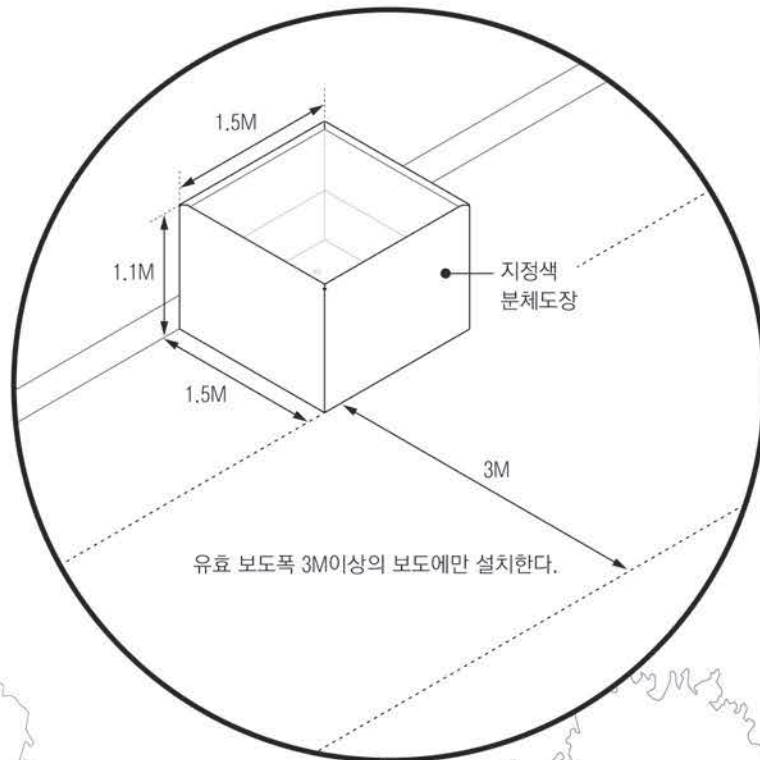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배수면 바닥은 반드시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2.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3. 물받이부는 석재 또는 스테인리스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재료 자체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B12-1 가로수 화분대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수목의 성장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표2〉 (2021,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 : 가로화분대〉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유효 보도폭 3M이상의 보도에만 설치한다.			
2. 시설물 구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로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로화분대 제품 자체보다 초화류나 관목 등이 돋보이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2. 관목의 생육 최소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소관목 450mm, 대관목 600mm)			
3. 가로수 보호대 등과 통합디자인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4. 바닥 포장모듈과 통합적인 형태 개발을 권장한다.			
5.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를 지양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재, 석재, 목재 등의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재의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통에 스테인리스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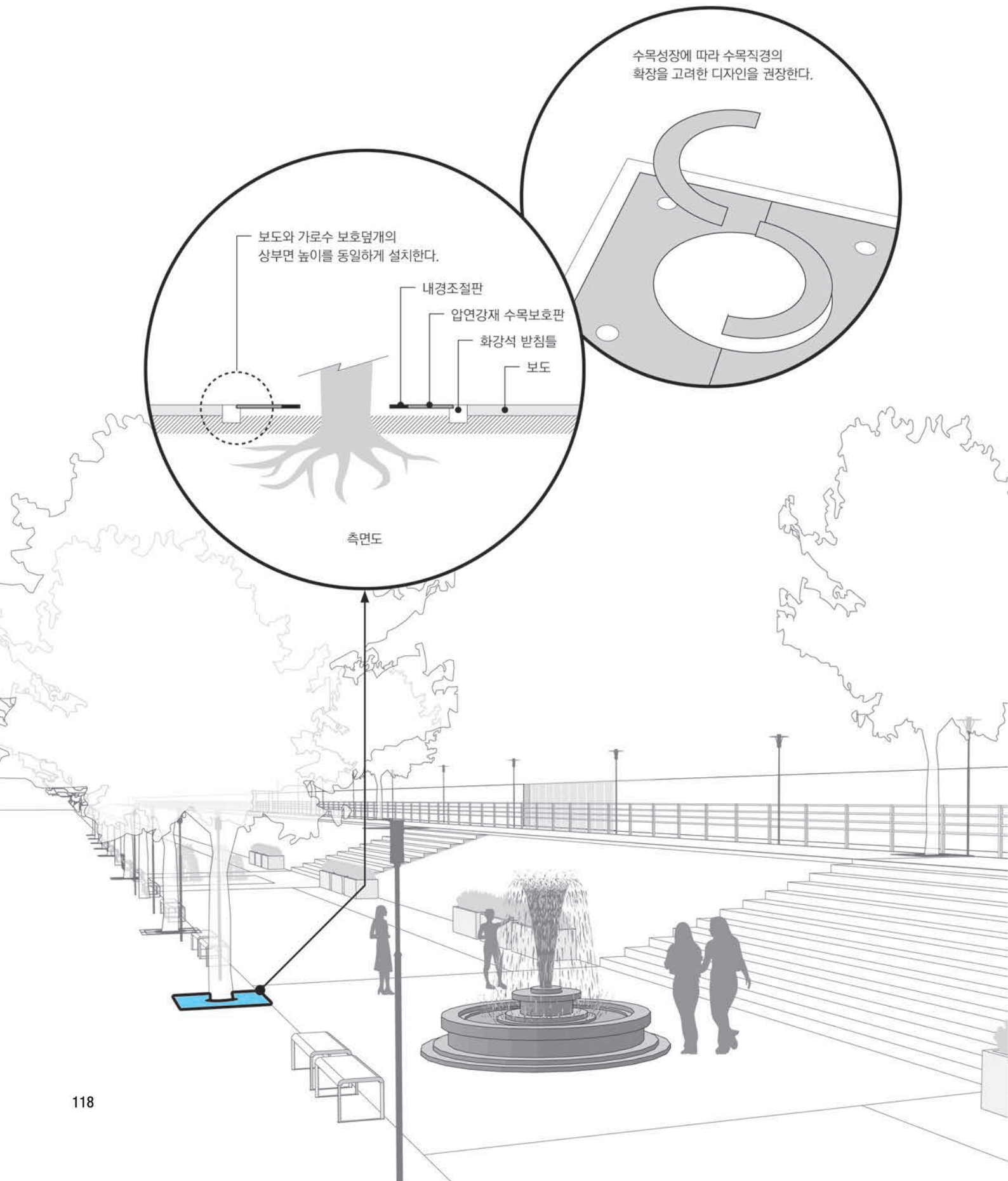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원색 및 고채도 색채 사용을 금지한다.			

그래픽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심볼마크 및 로고, 슬로건 등의 표시는 금지한다.			

B12-2 가로수 보호덮개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도 및 주변 식재환경과 조화롭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표2〉 (2021, 서울특별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매뉴얼_가로수보호덮개〉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와 가로수 보호덮개의 상부면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한다.			
2. 보도와 가로수 보호덮개의 접합부는 틈새 없이 정교하게 처리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구두 힐이나 지팡이가 빠져 끼이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2. 수목의 원활한 뿌리 호흡을 위해 수목보호대 아래 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디자인한다.			
3. 수목성장에 따라 수목직경의 확장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4. 특화가로 등에서 조명등을 매입하여 사용 시 통합디자인을 지향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2.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3. 미끄럽지 않도록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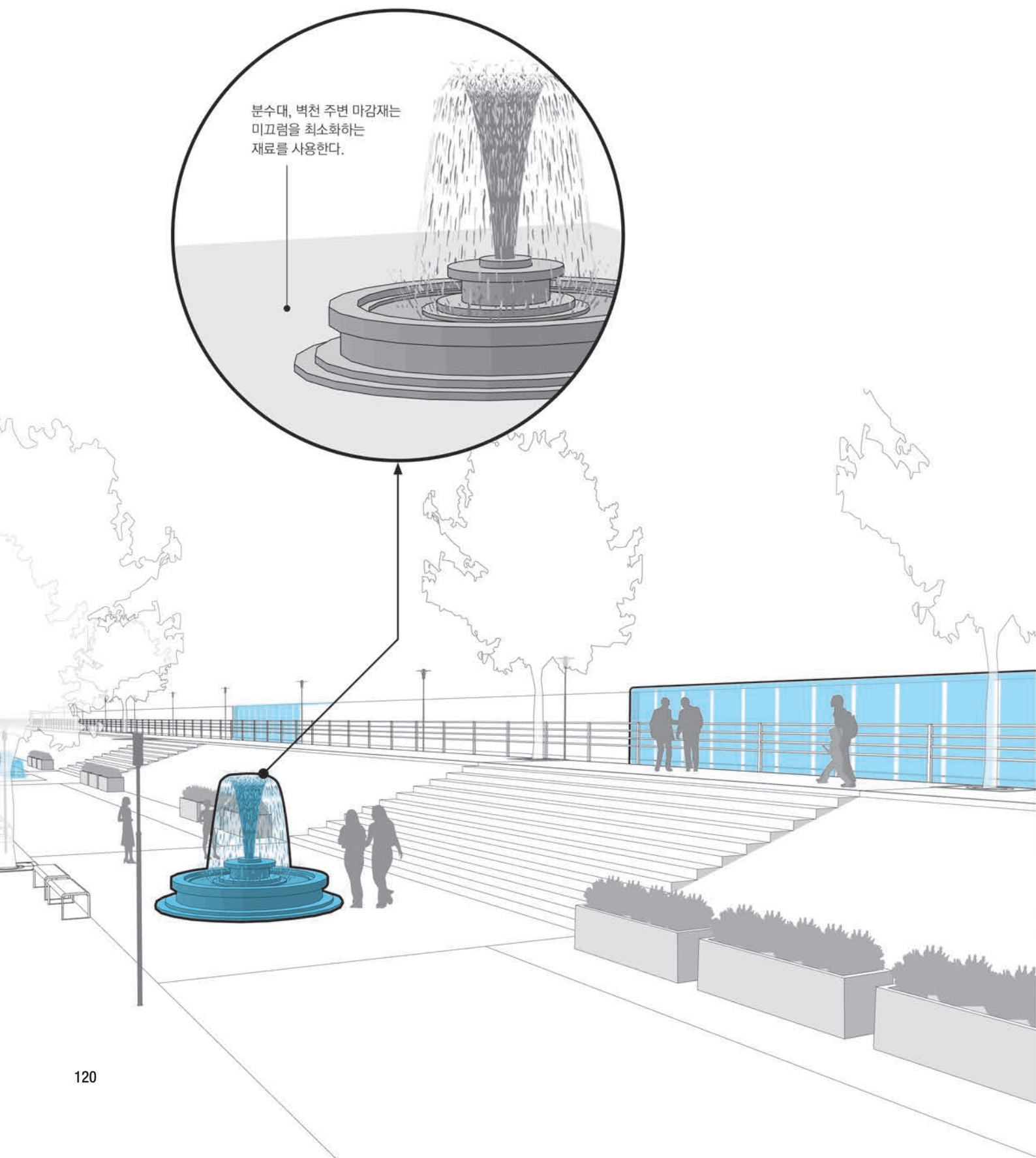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단일 무채색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 포장 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심볼, 로고, 슬로건 등의 표기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B13-1 분수대, 벽천

심의대상



기본방향

접근의 용이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2019,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동적활동을 유도하는 수경시설은 평탄한 지형에 설치한다.			
2. 옹벽이나 레벨 차이가 있는 곳에는 벽천 등의 활용을 권장한다.			
3. 수경시설이 보행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휴게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어린이를 시야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주변 보도 포장재와 단차 및 틈새가 없도록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미작동 기간에도 자체적으로 조형적 아름다움이 있도록 디자인한다.			
2. 노즐과 같은 설비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3. 물의 분출형태에 변화가 있도록 디자인한다.			
4. 바닥분수 설치 시 어린이의 발이 끼이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디자인한다.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분수대, 벽천 주변 마감재는 미끄럼을 최소화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물이 흐르는 부분의 재료는 다양한 청각효과를 고려하여 마감처리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연결감 있는 통합적 색채로 디자인한다.			
2. 야간조명의 색채는 원색 조명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래픽 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심볼, 로고, 슬로건 등의 표기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음량이 큰 음악소리 출력 기능 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Part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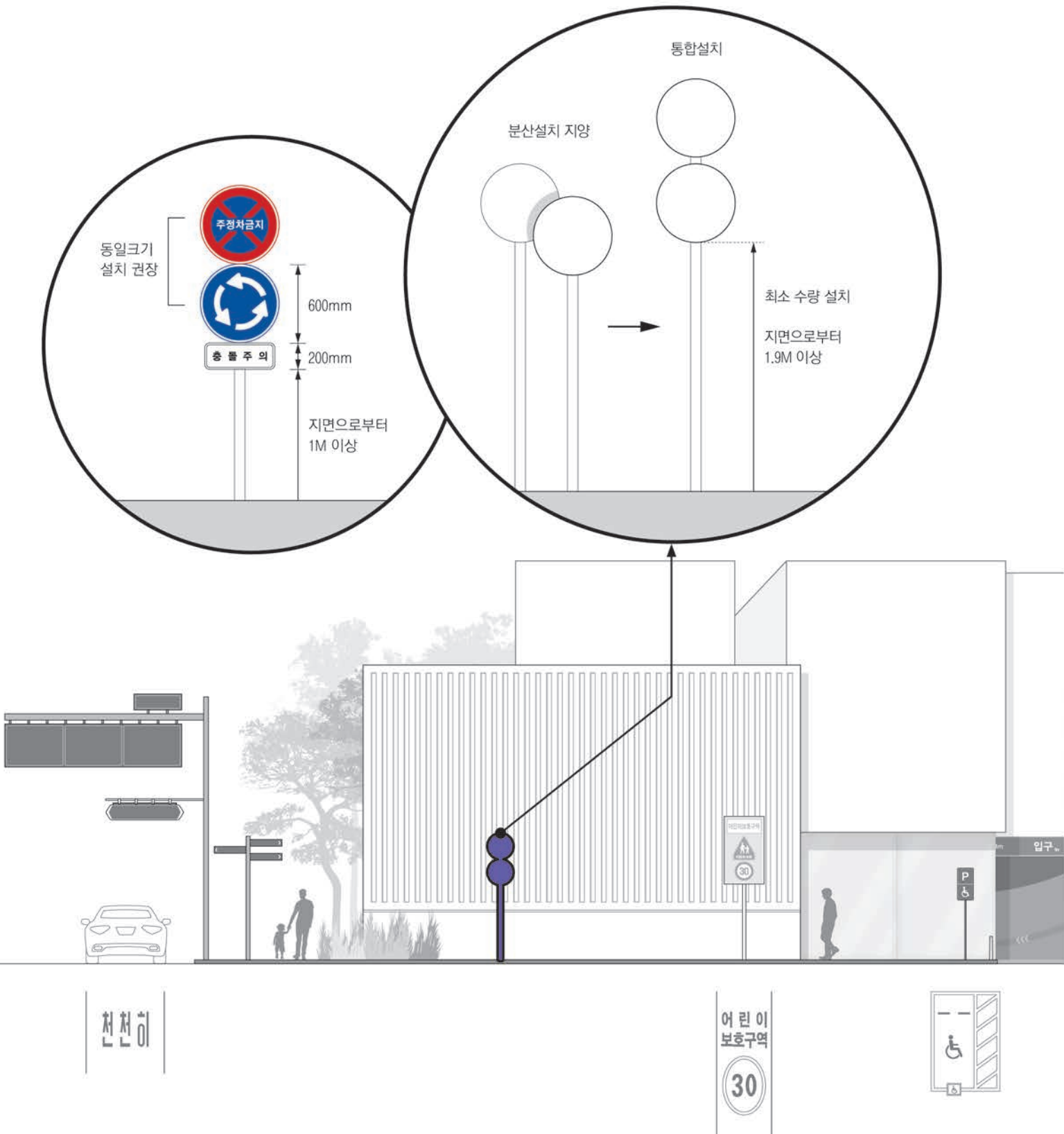
Public Visual Media Checklist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Part C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C1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01 교통관련 안내표지	C1-1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124
			C1-2 노면 표지	126
			C1-3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128
			C1-4 공공기관, 시설안내표지 심의대상	130
			C1-5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 심의대상	132
			C1-6 주차안내 : 주차장안내, 표지 등 심의대상	134
			C1-7 부설 주차장 진출입 표지 심의대상	136
			C1-8 신호기 : 차량용, 보행 신호등	138
			C1-9 버스정류장 표지, 안내도	140
			C1-10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심의대상	142
			C1-11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심의대상	144
			C1-12 지하철 안내표지 심의대상	146
			C1-13 지하철노선, 역사 안내도 심의대상	148
			C1-14 택시 외관 심의대상	150
			C1-15 택시 정류장 표지 심의대상	152
			C1-16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심의대상	154
C2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02 보행관련 시각매체	C2-1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156
			C2-2 무단횡단 금지표지	158
			C2-3 도로명판	160
			C2-4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162
			C2-5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164
			C2-6 문화재설명표지판, 기념표석 심의대상	166
			C2-7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심의대상	168
			C2-8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심의대상	170
			C2-9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노면표지	172
			C2-10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174
C3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03 안전관련 시각매체	C3-1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 안내표지	176
			C3-2 하천 안전안내표지 심의대상	178
			C3-3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180
			C3-4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182
			C3-5 공사장 안내표지	184
			C3-6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186
C4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04 영상관련 시각매체	C4-1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심의대상	188
			C4-2 교통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190
			C4-3 버스정보 전광판	192
			C4-4 디지털 영상매체	194
			C4-5 옥외전광판	196
C5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05 실내사인	C5 실내사인 ①	198
			C5 실내사인 ②	200
C6		06 실외사인	C6 실외사인	202

C1-1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단속 표지



기본방향

운전자가 도로의 안내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2021,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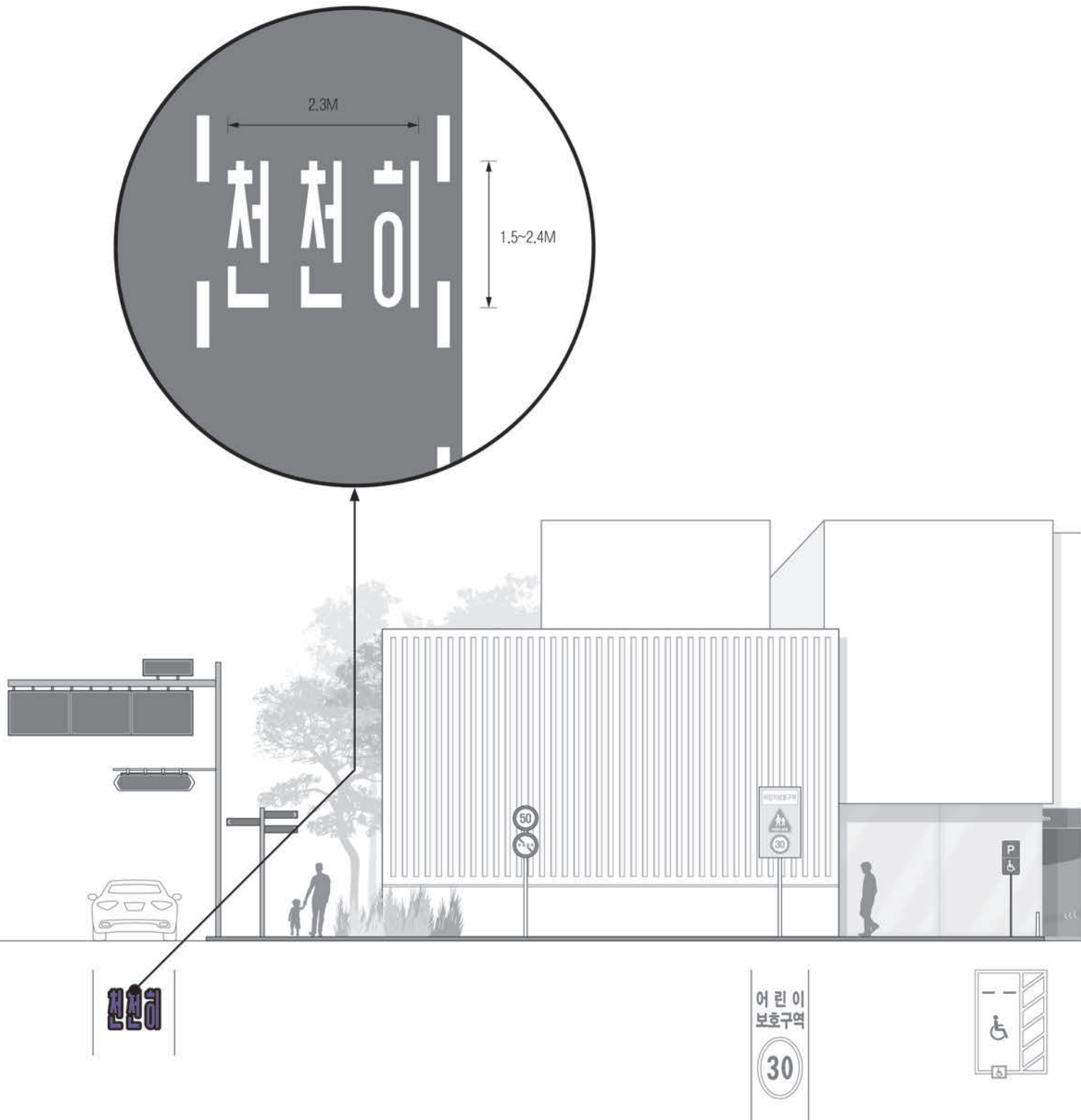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로수 및 다른 표지와 의 일정간격을 유지한다.			
2. 중복 설치된 표지는 철거하고, 최소 수량을 적정위치에 설치한다.			
3.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표지판 후면의 지주 결합부위 및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2. 단속 등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3.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C1-2 노면 표지



기본방향

보는 각도를 고려하여 명확한 교통안내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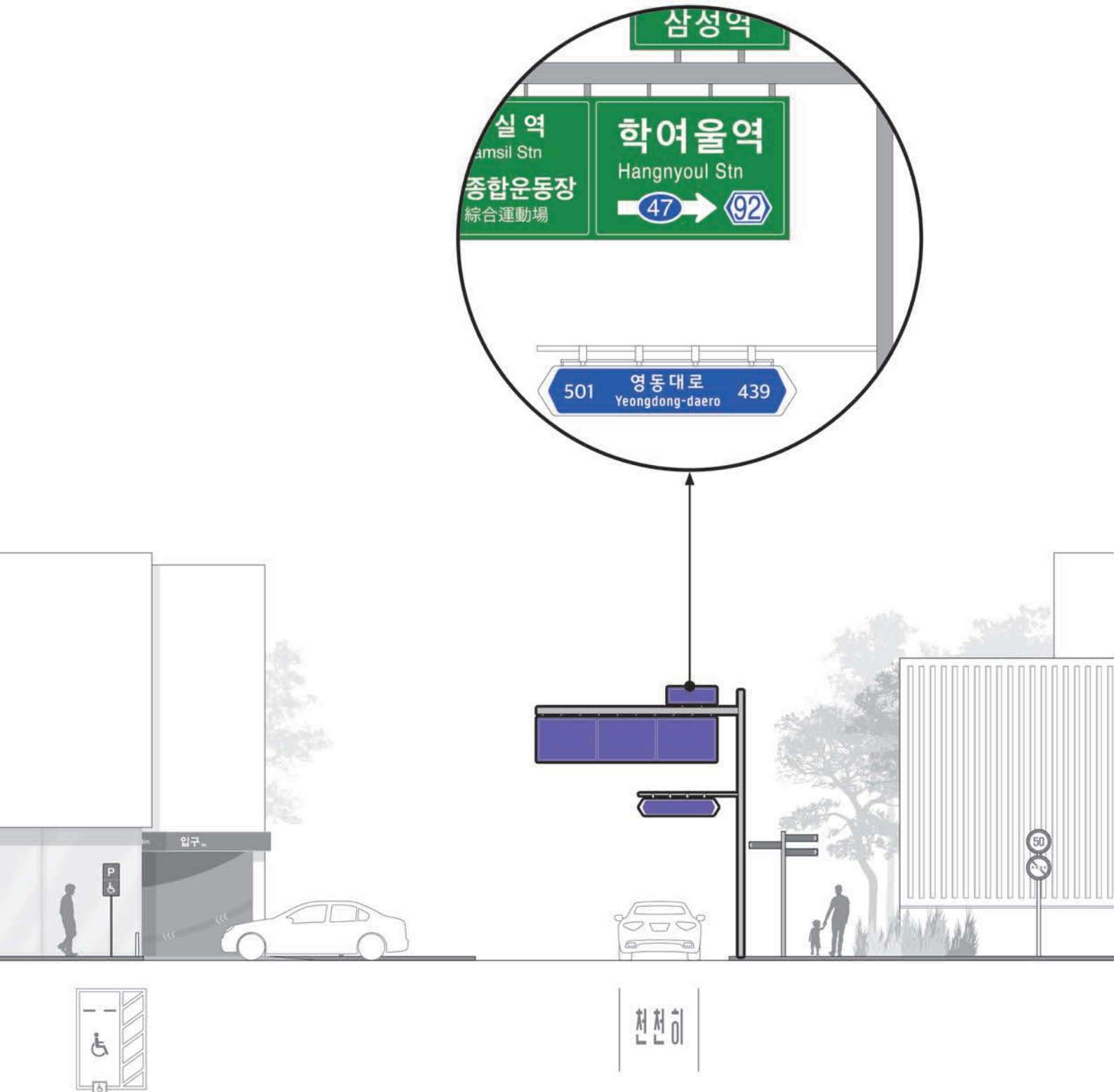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바닥면과 노면표지가 대비를 이루도록 도로면에 여유를 두고 표기한다.			
2. 숫자의 너비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차로폭의 1/3 이하로 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는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2. 원근법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C1-3 이정표, 방향, 방향예고 표지



기본방향

표기요소를 통일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방향에 맞게 표기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표지규칙 : 별표 3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2019, 국토교통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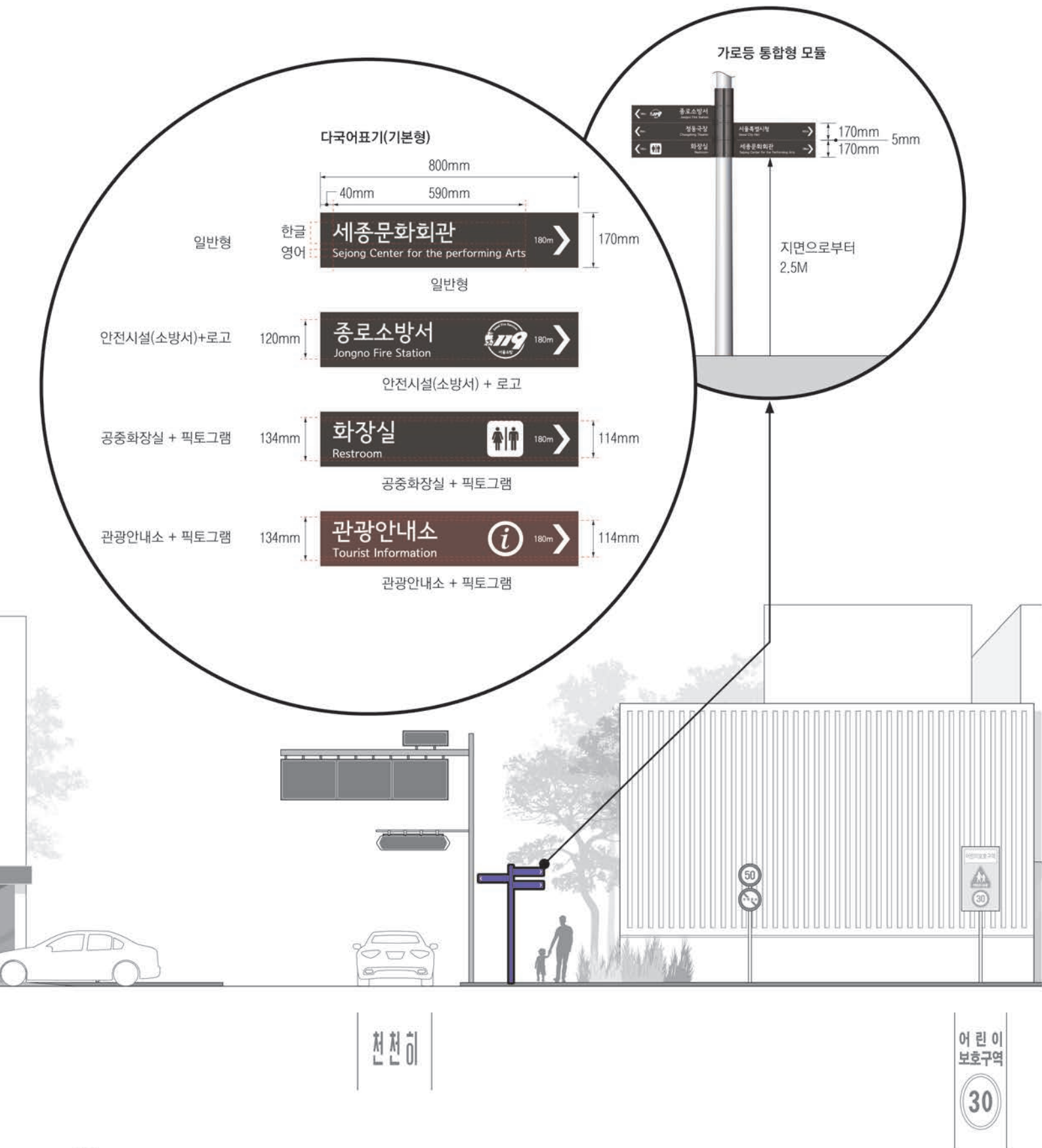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중복 설치는 지양한다.			
2.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도로명 안내 체계를 적용한다.			
2. 한글과 영문의 병기를 권장한다.			
3.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의 영문 병기는 지양한다.			
4. 바탕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C1-4 공공기관, 시설안내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정보표기의 일관성을 갖도록 서울색과 서울서체의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Ⅸ : 공공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규정〉 (2015,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시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 표준형 시설안내표지판 디자인〉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각종 기관안내표지는 통합하여 설치한다.			
2. 시설안내표지는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 공공기관 등 중요시설의 안내표지는 표준형 시설안내표지판을 사용한다.			
4. 시설안내판 설치 시 '가로등 통합형'을 권장한다.			
5. 통합 설치할 지주시설물(가로등 등)이 없는 경우,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전용지주형'의 설치를 권장한다.			
6.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 지주시설물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7. 표기할 정보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의 크기를 최소화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픽토그램은 서울시 표준을 적용하고, 서울시 표준에 없는 경우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 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3.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다국어를 병기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 명에는 영문 병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장소 표기시 한글은 10자 이내로 요약하며, 방문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5. 보행자용 안내표지의 경우 글자 크기는 보행자가 10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한다.			
6. 거리표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M)를 사용하되, 1,000M 이상의 경우 킬로미터(km)로 표기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정표지, 방향표지, 방향예고표지 등 다른 도로안내표지에 사용되도록 규정된 색채는 지양한다.			
2. 안내표지 바탕색은 기와진회색을, 문자와 기호에는 흰색을 사용한다.			

C1-5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참 조

〈공공안내 그림표지 표준형 매뉴얼 : 픽토그램〉 (2016, 서울특별시)
 〈비상벨 표준형디자인 제작 및 확산계획 : 비상벨〉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어린이보호구역 시점부와 주출입구, 주횡단보도 전방에 노면표시를 한다.			
2. 차량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안전주의 및 불법주차금지 표지는 통합 설치한다.			
4. 비상벨 및 방향안내표지는 기존 지주에 통합 설치한다.			
5. 안내표지 설치로 보행 시야를 막지 않는다.			
6. 학교 통학로 내 사각지역에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기법을 적용한다.			
7. 야간에도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명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30km 제한속도를 표기한다.			
2. 안내표지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속도관련 등의 내용을 표기한다.			
3. 하나의 표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표기한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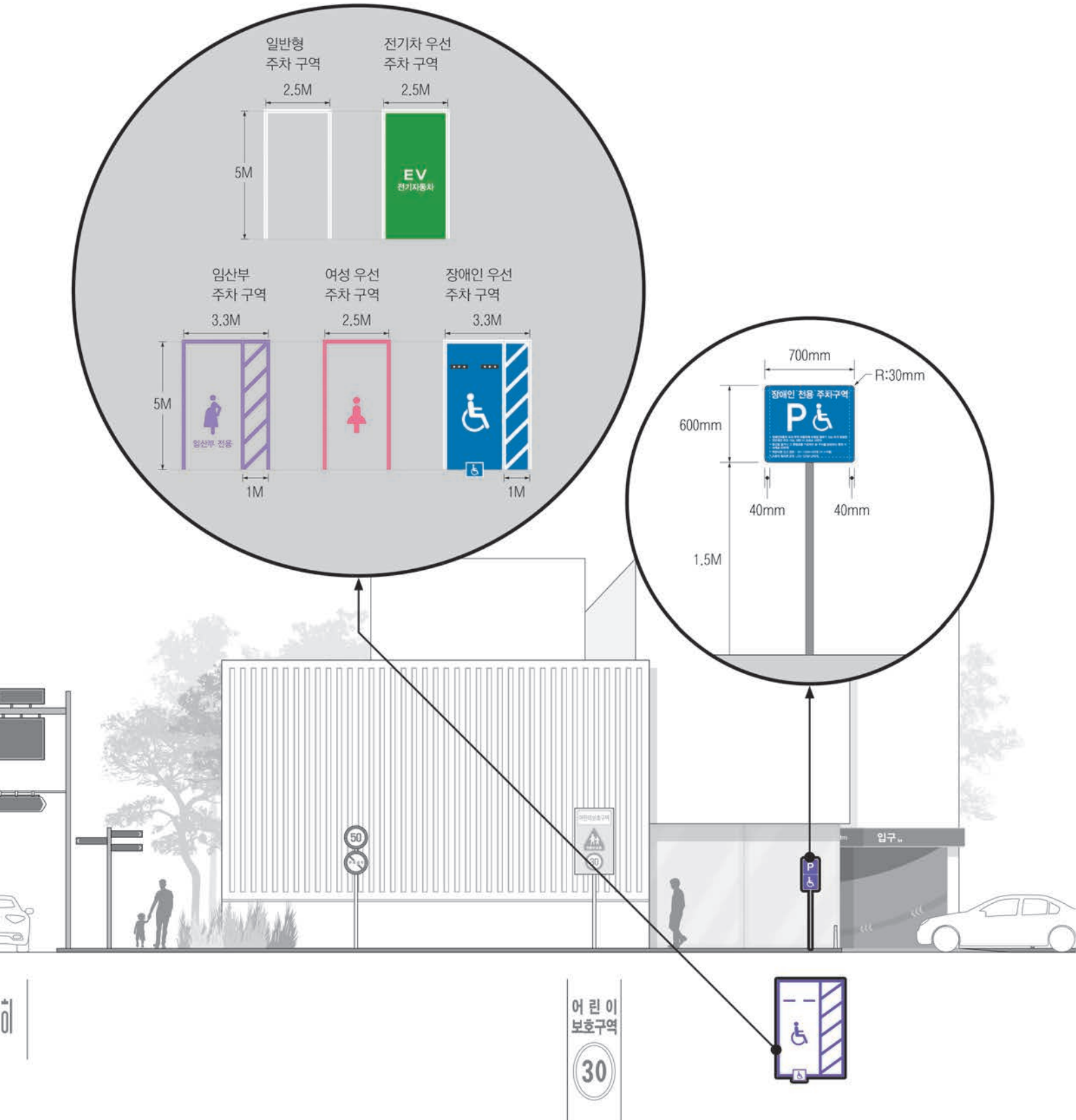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에는 가로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를 사용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구역 내에 안전표지판이 필요한 경우 세로형으로 설치한다.			

색채 및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 마감재 질감 또는 명도차이를 적용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각매체 및 안내표지에는 황색을 적용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도면은 적색과 녹색 등의 색채와 패턴을 적용한다.			
4.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 바닥포장을 한다.			
5. 야간 이용을 위해 노면에 고휘도 반사시트 부착을 권장한다.			
6. 표지판 후면의 지주 결합부위 및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C1-6 주차안내 : 주차장안내, 표지 등

심의대상



기본방향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면 정보 인지를 용이하게 한다.

참 조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2011,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장애인 주차장〉 (20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차장 위치표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2.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3. 주차장 입구에 요금 및 전용주차장 안내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바닥과 출입통로에 표시하고, 휠체어 활동공간도 표시한다.			
5. 여성, 임산부, 장애인주차구역은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다.			
6. 여성우선 주차구역 10% 범위 내에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7.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의 구획은 일반주차 구획보다 800mm이상 확보한다.			

정보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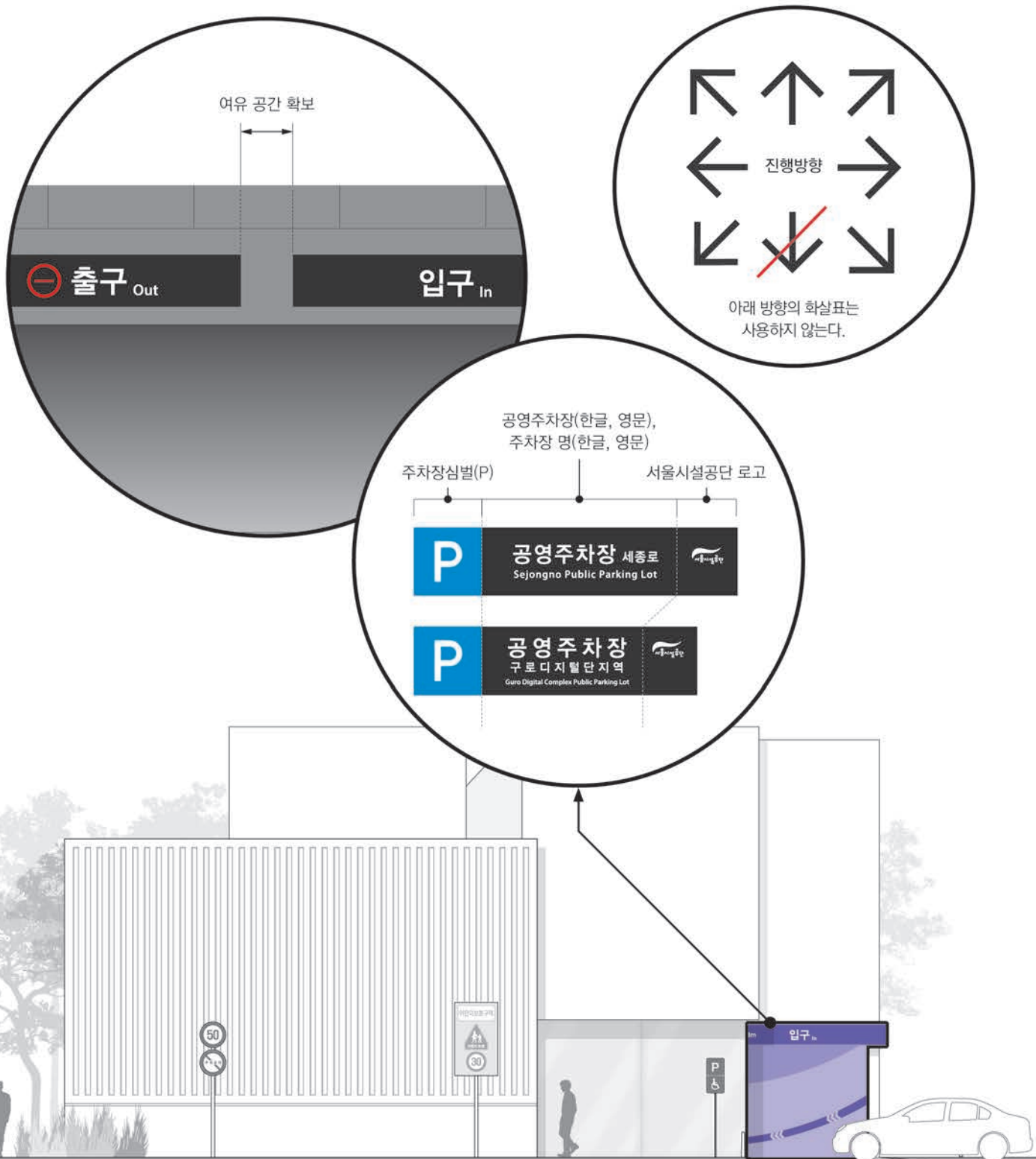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량운전자가 전용 주차구역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색채를 표기한다.			
2. 픽토그램은 서울시 표준을 적용하고, 서울시 표준에 없는 경우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3. 주차장 이용안내판은 로고와 표기명을 강조하여 기재한 후,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 담당 연락처 등의 내용을 선별하여 표기한다.			
4. 안내표지의 문장은 명사형으로 표기한다.			
5.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6.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의 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실선 및 문자로 표시한다.			

색채 및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차 노면표지는 무광택 재료를 사용한다.			
2. 주차 노면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한다.			
3. 상징색채를 적용하여 전용주차구역을 구분한다.			
4. 안내판의 바탕색은 기와진회색, 문자와 기호에는 흰색을 사용한다.			
5. 여성우선 주차장의 색채는 '분홍색(PANTONE 190C)', 임산부전용 주차장(PANTONE 96-12U)은 '보라색',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파랑색(PANTONE 300C)', 전기차우선 주차장은 '녹색(PANTONE 7739C)'을 적용한다.			

C1-7 부설 주차장 진출입 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주차장 진출입구 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달대형 화살표〉 (2016,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차장 출입구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2. 출구와 입구가 함께 있는 경우 두 사인 사이에 일정 공간을 확보한다.			
3. 입구 혹은 출구의 차선이 2차선일 경우 한 개의 안내표지를 중앙에 배치한다.			
4. 출구사인은 출구와 인접한 코너 및 갈림길 등의 벽면에 설치한다.			
5. 출구사인 설치 시 출구가 주차장의 중앙에 있거나 벽면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달대 사인으로 대체 설치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2. 명칭 표기시 한 줄로 표기한다.			
3. 사인의 가로폭이 작거나 주차장명이 긴 경우(6자 이상) 자간을 축소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차량 입구 사인은 제한 높이를 좌측 정렬하며, 입구 표시를 중앙 정렬한다.			
5. 차량 출구사인은 진입금지 방향표시와 출구표시를 하나의 사인으로 취급하여 정중앙에 배치한다.			
6. 외부 출입구는 주차장 심벌, 공영주차장, 주차장명, 관리기관 로고를 표기한다.			
7. 아래 방향의 화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영주차장에 사용되는 색, 문자, 기호, 픽토그램의 표기는 상황에 따라 흑색 또는 백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C1-8 신호기 : 차량용, 보행 신호등



기본방향

정돈된 가로가 되도록 주변 지주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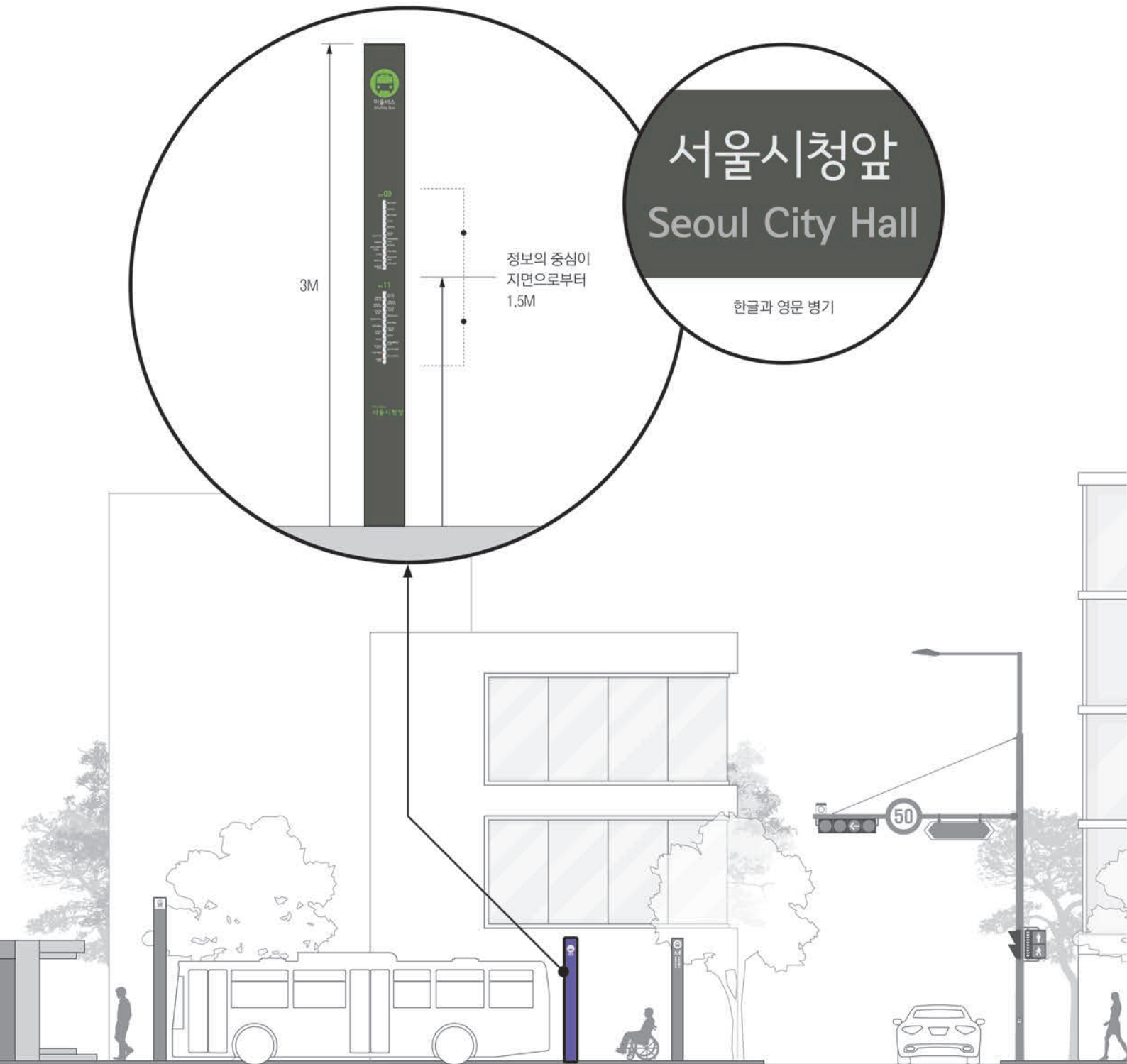
1.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한다.			
2. 차량용 및 보행용신호등은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3. 차량 정차 시 안전거리 확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 신호등에는 잔여 횡단시간 표시를 권장한다.			
-------------------------------	--	--	--

C1-9 버스정류장 표지, 안내도



기본방향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정류장 명칭과 노선 정보를 쉽게 인지하게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폴사인 및 안내체계〉 (201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I〉 (2008, 서울특별시)

〈서울시티투어버스 승차대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주형 안내표지판 설치할 시 승하차 지점에서 1M 이내에 설치한다.			
2. 버스노선 안내도는 정보의 중심이 지면으로부터 1.5M내외로 설치한다.			
3. 지주형 안내표지판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보도의 폭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내표지를 선택한다.			

정보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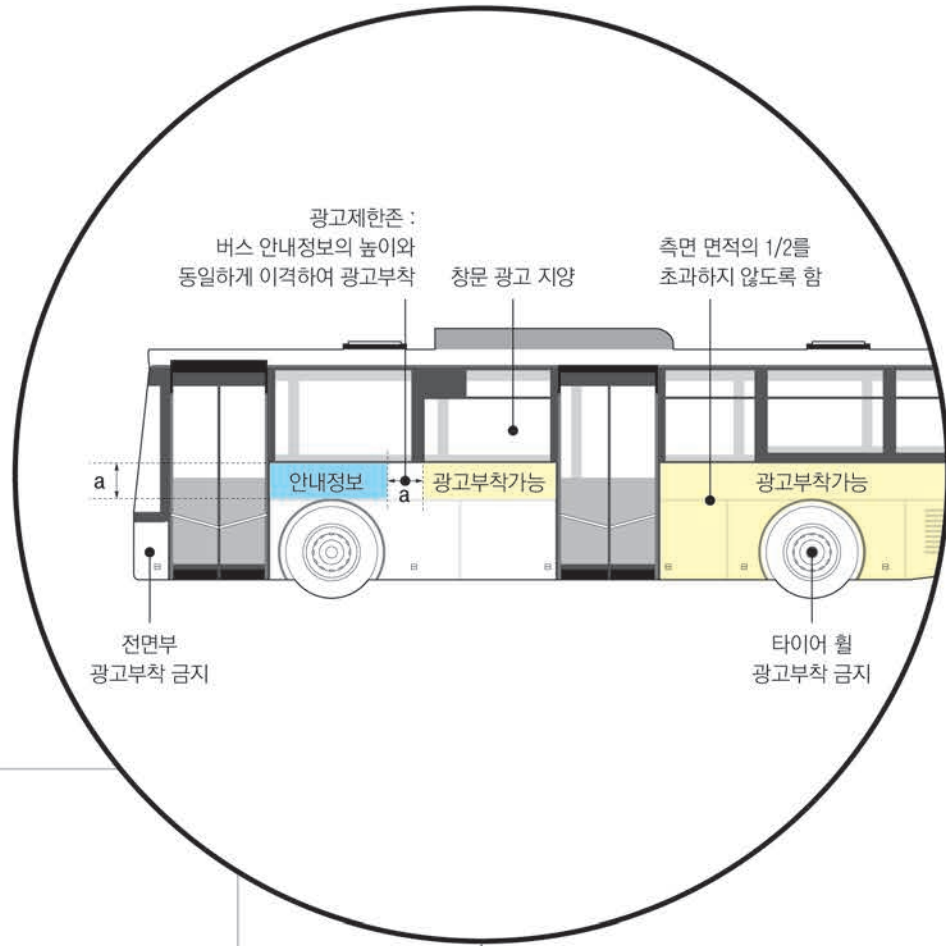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행자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및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 버스 정류장 표지에는 현재 위치의 정류장 명을 크게 표기한다.			
3. 버스 정류장 표지에 정류장 명칭을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4.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의 정류장표지는 각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기준을 준수한다.			
5. 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을 일치시킨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각종 버스(간선, 지선, 순환, 광역)의 시각적 구분을 위해 버스유형별 색상을 달리 적용한다.			

C1-10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심의대상



기본방향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광고를 최소화하여 전용버스를 쉽게 인지하게 한다.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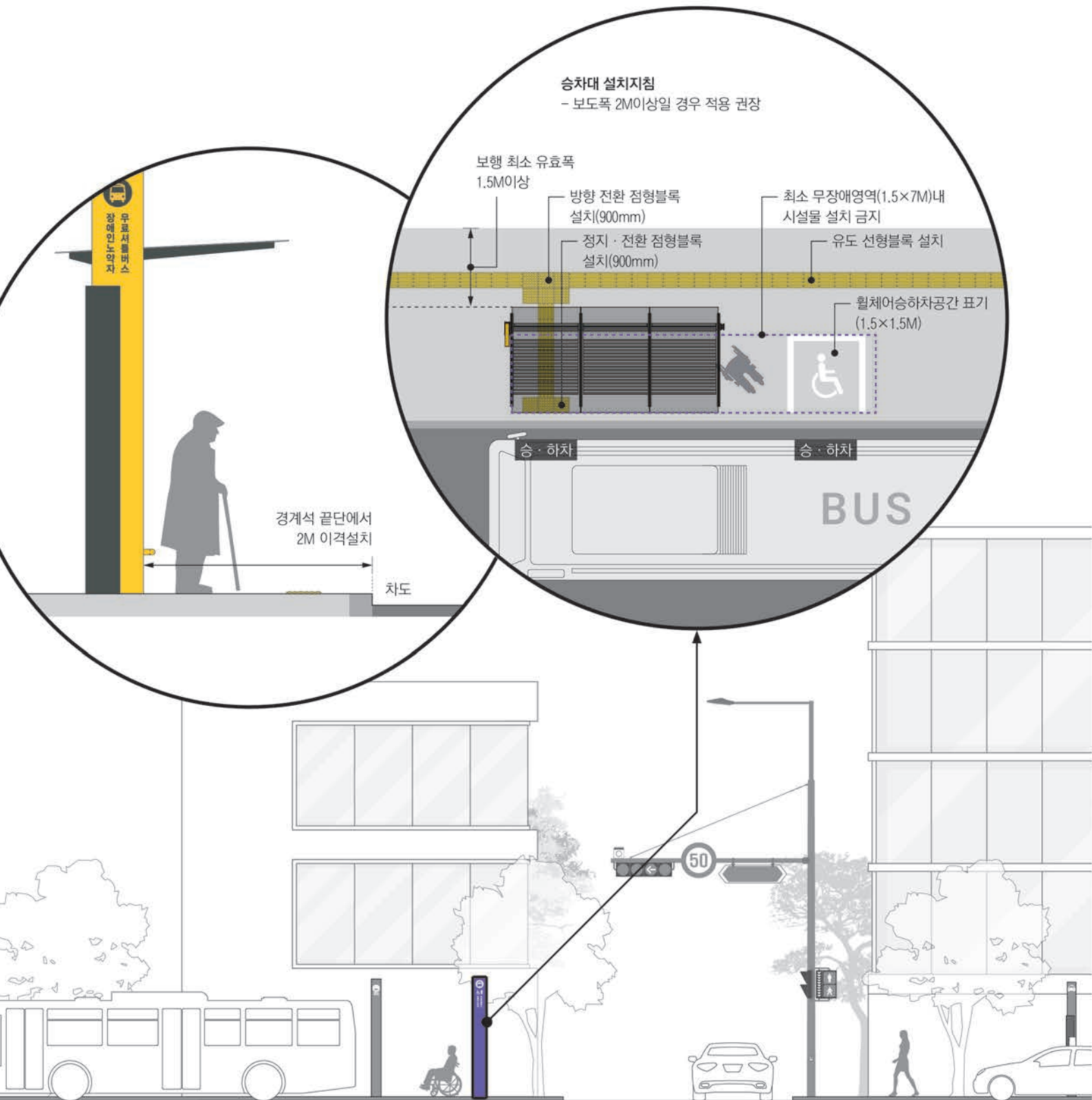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 광고 설치〉 (2015, 서울특별시)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조수석 측(인도 방향)의 버스 옆면에는 노선도를 표시한다.			
2. 시티투어버스의 외관 디자인은 단순화하며, 관련 색채를 적용한다.			
3. 버스 측면의 상업광고는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4. 버스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C1-11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내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표기한다.

참 조

-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승차대〉 (201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II〉 (200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터미널버스 승차대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1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2016,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보건복지부)
 〈보도공사 설치시공 매뉴얼〉 (2021,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장애물 없는 인증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2015,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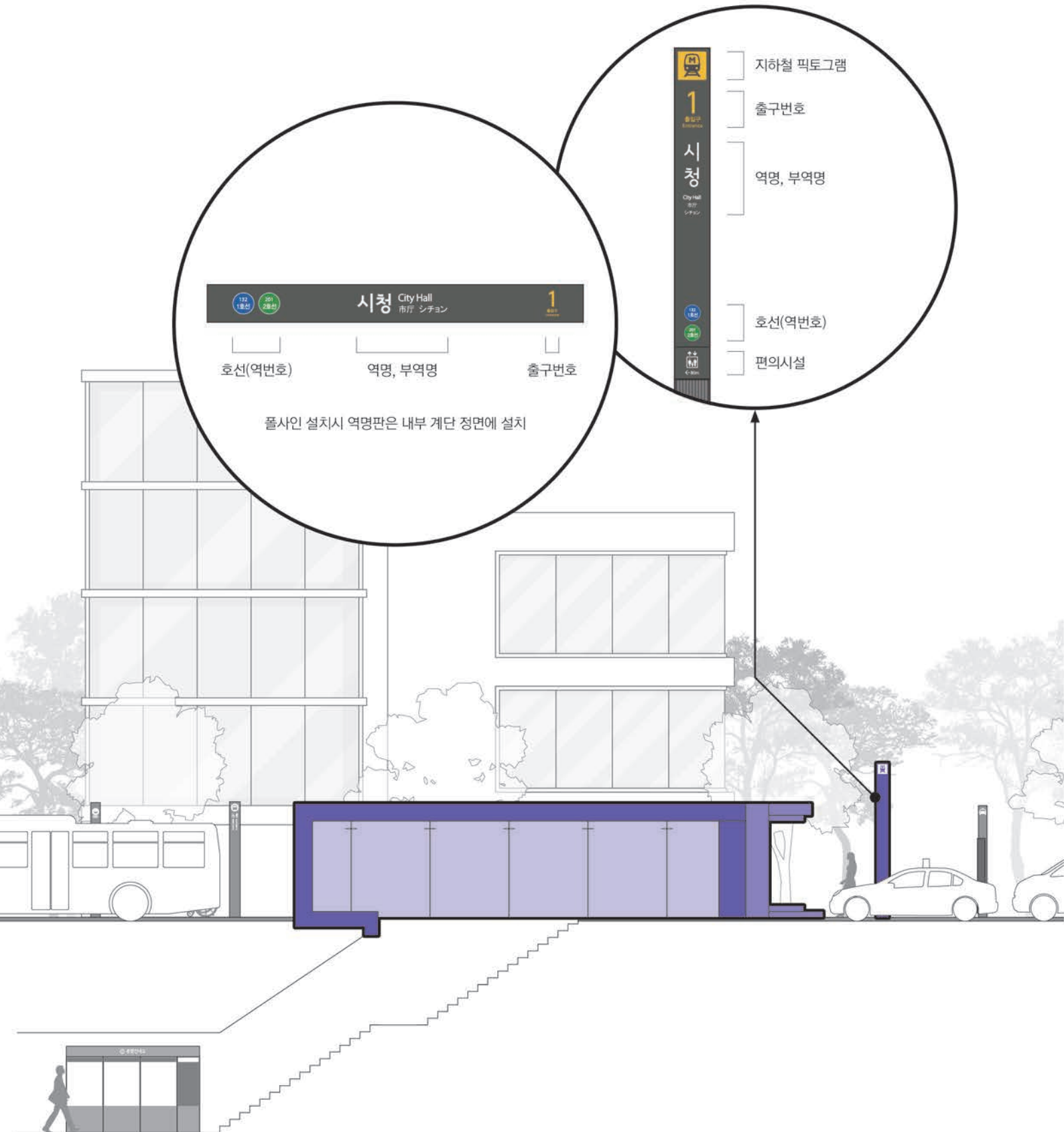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보도폭이 2M이상일 경우에는 승차대를 설치한다.			
2. 보도폭이 2M이하일 경우에는 폴사인을 설치한다.			
3. 지주형 안내표지판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보도의 폭을 고려하여 적합한 안내표지를 선택한다.			
5. 승차대 및 폴사인 설치 시 주변 보행로에 방향전환의 점자블록과 승하차 구간의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6. 폴사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를 함께 설치한다.			
7. 노면에 휠체어 승하차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선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2. 버스 정류장 표지에는 현재 위치의 정류장 명을 크게 표기한다.			
3. 약시자를 배려해 글씨크기를 고려하여 표기한다.			
4. 폴사인에는 시설명, 정거장명, 노선도, 음성안내기 순으로 정보를 표기한다.			
5. 약시자를 배려한 인포그래픽을 사용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색각이상자,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명시성이 높은 대비색채를 사용한다.			
2. 폴사인 측부에는 서울색과 강조색을 배색하여 적용한다.			

C1-12 지하철 안내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동일한 인지 행태로 지하철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Ⅳ : 지하철출입구캐노피 규정〉 (201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 지하철 통합 사인시스템 - 지하철역 표지에 관한 사항〉 (2017,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철 심볼 사인은 폴사인으로 통합하여 표기, 설치한다. (폴사인, 자봉형 돌출사인 중 택일)

2. 지주와 접하는 부분은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게 깔끔하게 마감하여 설치한다.

3. 공공시설물, 수목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어느 방향에서든 역 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방이 면처리가 된 형태를 적용한다.

2.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폴사인은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하철심볼사인, 노선번호, 역명, 출구번호를 표기하며, 그 외의 표기는 하지 않도록 한다.

2. 역 내의 모든 표지가 일관성을 갖도록 시각기호와 색상을 통일시키도록 한다.

3. 전용서체인 서울남산체를 사용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무채색을 기본으로 노선별 색상을 강조색으로 사용한다.

2. 노선별 전용색채를 다르게 적용한다.

3. 픽토그램 및 출구 번호에 표준 색채를 적용한다.

C1-13 지하철노선, 역사 안내도



기본방향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 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 지하철 통합 사인시스템 규정〉 (2017,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역내에는 동일한 시각정보안내도를 적용한다.			
2.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노선 정보를 주요 동선에 설치한다.			
3. 안내도 설치시, 점자 표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내도에는 현위치가 잘 보이도록 표기한다.			
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주요 정보에 다국어를 표기한다.			
3. 주변시설정보와 역사 내 편의시설 정보를 포함하여 표기한다.			
4. 역사 내 편의시설은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C1-14 택시 외관

심의대상

브랜드 개인 표시등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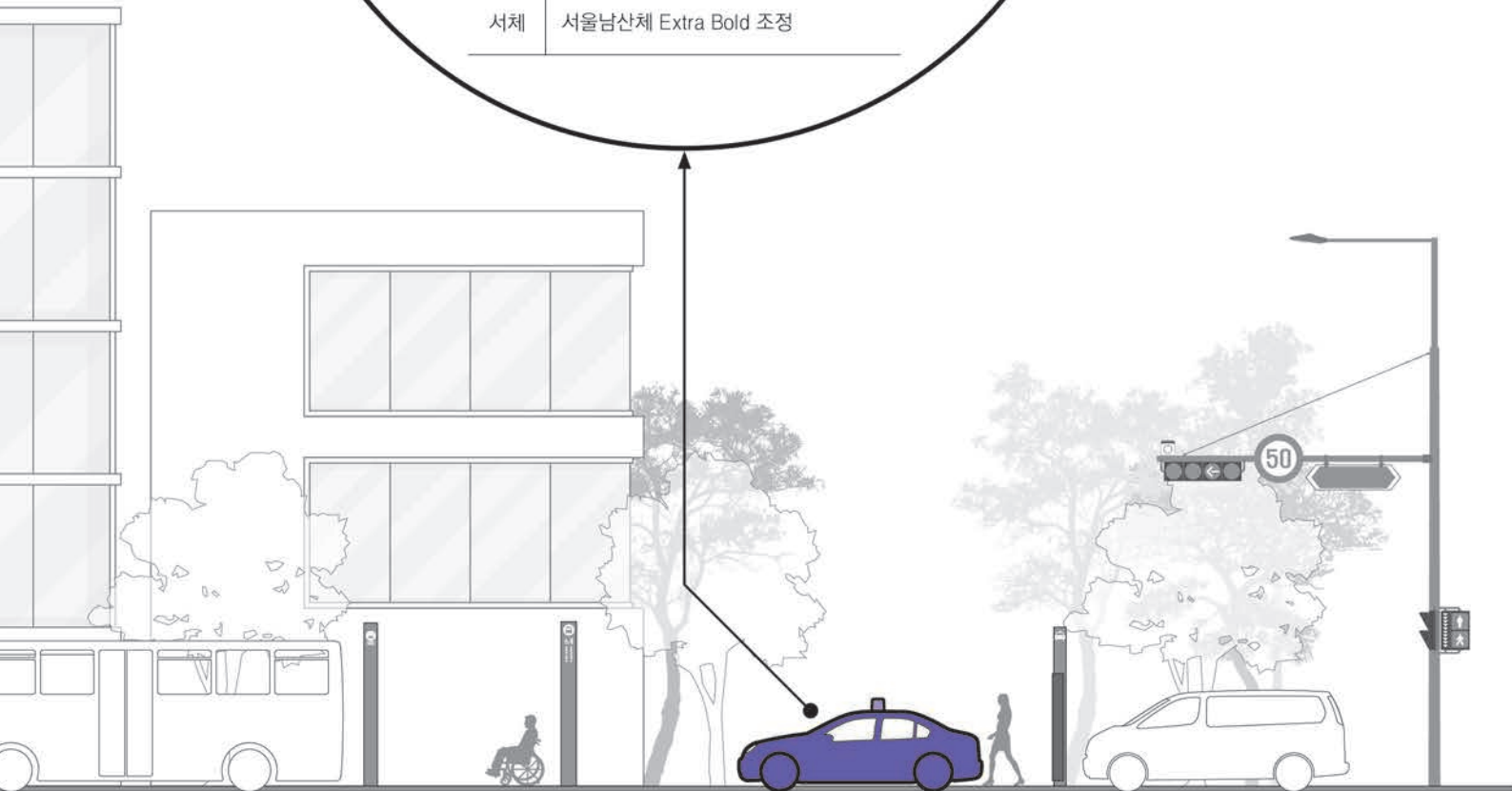


색채

- ① 윗면, 옆면 : 꽃담황토색(SLC116)
- ② 바탕 : 한강은백색(SCN003)
- ③ 앞면(택시 국문) : SCN019(서울색)
- ④ 뒷면(TAXI 영문) : SCN019(서울색)
- ⑤ BRAND : SCN019(서울색)
- ⑥ CARD : SCN017(서울색)
- ⑦ 해치+CARD : SC0042(서울색)
- ⑧ 해치+BRAND : SC0042(서울색)

서체

서울남산체 Extra Bold 조정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서울시 택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한다.

참 조

〈서울해치택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 택시 외관 (색채, 로고, 서체 등)〉 (2009, 서울특별시)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택시 캡의 픽토그램, 형태, 색채, 서체 등의 통일을 권장한다.			
2. 외국어 이용자를 위해 다국어를 병기한다.			
3. 택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을 선정한다.			

C1-15 택시 정류장 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동일한 표지 디자인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Ⅲ : 택시승차대 폴사인〉 (2009,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 광고 위치〉 (2015, 서울특별시)

정보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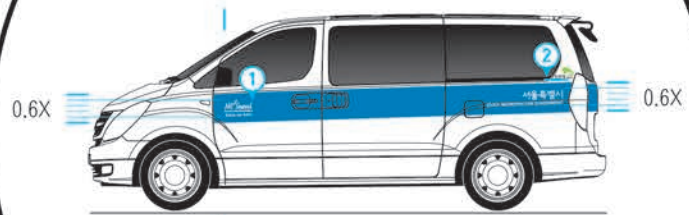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명시성 높은 배색의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2. 서울시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C1-16 관용차량,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외관

심의대상

단속용 차량 _ 승합차

2. 창문의 형태에 따라
시각적 보조선을 맞춘다.
(가로폭의 길이 ≤ 150mm)



1. 차량의 캐릭터라인을 따라 면을 그리며
서울특별시, 하이서울 브랜드 표기 또한
캐릭터 라인과 평행하도록 한다.
리어뷰 미러의 시작점에 맞추어
글자가 시작되도록 한다.

X
0.2X
0.4X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X
0.2X
0.4X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X
0.2X
0.4X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정체성을 전달한다.

참 조

〈서울시 업무용차량 디자인 매뉴얼〉 (2008,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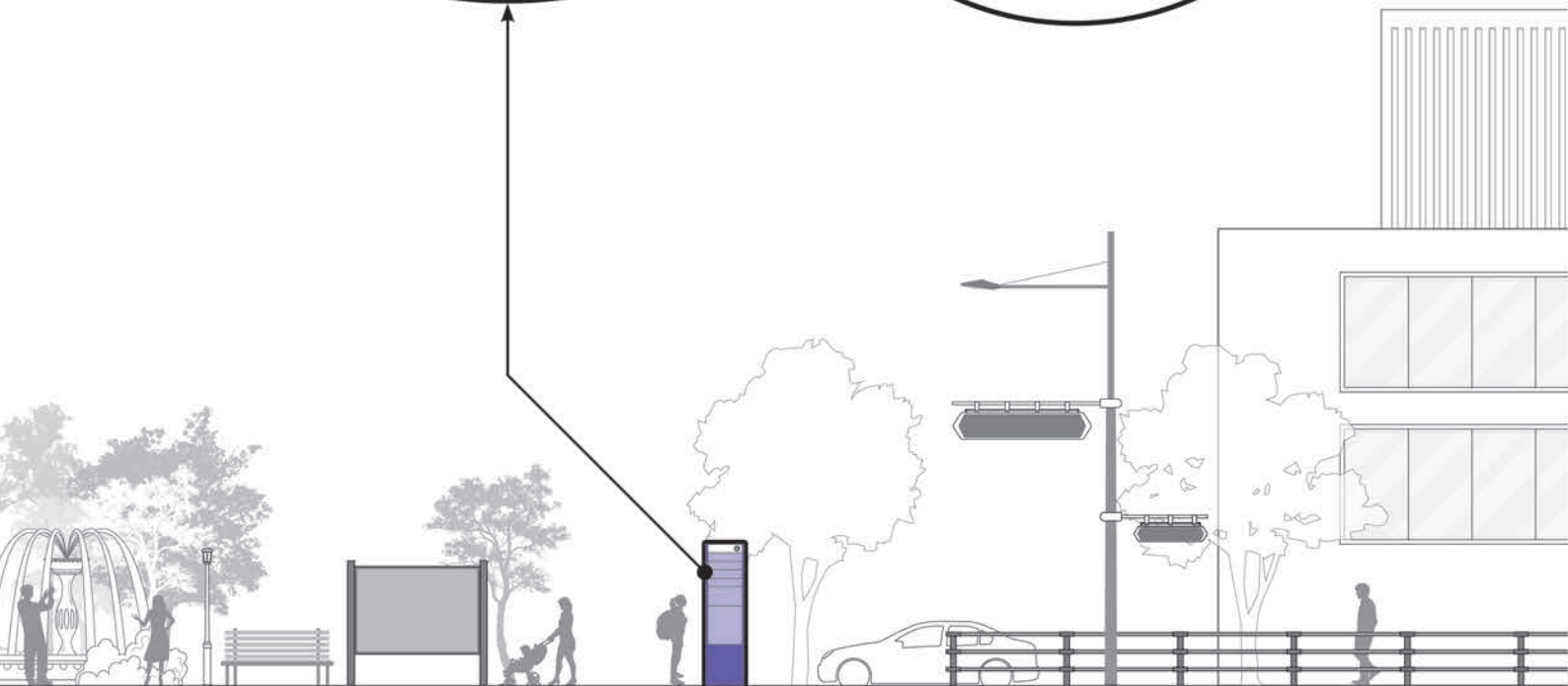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서울남산체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2. 국·영문 병기하며 좌측, 우측, 중앙정렬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기타 친환경 차량표시는 친환경 차량 종류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여 적용한다.			
4. 단속차량 우측 리어뷰 미러의 시작점에 맞추어 단속목적 표기 글자가 시작되도록 한다.			
5. 서울 브랜드 표기의 가로폭은 차량 전면의 램프를 제외한 영역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세로폭은 앞유리와 범퍼를 제외한 영역 1/4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서울특별시 표기는 좌측의 차량 모델명의 위치와 대칭을 이루도록 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업무용차량 및 수상운송수단의 용도별 색상을 적용한다.			
2. 색채는 단색을 적용한다.			
3. 서울대표 10색 중 선정하여 사용하며 시각적 보정을 할 수 있다.			
4. 보조색의 경우 서울지역 50색 중 선정하여 사용한다.			
5. 다목적 차량의 경우 '단청빨강색'을 적용한다.(PANTONE 187C)			
6. 단속용 차량의 경우 '서울 하늘색'을 적용한다.(PANTONE 285C)			
7. 수상택시의 경우 '꽃담 황토색'을 적용한다.(PANTONE 7415C)			

C2-1 보행자 안내표지, 방향표지



기본방향

일관된 형식의 정표로 이용자가 방향과 위치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 공공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2015,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IX : 보행자 안내표지판〉 (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방향안내표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2. 안내표지 설치 후 보행유효폭이 2M 이상 확보되는 경우, 보행방향과 표지면을 직각이 되게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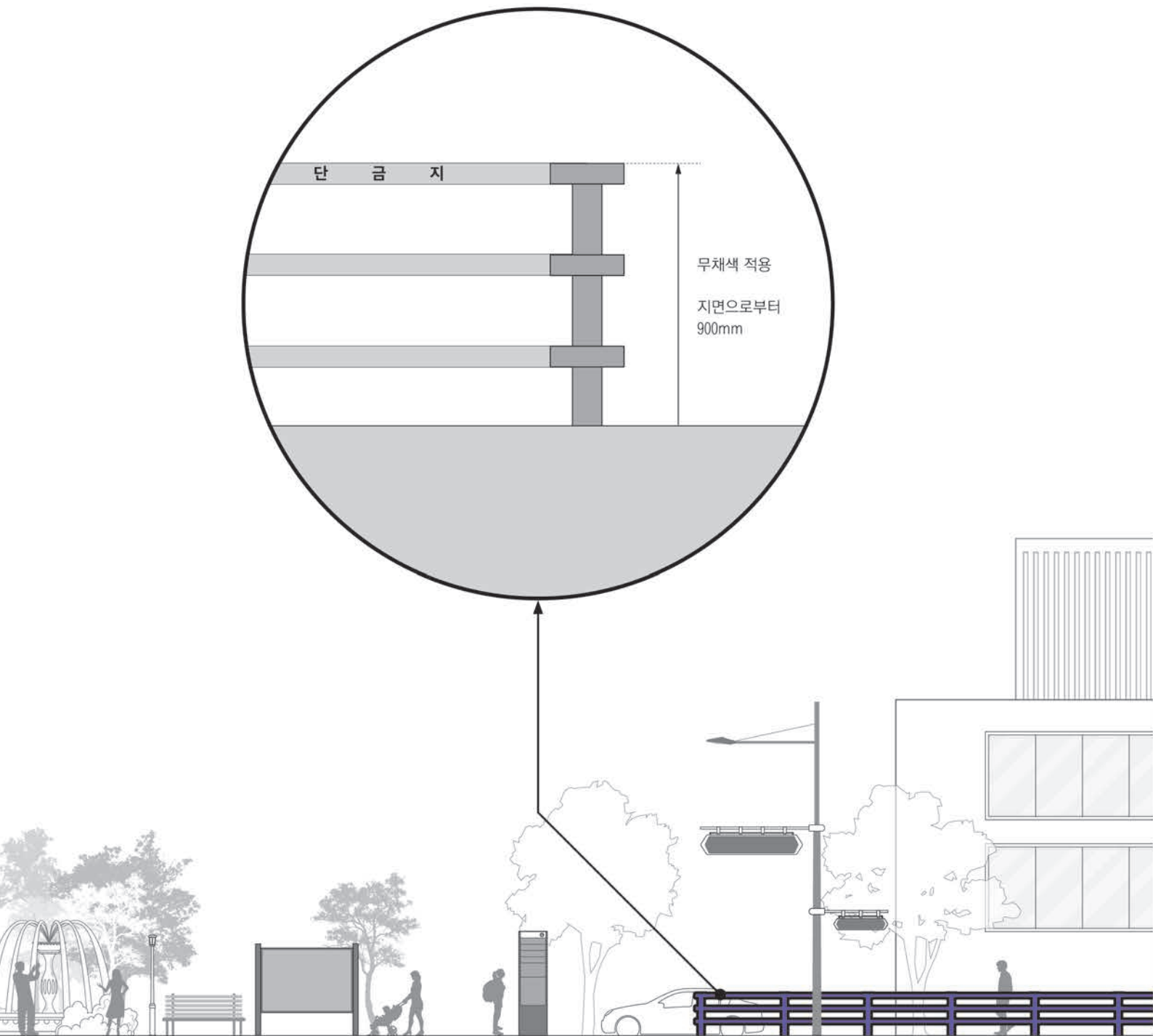
정보표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2.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방향이면 좌정렬, 오른쪽 방향이면 우정렬로 배치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글자와 시각기호가 잘 읽히도록 바탕색과의 충분한 색상 대비를 적용한다.			
2. 바탕색이 흰색일 경우 검정색의 서체를 사용하며, 바탕색이 기와진회색일 경우 흰색의 서체를 사용한다.			
3. 주변지도는 이용자의 시점과 방향을 일치시킨다.			
4. 현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시각기호보다 두드러지게 인식되도록 표현한다.			

C2-2 무단횡단 금지표지



기본방향

시설물과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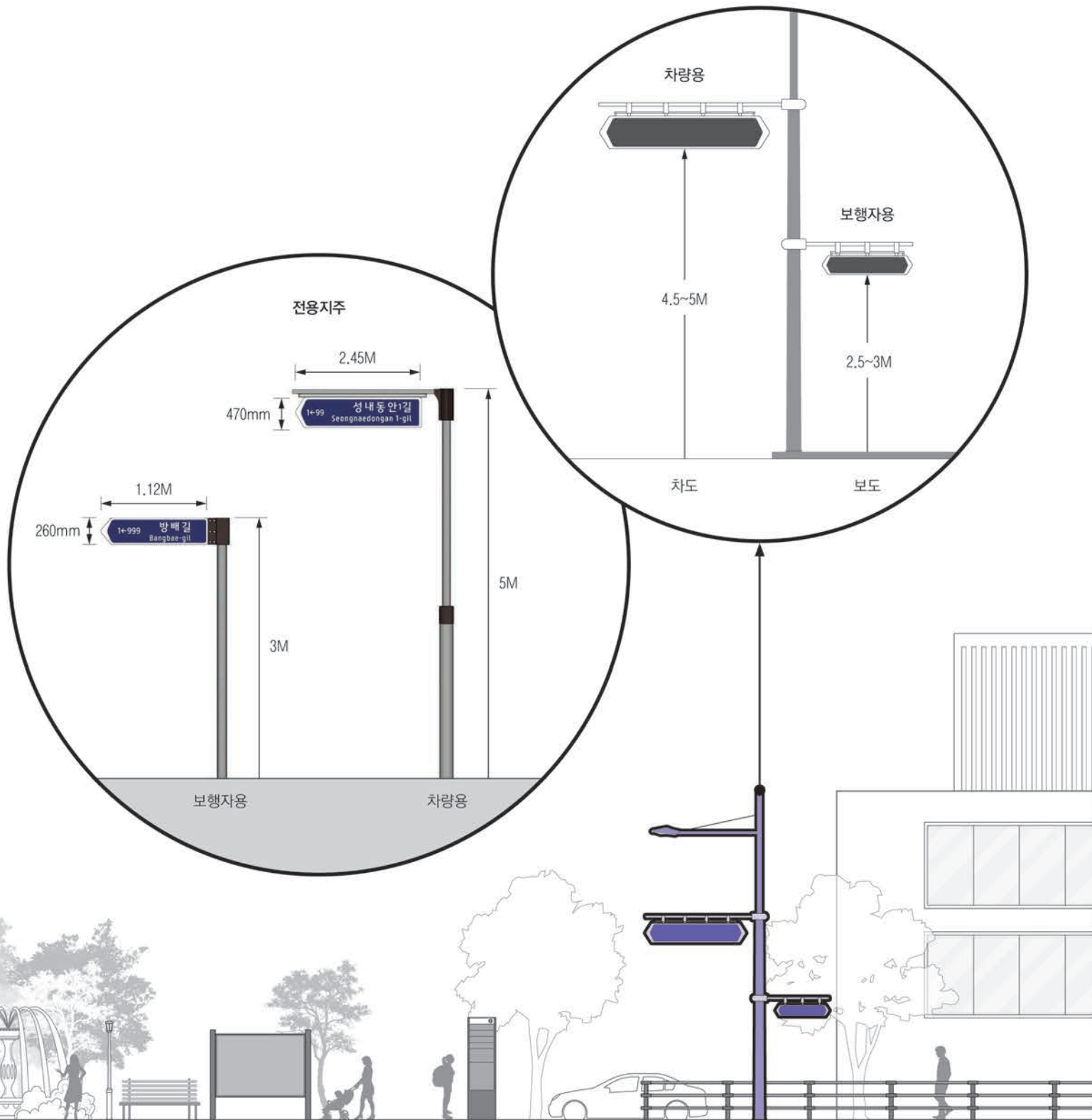
참 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무단횡단 금지시설〉 (2021, 국토교통부)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무단횡단금지표지의 설치는 지양한다.			
2.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의 시설물과 최소화된 정보전달 요소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3.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보전달이 우선시 되도록 설치한다.			

C2-3 도로명판



기본방향

일관된 정보 전달을 위해 통일된 디자인의 도로명판을 사용한다.

참 조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도로명판 전용지주 등 표준설계 매뉴얼〉 (2012,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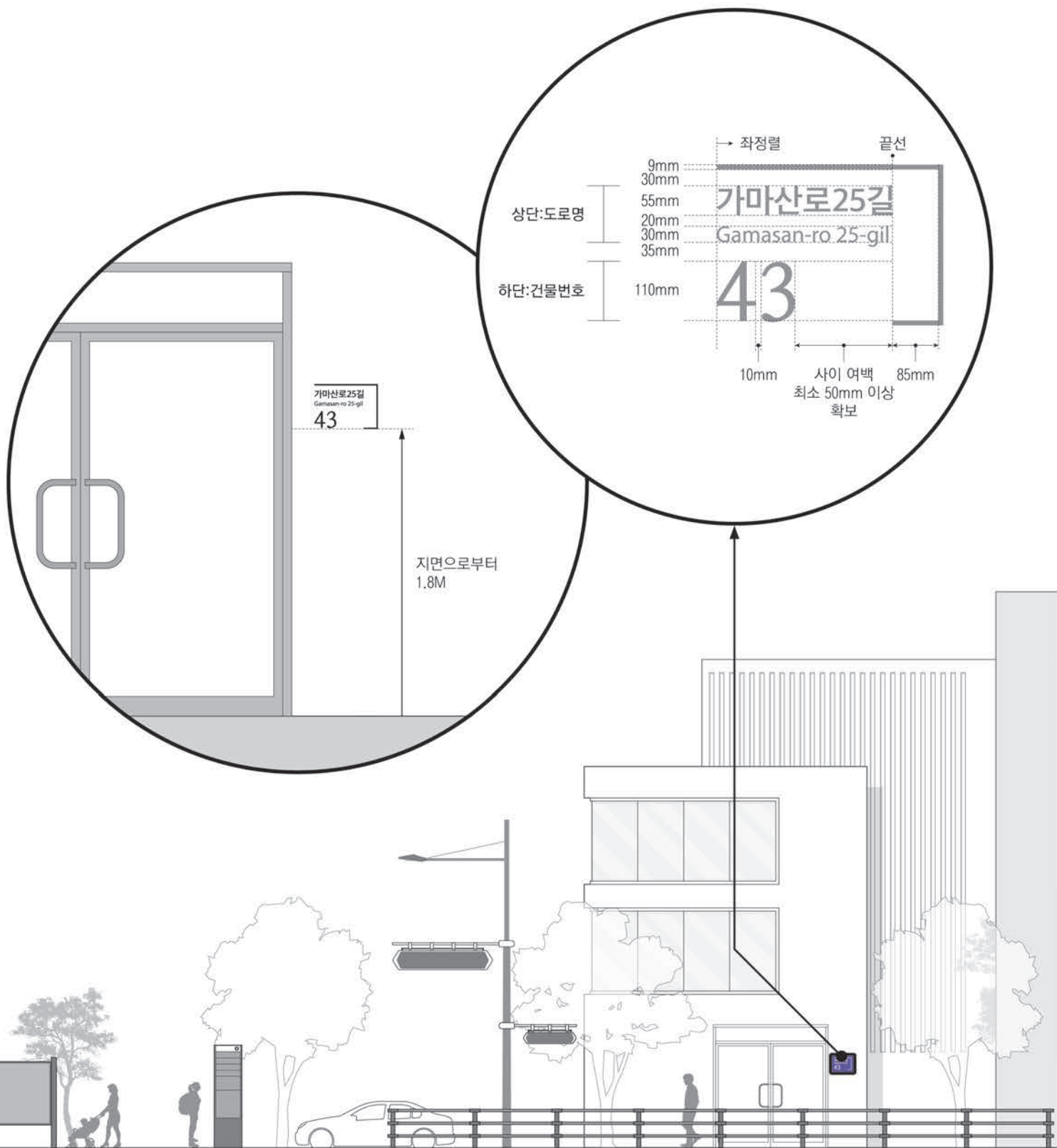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교차로 10M이내 규정(행정안전부))			
2. 지주의 통합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 벽면에 설치한다.			
3. 지주와의 결합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처리한다.			
4. 도로명판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5. 차량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6.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반사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정보표기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지자체 상징로고 및 픽토그램의 부가내용은 표기하지 않는다.			
2. 외국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3. 바탕색은 청색(PANTONE 294C)으로 한다.			
4. 부분적으로 녹색(PANTONE 355C)을 사용할 수 있다.			

C2-4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



기본방향

건물의 번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필요한 정보만을 표기한다.

참 조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공공건물자율형 건물번호판 규정〉(2017,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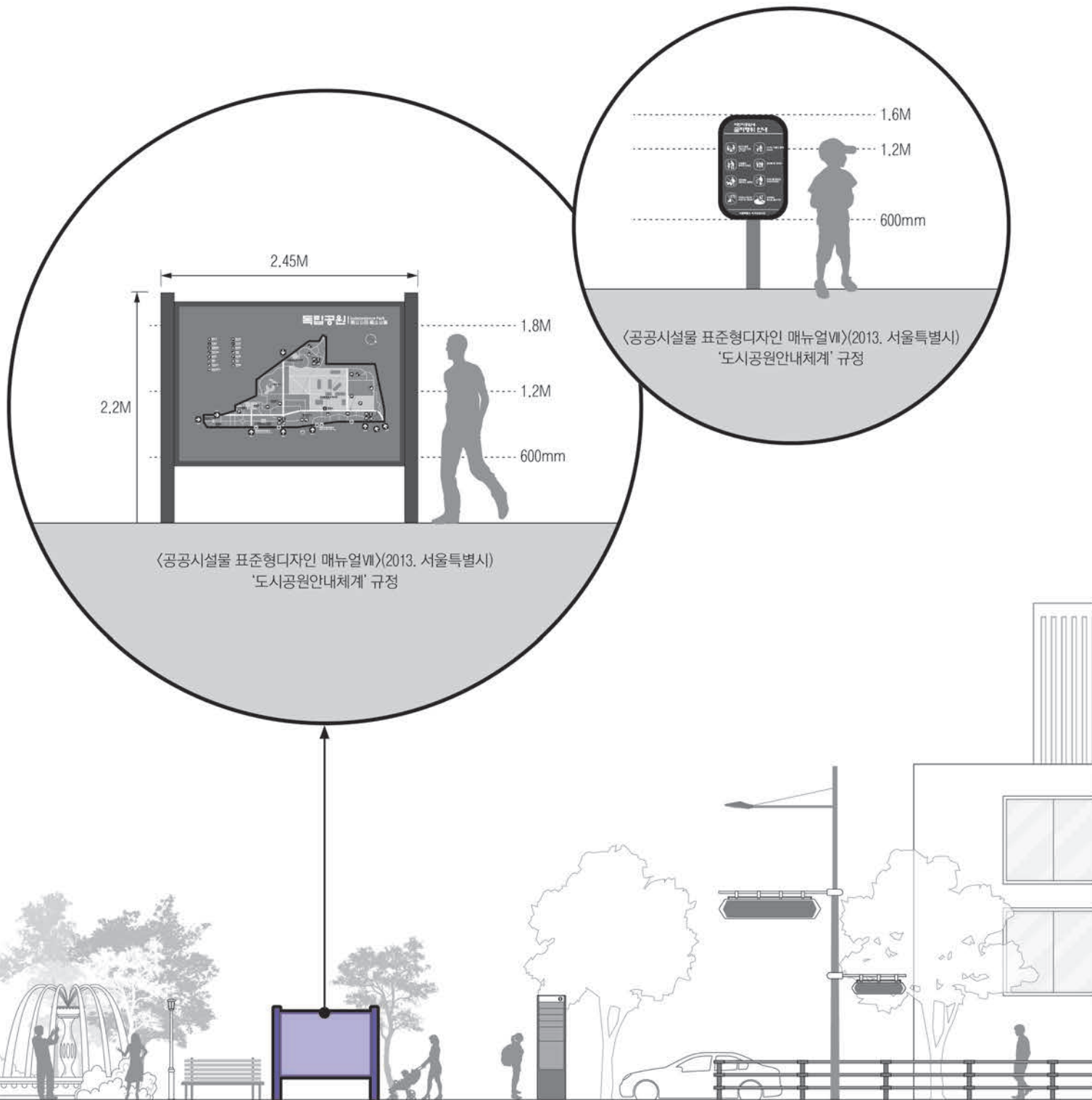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건물번호안내도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2. 건물 또는 담장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3. 외부에서 인식이 잘 되는 진입부에 설치한다.			
4. 건물번호판의 상부 부착은 지양하되, 부착이 필요할 시 건물 높이 3층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5. 출입구 및 주출입구 담장에 부착할시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에 설치한다.			
6. 건물 출입문 우측면에 설치한다.			
7. 건물 출입구와 주출입구 담장 중 1개소만 설치하며, 중복설치는 지양한다.			
8. 건물번호판은 접착제 및 PIN으로 부착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상징물이나 특징 등을 복잡하고 조잡하게 적용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2. 건물번호 외 불필요한 표기는 지양한다.			
3. 외국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4. 한글 도로명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며, 영문 도로명은 띄어서 표기한다.			
5. 건물번호판의 한글과 영문 표기는 한글을 상단에 아래에 영문을 배치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건축물 마감의 명도에 따라 적용 색채를 지정한다.			
2. 건축물 마감의 명도가 0~50%일 경우, Black 또는 기화진회색을 적용하며, 50~100%일 경우, White 또는 한강은백색을 적용한다.			
3. 문자에 별도의 채색은 하지 않는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건물 형태와 마감에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2. 서울특별시 구 단위 내 공공건물은 동일한 타입의 건물번호판을 적용한다.			
3. 모서리에 부착시 건물의 정면과 측면이 이어진 형태의 건물번호판 적용을 권장한다.			

C2-5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기본방향

주변 환경과 조화되면서 공원의 공간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Ⅵ : 도시공원안내체계 규정〉 (2013,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설치한다.			
2. 공원유도 시각매체는 공원주변도로 녹지대 및 시설물 구역에 설치한다.			
3. 안내표지가 식재 및 수목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4. 공원 규모와 표기할 정보향에 따라 크기의 차이를 두어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5. 자연공원, 근린공원과 같은 큰 규모의 공원에는 최대 2.4~3.6M 높이의 공원명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6. 중규모의 근린공원에는 최대 1.8M 높이의 공원명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7. 야간시 정보 읽기를 위해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8. 한강공원 안내판은 한강으로 접근하는 보행로 시설물 구간에 설치한다.			
9. 한강공원의 각 구간에는 동일한 안내표지를 적용한다.			
10.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11. 공원종합안내표지는 공원 주진입로에 설치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원명칭, 공원까지의 거리, 방향표시를 함께 표기한다.			
2. 글자 수가 범위 이상 초과할 경우, 서체의 크기 및 자간을 부분적으로 조절한다.			
3. 한강공원 폴사인 안내표지의 한글은 세로형으로 표기하며, 영문은 가로수직형으로 표기한다.			
4. 도시공원 유도표지는 공원명은 좌측정렬, 화살표는 우측정렬하여 표기한다.			
5. 불필요한 상징표기는 지양한다.			
6. 픽토그램은 서울시 표준을 적용한다.			
7.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색채 및 재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보행자가 안내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활용한다.			
3. 도시공원 유도표지는 목재를 사용하며, 공원명은 스테인리스 강판의 사용을 권장한다.			
4. 한강공원 폴사인 안내표지는 서울특별시의 정체성을 담아 서울 대표색(기와진회색)을 적용하며, 흰색의 서체를 사용한다.			
5. 공원안내 심볼은 서울 공원의 상징색인 녹색 적용을 권장한다.			
6. 배경색을 고려하여 서체 및 픽토그램은 공원색 적용을 권장한다.			

심의대상



기본방향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참 조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문화재안내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 문화재안내판〉 (2014, 서울특별시)
 〈서울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디자인 매뉴얼 : 문화재표석〉 (2014, 서울특별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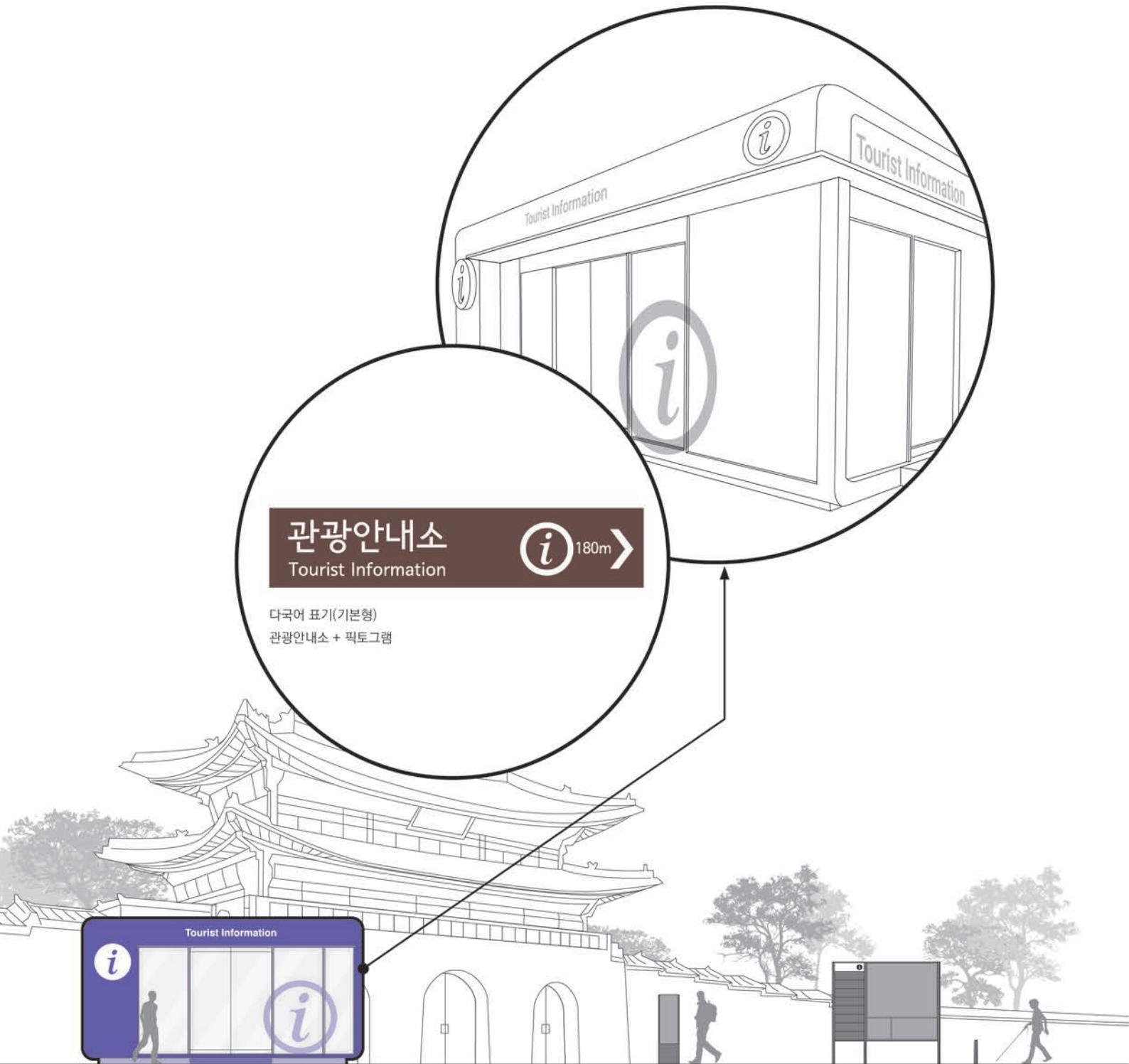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관광객의 이동 시작점, 도착점, 주요분기점에 설치한다.			
3. 근접한 위치에 중복설치 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결정한다.			
2. 안내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도대비를 활용한다.			
3. 외국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C2-7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심의대상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참 조

〈시설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 표기요소〉 (2015,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광안내소의 안내판에는 관광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정보만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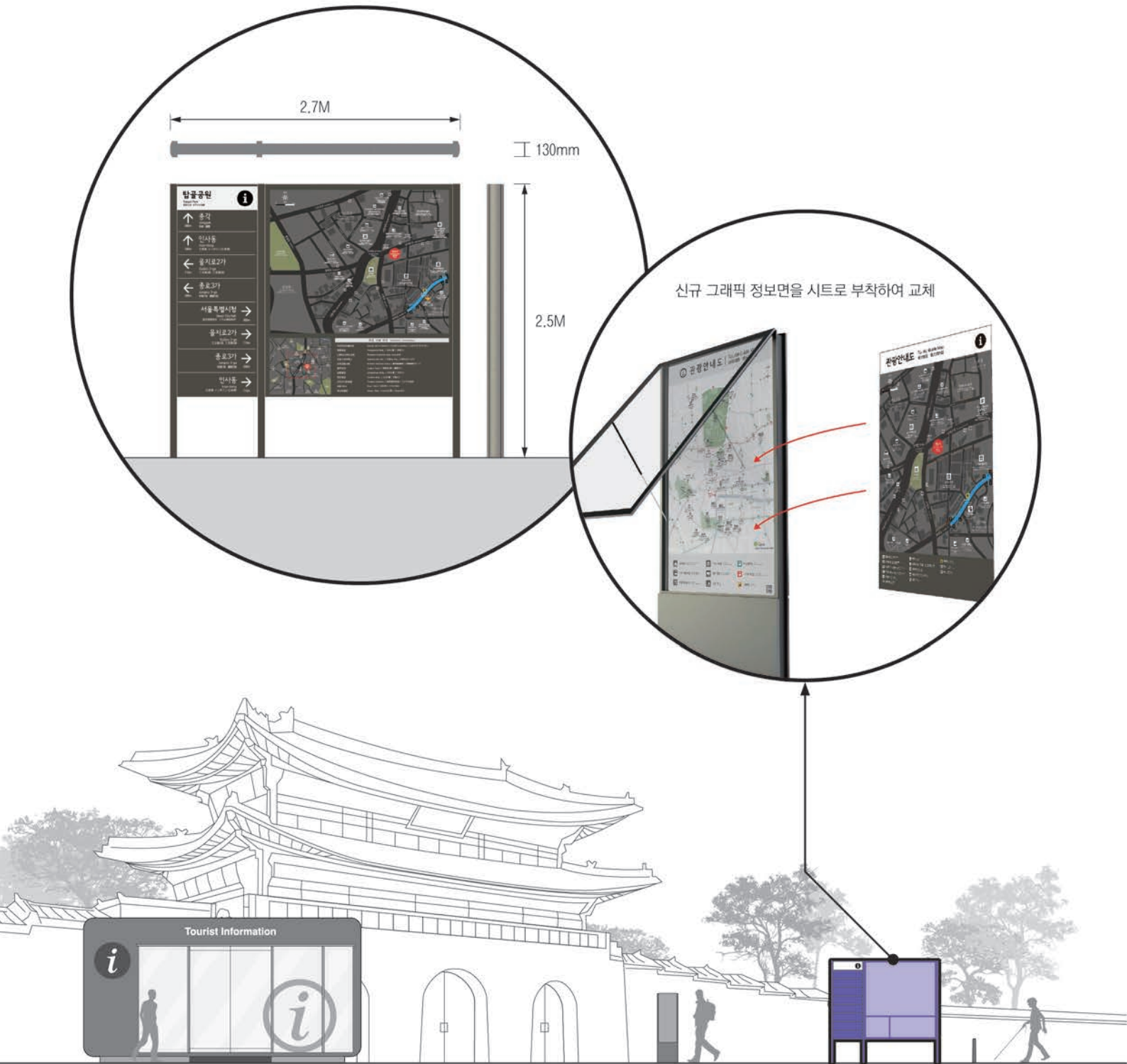
색채 및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광안내소 디자인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한다.

C2-8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심의대상



기본방향

이용자 시점에서 공간, 방향, 관광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Ⅹ : 공공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규정 (통합 설치)〉(2015,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광안내도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관광안내표지 및 안내도는 도로진행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시설물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주변 광고물 및 사인 등과 시각적으로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료 (정보수정)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변경된 노선도는 기존 관광안내표지에 신규 그래픽 정보면을 시트로 부착하여 교체한다.			
2. 서울시티버스 노선도는 시트지 부착방식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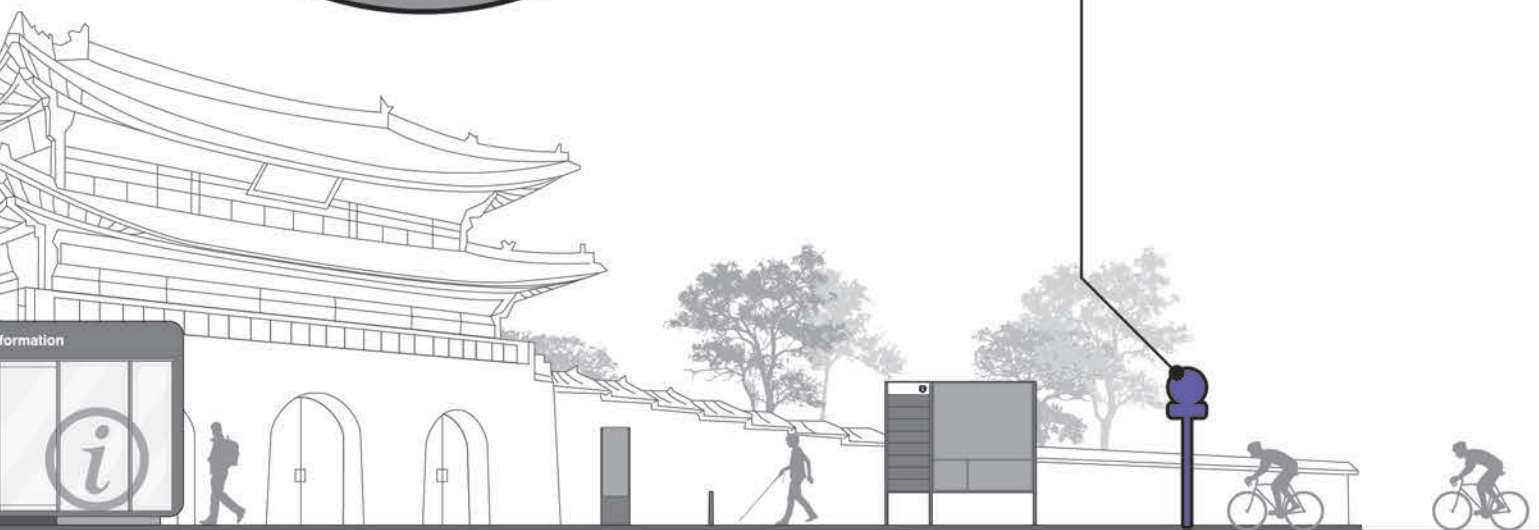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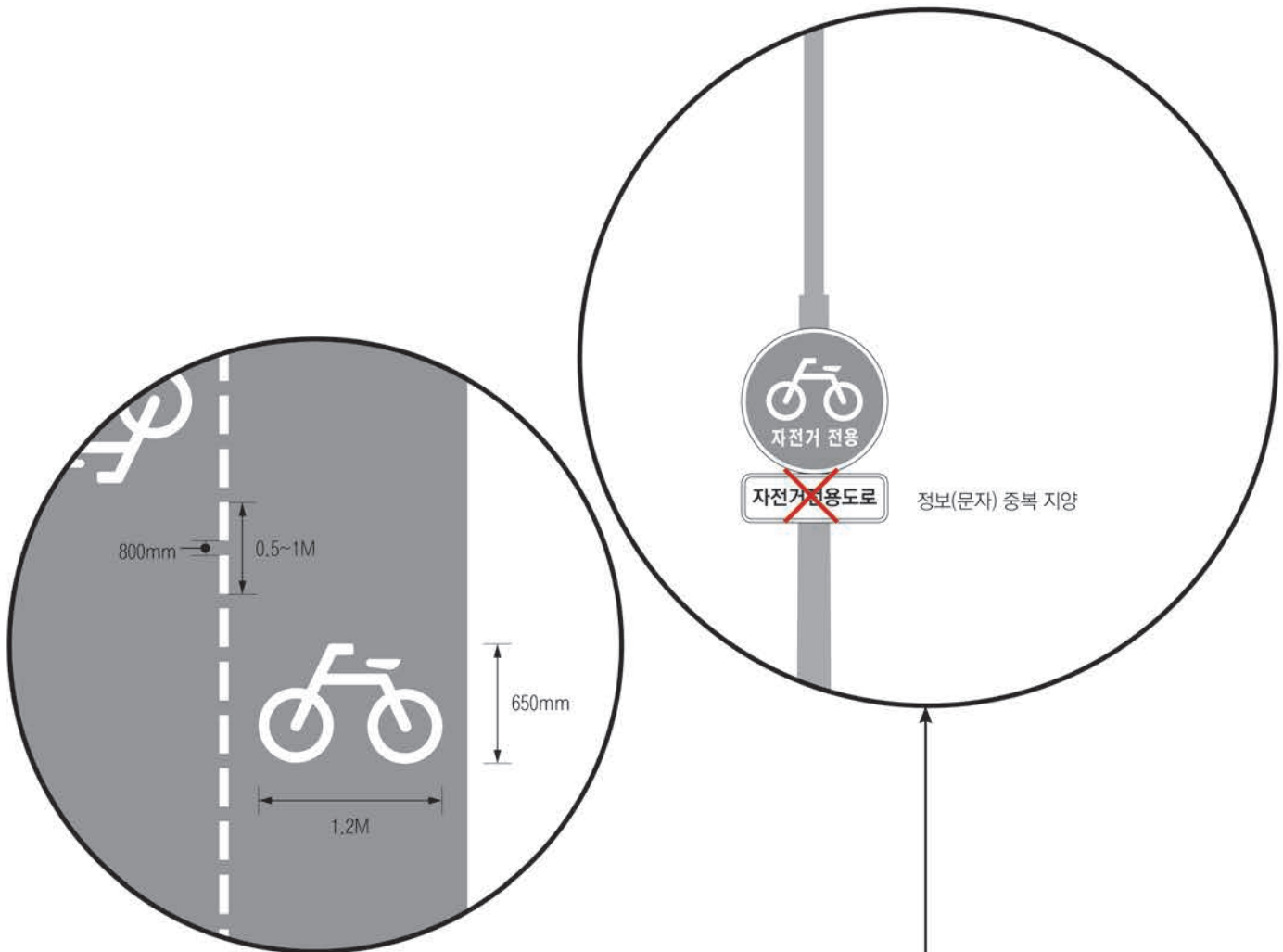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광안내도 안에는 주요 공공기관 명칭을 표기한다.			
2. 현위치명 및 목적지명은 4개 국어를 좌정렬 표기한다.			
3. 관광안내도에는 현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표기한다.			
4. 안내픽토그램은 우측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5. 화살표 방향을 따라 정렬한다.			
6. 노선 정보도는 노선 정보 외 각 승차장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표기한다.			
7.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정보 표기시 코스별 노선 색채는 유지한다.			
8. 1층 · 2층 버스의 용도는 픽토그램으로 구분한다.			
9. 표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내용 교체가 가능한 방식의 디자인을 사용한다.			

형태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며 지나친 장식 및 상징표현은 지양한다.			
2. 외부 오염의 위험이 있는 하단부까지 노선도를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			
3. 시티투어 승차대 폴사인 색채는 시티투어버스 외장 주조색과의 일관성을 위해 단청빨강색을 적용한다.			
4. 알루미늄 도장 위 흰색 반사시트 'C'를 부착해 야간의 시인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C2-9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노면표지



기본방향

자전거이용자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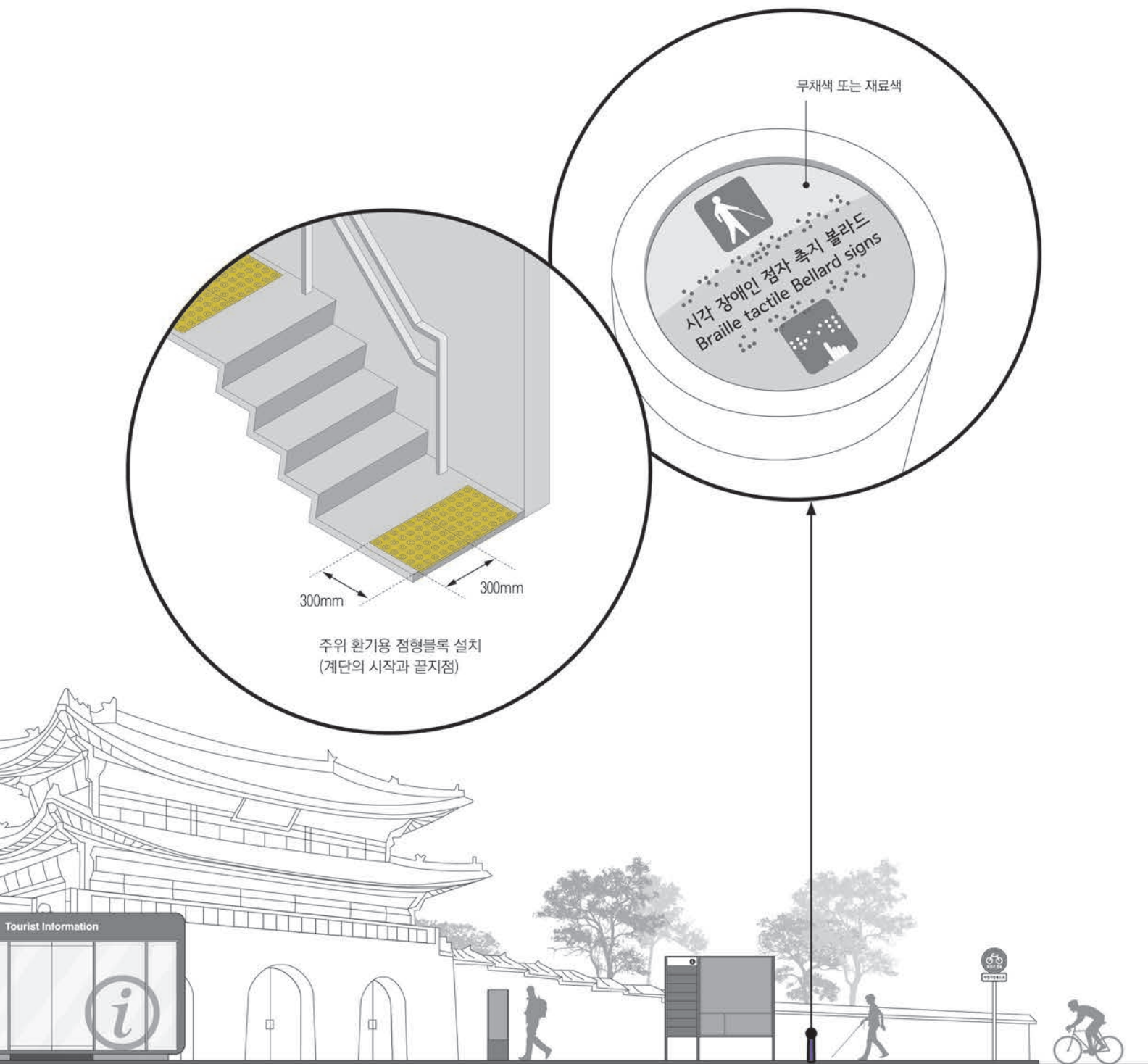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20, 행정안전부)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내표지의 독립지주형 설치는 지양한다.			
2. 자전거도로 노면표지와와의 중복 설치는 제한한다.			
3. 노면표지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표기한다.			

C2-10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기본방향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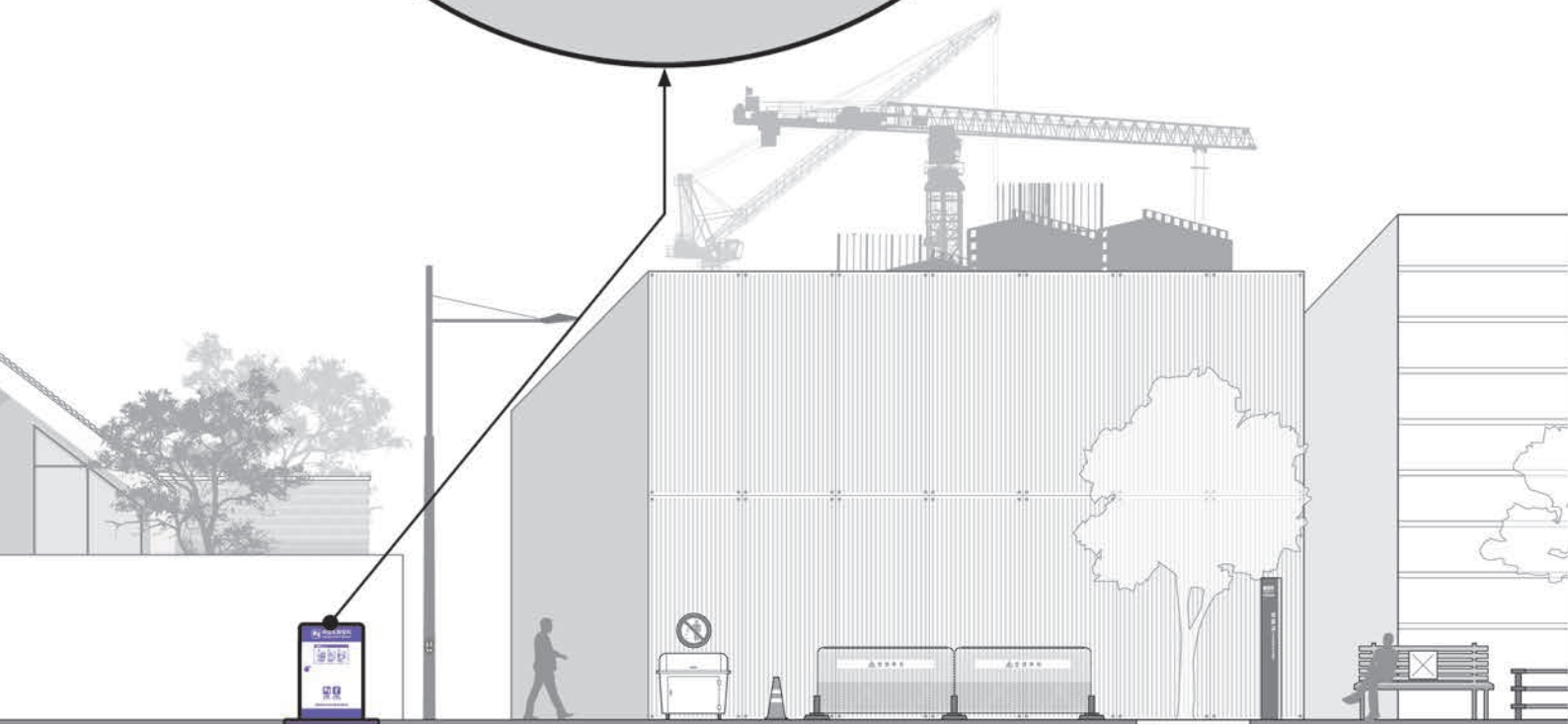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6,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점자블록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2. 점자블록과 휠체어 통행로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선형블록 좌우 900mm내에는 보행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4. 선형블록 좌우에 900mm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최소 1.2M폭의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권장한다.			
5. 주위 환기용 점형블록은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경사로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등에 설치한다.			
6. 문자, 점자, 자동음향신호기 등의 조합설치를 권장한다.			

C3-1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 안내표지



기본방향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개발 : 소방 및 화재예방 표준형 디자인〉(2018,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2013,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소방 및 화재예방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도록 벽면 및 노면표지를 함께 사용한다.			
2. 주변에 의해 방해되지 않도록 적치금지 공간을 확보하고, 영역을 표시한다.			
3.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 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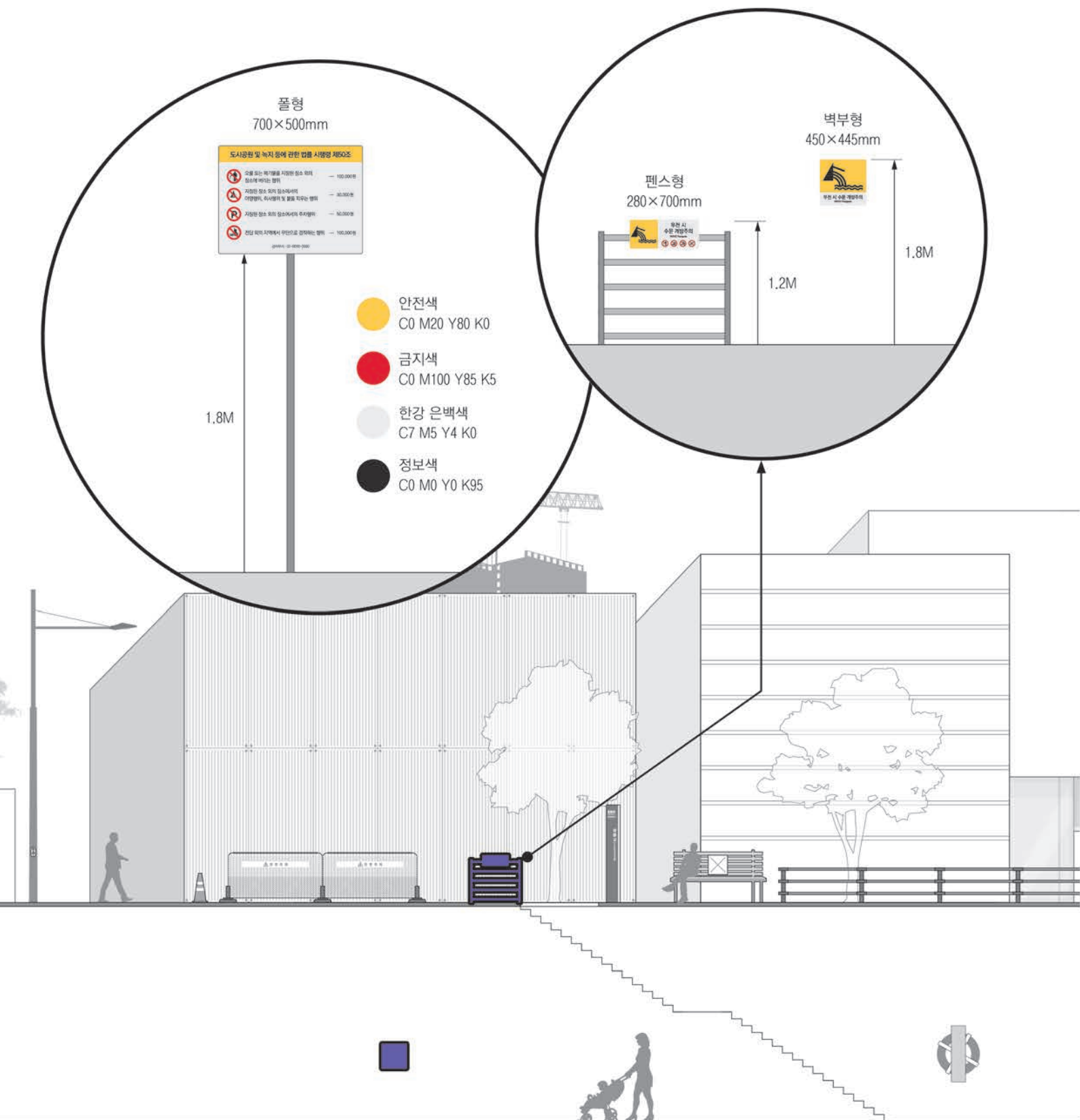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소방시설 주변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2. 매입형 소화기 및 소화전의 경우 벽면안내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3. 비상구 유도사인은 바닥면 사인 및 대형 유도사인을 사용한다.			
4. 출구를 쉽게 인지하도록 벽면을 활용한 대형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5. 야간의 시야 및 경로를 확보하도록 조명사인을 함께 설치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소방시설 명칭 및 비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2. 사용 설명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을 적용한다.			
3. 픽토그램은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4. 외국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표기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소방시설은 방재, 긴급, 구호를 의미하는 적색을 사용한다.			
2. 비상대피 표지는 전용색인 초록계열을 적용한다.			
3. 벽 마감과 구분되는 색채 및 정온한 그래픽을 사용한다.			
4. 원거리에서도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의 도색을 권장한다.			
5. 중·저명도 배경색일시 주변의 색상과 어울리는 무채색의 단색을 권장한다.			
6. 고명도 배경색일시 적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C3-2 하천 안전안내표지

심의대상



기본방향

비상시 대피와 대응을 위해 이용자 동선에 쉽게 인지하도록 설치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픽토그램)〉 (2016,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서울시 하천 수변공간 안내체계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2020,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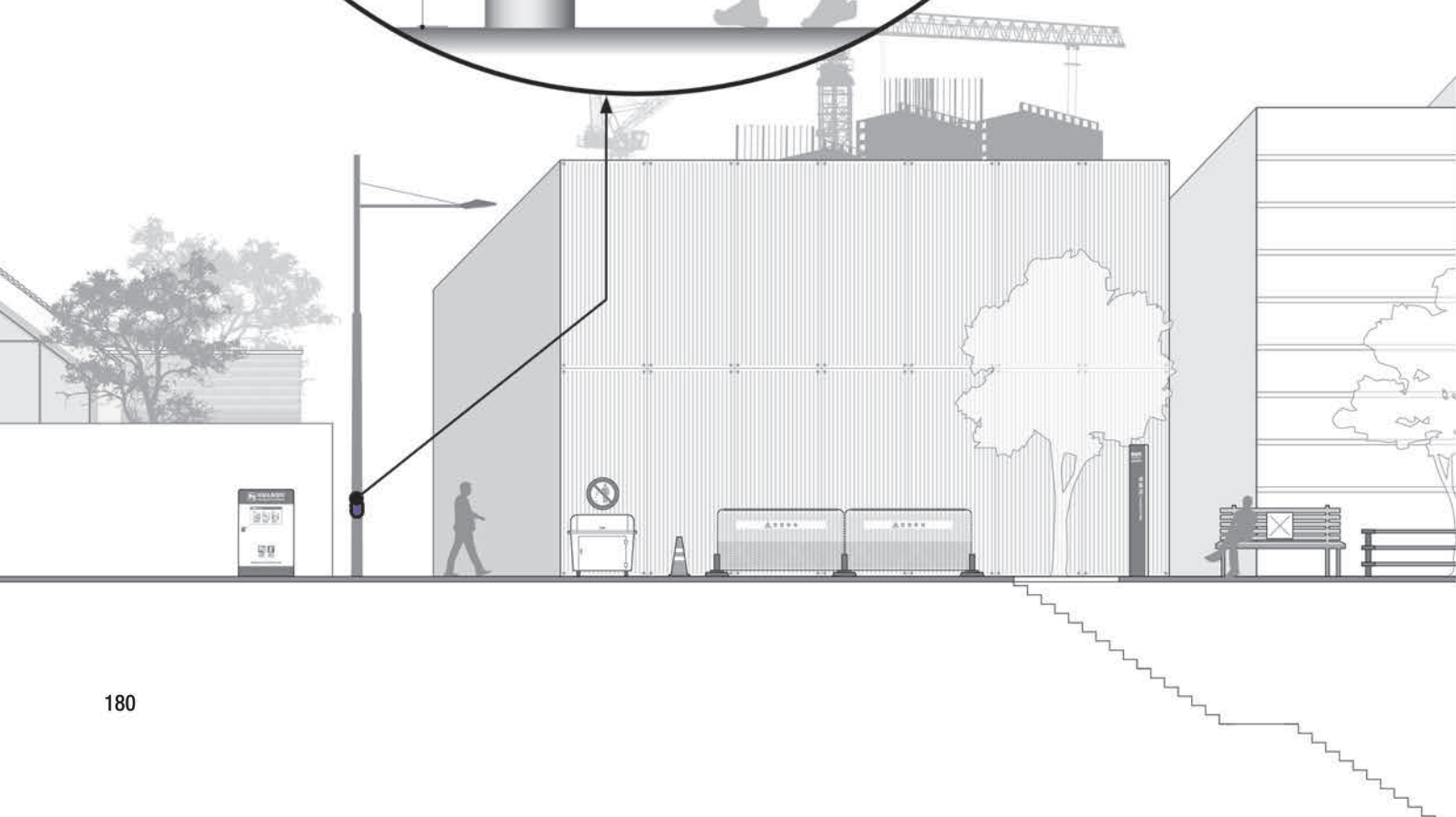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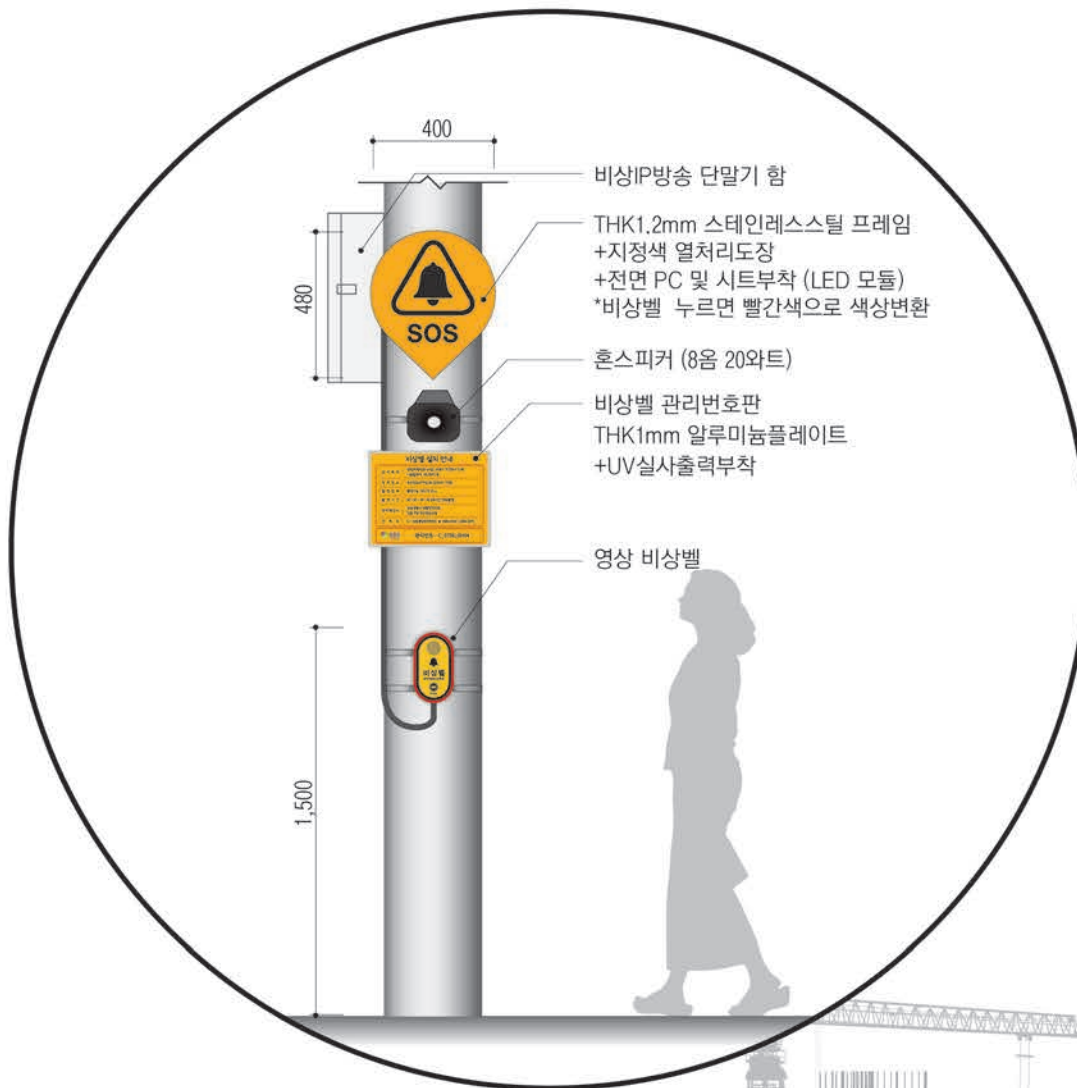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 주출입로 주변에 폴형 안전안내표지를 설치한다.			
2. 폴형 안전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금지행위 안내판을 설치한다.			
3. 금지행위 안내판과 폴사인을 함께 설치하지 않는다.			
4. 필요한 구간에 수문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5. 진출입로 계단에 고휘도 반사시트 부착을 권장한다.			
6. 비상사다리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형광패드를 부착한다.			
7. 구명환은 걸이 형태로 하며, 보관함과 함께 설치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전시설물에 적용되는 주조색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무채색을 적용한다.			
2. 주조색은 서울색 중 한강은백색 또는 기와진회색 사용을 권장한다.			
3.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조색은 주의/경고를 의미하는 안전색채를 적용한다.			
4. 문자, 기호, 픽토그램의 표기는 상황에 따라 흑색, 백색, 서울 기와진회색 사용을 권장한다.			

C3-3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기본방향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인지가 잘 되도록 설치한다.

참 조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생활안전심디자인 종합 가이드라인(시방서)〉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범죄다발구간 및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한다.			
2. 골목과 가로 구조와 주변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3. 유희공간에는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 그래픽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4.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반사시트의 설치를 권장한다.			

형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동일 권역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형태를 적용한다.			
2.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 시 벽면 및 가로시설물에 부착한 형태를 권장한다.			
3. 다른 가로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야간에도 쉽게 인지하도록 조명형 주소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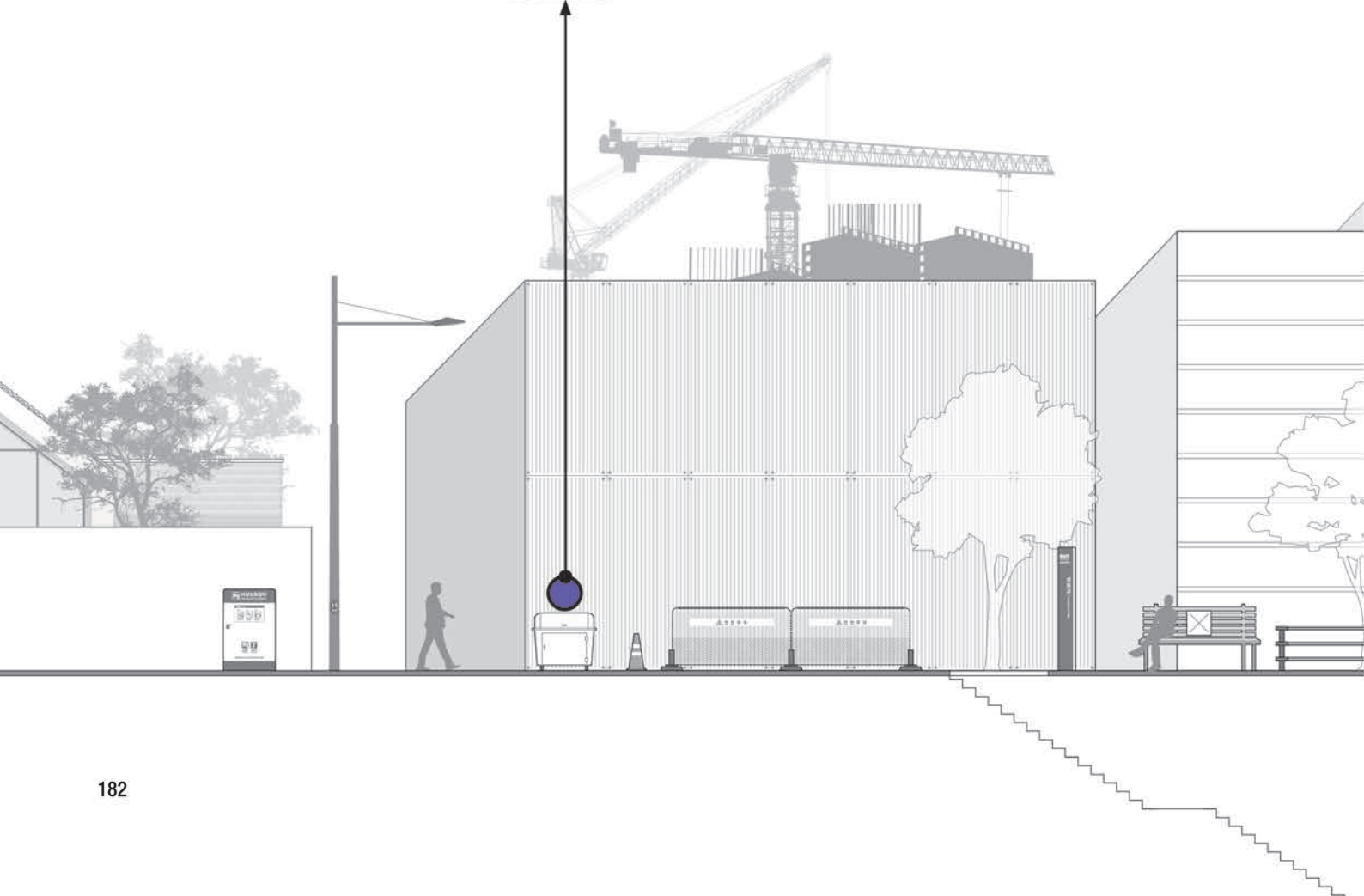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일관성 있는 픽토그램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2. 안내표지판 설치 시 쉽게 이해하기 위한 픽토그램을 함께 표기한다.			
3. 상권인접 골목길의 경우 주거영역에 대해 알리는 내용과 함께 주의사항에 대해 표기한다.			
4.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5. 문자표기는 최소화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야간을 고려하여 반사소재의 적용을 권장한다.			
2.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토록 시인성이 높은 색상을 적용한다.			
3. 한 골목에 일관성 있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4. 사유와 공적의 영역의 구분을 위해 바닥재료, 마감, 컬러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5. 문자에 강조색은 지양한다.			

C3-4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



기본방향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기 어렵도록 직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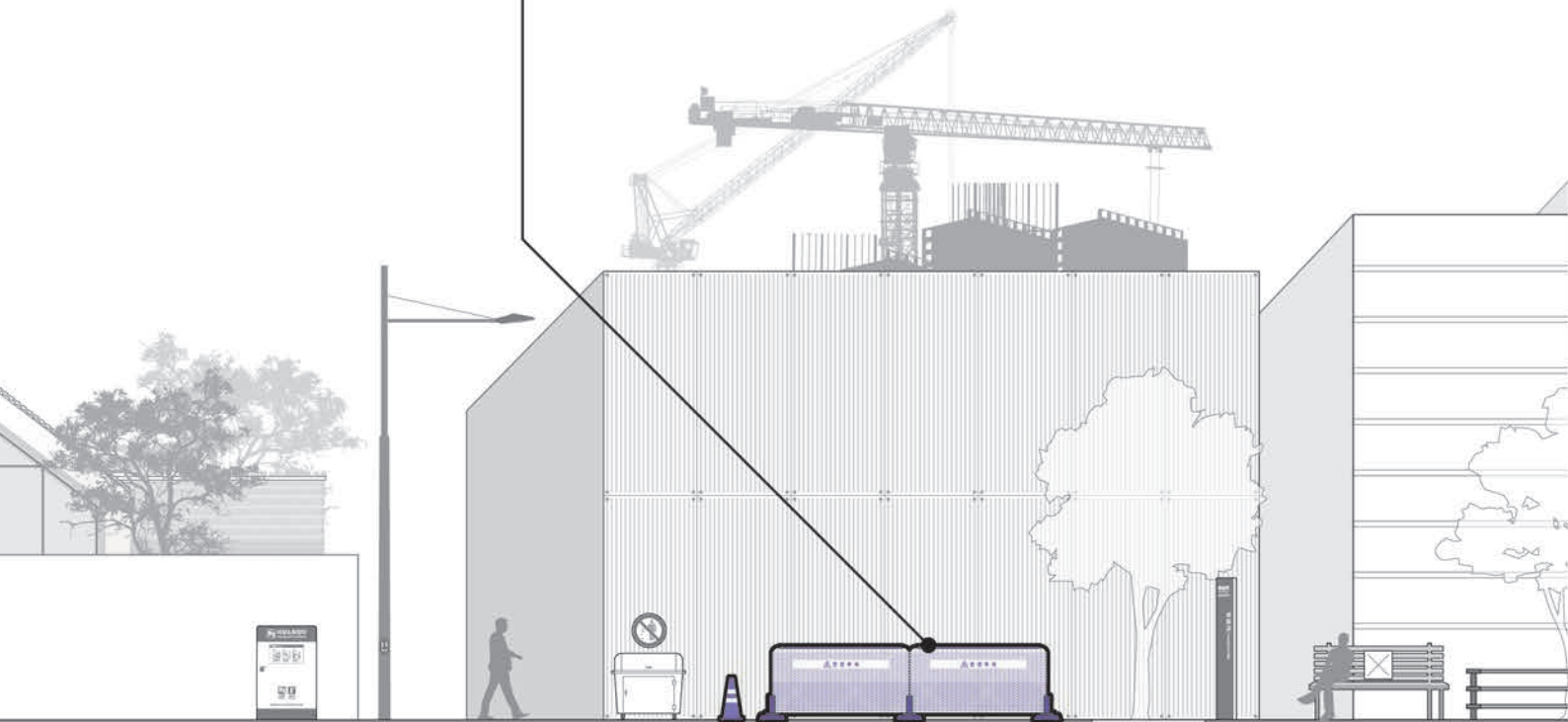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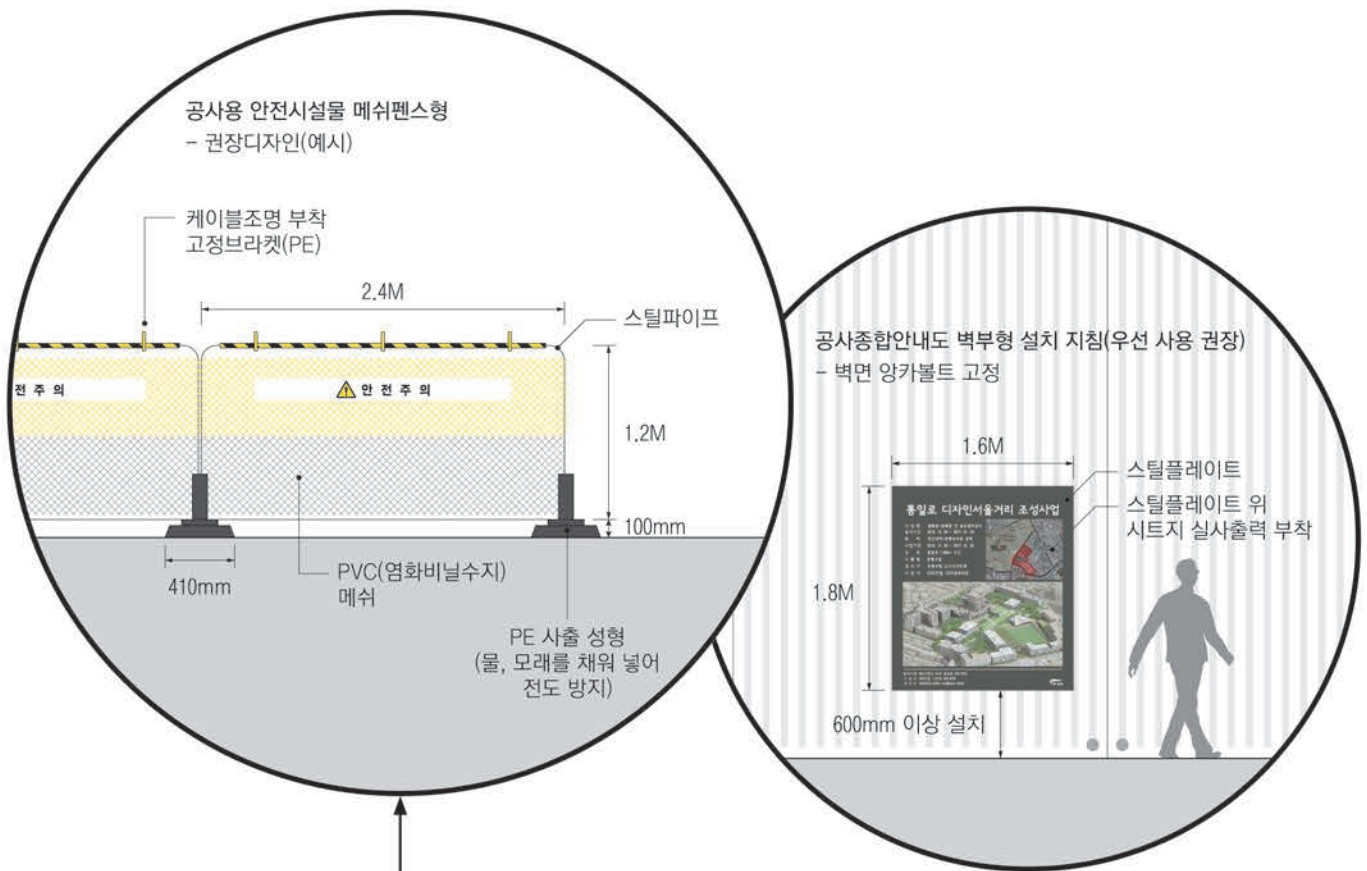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2. 쓰레기 투기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CCTV와 함께 설치한다.			
3. 기존 전봇대 및 벽면에 통합 설치한다.			
4. 쓰레기투기 방지를 유도할 수 있는 넋지디자인을 권장한다.			
5.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식의 조명을 설치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다문화 주민과 외국인을 고려하여 안내표지에 다국어를 표기한다.			
2. 올바른 쓰레기처리 안내표지에는 픽토그램과 함께 표기한다.			
3. 분리수거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4.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표지 설치 시 경고문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다.			

C3-5 공사장 안내표지



기본방향

보행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인지가 잘 되도록 설치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안전펜스, 공사안내판 설치 및 색채〉 (2016,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사안내판은 공사장 주출입구, 주이동동선에 설치한다.			
2.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3. 넘어지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보행로 확보에 따라 각 구간에는 펜스형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5. 안전시설물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공사장용 드럼 및 칼라콘의 설치를 권장한다.			
6. 공사구간의 전후방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 교통, 보행안내표의 설치를 권장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사장 안내표지에는 제목과 공사시간, 유도방향,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2. 공사종합안내도에는 사업명, 공사기간, 위치, 사업기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표기한다.			
3. 픽토그램은 서울시 표준을 적용한다.			
4. 외국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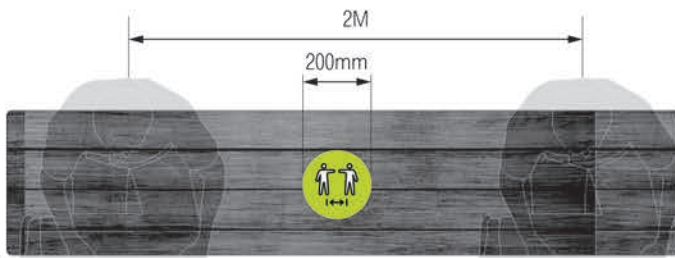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사종합안내도는 공사장가림막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각 지역의 특성이 담긴 공사장가림막의 설치를 권장한다.			

색채 및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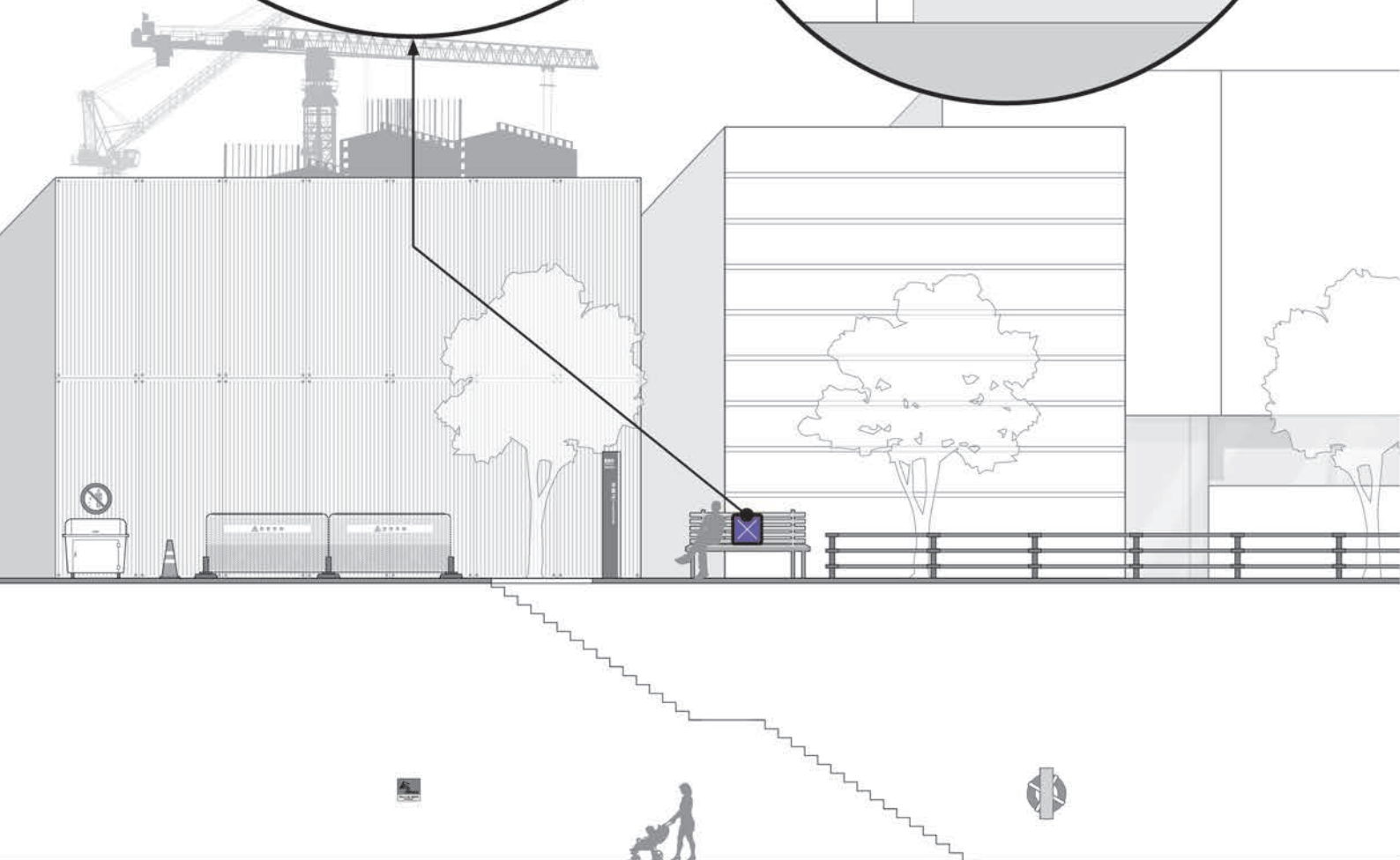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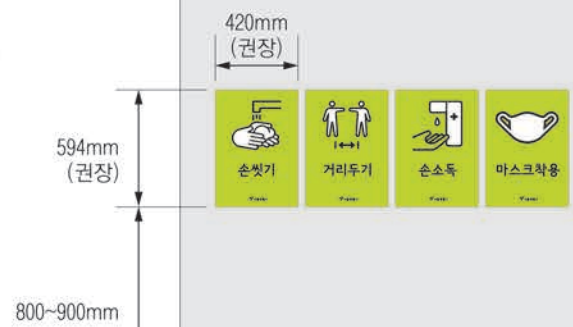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명시성이 높은 노란색계열의 색채를 권장한다.			
2. 금지와 강조부분에서는 적색계열의 색채를 권장한다.			
3. 야간에도 인지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C3-6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표지

거리두기 시각정보 _ 벤치형
- 벤치 중앙에 스티커 부착



감염예방 행동지침 _ 포스터형
- 벽면 적용 시



기본방향

자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기한다.

참 조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 매뉴얼〉 (2021, 서울특별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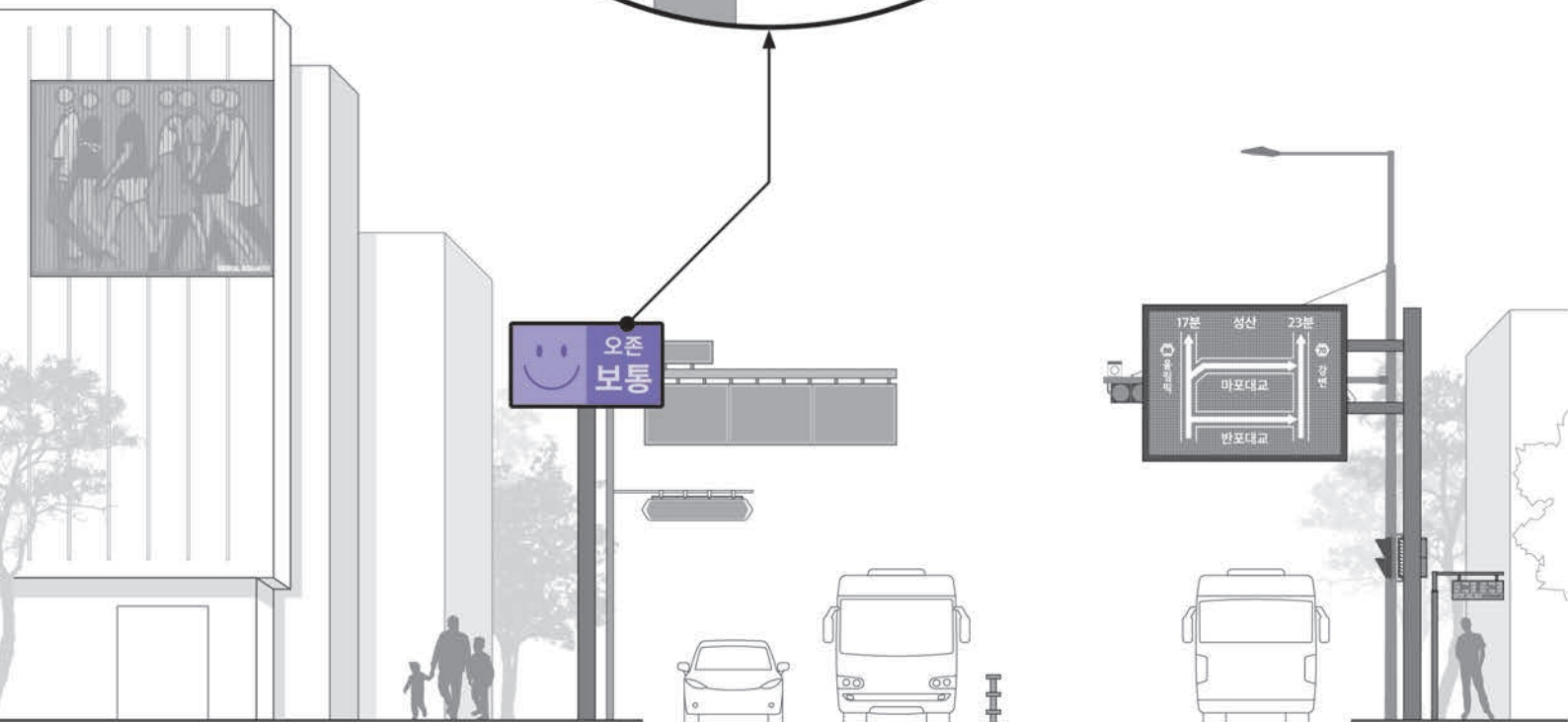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시설 및 사람밀집구간의 경우 거리두기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2. 대기공간 및 진입공간에 최소 1~2M의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거리두기 실천 및 예방수칙, 의심증상시 대처방안 등의 안내표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설치한다.			
4.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코로나19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표기한다.			
2.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대처방법 및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는 시각화 자료와 함께 표기한다.			
3. 외국어 이용자를 위해 다국어어를 함께 병기한다.			

C4-1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심의대상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크기에 필수 정보만을 표기한다.

참 조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문화재 지역 등 설치불가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2.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3.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버스전광판, 교통전광판 등과 통합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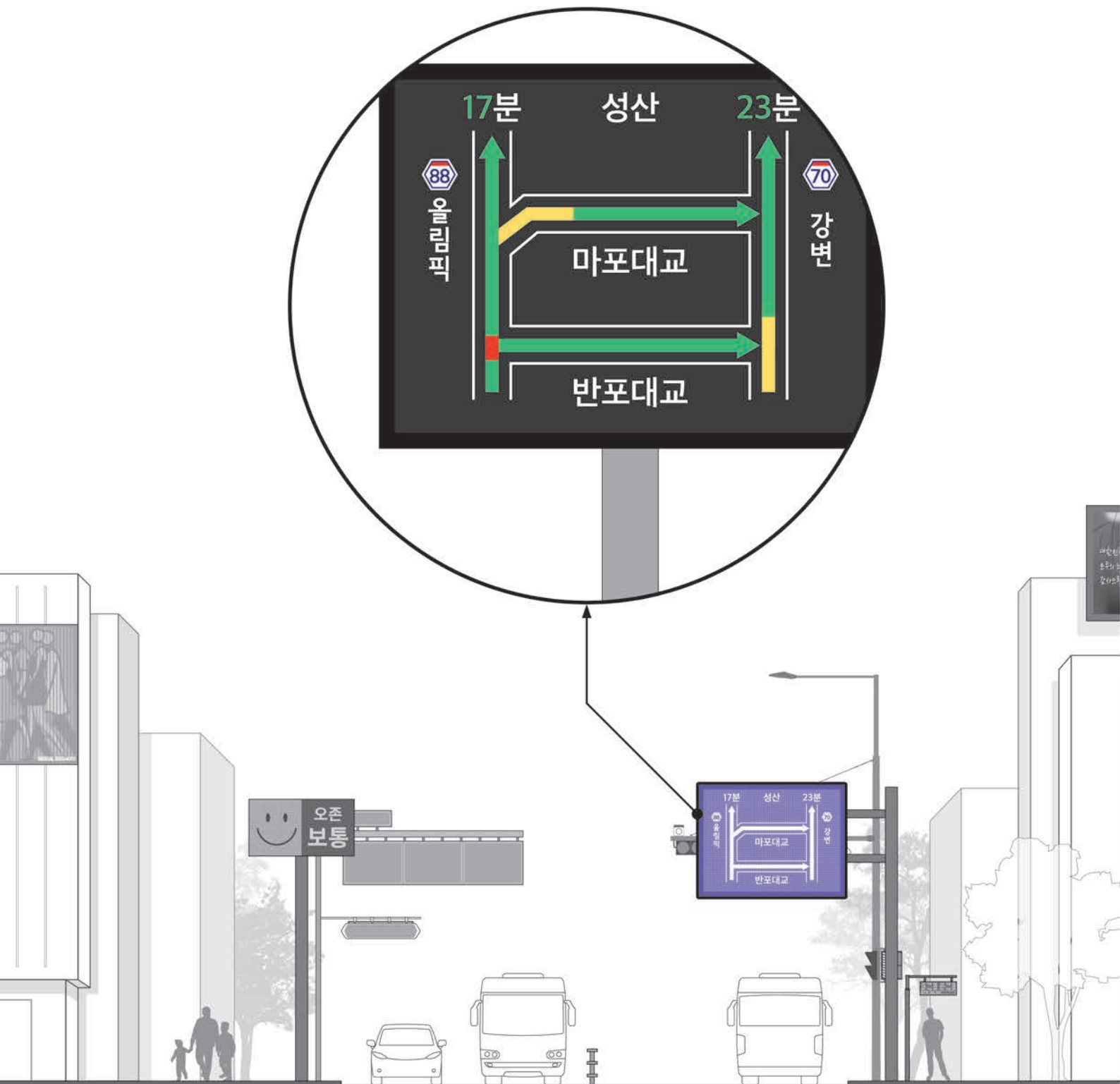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간단 명료한 문구로 표현한다.(예 : 일기예보의 빨래지수, 세차지수)			
2. 평균지수, 기준지수 비교 등 환경 관련 정보는 보조요소로 표기한다.			
3. 서체는 가독성이 좋은 서울남산체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및 휘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차량신호체계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지양한다.			
2. 색채는 최대한 단색을 적용한다.			
3. 야간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C4-2 교통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크기에 필수 정보만을 표기한다.

참 조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19(도로표지의 조명방식)〉 (2019,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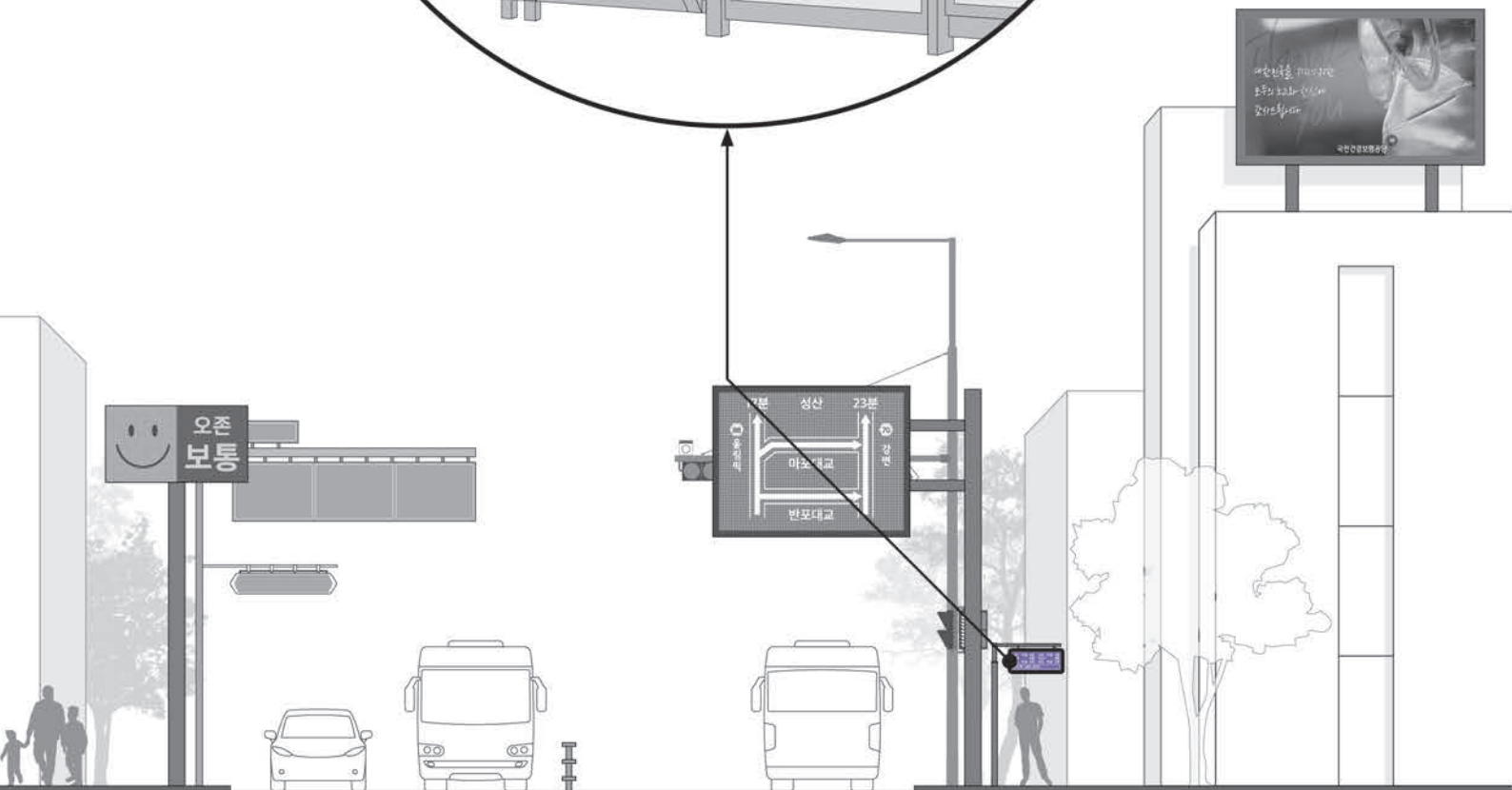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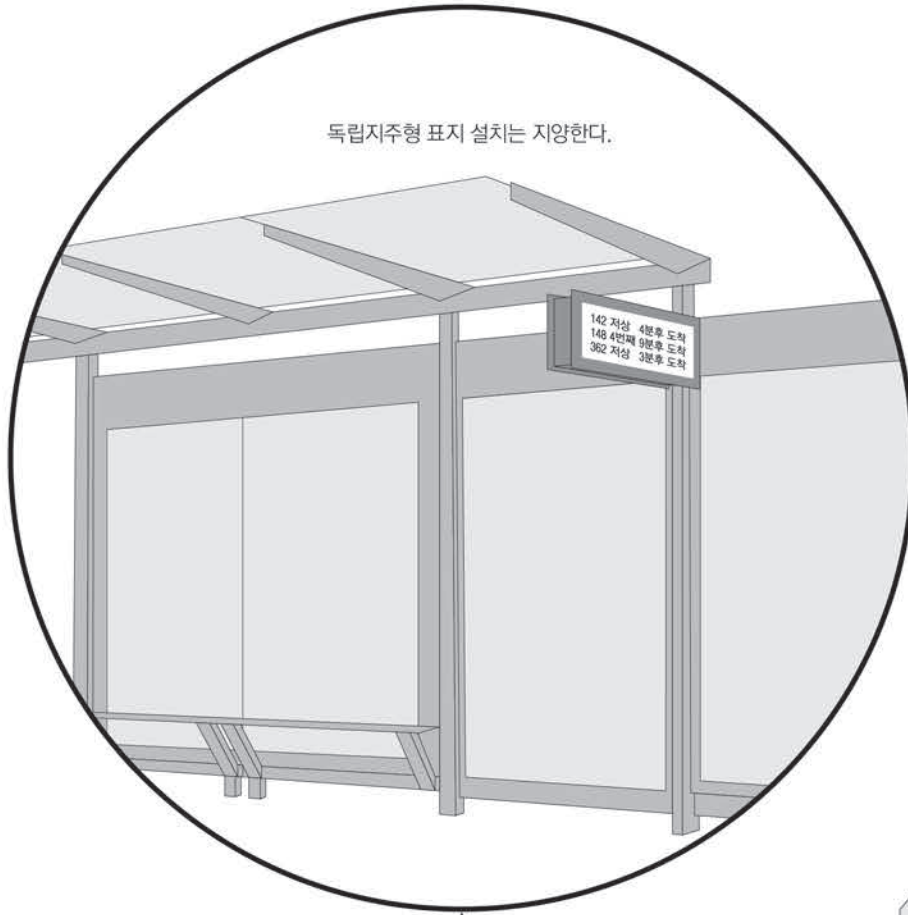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현재 교통상황, 주의구간 알림, 소요시간, 교통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 정보를 주요소로 표기한다.			
2.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용어는 지양한다.			
3. 상업광고 비중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C4-3 버스정보 전광판

독립지주형 표지 설치는 지양한다.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크기에 필수 정보만을 표기한다.

참 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19(도로표지의 조명방식)〉 (2019, 국토교통부)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독립지주형 표지 설치는 지양한다.			
2. 필수정보 표기에 적절한 크기 및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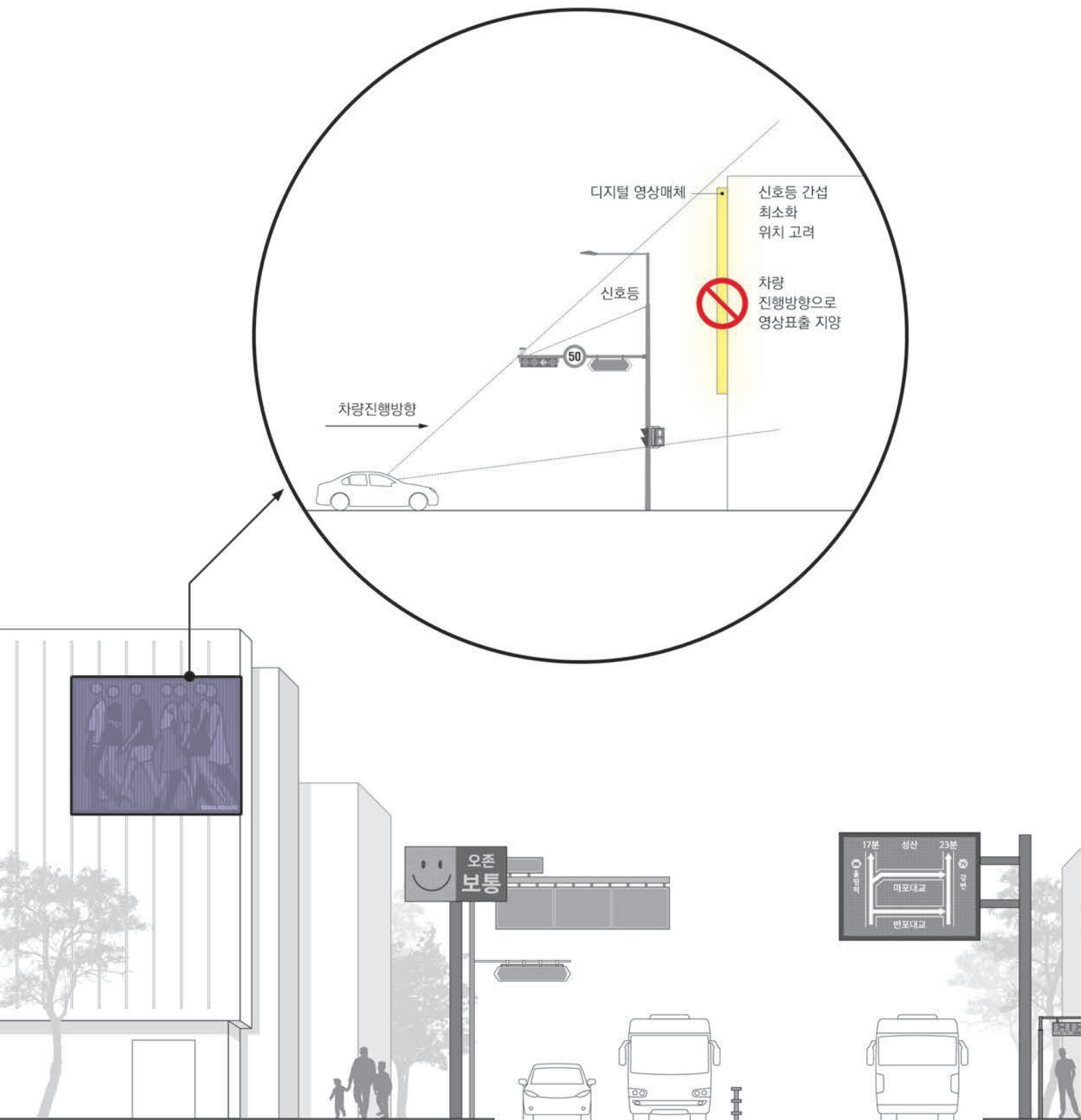
표기요소 및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한 화면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읽히지 않으므로 정보량을 고려한다.			
2. 교통신호등과 동일한 색채의 사용을 금지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한다.			
2. 타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C4-4 디지털 영상매체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크기에 빛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참 조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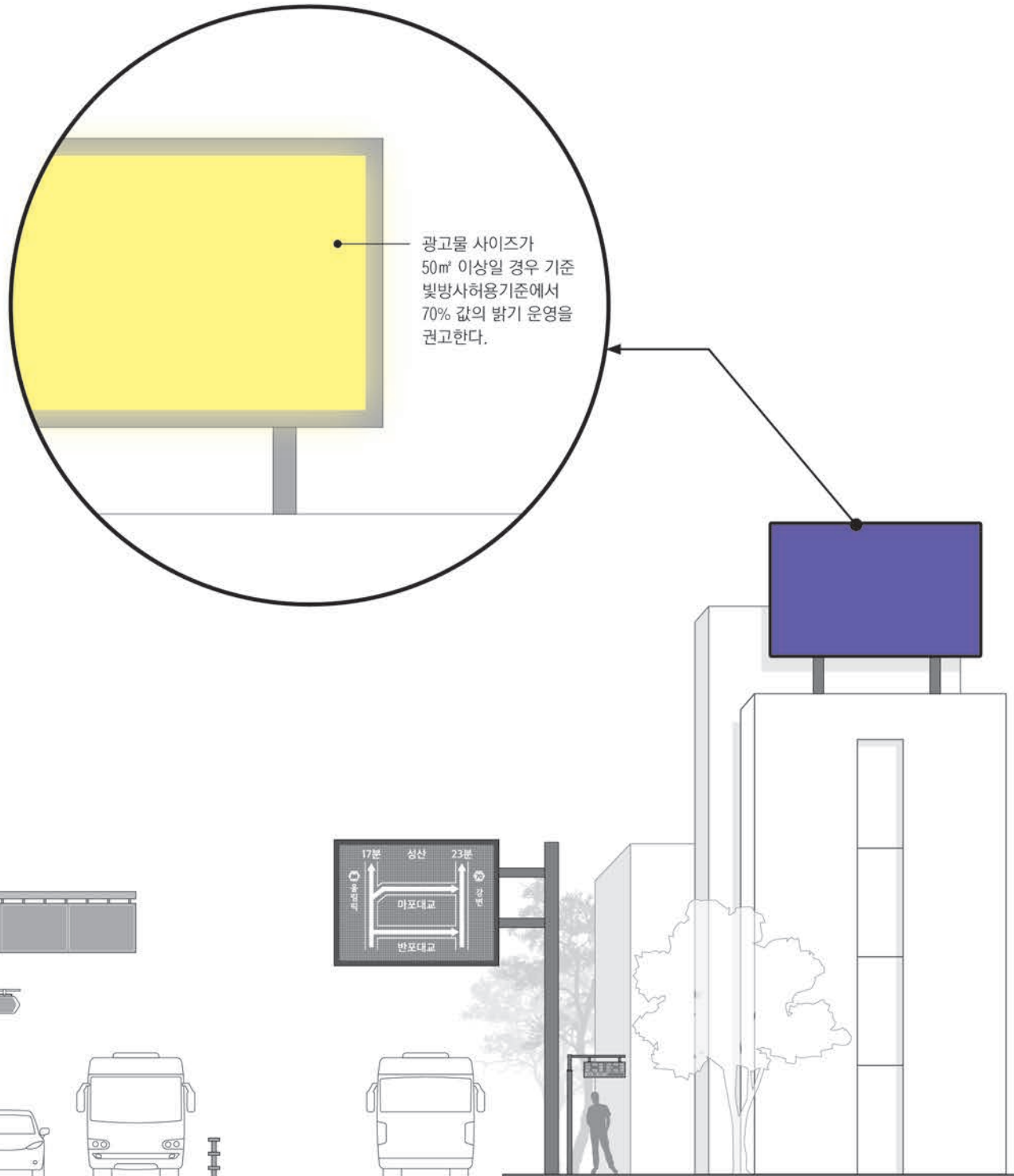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 설치를 지양한다.			
2. 크기 및 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용도 지역별로 휘도를 규제한다.			
2. 심야에는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은 지양한다.			
4. 상업광고의 표기는 지양한다.			

C4-5 옥외전광판



기본방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크기에 빛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참 조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 설치를 지양한다.

2. 옥외전광판은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C5 실내사인 ①



기본방향

실내공간과 조화되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읽기 쉽도록 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픽토그램)〉 (2016,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시설안내표지는 사람의 이용이 활발한 구간에 설치를 권장한다.			
3. 방해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4. 방향유도표지는 동선의 혼란이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방향안내사인은 벽면, 천정 등에 설치하여 공간차지를 최소화한다.			
6. 방향안내사인은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7. 실내 안전시설물의 경우 적색의 안전표지를 함께 부착한다.			
8. 안전 시각매체는 주출입동선 및 대피 동선 내에 필히 설치한다.			
9. 야간에도 읽혀지도록 조명 및 발광형 시설물을 통합 설치한다.			
10. 건물 내의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이상의 점자안내판(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를 권장한다.			
11. 건물 내 · 외부 계단손잡이 및 계단 중앙에 설치된 난간 양측에 점자표지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용자의 특성 및 정보의 속성을 고려하여 그래픽, 글자크기, 설치위치를 계획한다.			
2. 픽토그램, 숫자 등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기요소를 사용한다.			
3. 전체적으로 통일된 문자 크기, 재료, 색채, BI 등을 적용한다.			
4. 의미없는 장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시각기호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 계단 등은 방향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정보 및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7. 시 또는 구 상징요소,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표기요소의 남용을 지양한다.			
8. 시각장애인을 위해 촉지안내도 설치 시 안전 및 이동편의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C5 실내사인 ②



기본방향

실내공간과 조화되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읽기 쉽도록 한다.

참 조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서울형 공공안내 그림표지(픽토그램)〉 (2016, 서울특별시)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등 각 층별 색채는 차이를 둔다.			
2. 벽면 마감재 색채와 조화성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세운다.			
3. 안전표지의 경우 안전시설물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색채를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내사인디자인이 개별적으로 계획되지 않도록 통합계획한다.			
2. 안내사인의 통합계획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설계단계에서 진행 한다.			
3. 시공이후 적절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안내표지의 크기, 표기, 배치 등을 확인한다.			

C6 실외사인

픽토그램, 숫자 등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기요소를 사용한다.

공공건축

월요일 ~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관련하여 단축 운영

*토요일 예약제 운영

Open 11am / Close 5:30pm



건물명 간판은
입체문자형을 권장하며
부드럽고 은은한 간접조명방식과
외부조명 방식의 조명연출을 권장

공공건축



기본방향

주변과 조화되면서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참 조

-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 : 다국어표기〉 (201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IX : 보행자 안내표지판 규정 (기타 표기요소)〉 (20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20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서울특별시)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공공건축물의 옥외간판은 건축물의 파사드와 통일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2. 정보의 위계를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3. 건물명 간판은 입체문자형을 권장한다.			
4. 2개 이상의 현판 설치의 지양한다.			
5.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홍보용 현수막과 기타 옥외광고물의 부착은 지양한다.			
6. 건물명 간판은 부드럽고 은은한 간접조명방식과 외부조명 방식의 조명연출을 권장한다.			
7. 지역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디자인을 지양한다.			
8.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도록 시설명판, 출입구 사인 등을 계획한다.			
9. 도로에서부터 건축물 내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명판, 안내도, 출입구 사인 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10. 공공건축물의 간판표지는 규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수로 설치한다.			
11. 시설안내표지판은 보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설치한다.			
12. 건물 주출입구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점자노면안내판과 문자안내표지를 설치한다.			
13. 건물 주출입구에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유리문, 바닥면에 주위환기용 표지의 설치를 권장한다.			
14. 옥외전광판은 건축물 파사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며, 건축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15. 옥외전광판은 건축물의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표기요소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픽토그램, 숫자 등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기요소를 사용한다.			
2. 전체적으로 통일된 문자 크기, 재료, 색채, BI 등을 적용한다.			
3. 안내도에는 시설물까지의 잔여 거리와 보행 소요시간을 표기한다.			
4. 안내표지에는 쉬운 이해를 위해 방향 픽토그램을 함께 표기한다.			
5.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색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외부안내표지는 멀리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배경색과 글자색의 대비를 명확하게 한다.			
2. 공공건축물 간판표지는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한다.			
3.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안내사인의 통합계획은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설계 단계에서 진행한다.			
2. 안내사인의 통합계획을 통해 안내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Part D

Social Problem Solving Design Rooting out Crime by Design Universal Design Checklist

공공디자인사업 체크리스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자용, 심의자용)

D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심의자용

설계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주체의 공공성	해당 사업의 주제가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가?			
2.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추진과정에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3. 사업수행 전문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4. 수행조직 협력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솔루션 개발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디자인 프로세스 활용성	공공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이 적절한가?			
2. 평가 계획 적절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목적에 따른 평가방법 개발이 적절한가?			

솔루션 적용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 완성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의도를 반영하여 완성도 높게 구현하였는가?			
2. 사업의 혁신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방식이 기존에 비하여 혁신적인가?			

유지 관리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 결과의 우수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으로 인한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2. 사업의 지속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확산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홍보 활용성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2. 사업 확산 가능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이 다른 지역(분야)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3. 확산조직 협력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확산시킬 조직구성이 적절한가?			

D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기획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주제의 공공성	해당 사업 주제가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5대 추진전략 및 목표에 부합하는가?			
2.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추진과정에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인식개선 활동을 포함하였는가?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이 다양한 매체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3. 사업수행 전문성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서비스디자인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정되었는가?			
	사업의 시행주체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계획하고 실무자가 인지하였는가?			
4. 수행조직 협력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는 '디자인총괄체계'를 갖추었는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산학연계를 통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동 프로젝트나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가?			

D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솔루션 개발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디자인 프로세스 활용성	공공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			
	공공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시민,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활동을 진행하였는가?			
2. 평가 계획 적절성	사업의 유형(ex.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적합한 평가 전략 및 방법을 개발하였는가?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평가 전략 및 방법(질적/양적)을 개발하였는가?			

솔루션 적용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 완성도	사업이 실제 의도했던 목적에 부합하며, 흠결없이 완공되었는가?			
	사업이 시민들에게 심미적/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완공되었는가?			
2. 사업의 혁신성	구현된 사업의 문제해결 아이디어와 방식이 혁신적인가?			
	사업 구현 방법(제작방식 및 재료 등)이 기존 방식에 비해 혁신적인가?			

D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유지 관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 결과의 우수성	사업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효율성이 증진/향상되었는가?			
	사업은 향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사업 종료 후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가?			
2. 사업의 지속성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후속 사업 및 단계별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하게 사업 추진 및 관리가 계획되어 있는가?			
	사업결과가 투입자원(인력, 시간, 비용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효과와 지속성을 갖는가?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유관기관 및 시민 구성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가?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과 담당주체가 명확한가?			

확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홍보 활용성	시범 사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진행하였는가?			
	시민이 홍보의 주체가 되어, 사업의 기록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는가?			
2. 사업 확산 가능성	사업 성과가 유사 문제를 가진 타 지역에 확산 및 적용 가능한가?			
	사업 실행이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3. 확산조직 협력성	확산 대상지에 적합한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는가?			
	확산 사업에 적합한 시민 중심으로 핵심 추진 주체를 구성하였는가?			
	확산 사업에 적합한 이해관계자 및 기관, 전문가를 핵심 추진 주체로 구성하였는가?			

D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자용

기획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주체의 공공성	해당 사업의 주제가 서울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가?			
2. 사업대상 및 목표 선정의 적절성	해당 사업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대상으로서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3.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추진과정에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4. 사업수행 전문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5. 수행조직 협력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조사 / 분석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이용자 예측성	사업대상지(시설)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2. 대상지 분석의 심층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대상지 현황 및 범죄(안전)문제의 분석이 적절한가?			
3. 이해관계자 통합성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선정과 의견 수렴과정이 적절한가?			
4. 사례검토 활용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5. 정책·제도 부합성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설계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셉테드 5대원리(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가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가?			
2. 설계 협력성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핵심문제와 솔루션은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가?			

제작 / 설치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현장 점검·관리 적절성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점검 및 대응이 적절한가?			
-----------------	--	--	--	--

유지 관리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 결과의 우수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결과가 기획의도 및 목표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2. 사업 지속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확산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홍보 활용성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2. 사업 확산 가능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D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기획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주제의 공공성	해당 사업 주제가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5대 추진전략 및 목표에 부합하는가?			
2. 사업대상 및 목표 선정의 적절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이후의 환경변화를 사업유형에 맞게 선정(검토)하였는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원리에 따라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3. 시민참여 가능성	해당 지역 'CPO'와 '자치순찰대' 등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였는가?			
	사업추진과정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인식개선 활동을 포함하였는가?			
	사업추진과정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체험 등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을 포함하였는가?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이 다양한 매체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4. 사업수행 전문성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정되었는가?			
	사업의 시행주체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계획하고 실무자가 인지하였는가?			
5. 수행조직 협력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산학연계를 통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공동 프로젝트나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가?			

조사 / 분석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용자 예측성	사업대상지(시설)의 이용자를 적절하게 예측 · 규정하였는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 행태적 ·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는가?			
	야간 시간대 이용자의 행태와 불안요소를 분석하였는가?			
2. 대상지 분석의 심층성	맥락적 인터뷰 등 현장 중심의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과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분석하였는가?			
	범죄발생 현황 지도 등 현장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지의 안전 이슈를 파악하였는가?			
3. 이해관계자 통합성	지역 주민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는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를 하였는가?			
	주민참여를 포함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였는가?			
4. 사례검토 활용성	서울시 및 국내외 타 지역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사업 우수사례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 검토하였는가?			
5. 정책 · 제도 부합성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정책과 부합하는가?			
	사업실행 방법이 타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과 서울시 조례, 기준 · 규칙 ·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사업(예상)결과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권리(이익)를 침해하지 않는가?			

D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설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련 법규와 지침	문제분석에 따른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준수성해당사업이 관련된 법과 서울시 조례(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등)를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해당사업의 요소가 범죄예방설계지침(경찰청) 등 관련 기준·규칙·지침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셉테드 5대원리(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가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가?			
2. 설계 협력성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대상사업지 주변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핵심문제와 솔루션은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가?			

제작 /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현장 점검·관리 적절성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현장 관리책임자 안내표지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D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유지 관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 결과의 우수성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는가?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2. 사업의 지속성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관리주체별로 구분된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관리 담당자에게 사업내역과 관리방안이 전달되었는가?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사후 관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확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홍보 활용성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2. 사업 확산 가능성	사업실행이 지역사회 안전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유사 대상지를 검토하였는가?			
	지자체나 단체, 기관 등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의 잠재적 수요처를 파악하였는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정보를 축적하여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확산(시범)사업 실행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는가?			

D3 유니버설디자인

심의자용

기획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주체의 공공성	해당 사업의 주제가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가?			
2. 사업대상 및 목표 선정의 적절성	해당 사업이 유니버설디자인 대상으로서 적절한 목표를 갖는가?			
3.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추진과정에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였는가?			
4. 사업수행 전문성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고 전문성을 갖는가?			
5. 수행조직 협력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6. 이용자 예측성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이용자와 이용행태 분석이 적절한가?			
7. 대상지 분석의 심층성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대상지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가?			
8. 이해관계자 통합성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선정과 의견 수렴과정이 적절한가?			
9. 사례검토 활용성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우수사례 조사 및 반영계획이 적절한가?			
10. 정책·제도 부합성	사업추진 방향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설계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성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2. 설계 협력성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적절한가?			

제작 / 설치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현장 점검·관리 적절성	시공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측과 사전 대응이 적절한가?			
-----------------	--------------------------------------	--	--	--

유지 관리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사업 결과의 우수성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결과가 기획의도 및 목표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2. 사업 지속성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결과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확산

기준부합 미부합 미해당

1. 홍보 활용성	사업 홍보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가?			
2. 사업 확산 가능성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대상지 외 다른 지역에 확산·적용하기에 적절한가?			

D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기획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주제의 공공성	해당 사업 주제가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5대 추진전략 및 목표에 부합하는가?			
2. 시민참여 가능성	해당 사업의 주제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도시조성10원칙에 부합하는가? (아래 1~10 개별항목 평가)			
	1) '공존의 UD 도시' 원칙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통합적 UD도시,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UD도시를 지향한다.			
	2) '공감의 UD 도시' 원칙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름이 존중되는 공감과 소통의 UD도시로 국제적인 면모의 UD도시를 지향한다.)			
	3) '공유의 UD 도시' 원칙 지역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눔의 UD도시를 지향한다.			
	4) '공평의 UD 도시' 원칙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양질의 삶에 대한 균등한 혜택과 기회로 인권이 존중되는 UD도시를 지향한다.			
	5) '포용의 UD 도시' 원칙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존중하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존중되는 따뜻한 UD도시를 지향한다.			
	6) '생활안전 UD 도시' 원칙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 및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UD도시를 지향한다.			
	7)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UD 도시' 원칙 시민의 자발적·민주적 참여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UD도시를 지향한다.			
	8) '도시공간이 숨쉬는 UD 도시' 원칙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터, 문화, 상업, 자연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과 접근이 편리한 공공디자인 및 보행자 중심 UD도시를 지향한다.			
	9) '혁신적 글로벌·스마트 UD 도시' 원칙 새로운 ICT 기술이 접목되어 변화에 부응하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			
	10) '지속가능한 UD도시' 원칙 친환경 에너지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한다.			

D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기획

반영 미반영 미해당

2. 사업대상 및 목표 선정의 적절성	사업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후의 이용자 변화를 사업유형에 맞게 선정(검토)하였는가?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에 따라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3. 시민참여 가능성	사업추진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민참여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사업추진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활동을 포함하였는가?			
	사업추진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등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을 포함하였는가?			
4. 사업 수행 전문성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가?			
	사업의 시행주체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계획하고 실무자가 인지하였는가?			
5. 수행조직 협력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하였는가?			

조사 / 분석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이용자 예측성	사업대상지(시설)의 이용자를 예측 · 규정하였는가?			
	장애인/어린이/노인/여성/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는가?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에 따라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는가?			
2. 대상지 분석의 심층성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표6-1>대상지 항목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지(시설)을 항목별로 평가하였는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라 대상지를 분석하였는가?			
	공공데이터와 현장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분석하였는가?			
	서울시 현장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의 이슈와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였는가?			
3. 이해관계자 통합성	지역 주민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는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서별 실무협의를 하였는가?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였는가?			
4. 사례검토 활용성	서울시 및 타 지역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는가?			
	사업 우수사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과 사업결과를 대조 검토하였는가?			
5. 정책 · 제도 부합성	사업실행 방법이 타 법에 저촉되거나 규제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과 서울시 조례, 기준 · 규칙 ·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사업(예상)결과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권리(이익)를 침해하지 않는가?			

D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설계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성	문제 분석에 따른 설계(안)이 도출되었는가?			
	해당 사업이 관련된 법과 서울시 조례(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등)를 준수하여 설계되었는가?			
	해당 사업의 요소가 서울시 UD 필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 (UD 유도기준 이상을 권장)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는가?			
	해당 사업내용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준용하였는가?			
2. 설계 협력성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 창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제작 / 설치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현장 점검 · 관리 적절성	시공 중 민원발생 방지대책과 갈등관리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였는가?			
	공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시설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현장 관리책임자 안내표지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현장 공사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관련 다국어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즉시 철거하였는가?			
	설계도면과 설치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는가?			

D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자용	기획 단계
		실행 단계
		운영 단계

유지 관리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사업 결과의 우수성	초기 사업기획의 의도가 사업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사업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결과와 완성도를 평가하였는가?			
	실제적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2. 사업 지속성	공간(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였는가?			
	관리주체별로 구분된 사업내역 자료(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수량 등)를 작성하였는가?			
	관리 담당자에게 사업내역과 관리방안이 전달되었는가?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사후 관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확산

반영 미반영 미해당

1. 홍보 활용성	기획단계부터의 사업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수집하였는가?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배포 가능한가?			
2. 사업 확산 가능성	사업실행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적용 · 확산이 가능한가?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SEOUL PUBLIC DESIGN CHECKLIST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발행일자	2022. 2. 28
기획개발	문화본부장 주용태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前)디자인정책과장 이해영 공공디자인진흥팀장 권은선 공공디자인진흥팀 이선미
자문위원	강용길, 김남형, 박준휘, 변혜령, 이경돈, 이석현, 차강희, 홍승대
연구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총괄책임 최성호 책임연구원 강성중 책임연구원 은덕수 연구원 김진희
디자인	플럼디자인 책임연구원 엄인영 책임연구원 김학민 책임연구원 김경애 연구원 김소영

비매품

ISBN: 979-11-6599-609-3 13530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소유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